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881-1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0년도 이행상황

202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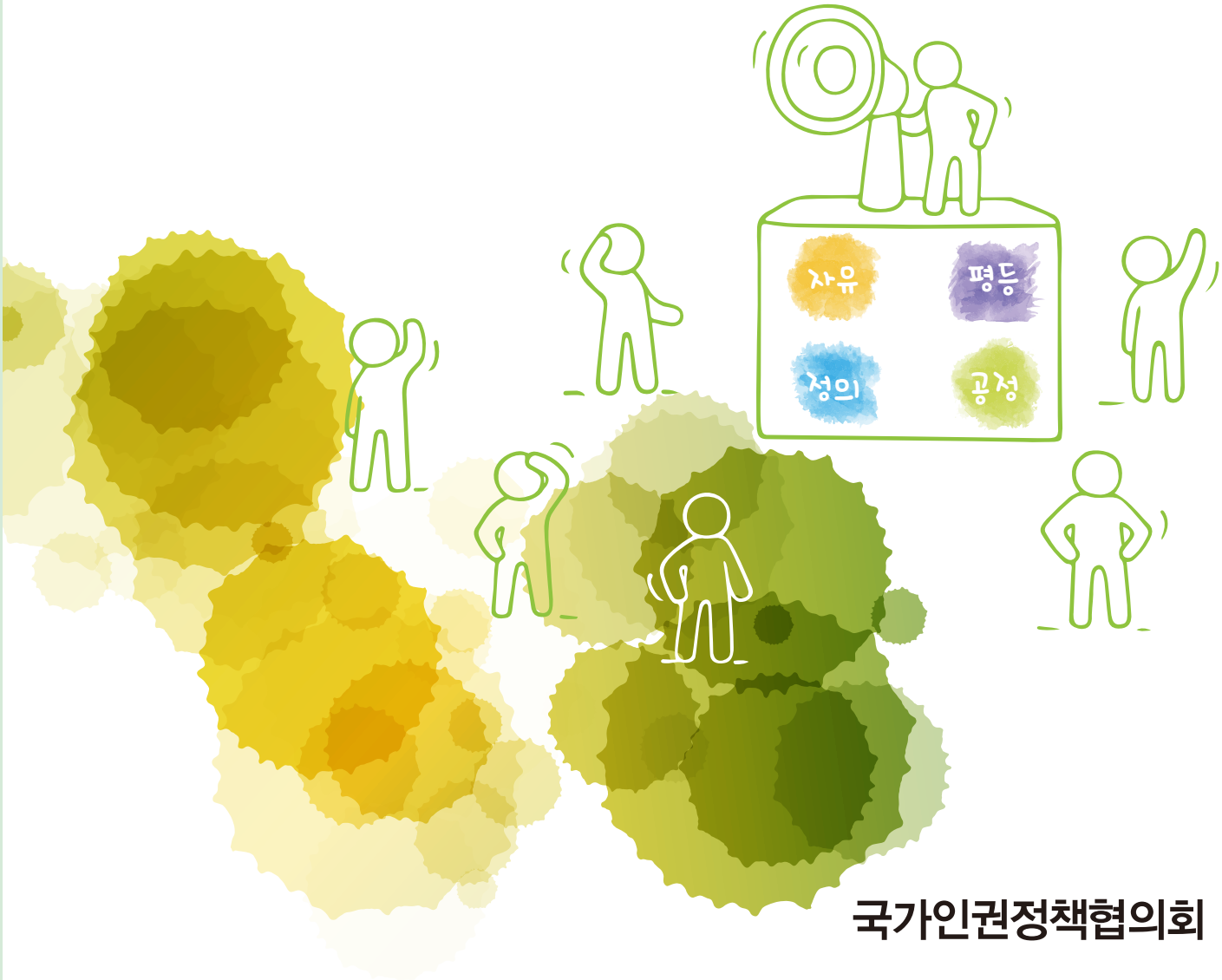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이행점검에 참여해 주신 국가인권정책자문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생명·신체보호, 기본적 자유, 인권의식과 인권문화 사회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권 숙 권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 보 라 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 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영 신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 상 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 성 수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 형 완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정 대 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이 성 훈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강 정 은

정의실현 참여, 더나은 미래추구, 인권친화적 기업활동 사회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김 남 희
보건복지부 감사관	배 금 주
서강대 로스쿨 교수	이 상 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 의 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나 현 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 혁 진
일환경건강센터장	류 현 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종 진
경기동부근로자 건강센터 부센터장	공 유 정 옥

평등, 동등한 권리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 성 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 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 수 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조 영 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변호사	한 가 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정 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김 지 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 범 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변호사	박 한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 영 주

CONTENTS

목 차

2020년도 이행상황 요약

Ⅰ 2020년도 이행상황 총괄 ——— 1

Ⅱ 분야별 2020년도 주요 이행상황 ——— 4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4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8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 11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15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18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27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35
8.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39

2020년도 이행상황

Ⅰ.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45

□ 이행상황 총괄 ····· 47

□ 과제별 이행상황 ····· 48

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93

□ 이행상황 총괄 ····· 95

□ 과제별 이행상황 ····· 96

Ⅲ.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 115

□ 이행상황 총괄 ····· 117

□ 과제별 이행상황 ····· 119

Ⅳ.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145

□ 이행상황 총괄 ····· 147

□ 과제별 이행상황 ····· 148

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161

□ 이행상황 총괄 ····· 163

□ 과제별 이행상황 ····· 167

Ⅵ.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355

□ 이행상황 총괄 ····· 357

□ 과제별 이행상황 ····· 360

Ⅶ.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491

□ 이행상황 총괄 ····· 493

□ 과제별 이행상황 ····· 495

Ⅷ.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563

□ 이행상황 총괄 ····· 565

□ 과제별 이행상황 ····· 56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0년도 이행상황

2020년도 이행상황 요약

Ⅰ. 2020년도 이행상황 총괄

Ⅱ. 분야별 2020년도 주요 이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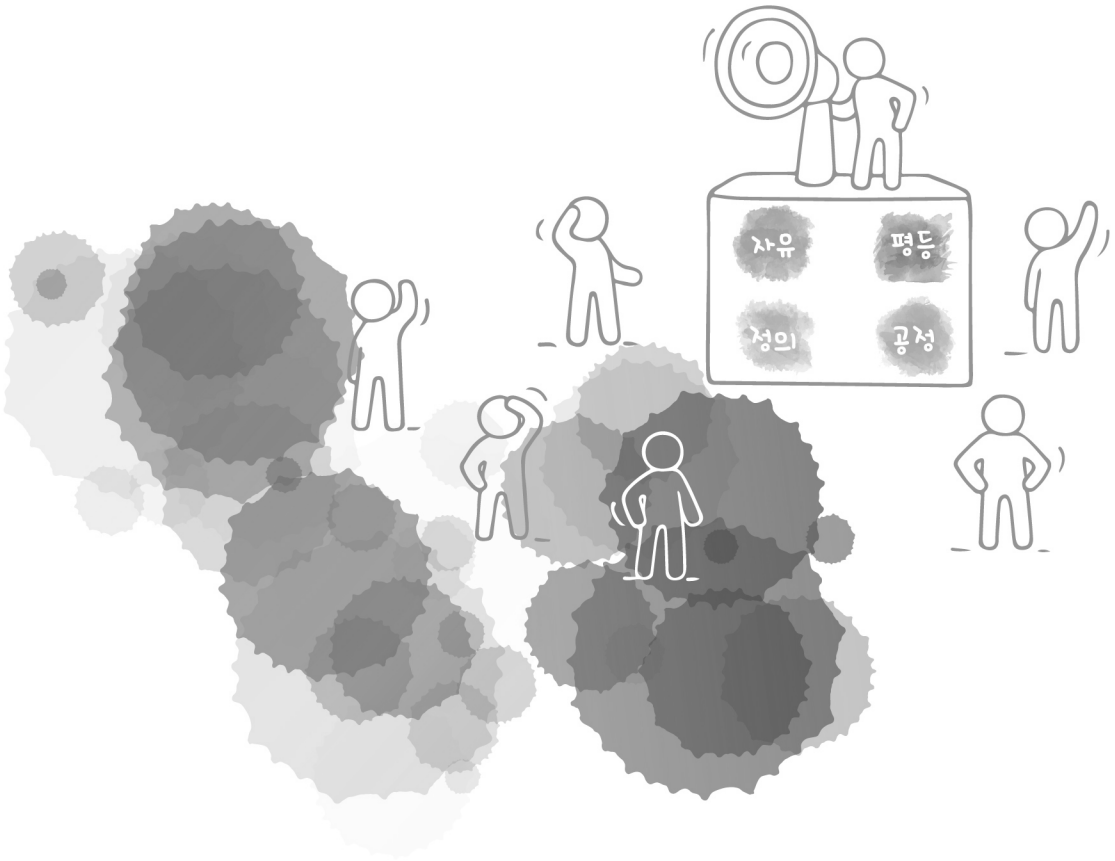

Ⅰ 2020년도 이행상황 총괄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20년도 이행상황은 총 272개 과제 중 완료과제 19개*를 비롯하여 '정상추진' 중인 과제 248개를 포함한 이행률은 98.16%

* 2018~19년도 과제완료 14건 포함

– 사법지원 일원화 논의 중, 유관기관 반대 등으로 '추진지연' 과제는 3개*

* 피고인·피의자 권리 보호증진,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 제3차 NAP 2020년도 이행상황 현황(전체) 〉

추진과제	2020년도 이행상황				
	소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272	272	19	248	3	2

※ 기타 : 환경변화, 사정변경 등으로 과제 추진이 곤란하여 삭제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교육부),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여가부/고용부)

〈 제3차 NAP 2020년도 이행상황 현황(분야별) 〉

분 야	추진과제	2020년도 이행상황				
		소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272	272	19	248	3	2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25	25	2	21	2	–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2	12	–	11	1	–
■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23	23	7	16	–	–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8	8	–	8	–	–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93	93	8	85	–	–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69	69	1	68	–	–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32	32	1	30	–	1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0	10	–	9	–	1

Ⅱ 분야별 2020년도 주요 이행상황

◎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가 되는 생명 존중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분야.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Ⅰ. 1. 생명권			
1	사형제도 개폐 검토	법무부	정상추진
2	자살예방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	생명존중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Ⅰ. 2. 신체의 자유			
4	인신구속제도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5	피고인 · 피의자 권리보호 증진	법무부	추진지연
6	대용감방 시설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7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법무부	정상추진
8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9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법무부	과제완료('19)
10	보호 · 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1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2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13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4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법무부	추진지연
Ⅰ. 3. 안전권			
1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16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7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18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1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20	시설 · 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21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22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과제완료('18)
23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안전 해결 추진	과기정보통신부	정상추진
24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25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2개, 정상추진 21개, 추진지연 2개		

※ 과제완료 :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추진지연 : 피고인 · 피의자 권리보호 증진,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 **(이행상황 요약)** ① 25개 과제 중 사형제도 개폐 검토 등 21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② 다만 피고인·피의자 권리 보호 등 2개 과제는 사법지원 일원화 논의 중, 유관기관 반대의 사유로 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논의 경과 등에 따라 개정 재추진할 예정임

주요 이행 실적

신체의 자유 관련

【법무부】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 생활관 소규모화 추진을 통한 개별처우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재활소년원 개청을 통한 정신질환 보호소년 의료처우를 강화하였으며,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 친인권적 보호장비(벨트형 족승) 개발 및 보급 등 보호·위탁소년의 인권 및 처우 개선 추진

※ 생활관 소규모화 등 : 안양소년원 3인실 9개(화장실, 세면장 구비) 리모델링, 의료재활소년원 신축공사 완료(수용정원 50명→80명, 남60, 여20) 등
* 1일 급식비 : '19년 5,409원→'20년 5,680원

안전권 관련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향상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구축을 위해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향상시키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시하여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였으며, 재난상황을 고려한 교육·홍보 및 훈련을 통해 지진안전 의식 제고

※ 역대 최대 예산 8,722억원 투입, 공공시설물 188,880개소 중 126,994개소 내진성능 확보로 내진율 전년대비 4.9%p(62.3→67.2%) 향상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생명권 관련

【법무부】 사형제도 개폐 검토

○ 흉악범죄나 중대범죄에 있어서 사형 외의 대체형벌(예 : 가석방 제한하는 무기징역형)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보건복지부】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자살위험 고위험군 20대 여성 및 노인 등에 대한 유관부서와의 집중적인 협업이나 맞춤형 대책 필요

신체의 자유 관련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의 목표설정이 확충 등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또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목표로 설정될 필요

– 개선책으로 거론된 교도소의 신·증축 외에, 불구속재판의 증대나 징역형 선고의 감축, 가석방의 적극적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과 병행 필요

【법무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 프로그램의 취지나 진정한 사회복귀를 염두에 둔다면 출소 직전이나 직후에 실시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데, 대부분 수용자들이 수용 초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복귀 관점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 시기 조정 필요

※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법무부)' 정책과제 관련,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수립('21. 9.)하고,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행동특성 등 재범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지도감독에 활용토록 성범죄자 심리 정보의 진위여부를 제공하는 심리생리검사(폴리그래프) 도입할 계획

안전권 관련

【법무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을 통해 미배치 지역 배치 필요

* 학대피해아동('21. 3.부터 필요적 선정), 학대피해 장애인('21. 6. 30.부터) 지원대상 포함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원리 중 하나인 차별금지를 실현하고,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분야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Ⅱ. 1. 차별금지			
1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법무부	추진지연
2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	성별 임금차별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6	장애인 고용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7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9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10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11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부	정상추진
1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종합	정상추진 11개, 추진지연 1개		

※ 추진지연 :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 **(이행상황 요약)** ① 12개 과제 중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등 11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② 다만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과제는 차별금지 사유·영역 등에 관한 사회적 의견 대립 등의 사유로 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주요 이행 실적

차별금지 관련

【여성가족부】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 여성인재 DB 확대* 및 활용 강화로 의사결정권한 확대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지속 확대**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한 확대

* ('18년) 110,208명 → ('19년) 120,072명 → ('20년) 129,782명
** 광역 : ('18년) 44.4% → ('19년) 44.9%, 기초 : ('18년) 39.1% → ('19년) 40.8%

○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자율협약 체결, 맞춤형 컨설팅 제공,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조사·발표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 '20년 : 자율협약(100개 기업), 컨설팅(18개 기업),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4.5%)

【여성가족부】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별, 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발굴·시정하도록 하여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 대중매체 내용분석 및 심의요청
– 예능·오락, 광고, 웹툰 등 매체별 내용 분석(17회)
– 내용분석 결과물 활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개선 요청 확대(579건)

▲ 양성평등한 미디어 교육 추진
– 청소년 대면 56회·비대면 177개교, 방송·언론인 5회

▲ 미디어 인식 개선 활동 추진
– 시민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5회·강연회 1회·포럼 1회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차별금지 관련

【법무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심각한 사회적 의견대립'의 실상은 '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조사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을 볼 때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헌법의 정교분리원칙, 평등원칙,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의무 등에 기반하여 처리해야 하고, 혐오·차별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관련 개별 법령과의 충돌 및 법적용상 혼란 우선 해결 필요'의 경우, 법무부가 소관 부서(처)의 의견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외적 요인인 것처럼 기술한 것은 부적절하며, 어떠한 법체계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

【고용노동부】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현황이나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직종에 대한 정당한 노동가치 평가 등이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될 필요 있고, 이주여성, 장애여성과 같이 취약 집단 여성이 겪는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 위키형태의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등재한 것을 이행실적으로 보고한 것은 충분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우리말샘에 등재된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내용이 차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음

'성소수자'를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풀이하고 있는데 '보편적인'이라는 용어는 성소수자를 보편적이지 않은 잘못된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라 설명함으로써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 만으로 국한시키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여성가족부】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 이행실적이 단지 심의, 권고의 건수를 나열하고 있는 등 양적지표에 치중,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과제수행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누구나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분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Ⅲ. 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법무부	정상추진
2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법무부	과제완료('18)
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국방부	과제완료('20)
Ⅲ. 2. 표현의 자유			
4	공적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5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6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과기정보통신부	정상추진
7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환경부	정상추진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9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경찰청	정상추진
10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경찰청	과제완료('20)
11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경찰청	과제완료('18)
12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경찰청	과제완료('18)
13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Ⅲ. 4. 사생활의 자유			
14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법무부	정상추진
15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법무부	정상추진
16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17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8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상추진
19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행정안전부	과제완료('19)
20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방통위원회	과제완료('18)
Ⅲ. 5. 거주·이전의 자유			
21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22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해양수산부	정상추진
Ⅲ. 6. 인격권			
2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7개, 정상추진 16개		

※ 과제완료 : 「보안관찰법」 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사물인터넷·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이행상황 요약)** ① 23개 과제 중 「보안관찰법」 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등 7개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등 16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주요 이행 실적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관련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 제·개정 완료되었으며, 대체복무제 시행('20.10.26.)

※ 대체역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완료('20. 6.)

▲ 법령에 따라 730명 대체역으로 편입되었으며, 106명이 소집 근무중('20.12.기준)

표현의 자유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 및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키오스크 개발(1종), 웹사이트 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취약계층 주 이용시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 복지관, 특수학교 등 40개 대상 전문가 평가 96.8점, 사용자 평가 96.4점
** 보조기기 보급 : 91종 3,450대 (시각 38종, 지체·뇌병변 27종, 청각·언어 26종)

결사·집회의 자유 관련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 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 지속 추진

※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의 부처 최종 수용률 96.9%(총 33개 중 32개 수용)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관련

【법무부】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과 관련한 법무부 의견이나 방향성 및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유관기관 의견 수렴이나 폐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방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

표현의 자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반론권을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지원 필요

사생활의 자유 관련

○ 정부가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상업체, 관련 기업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운영주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추진 등 과제를 보다 면밀하게 구성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권익 침해에 대해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고, 입법·사법·행정 영역의 정의 실현을 위한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분야.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참정권(공무담임권)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Ⅳ. 1.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2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국방부	정상추진
3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	정상추진
Ⅳ. 2. 참정권			
4	직무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5	공직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체계적 보장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6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7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8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종합	정상추진 8개		

○ **(이행상황 요약)** 8개 과제 전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주요 이행 실적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관련

【국방부】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 군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한 인권침해 신고·상담 처리,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및 각종 인권자문제도 운영으로 군내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군인권 자문변호사제도(105개 부대 대상) 전면 시행

* 2020년 군인권 실태조사(국방부·KIDA공동조사, 8.27.~9.25.) 결과, 병사(4,371명)의 경우 "군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8.1%('19년 86.2%)로 증가, "인권침해 경험 있다"는 4.9%('19년 6.0%)로 감소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 여러기관이 연관되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적극 조정, 해결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소*하였고,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민원처리 마인드 제고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 (사례) 70년 묵은 민통선 내 무주토지 집단민원에 대해 범정부 TF 구성으로 국유화 및 주민 매각 조정으로 537명 주민 숙원 해결

**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 51.1점('18년) → 52.3('19년) → 55.4점('20년)

참정권 관련

【인사혁신처】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체계적 보장

○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의 지속적 추진, 여성관리자 대폭 확대 및 주요보직 임명 등을 통한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 고위공무원 8.5%, 본부과장급 22.8%로 각 목표(8.2%, 21.0%) 대비 103.7%, 108.6% 달성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관련

【국방부】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 군내 다각적인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실효적인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지속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

* 현재 군단급까지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사·여단급 이상 부대까지 확대 배치 필요

참정권 관련

【인사혁신처】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 중앙부처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은 달성(3.56%)했으나, 일부 기관은 적합직무 부족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적합직무 발굴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공직 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인식 개선 필요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분야. 노동권,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등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 1. 노동권			
1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2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3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과기정보통신부	정상추진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여성가족부 등	정상추진
6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7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8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9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0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1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2	신중년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정상추진
14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5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통로 확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6	임금체불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7	공정임금체계 확립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8	장시간 근로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9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20	공공부조 혁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1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2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23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고용노동부	과제완료('20)
24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환경부	정상추진
25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26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물관리일원화	환경부	정상추진
27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28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29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림부,해수부	정상추진
30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31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32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3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4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5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6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7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8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39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0	비급여 진료관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1	지역균형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복지부,해수부	정상추진
42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3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 · 보급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4	희귀 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45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국방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46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교육부	정상추진
47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 추진	교육부	정상추진
48	흡연 · 음주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49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50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환경부	정상추진
51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52	환경성 질환 예방 · 관리 개선	환경부	정상추진
53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54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55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정상추진
56	생활소음 대책 마련	환경부	정상추진
57	국토 및 환경보전계획의 지속가능 발전기반 확보	환경부	정상추진
58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보건복지부	과제완료('18)
59	필수 ·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60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질병관리청	정상추진
V. 4. 교육을 받을 권리			
61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교육부,복지부	정상추진
62	성취평가제 실현	교육부	정상추진
63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 지원	교육부	정상추진
64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정상추진
65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66	고교 교육제도 개선	교육부	정상추진
67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68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교육부	과제완료('20)
69	석 · 박사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70	출연연 석 · 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71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보장 강화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72	청년과학기술인의 발명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73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4	청소년 주도 문화활동 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75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6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보통신부	정상추진
78	지역문화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9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0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1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2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3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특허청	정상추진
84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5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86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87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기획재정부	정상추진
88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89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복지부,교육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9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9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9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93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법무부	과제완료('18)
종합	과제완료 8개, 정상추진 85개		

※ 과제완료 :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보장 강화, 청년 과학기술인의 발명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 **(이행상황 요약)** ① 93개 과제 중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등 8개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85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주요 이행 실적

노동권 관련

【고용노동부】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20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분석' 제출을 의무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표('20.9.)하였으며, 특히, AA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상승 추세

* 38.18%('18년) → 37.38%('19년) → 37.69%('20년)
** 20.56%('18년) → 19.76%('19년) → 20.92%('20년)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20.6.9. 개정, '20.12.10. 시행)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20.12.9. 개정, '21.7.1 시행)을 통해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수립·시행으로 마약류 감시 위반행위 적발률*을 제고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에 대한 적정 처방 유도로 처방량 감소**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17~19년) 평균 적발률 28.8% → ('20년) 45.2%
** 처방정보 분석자료를 수신한 의사들의 수신 전·후 3개월 기간 비교 결과,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약 8.3% 감소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교육부】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도우미 배치 확대 및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과밀학교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 등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 전국 6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616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인력 568명 지원

– 교육활동 지원사업 수혜 장애대학생 만족도조사 결과 87.9점 달성 *'20년 목표 87.1점

▲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사 정원('17년 대비 3,607명)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17년) 67.2% → ('18년) 71.9% → ('19년) 74.8% → ('20년) 79.3%

– 특수학교(급) 확충(4교 신설, 556학급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비율 감소

* 과밀 학급 0.4% 감소 : ('17년) 16% → ('18년) 14% → ('19년) 12.1% → ('20년) 11.7%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과학문화 바우처 지급, 우수과학도서 선정보급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이동형 무한상상실 확대 운영,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확대 운영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 지역학교, 소외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이용자 46,121명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과학문화 서비스 및 상품 발굴·확대 제공(91건→121건)

▲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 비수도권, 소외지역·계층, 장애우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프로그램 비율 확대 운영

연도	총 지원규모		소외계층 대상			
	과제수(A)	예산(B)	과제수(C)	비율(C/A)	예산(D)	비율(D/B)
2019년(a)	55	1,670	17	30.9%	638	38.2%
2020년(b)	43	1,274	22	51.2%	612	48.0%
변동(b–a)	△12	△396	5	20.3%	△26	9.8%

–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차상위계층, 도서벽지 등 다양한 유형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전년대비 113% 증) 운영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노동권 관련

【고용노동부】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 소위 '채용절차법' 위반 및 청년 구직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과 병행될 필요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개선 모색 필요, 또한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상향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점수 개선 모색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 코로나 19에 따른 돌봄 문제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여성과학기술인 특성상 경력단절 위기 및 장기적 경력 지속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경력복귀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을 확대 추진할 필요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력사업을 통해 인권 개선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 다수 업종별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및 동일 사업장 적용사항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 과제 모색 필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

○ 장애인 노동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도 홍보 수준 이상의 강화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을 센터/알리미 등 만이 아니라, 17개 교육청,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대다수 조례 등 설치 운영, 담당부서 존재) 함께 모색 필요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 개선

○ ‘일자리 함께 하기’, ‘근로시간 청구권’ 사업 지원 홍보 방안 관련, 대상/사업장 수, 장시간/교대제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 로드맵 필요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판정위원회 운영개선, 재해조사 효율화 등 다각적 노력으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여전히 산재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

* 166.8일('18년) → 186.0일('19년) → 172.4일('20년)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관련

【환경부】 생활소음 관리대책 마련

○ 특정공사 사전신고, 생활소음 및 도로 등 교통소음 관리,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소음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소음 발생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IoT 기반 실시간 소음·진동 측정기반 마련, 층간소음 전문 인력 확충 및 예방교육 확대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생활소음 대책 마련 필요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교육부】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진로교육법」 제4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양성평등 가치 등을 추가하는 동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재추진(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11.30.) 되고 있으므로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 필요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타문화 수용도는 아직 저조한 편*으로 더 많은 접점에서 문화 간 이해도 및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필요

* 출신 지역(2.79점), 성별(2.68점)에 대한 포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사회적 신분(2.33점), 성적 지향(1.96점)에 대한 포용성이 낮은 편('20.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보장하고자 하는 분야.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따라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Ⅵ. 1. 여성 분야			
1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경찰청	정상추진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	학교 내 여성 폭력 방지	교육부	정상추진
4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	여성건강 증진 강화	질병관리청	정상추진
6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상추진
7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	모·부성권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Ⅵ. 2. 아동•청소년 분야			
9	학교 체벌의 금지	교육부	정상추진
10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11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과제완료('20)
1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13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부	정상추진
14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15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교육부	정상추진
16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17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18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19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20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21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22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23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 · 재활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24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25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부	정상추진
26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통계청,법무부	정상추진
27	아동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Ⅵ. 3. 장애인 분야			
28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9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0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33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성 보장	보건복지부 법무부	정상추진
34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5	장애인 건강권 보장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6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7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추진
38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Ⅵ. 4. 노인 분야			
3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0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 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1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2	노인 건강권 보장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3	단체 · 문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4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5	농지연금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Ⅵ.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46	방문취업 동포 지원 · 관리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7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	법무부	정상추진
48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법무부	정상추진
49	재외동포 인권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50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51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5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평가	법무부	정상추진
53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반영	법무부	정상추진
54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법무부	정상추진
55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56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추진
58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9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60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61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62	외국인 입국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법무부	정상추진
63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64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개선	통일부	정상추진
66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통일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6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통일부	정상추진
68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국가정보원	정상추진
69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통일부,교육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1개, 정상추진 68개		

※ 과제완료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이행상황 요약)** ① 69개 과제 중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등 68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주요 이행 실적

여성 분야 관련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력 확충*, 관련 예산 증액 편성** 등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여성·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보수 : ('18년) 31개 → ('19년) 32개 → ('20년) 34개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 ('18년) 27,018백만원 → ('19년) 31,345백만 → ('20년) 31,382백만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지속적 상승

–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만족도 : ('18년) 90.1점 → ('19년) 90.4점 → ('20년) 91점

아동·청소년 분야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활성화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돌봄 취약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돌봄) 참여 불균형 해소

– 운영기관 및 청소년 참여 확대 : ('18년) 260개소, 10,742명 → ('19년) 280개소, 11,584명 → ('20년) 304개소, 12,341명

▲ 참여 청소년 · 학부모 만족도 : 82.8점 (청소년 81.8점, 학부모 83.8점)

– 참여 청소년의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85.2점, 자녀의 방과 후 생활에 안심(86.8점), 일 · 가정 양립에 도움(83.0점)

장애인 분야 관련

【보건복지부】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장애인 복지법 개정('20.12.29.공포)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 피해장애인 변호사 선임 특례, 학대범죄자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피해장애인 보호 강화

▲ 학대사례 발생 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통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

▲ 장애인 학대 예방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개발 및 배포를 통한 대국민 홍보

노인 분야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인 소득 보장

▲ 수급기준 완화 및 사각지대 발굴 노력 등으로 수급자 수 증가

– '20. 12월 562.6만명의 어르신이 매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 (기초연금 수급자 수) 534.6만명('19.12.) → 562.6만명('20.12., 5.2% 증)

▲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후생활의 안정 및 변화 등에 기여

– (생활 안정) 설문 참여자의 91%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 답변

– (생활 변화) "병원가는 부담 감소"(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51.3%) 등 대체로 긍정 답변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20.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및 지원 기간 연장('19년 → '24년까지)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관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개선

○ 10년 이상 해외거주 탈북민을 비보호 할 수 있는 법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탈북민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등 5건의 법률 개정**, 1건의 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탈북민이 10년 이상 체류국에 생활근거지를 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

**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 탈북민의 기본교육 과정 법률로 상향, 신변보호를 위한 주거지원, 탈북민 창업 지원 지원근거 법률에 규정

***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개선(통일부 지침 개정)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여성분야 관련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권익 향상

○ 여성어업인이 남성어업인보다 유병률이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여성어업인의 건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항목, 검진 기관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아동·청소년 분야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 '18년 이후 청소년 1인당 연간 프로그램 예산(843천원)이 증액되지 않아 청소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고 성장기 청소년 수준에 맞는 식단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협의를 통한 예산 반영 필요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단가 ('19년) 4천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단가 ('16년) 6천원

【법무부】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입법화 관련하여 법안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

【교육부】 학교 체벌의 금지

○ 이행실적 란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진성과 란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하거나 각 교육청의 활동을 독려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나 평가가 수록되도록 할 필요

장애인 분야 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과제목표는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출산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과제 주요 내용은 모성권과 건강권 보호로 축소되어 있어 과제의 방향성과 내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 인상이 필요하나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장애계 및 전문가, 재정당국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노인 분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활성화

○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 보장성 강화를 위한 농지연금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존 지급방식 개선 및 우대형 상품 개발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운영절차 마련 등 가입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

* 가입률 : ('18년) 2.35% → ('19년) 3.03% → ('20년) 3.58%

**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고령농업인과 자녀대상의 타깃홍보 등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관련

【고용노동부】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고용에 관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언어 및 상담 지원이 다른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생활 전반에 걸쳐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추진계획을 상담원 처우개선이나 상담매뉴얼의 정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및 상담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역적·언어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모색으로 수립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및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이 상승하는 등 지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전국 26개 내외 지역에서만 사업 추진 중으로 전국적 확대를 통해 사회 저변에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도모할 필요

▲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 전국 26개 기관 참여, 231개 프로그램 운영, 83,324명 참여
– 참여자 만족도 82.4점,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13.1% 상승(참여 전 67.4점 → 참여 후 76.2점)

【법무부】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정책 설정을 위한 연구 수행한 사실만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구 수행 결과 및 적극적인 정책을 향후 추진계획에 제시할 필요

▲ 과제목표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설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계획은 오히려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강화'로 축소됨. 난민지원 체계 구축은 난민인정자는 물론이고 난민 신청단계부터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반영 필요하고, 이행실적으로 제도 연구 실시만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정책방향이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될 필요

▲ 대국민 인식개선의 경우, 특정 지역 공무원 대상 '난민정책 설명회' 실시만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될 필요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인권 보호와 증진의 저변 확장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과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Ⅶ.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1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법무부	정상추진
2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3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4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외교부,여가부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5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부	기 타
6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법무부	정상추진
7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외교부	정상추진
8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외교부	정상추진
9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외교부	정상추진
10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11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12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통일부,외교부	정상추진
13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통일부,외교부 복지부(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추진
14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통일부	정상추진
Ⅶ.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15	인권교육 진흥 추진	법무부	정상추진
16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법무부,통일부	정상추진
17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교육부	정상추진
18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교육부,여가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19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20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교육부	과제완료('20)
2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교육부	정상추진
22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경찰청	정상추진
23	국가 · 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24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법무부,경찰청 통일부	정상추진
25	군 장병 인권교육	국방부	정상추진
26	변호사 인권교육	법무부	정상추진
27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8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9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여가부,통일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30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1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여가부,문체부	정상추진
32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1개, 정상추진 30개, 기타 1개		

※ 과제완료 :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기타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이행상황 요약)** ① 32개 과제 중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등 30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③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과제는 사정변경 등으로 과제추진 곤란(기타로 분류)

주요 이행 실적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관련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3법 개정 완료('20.12.9. 개정, '21.7.6. 시행), ILO 핵심협약 비준의 가장 큰 숙제였던 노동3법을 개정하여 핵심협약 비준의 토대 마련,

19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30년간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완료('21.4.20.)하고, 韓-EU FTA 분쟁해결 절차에서 제기되어온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해소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관련

【교육부】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장애이해(인권)교육 추진 강화를 통한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이행률 증가
· ('19년) 90.4% → ('20년) 91.7%

▲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18년) 초등학교 → ('19년) 중학교 → ('20년) 고등학교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관련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 구축 등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실 등 對(대) 국회 설명 등 적극적인 추진 필요

【통일부】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남북 간 인도협력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측의 호응 여부에 따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인도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한 이산가족 비대면 교류방식 등 발굴할 필요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아동, 양육자(부모 등)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양적, 질적 확대 및 개선 필요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Ⅷ. 기업과 인권			
1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외교부,노동부	정상추진
2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추진
3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조달청	정상추진
4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추진
5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 타
6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외교부,노동부 법무부,여가부	정상추진
7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8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환경부	정상추진
9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산자부,환경부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10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추진
종합	**정상추진 9개, 기타 1개**		

※ 기 타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이행상황 요약)** ① 10개 과제 중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등 9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② 다만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과제는 사정변경 등으로 과제추진 곤란(기타로 분류)

주요 이행 실적

기업과 인권 관련

【조달청】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공공조달 부분의 인권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 부여

▲ 기술용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 부여('20.10.시행)

【고용노동부】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및 예방 노력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변화 노력으로 해외 진출 중소 영세기업들의 인권 경영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고, 현지 노동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지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국가별 자료발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지원

▲ (현지 노무관리 지원) 인도네시아 현장지원반 출장(1회) 및 현지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개최(4회), 애로사항 해소 간담회(5회)

국가명	일시	참가자수(명)	만족도(5점)	협력기관
하노이	'20.08.21	135	4.4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베트남한국대사관
캄보디아	'20.09.03	40	4.1	산업안전보건공단 프놈펜무역관
호치민	'20.09.11	157	4.3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베트남한국대사관
미얀마	'20.11.17	138	4.6	양곤무역관 DIAC

–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현장지원반(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파견('20.1.)

– 베트남 고용노동관을 통해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간담회' 개최('20.8.~9., 5회)

▲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 현지 노동법령, 노무관리 주요 이슈 및 사례 등 지원자료 개정 및 배포

발간명	발행 시기	발행 부수(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20.08	500
베트남 개정 노동법	'20.05	1,320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	'20.08	350
중국 코로나19 관련 인사노무관리 Q&A Ⅰ, Ⅱ	'20.2, '20.9	온라인 발송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점검평가 위주)

기업과 인권 관련

【외교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 KOICA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사업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KOICA 수준의 인권경영 이행계획이 외교부를 포함한 타 정부부처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이 필요

▲ 특정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통틀어 이행 추진할 과제이고 적어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외교부에서 성과로 KOICA 사례만을 제시한 것은 불충분하고, 각 공관에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 K-ESG 평가지표에 산업계의 의견만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필요

▲ 정부에서 기업이 어떻게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명확히 하여 제4차 NAP에서 정리해야 함. K-ESG 평가기준의 수립과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여야 함

【조달청】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제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을 배제하거나 감점을 매기는 방식을 고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마련 필요

【외교부·고용노동부·법무부·여성가족부】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 외교부, 법무부 등이 소관부처인데, UN에서 기업과 인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기업과 인권' 관련 이슈는 국제적 차원에선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선 후발 주자에 해당함.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기업과 인권 의제를 선도하려는 적극적·자발적 자세가 불충분함. EU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실사 의무화법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여 제도화하려는 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의 ILO 다국적기업 삼자선언 이행을 위한 NFP(National Focal Point) 설립 구상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상황 제출 필요

【고용노동부】 해외진출 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 현지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구제하도록 정부측의 노력이 필요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문제를 주시하는 국내 NGO와 소통하는 방안 필요

▲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주된 내용이어야 하고, 2019. 12. 신남방특위를 통해 발표한 해외진출 기업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한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보완 필요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3.)으로 건강피해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 불인정자 및 미판정자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 법률상담 지원,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해기업 대상 소송을 적극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한국 NCP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내용 포함 및 이에 대한 공개 평가를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할 필요

▲ 한국 NCP에서 실제 진정된 사안의 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므로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19년 12월 발표된 "유관기관 대책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이 달성될 수 있음

2020년도 이행상황

Ⅰ.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Ⅲ.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Ⅳ.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Ⅵ.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Ⅶ.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Ⅷ.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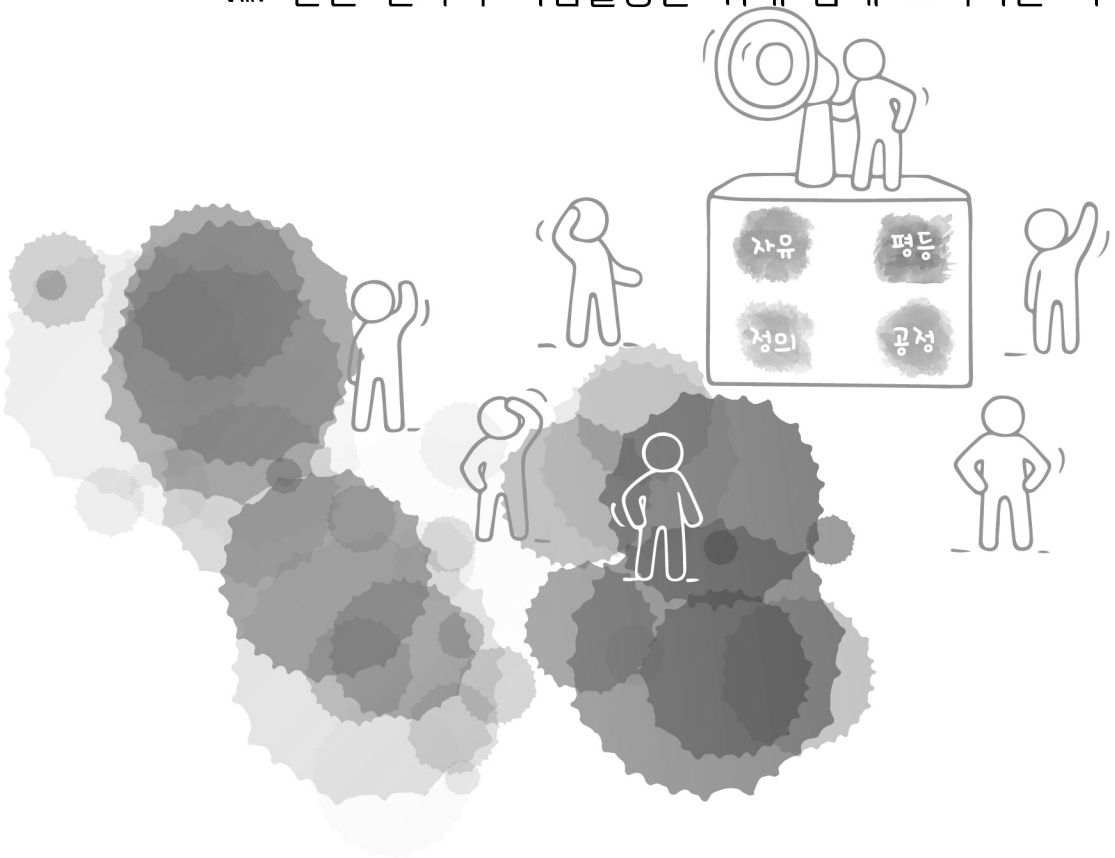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0년도 이행상황

Ⅰ.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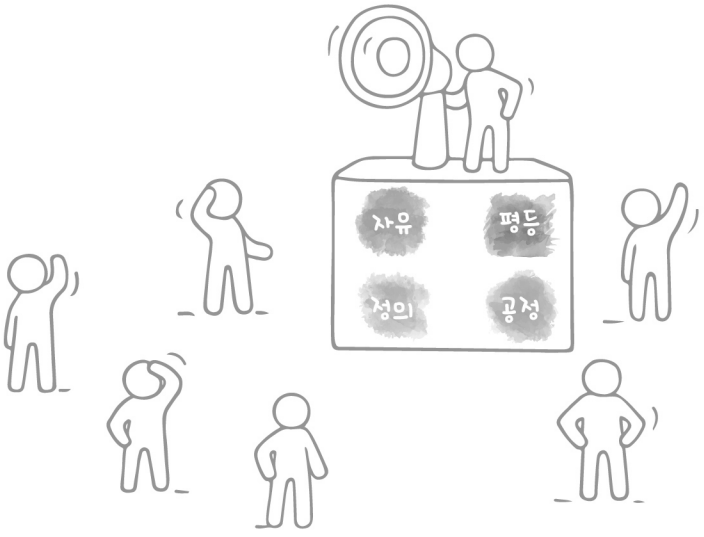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25	2	21	2	-
1. 생명권	3	-	3	-	-
2. 신체의 자유	11	1	8	2	-
3. 안전권	11	1	10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생명권】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정상추진
2	Ⅰ-1-②	자살예방 체계 강화	정상추진
3	Ⅰ-1-③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상추진
【신체의 자유】			
4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정상추진
5	Ⅰ-2-②	피고인·피의자 권리 보호증진	**추진지연**
6	Ⅰ-2-③	대용감방 시설개선	정상추진
7	Ⅰ-2-④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정상추진
8	Ⅰ-2-⑤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정상추진
9	Ⅰ-2-⑥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과제완료('19)**
10	Ⅰ-2-⑦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정상추진
11	Ⅰ-2-⑧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정상추진
12	Ⅰ-2-⑨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	정상추진
13	Ⅰ-2-⑩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정상추진
14	Ⅰ-2-⑪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추진지연**
【안전권】			
15	Ⅰ-3-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정상추진
16	Ⅰ-3-②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정상추진
17	Ⅰ-3-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정상추진
18	Ⅰ-3-④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안전 강화	정상추진
19	Ⅰ-3-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정상추진
20	Ⅰ-3-⑥	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정상추진
21	Ⅰ-3-⑦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정상추진
22	Ⅰ-3-⑧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과제완료('18)**
23	Ⅰ-3-⑨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추진	정상추진
24	Ⅰ-3-⑩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정상추진
25	Ⅰ-3-⑪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정상추진

과제별 이행상황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국내외적 요구와 추세를 고려하여 사형제도 개폐 검토			
	주요내용	○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사형제도 존폐 관련 여론 추이 확인
- 사형제도 존치 관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 사형제 유지(69%), 폐지(22%), 모름/응답거절(9%)

* 의뢰처 : 한국갤럽 자체조사, 기간 : '18. 8. 21.~23.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여 1,001명
(출처 : '18. 8. 24. 국민일보)

○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법령 분석
- '18. 12. 기준 총 24개 법률의 102개 조문
- 형법 : 17개, 군형법 : 44개, 특별법 : 41개 각 조문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결과 검토

* '18. 12.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결과 발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사형 폐지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19. 10. 이상민 의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20. 11.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찬성 표결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여론과 법감정 지속적 확인 ○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인 검토 지속 예정

2-1 Ⅰ-1-② 자살예방 체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자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자살 예방 체계 구축 및 강화			
주요내용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 위험 제거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소 계	18,248	21979		
(심리부검체계구축)	3,982	3,982	-	
(자살예방교육 및 인력양성)	2,093	2,093	-	
(자살 유족 지원사업)	1,355	1,355	-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1,337	1,913	△	43.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9481	12,636	△	3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 (통계확보)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19.12월, 통계청), 자살 변사자료 및 학생자살 통계 주기 단축(年1회→月1회, 경찰청 · 교육부)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우울증 국가검진) 기존 40세 이후 10년 주기 우울증 국가검진을 20,30세로 확대('19.1월)
  * '19년 수검자 208만명 중 20 · 30세 36만명('19.12월 청구 기준)
- (생명지킴이 양성) 이통장 등 지역풀뿌리 조직과 위험군과 접점에 있는 직업군*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2018년~2019년 총 231만 명 양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개통('18.12월)
- (기반 확충)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고도화('19.6월) 및 전국 확대
- (상담 전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 인지도 제고 및 운영의 안정화
  * 자살 고위험시기(3~5월) 자살 위험 지역 등에 자살예방 현수막 통한 1393 집중 홍보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고위험군 사후관리) 자살시도자 다빈도 방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개소→63개소) 및 치료비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 치료비 지원금액 총 303백만원
- (유족 관리) 자살 유족 상담, 홈페이지 개설('18.9월), 자조 모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체계 마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모형개발 연구 및 매뉴얼 개발, 시범사업추진(3개 광역 · 권역 및 13개 기초, '19.9.16~)
  * '19년 자살 유족 526명에게 327백만원 지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운영지원) 지자체 담당공무원 변동 시 이용자 재등록 및 사용법 안내, 통계 오류 발견 및 검수 요청
- 매월 20일 최근 자살사망자 동향 자료 업데이트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자료 제공(매월)
- 17개 시·도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 대상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이용자 대상 활용 교육('20.7.31.)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생명지킴이 양성) 이통장 등 지역풀뿌리 조직과 위험군과 접점에 있는 직업군 등 전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양성(100만명)

○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 (기반 확충)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고도화('19.6월) 및 전국 확대
- (상담 전화) 코로나19 등으로 상담전화가 급증에 대응하여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투입*(9.25.)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자살상담 경험 인력 등을 자원봉사자로 투입('20.11월~)***
  * 1393 대기 1분 경과 시 1577-0199로 전환, 약 500명을 비대면 상담(1577-0199)에 상담인력 배치: 광역 2명, 기초 1명 → 광역 3명, 기초 3명
  ** 1~8월 평균 36.6% → 10월 평균 55.4% → 12월 평균 79.5%(약 2.2배↑)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고위험군 사후관리) 자살시도자 다빈도 방문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63개소→69개소), 치료비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연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20년 813명)
- (자살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시범운영(광역·권역3, 기초13, 9.16~),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548명), 홈페이지 운영 및 자살유족의 날 행사(11.20. 공모전 시상, 얘기함 브랜드 런칭, 지자체 기관 현판식) 등 자살유족 관리·지원 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지역사회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신속한 자살 사망자(잠정) 집계를 위한 국가 자살동향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정책의 효과성 및 시의성 확보 ○ **지역사회 고위험군 발굴·연계 체계 강화**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평가(6월)하여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현장방문 컨설팅을 수행(강원 등 3개 지역)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 기획·발굴 및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사업 예산 및 컨설팅 제공(공모 선정-충북 옥천군 등 5개 지역) ○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시범운영(광역·권역3, 기초13, 9.16~),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548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월 단위로 제공되는 시의성 높은 정확한 자살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운영으로 관련 정책 효과성 제고

○ 자살고위험군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확대('20년 69개소→'21년 88개소)

○ 지역별 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단위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일반 국민의 자살예방사업 접근성 및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 강화

2-2	Ⅰ-1-②	자살예방 체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강화로 청소년 자살 예방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예방프로그램 운영, 진단 및 치료 등을 통합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로 자살 예방 효과 증대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상담채널 등을 통해 자살·자해시도 청소년에게 상담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 실시 – 지도자 양성교육으로 양성된 지역 내 자살예방 전문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 실시			
	관련예산	※ 청소년자살예방사업은 타 사업(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과 병행 추진. 별도예산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청소년 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연중, 지도자 1,594명, 이러닝 3,964명) ○ 청소년상담채널1388 청소년 자살 고민, 정신건강관련 상담(연중, 313,215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청소년 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연중, 지도자 854명, 이러닝 3,486명) ○ 청소년상담채널1388 청소년 자살 고민, 정신건강관련 상담(연중, 190,330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예방프로그램, 진단, 치료 등을 통합 수행하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지도자 양성(854명), 이러닝 연수(3,486명) ○ 청소년상담채널1388(전화, 문자, 온라인) 및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자살 관련 상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 – 청소년상담채널 정신건강 상담 190,330건, 청소년 안전망 자살관련 지원 87,458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 청소년 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대상 교육(이러닝, 집합연수)을 통해 양성된 지역 내 자살예방 전문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에서 예방교육 활동 ○ 청소년 문제 전문 사례관리자의 자살관련 전문성 제고 – 자살 위기 등 고위험군 개입을 위한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배치 확대 및 자살 사안 발생 시 지역사회 긴급지원팀 구성 및 연계 강화 ○ 24시간 청소년상담채널(1388전화, 문자, 온라인)으로 청소년 자살·자해 고민, 정신건강 상담 실시 – 청소년 안전망을 활용하여 자살 시도 등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보호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센터 및 자살예방 전문 클리닉 운영 센터 확대

3	Ⅰ-1-③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자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주요내용	○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구성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3,037	3,037	0	-
(생명존중문화조성)	2,837	2,837	0	-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200	200	0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구성**
-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필요하여 민관협의회 구성 · 운영('18.5월 발족식)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 대국민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공익광고, 정책 홍보 등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운영**
-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 운영
  * 정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3개 기관 참여
  ** 부문별 실무협의회 6건, 부문별 대표회의 1건 개최
- 민관협의회 공동 자살예방 사업 추진
  * 종교인 자살예방교육 영상 제작, 직장인 자살예방 토크콘서트 영상 등 제작, 언론계 자살예방세미나 개최 등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2020 생명존중 실천 슬로건 공모전 및 마스크 인증 캠페인,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온라인 생중계 연주회 개최 등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 (괜찮니 캠페인)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확대 추진(연중)
  * 우체통 캠페인 운영(47개 기관), 괜찮니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20만명) 등
- (공익광고)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20.9월~)
  * TV, 라디오, 온라인 채널(네이버, 유튜브 등), 옥외전광판 등 송출
- (온라인 홍보) 자살예방 관련 카드뉴스(주 1회), 홍보영상(월 1~2회), 전문가기고문(월 1회) 등 제작 및 게시
  * 유튜브, 네이버포스트, 카카오톡 플러스 등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7개 SNS 채널에 게시
  ** 우울증 인식 개선 영상 '같이 갈래?', 주변인에 도움주기 영상 '먼저 전화해' 유투브 광고 송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공동 자살예방사업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6종) 교육용영상 제작, 근로자 대상 자살예방 가이드북 등 홍보 콘텐츠 배포 등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자살 고위험시기, 자살예방주간 집중 홍보를 통한 대국민 자살예방 인식 개선** –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 협업을 통한 범국가적 자살예방홍보 추진으로 자살예방인식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전 분야의 협력 강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4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정책기획과, 형사1과, 형사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
- 피의자 기소 및 구속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검찰권 행사의 견제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위법·부당한 인신구속방지

○ 부당한 인신구속 사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주요내용

○ 부당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

○ 전국 고·지검(지청포함)에 검찰시민위원회 각각 설치·운영(2021. 2. 기준 총 65개)
- 심의대상에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추가 [지검(2014. 9.), 고검 (2015. 6.)]
- 2018. 9. 지검 시민위 정례화(매월 1회 이상), 연 1회 우수 시민위원 포상 등 활성화

○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인권침해 방지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가혹 행위를 엄단하여 인권침해 방지

○ '수사지휘 전담검사제'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운영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사법통제의 적정성 제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9년 총 2,324건 심의,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안건은 합계 194건(약 8.4%) 심의

개최 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구속 취소	영장 청구	재청구	항고
1,085	2,324	587	1,341	1	167	26	109

○ 체포·구속장소 감찰 실시
- 구속기간 경과 여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등의 감찰사항 확인
- 범죄사건부, 긴급체포원부 등 신병 관련 장부의 작성 관리상태 확인
-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직접 점검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상대로 면담 실시
- 체포·구속 장소 감찰시 불법 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2019년 체포·구속 장소 감찰 3,484회 실시,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

○ 사경신청 체포·구속영장 엄격 심사
- 체포영장 기각 5,583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13.6%
- 구속영장 기각 5,688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17.7%

○ 수사기관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 1건 기소

○ 일선청 자체 제도개선안 다수 마련·시행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실질화
- 사법통제 우수사례 취합·관리·전파를 통해 인권보장 실질화를 위한 업무 여건 조성 독려
- 일선청에서 「'영장업무 개선위원회' 신설」, 「유효기간 경과된 체포영장 영장 재청구 업무개선 방안」 등 다수의 자체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

* 사법통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청 등 12개청('18년 및 '19년 각 6개청) 및 사경의 무분별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법통제 실질화한 우수검사 19명('18년 8명, '19년 11명) 선정·포상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20년 총 701건 심의,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안건은 합계 39건(약 5.6%) 심의

개최 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구속 취소	영장 청구	재청구	항고
375	701	187	419	0	33	6	26

○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실시
- 구속기간 경과 여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등의 감찰사항 확인
- 범죄사건부, 긴급체포원부 등 신병 관련 장부의 작성 관리상태 확인
-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직접 점검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상대로 면담 실시
- 체포·구속 장소 감찰시 불법 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2020년 체포·구속 장소 감찰 2,354회 실시(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 대비 32.4% 감축 시행),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

○ 사경신청 체포 · 구속영장 엄격 심사
- 체포영장 기각 5,277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14.3%
- 구속영장 기각 5,260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18.0%

○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 가혹행위 엄벌
- 4건 기소

○ 일선청 사법통제 업무 지원
- 수사지휘 전담검사들 상대로 실무 관련 자료 제공하고 제도개선 건의 ·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일선청 사법통제 업무 지원

○ 사법통제 우수사례 체계적 수집
- 분기별로 수사지휘 전담검사로부터, 반기별로 각 청으로부터 구속장소 감찰 우수사례 등 사법통제 우수사례 취합 · 관리[사법통제 우수사례 정보보고 등 관련 정보보고 184건 접수 · 검토]

○ 사법통제 우수청·우수검사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 구속장소 감찰 우수사례, 사법경찰관 교양 우수사례, 부당한 인신구속 방지 사례 등 적극 선정
- 이프로스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우수사례 전파

* 반기별 사법통제 우수청[사법통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청 등 6개청], 분기별 우수검사[사경의 무분별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법통제 실질화한 우수검사 8명] 선정 및 포상

○ 개정 형사법 시행에 따른 인신구속 관련 인권감독 강화 방안 마련
- 개정 형사법 시행으로 경찰의 권한 및 책임 확대에 따른 강제수사의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권보호·적법절차 준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준비
- 영장전담검사 제도 시행,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면담 활성화를 위해 통계분석 및 일선청 의견조회 등 업무 진단 실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침 제정안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구속영장 청구 등 **인신구속 관련 형사 절차**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 검찰 수사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사경의 체포 · 구속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 통제를 통해 위법 · 부당한 구속을 방지

○ 사법통제 우수사례의 체계적 수집 · 선정 · 전파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착안사항을 제시하여 부당한 인신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사법통제의 적정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019년 대비 2020년 '인신구속' 관련 심의 건수 및 비율 감소 – 형사 사건에서 구속사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코로나19로 인하여 총 심의건수 대폭 감소

2019년		⇨	2020년	
총 심의건수	인신구속 관련(%)		총 심의건수	인신구속 관련(%)
2,324	194(8.4%)		701	39(5.6%)

향후추진계획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지속 점검 및 개선방향 연구
○ 체포·구속 장소 감찰과 엄격한 영장심사를 통해 부당한 인신구속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개정 형사법령 체계를 반영한 사법통제 업무 수행 기준 재정립 및 시행
– 「영장전담 검사 제도」 운용을 통해 수사경험·역량이 탁월한 검사가 사경 신청 영장 및 허가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수사의 적법·적정성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는 사법통제 실현
–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면담 활성화」를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피의자 면담을 실질화하여 검찰수사 단계부터 불구속수사 원칙 관철
○ 개정 형사법령 관련 일선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일선과의 소통 강화

5	Ⅰ-2-②	피고인 · 피의자의 권리 보호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를 위해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주요내용	○ **(대상범위)** 체포된 ①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② 사형 · 무기 · 단기 3년 이상 중죄 피의자 ○ **(운영방식)** ① 공단에 국선변호인 명부작성 및 평가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② 위원은 법원 · 법무부 · 변협이 각 3인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 임명 ○ **(선정절차)** 수사기관은 대상자 체포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 공단이 국선변호인 선정 ○ **(독립성 · 중립성 보장)** 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② 위원의 직무상 독립, ③ 사무국 업무 담당자의 겸직금지 등 규정			
관련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법률구조제도 통합을 위한 사법지원 일원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추진지연			

'19년 주요 이행 실적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19. 5.)
  * 학계,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토론자로 참여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관련 심포지엄 참석('19. 6.)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 방식 등을 정한 「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19. 3.)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19. 4.)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범위, 선정절차 등을 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19. 6.)
○ '20년 정부 예산안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예산 반영('19. 7.)
  ※ 다만,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전액 삭감됨
○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중립성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구조법 개정안 재입법예고('19. 9.)
○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정부 입법절차 진행('19. 10.)
○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19. 11.)

'20년 이행 실적 (1.1.~12.31.)

○ '20. 3.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
  ※ 다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 폐기('20. 5.)
○ '20. 5.~6. 21대 국회 제출을 위해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 5.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포함하여 법률구조제도 통합을 위한 사법지원 일원화 추진 착수
○ '20. 9. 법무부 사법지원 일원화 TF* 구성
  * 법무부 유관부서 담당자 및 법원, 학계,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자로 구성
  ** ① 제도개선연구팀, ② 대외협력팀, ③ 전문가 자문팀으로 구성 및 운영
○ '20. 10. 사법지원 일원화 TF 1차 회의 개최
○ '20. 10.~11. 제도개선연구팀 1차 · 2차 회의 개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률구조제도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혔으나, 유관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설득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구조제도 통합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신속하게 사법지원 일원화 TF 구성 완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법률구조제도 통합을 위한 사법지원 일원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제도 도입 지연

향후추진계획	○ '21. 사법지원 일원화 논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수정 여부 검토하여 재추진

6 | Ⅰ-2-③ | 대용 감방 시설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복지과
과제목표	○ 노후화 되고 협소한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소지 우려에 따라 전국 20개소의 대용구치시설을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소(17개소 완료)			
주요내용	○ 교정시설을 단계적으로 신축하여 대용구치시설로 인한 논란 불식 – 공사 추진 중 (1개소) : 거창 – 사업 계획 수립(2개소) : 영동·남원 – 조치완료(17개소) : 천안·울산·평택·논산·여주·서산·총주·통영·밀양·영월·해남·정읍·상주·의성·영덕·제천·속초			

관련예산

(국유재산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8,000	20,595	12,595	157.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정상추진 중

'19년 주요 이행 실적

○ 강원북부(속초)교도소 신축 사업
– 19. 1. ~ 12. 신축공사 정상 추진 (12월말 공정율 : 89.5%, 마무리 공사 진행 중)

○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 19. 5. 16.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에서 "주민투표" 시행 합의
– 19. 10. 16. 주민투표 결과, 현위치 찬성(64.75%)로 결정
– 19. 10. 31. 공사 재착수

'20년 이행 실적 (1.1.~12.31.)

○ 강원북부(속초)교도소 신축 사업
– 강원북부(속초)교도소 신축사업 준공(2020.4.12.)

○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재착공(2019.10.31.) 이후 정상 추진 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강원북부(속초)교도소 신축 사업 – 강원북부(속초)교도소 신축사업 준공(2020.4.12.) ○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재착공(2019.10.31.) 이후 정상 추진 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남원교정시설 신축사업
– 사업부지 확정 및 사업예산반영

7	Ⅰ-2-④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교정기획과

과제목표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수용자 인권 보호

주요내용

○ 수용공간 확보 및 현대화
-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 등을 통한 수용능력 확충

관련예산

(일반회계·국유재산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86,971	60,402	26,569	△30.5
■ 강원북부교도소 신축	2,652	-	-	종료
■ 거창구치소 신축	8,000	20,595	12,595	157.4
■ 대구교도소 이전신축	51,521	-	-	종료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3,272	-	-	
■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655	5,667	5,012	765.2
■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2,249	5,292	3,043	135.3
■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300	1,146	846	282.0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1,254	1,191	△63	△5.0
■ 천안교도소 수용동 증축	237	5,081	4,844	2,043.9
■ 목포교도소 수용동 증축	201	4,274	4,073	2026.4
■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	263	263	순증
■ 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	-	263	263	순증
■ 수용동 리모델링	16,630	16,63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년 이행실적 (1.1.~12.31.)

○ 강원북부(교) 신축 완료, 거창·경기북부(구), 화성여자(교) 신축 및 전주·원주·창원(교) 이전신축 사업 추진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동 증축사업 완료 및 천안·목포·청주(교) 수용동 증축사업 시행
○ 법무부 과밀수용해소 T/F팀 운영
- 과밀해소 관련 수용거실 확충 예정기관 현정 점검 및 관련 법률 개정
- 도심 교정시설 이전 민원에 따른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 현대화 및 과밀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계획 수립
- 교정시설 현대화 및 과밀해소 등 개혁요소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20. 9. 25.)
- 과밀해소 관련 수용동 증축 예정기관 설계용역(10.6)
  · 대상기관 : 제주교도소
○ 후문정책(가석방)을 통한 과밀수용 완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강원북부(교) 신축, 대구(교) 이전신축 사업 및 경북북부제3(교) 수용동 증축, 군산교도소 리모델링 사업완료 1,038명 수용공간 확보 ○ '21년 수용동 리모델링 16,630백만원 및 울산(구)·제주(교) 수용동 증축 526백만원 신규사업 예산 확보 ○ 취업조건부 가석방 관련하여 34명 신청에 18명 허가 ○ 20년 가석방 누적 인원 : 7,911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일부 교정시설 민원발생 등으로 이전사업 추진 지연

향후추진계획

○ 교정시설 리모델링 · 증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수용공간 확충 및 교정시설 이전·신축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구분	'21년	'22년	'22년 이후
증·개축	청주교, 강릉교, 제주교, 천안교, 목포교, 울산구		
신설		거창구치소	화성여자교, 경기북부구 남원교, 태백교 등
이전	대구교도소		창원교, 대전교 등

○ '22년 수용동 리모델링 28,000백만원, 진주·군산(교) 수용동 증축 490백만원, 태백·남원(교) 신축 10억원 예산안 반영

○ 가칭 '교정시설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21년 상반기)

○ 인권 친화적인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추진

– 과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표준 설계 지침' 개발

○ 면역력 취약자 및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 지속 확대('21년 중)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증·개축사업 지속발굴

– 여자 수용자 과밀해소 완화를 위한 증·개축 사업 지속 발굴

– 전체 수용자 과밀해소 완화를 위한 신축, 증·개축 사업 지속 발굴

8	Ⅰ-2-⑤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사회복귀과

과제목표

○ 수용자 스스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 도입 및 다양한 문화·가족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

주요내용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수형자 내면의 근복적 변화를 위해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등 참여형 학습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집중인성교육 운영
- 귀휴,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사회적 처우프로그램과 가족접견, 가족사랑캠프 운영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형 접견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교정교화	7,072	9,775	2,703	138.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인성·감성교육 및 가족·대인관계 회복 등을 위한 집중인성교육 시행('18년 9,909명, '19년 11,566명 실시)

○ 가족의 해체를 막고 수용자의 원할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시행

세부사업		'18년 이행실적	'19년 이행실적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가족만남의 날	8,891	9,004
	가족만남의 집	1,913	1,908
	가족접견	4,144	4,295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형 접견을 위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19. 12. 기준 27개 기관 구축)

'20년 이행실적 (1.1.~12.31.)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 인성·감성교육 강화 및 가족·대인관계 회복 등을 통해 수형자 인성변화에 의한 범죄성 개선
- 형기 등을 고려하여 인문학·집단상담·직업훈련체험 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시행('20년 4,917명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및 확산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되던 집중인성교육 중단, '20년 9월 이후 비대면 영상강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교육 정상화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 수용생활에 따른 가족해체를 막고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세부사업		'20년 이행실적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가족만남의 날	59
	가족만남의 집	27
	가족접견	75

○ 미성년 자녀를 위한 배려형 접견을 위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20. 12.)

기관	설치완료	설치예정	미설치
53	44	4	5

○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교정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수용자 자녀(가족) 지원('20. 12.)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상담 · 멘토링	물품지원
20,015만원	27,151만원	477명	1,550만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집중인성교육의 비대면 영상 강의를 제작 · 배포를 통해 교육의 정상화 도모

– 집중인성교육 수료자의 재범개선도 평가 및 분석을 통한 효과적 프로그램 개선 추진

'20년 수료자	교육 전	교육 후	개선도
4,917	79.97	82.75	2.78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을 통해 배려형 접견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020년은 교정시설에 코로나 19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외부강사 위주였던 집중인성교육,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하던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등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여 이행실적이 좋지 않음

향후추진계획

○ 비대면 영상 강의 추가 제작 등을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성 향상 도모

○ 코로나19로 제한하거나 중단한 가족접견을 재개하기 위하여 '화상가족접견'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 2021년 12월까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3개기관 추가 구축 예정

○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을 위한 '수용자 자녀 지원팀' 운영

– 수용자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긴급지원 및 지자체 ·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 실시

– 2021년 하반기 서울지방교정청 시범운영, 2022년 중 4개 지방교정청 확대 실시 검토

10	Ⅰ-2-⑦	보호 · 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소년보호과·수용팀

과제목표

○ 소년보호시설의 과밀수용 해소 및 정신질환 학생의 의료처우 향상으로 실질적인 인권 및 처우 개선

주요내용

○ 안양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을 통한 개별처우 기반 강화
○ 수도권 위탁소년 수용과밀 해소를 위한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추진
○ 부산소년원 위탁생활관 개별실 확충 리모델링 추진
○ 의료재활소년원 개청을 통한 정신질환 보호소년 의료처우 강화
○ 소년원생 1일 급식비 인상
○ 인권친화적인 보호장비 제작 및 보급
○ 코로나19 대응 방역 철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의료재활소년원 리모델링	4,168	-	△4,168	△100
■ 안양소년원 소규모실 리모델링 공사	110	(자체예산)		
■ 부산소년원 리모델링	214	2,352	2378	923.2
■ 춘천소년원 재건축	1,003	982	△21	△2.1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설계비)		355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설계비)		1,417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설계비)		5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년 ~ '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8년 주요이행 실적

- 안양소년원 등 수도권 2개 기관에 4인실 2개, 2인실 6개, 1인실 2개 등 총 10개 소규모 생활실 증설
- 소년원학생 인권처우 환경 개선
  · 면회시간 기존 30분 → 40~50분으로 연장
  · 온수공급 기존 6개월 내외 → 연중으로 확대
  · 체육활동 주중 매일 1시간 및 토요일 운동(1~2시간) 실시
- 위탁소년 수용과밀 해소를 위한 경기소년분류심사원 및 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추진
- 의료재활소년원 신설 추진
- 소년원생 독도탐방, 가족캠프 등 다양한 개방처우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교육 확대 시행

○ 2019년 주요 이행실적

- 서울소년원 등 수도권 3개 기관 소규모 생활실 총 22개 생활실 증설
- '20년도 소년원생 1일 급식비 인상 추진(1일 5,409원 → 5,680원)
- 정신질환 소년원생 집중 치료 · 관리를 위한 의료재활소년원 공사 착공('19. 9.~)
- 친인권적 보호장비(벨트형 족승) 개발 추진
- 수도권 북부 지역 위탁소년 과밀해소를 위한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 검토
  · 부지 및 예산 검토, 국회법사위원 방문 등 수용정원 80명(남 60, 여20) 기관 신설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생활실의 소규모화 추진을 통한 개별처우 기반 강화 – 안양소년원 3인실 9개(화장실, 세면장 구비) 리모델링 완료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 설계비 확보(1,417백만원) ○ 소년원생 1일 급식비 인상(1일 5,409원 → 5,680원) ○ 의료재활소년원 공사 완료 – 4,168백만원 투입, 수용정원 50명→ 80명(남60, 여20) 확대 ○ 친인권적 보호장비(벨트형 족승) 개발 및 보급 ○ 소년보호시설내 코로나19 대응 방역 철저, 확진자(직원 및 수용소년) 발생인원 : 0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설계비 3.55억원 확보 ○ 부산소년원 '20년 설계비 2,14백만원 확보통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수용정원(80명→120명) 확대통한 수도권 수용과밀 해소 박차 ○ 의료재활소년원 신축 공사 완료, 수용정원 50명→ 80명(남60, 여20) ○ 소년원생 1일 급식비 인상 확정 및 지속 증액 추진 ('20. 1일 5,680원 → '21. 1일 6,242원) 추진 – 기재부·국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설득과 공감대 유도, '21년 9.9%인상 반영 ○ 친인권적 보호장비(벨트형 족승 100개) 제작 및 전국 기관 보급 ○ 위탁·보호소년 처우지침 제·개정을 통한 인권처우 향상 기반 마련 ○ 기관별 인권침해 근절 실태 점검을 통한 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 의식 전환 ○ 소년보호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역 철저, 직원 및 수용소년 확진자수 : 0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생활관 소규모화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정인 서울·부산소년원의 수용소년을 타 기관으로 분산하게 됨에 따른 다른 수용과밀 현상 초래 우려

향후추진계획	○ 서울소년원 지상 1~2층 생활관 리모델링 기본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23년 완공) ○ 부산소년원 지상 2~3층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22년 완공) ○ 안양소년원 3인실 이하 소규모 생활실 12개 추가 조성('21년 5개, '22년 7개) ○ 의료재활소년원 공사 완료에 따른 보호소년 입주('21년. 7월) ○ 춘천소년원 교육관 재건축 실시 설계 및 착공('23년 완공) ○ 신설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가칭) 기본 및 설계 추진(예산확보 1,417백만원) ○ 신설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가칭) 설계 및 착공('22년 완공) ○ 소년원 학생 1일 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21년 6,242원) – 성장기 청소년의 적정한 영양 제공을 위하여 6호 처분 시설 수준인 1일 7,688원으로 인상 지속 추진 ○ 개정 보호소년법 시행('21. 4.)에 따른 하위법령·지침 개정을 통한 보호소년등 인권처우 강화 ○ 전국 소년보호기관 수용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보호행정 구현 ○ 소속기관 코로나19 방역 및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 현장 방문 점검 등 감염병 차단 총력 ○ 소년원 학생 개방처우는 코로나19 종식 후 지역별·단계별로 실시

11	Ⅰ-2-⑧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치료처우과

과제목표

○ 불필요한 약물치료를 최소화하고, 약물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피치료자의 인권보호

주요내용

○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개선
-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상당하여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을 재심사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 집행면제 절차 마련('18년)

○ 약물치료 부작용 최소화
- 부작용 등 특이사항 수시 점검, 부작용 심각 시 약물투여 일시 중단

○ 치료명령 임시해제 적극 실시
- 약물치료 집행개시 6개월 후 이행상황 및 재범위험성을 검토하여 임시해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충동 약물치료	106	106	변동없음	변동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2018.1.1.시행) 완료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 사이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 법원은 집행면제 여부를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
- '18년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실적 : 1건(수원지법 안양지원, '18. 6. 기각결정)

○ 성충동 약물치료 부작용 검사
- '18년 : 집행인원 21명 대상 총 34회 실시, '19년 : 집행인원 39명 대상 총 72회 실시

○ '19년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치료 일시중단자 : 1명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임시해제 신청 등
- '18년, '19년 임시해제 신청 및 인용 실적 : 0건

○ 피치료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 과정 개설 및 실시
- '19. 3. 21. 법무연수원(성충동 약물치료 전담직원 30명 대상)

'20년 이행실적 (1.1.~12.31.)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면제
- '20년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실적 : 0건

○ 성충동 약물치료 부작용 검사 및 치료 일시중단
- '20년 부작용 검사 실적 : 집행인원 33명 대상 총 64회 실시
-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치료 일시중단자 : 1명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임시해제 신청 등
- '20년 임시해제 신청 및 인용 실적 : 0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불필요한 약물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면제 절차 마련 완료 ○ 투여약물로 인한 부작용 예방, 효과적 치료를 위한 정기적 부작용 검사 필수적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면제 및 임시해제 제도 홍보 강화

12	Ⅰ-2-⑨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인권 보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주요내용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철저 이행으로 단속 담당 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및 적극적인 자진출국 유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9년 주요 이행 실적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19.9.1.) –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사고예방 노력 추가 – 단속 공무원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 교육 실시, 신규 배치 시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이수 – 사전답사 결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단속계획 수립 ○「선순환, 불법체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으로 단속방식 개선 방안 시행('19.12.11.~'20.6.30.) – 자진출국 유도 기간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사전계도 실시(1 · 2차 계도 → 단속)

'20년 이행실적 (1.1.~12.31.)	
	○ 단속 시「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연중) – 사전답사 등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 수립, 단속 전 인권교육 실시 등 ○ 출입국사범 단속 시 영상촬영 등 채증활동 매뉴얼 마련('20.06.29.) –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 시 영상녹화 실시 및 영상 관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20.6.30까지) – 총 46,128명이 자진출국신고하여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재입국 기회 등 부여 대상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불법고용 범칙금 상향 및 불법고용 알선자 등 처벌 강화('20.09.25) –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양벌규정 대상에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한 사람 추가 ○ 코로나로 인한 단속활동 자제 및 방역 및 자진출국 유도 계도 활동 강화 –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이후 매뉴얼에 따라 대규모 단속활동 자제 및 특별방역활동기간 단속 유예 – 벌집촌 · 외국인 밀집지역 2,539개소 등 포함 6,631곳 방역 및 자진출국 유도 등 계도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유예 및 코로나 검진 독려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계도 활동 – 코로나 검진 시 단속 유예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면제 제도 등 20,647건 단속계도 활동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단속 전「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유예 및 자진출국 유도 강화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여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및 불법체류 급증세 감소 ('17년 20%, '18년 41%, '19년 10% , '20년은 0.5%)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필요 * 단속인원 1인당 약 1,298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담당

향후추진계획	
	○ 단속 전「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상시 교육 실시 ○ 악성 불법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 등에 따른 새로운 단속 방향 마련 – 사업장 단속 시 주변 사업장 및 숙소 등에 거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해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코로나 지역 감염 및 확산의 주요원인이 될 개연성이 높음

13	Ⅰ-2-⑩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 보호기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3개월 마다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신병치료, 체불임금,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망 및 치료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신속한 난민인정 심사절차 진행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기간 단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과제 중 '신속한 난민인정 심사절차 진행'은 이민조사과 과제에서 삭제 필요 – '20. 1월부로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의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거점기관 지정·운용(난민정책과) – 심사기관(보호소 → 청(사무소)), 심사방식(거점기관인 청(사무소) 담당자의 출장심사, 통역인 섭외 포함), 심사기간(보호 중인 난민신청자는 우선 심사대상)			

'18년 주요 이행 실적	○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18년 보호기간 연장 승인심사(총 275건, 1인당 평균 보호기간 10.1일)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18년 보호일시해제 허가 실적 : 108건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직권 보호일시해제 신설('18. 3. 20. 출입국관리법 제65조 개정)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2회 개최, 총 4명 보호일시해제
'19년 이행 실적 (1.1.~12.31.)	○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19년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실적 : 총 263건 – '19년 보호외국인 수(1인당 평균 보호기간) : 34,657명(9.6일)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방안」마련, 시행('19. 12. 16.) * 주요내용 : 보호기간 연장 단계별 승인절차 강화(보호외국인 직접면담 포함), 보호소장의 보호일시해제 관련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19년 보호일시해제 허가 실적 : 98건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법무부훈령) 개정작업 추진(부내심사 중)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에 추가 등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개최 : 2회(제4차, 제5차), 총 1명 보호일시해제

'20년 이행실적 (1.1.~12.31.)	○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20년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실적 : 총 707건 – '20년 보호외국인 수(1인당 평균 보호기간) : 22,812명(16.9일)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20년 보호일시해제 허가 실적 : 187건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법무부훈령) 개정('20.8.17.) * 건강상태, 아동 부양 여부, 송환 가능성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 보증금 양정 세부기준 마련 및 해제대상 형사처벌의 범위 세분화 등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 1회(제6차), 총 1명 보호일시해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호기간 연장 승인심사 강화 – 승인심사 강화로 신속한 퇴거집행 독려, 보호의 장기화 방지, 퇴거집행 실적 증가, 보호외국인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및 허가 건수 증가 – 인도적 사유 적극 검토 등으로 전년(98건) 대비 91% 증가(187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 사태로 '20. 6월부터 보호기간 연장 승인심사 폭증 ※ 전년(263건) 대비 269% (707건) 증가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국 항공편 축소 및 일부 대사관 비협조* 등으로 장기보호 외국인 증가 ※ 특히, 장기보호외국인의 35% 차지 베트남 등 ○ 코로나 사태로 인한 pcr 의무 검사 및 마스크 상시 착용에 대한 보호외국인들의 불만 등

향후추진계획	○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활용한 강제퇴거 (보호)외국인 감소 추진('20. 10. 20 공포, '21. 1. 21. 시행) –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출국명령 처분 * 출국기한 내 출국시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조건 위반 시 보증금 국고 귀속 ○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지시 등 ○ 보호기간 연장 사전승인 심사 강화 지속 추진 ○ 자국 대사관에 보호외국인 특별송환기 요청 지속 추진

14	Ⅰ-2-⑪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주요내용	○ '인신보호관'제도 도입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인신보호법」 개정 추진 – 법 개정후,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등을 지원하는 인신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관련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참석하여 법무부 입장 발표
– 2018. 6. 27. 국회의원회관, 박주민 국회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반대의견 표명으로 인신보호법 개정 추진 지연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용시설 현황, 인신보호청구 및 재판 현황 등 확인

○ 20대 국회 인신보호법 관련 의원입법안 주요 내용 검토

○ 현실적인 인신보호법 개정방향 재검토
– 고지의무 및 서류비치의무 등 부과, 구제청구 이후 임의 이송 또는 수용해제금지,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개정은 지속 추진
– 전국 수용시설의 개수와 수용인원,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인신보호관제도의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적인 대안(국선대리인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위법·부당한 수용을 사전점검·예방하고, 인신보호 청구재판을 조력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확인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존에 입법예고된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개정방향 모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의견 ○ 인신보호관 인력 대비 과다한 전국 수용시설 개수와 수용인원

향후추진계획

○ 인신보호법의 실효적인 개정을 위한 재검토
○ 법률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15	Ⅰ-3-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 상담 및 구조체계 확립 ○ 응급 위기지원 역량 강화 ○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 ○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및 피해가정 영·유아, 청소년 보육 지원 확대 ○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민인식 개선 지속 추진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3,376	18,013	△5,363	△2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및 스마일센터 확대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설치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 행정지원 허브 역할 수행('18.1.)
- 심리치료지원 전문성 강화 및 스마일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3회 전국스마일센터 세미나' 개최('18.11.)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청주·울산 지역에 신규 설치, 전국 13개 광역단위 심리지원 체계 확대('18.12.)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제5회 다링행사 개최('18.6.)
-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18.11.)
- 공익광고 '아름다운 동행' 제작 및 온라인 홍보('18.12.)
- 제6회 다링행사 개최('19.6.)
-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19.1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관련, 라디오 광고('19.6.~7.) 및 지하철 액자광고('19.10.~11.) 실시

○ 주거지원 확대('18.3.)
-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상해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보복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아동학대 피해,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실화 피해까지 확대
  * '18. 주거지원 실적은 55건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및 스마일센터 확대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창원 지역에 신규 설치, 전국 14개 광역단위 심리지원 체계 확대('19.12.)

'20년 이행실적 (1.1.~12.31.)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제7회 다링행사 온라인 개최('20. 6.)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20. 11.) –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20. 11.) – 수도권 3,4,5,7호선 지하철 액자광고 게시('20. 5.) –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포스터 및 슬로건 공모전('20. 7. ~8.) – 범죄피해 극복 희망수기 공모전 및 범죄피해자 작품 전시회 개최('20. 9.~1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브랜드 검색 광고('20. 10. ~ 12.) – 법무부 장관 육성녹음 및 CBS, TBS 라디오 광고('20. 12.) ○ 범죄피해 보호·지원 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발간('20. 11.)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구조금 업무편람' 발간 및 지침 개정('20. 11.) –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지침' 개정('20. 12.) –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20. 9.)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속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다링행사,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들께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및 스마일센터 확대 – 스마일센터는 '20년 범죄피해자에 대해 심리지원 55,659건, 사회지원 4,122건, 법률지원 4,992건, 임시주거 2,220건 등 총 66,993건의 강력범죄 트라우마 심리치유 활동을 전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대면상담 및 출장업무를 최소화하였으며, 전화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적극 노력

향후추진계획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매년, 다링행사 및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속 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관련, 다양한 홍보수단 개발 및 국민생활 밀착형 매체 홍보 지속 실시 ○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 '21년 목포지역에 '스마일센터' 신규 개소하여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확대 예정

16 | Ⅰ-3-② |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 대검찰청	과·팀명	인권구조과 · 형사4과
과제목표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 경제적 지원 제도 개선			
주요내용	○ 배상명령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 ○ 형사조정제도의 내실화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개선 실시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15,207	16,772	1,565	10.3
■ 범죄피해구조금	10,708	11,650	942	8.8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4,499	5,122	623	13.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배상명령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
-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안내 등 법률상담 3,243건 실시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대상사건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회복 사건 이외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건까지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 구조 강화

○ 형사조정제도 내실화
- '18. 11. 전국 5개 고검 권역별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교육이수자 총 543명)
- 형사조정 집행력 확보를 위한 공증 연계 및 공증 수수료 지원(총 633건)

〈 2018년 형사조정 처리실적 〉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117,014	99,176	57,061	57.5

○ 고검 권역별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확대 실시
- '19. 10.~12. 총 7회에 걸쳐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전문화 교육 실시(고검 권역별 방문, 교육이수자 총 642명)

○ 형사조정의 질적 성장 유도
- '19.하반기부터 최초로 조정의 난이도 등 고려하여 매 분기별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 '19. 11. 우수 청 선정기준을 정량평가에서 교육이수율, 우수사례, 민원사항 등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12개 우수청 선정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KICS 피해자지원시스템 상 형사조정 관련 정보 전산화
  * 조정위원 및 조정횟수 등 관련 자료 입력, 수당 자동계산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형사조정 실적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77,514	66,425	34,296	51.6

○ 형사조정위원 온라인 기초교육 실시('20. 11.~12.)
- 법무부 사이버교육센터에 형사조정위원 기초교육 강좌를 신설하고 형사조정위원 총 1,138명 대상 온라인 기초교육 실시

○ 조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20. 5.)

○ 형사조정 절차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 구현('20. 6.)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개선 추진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20. 11.)

* 결혼이민자 구조금 지급,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코로나19로 인해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강화 지속 ○ 일선에서 형사조정의뢰 회부시 형사조정 절차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형사조정 동의 여부 확인하도록 KICS 수사결정시스템 기능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후 국회 통과 필요 * 전문위원 설명, 간사실 협의 등 국회 논의 지원 예정

향후추진계획

○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온라인 교육 실시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17 | Ⅰ-3-③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장애인 등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상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전문가조력권의 확대 및 내실화 –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범위 및 양성 확대를 통해 진술조력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및 피해자 변호사의 권리확대 방안 검토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029	1,106	77	7.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474	6,869	395	6.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18. 2명 증원), 비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자격 부여('18. 13명, '19. 15명)
– '19년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 2,226건 (상근 1,396건 + 비상근 830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19. 4명 증원), 전국 권역별 전문화교육 실시(6회, 368명)
– '19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 25,487건 (전담 3,956건 + 비전담 21,531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20. 1명 증원), 비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자격 부여('20. 14명 양성)

* 진술조력인 제도

구 분	해 당 임 무	겸직 여부	인원(명) ('20.누계)
상 근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중개·보조	불가	14
비 상 근		가능	122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20.11., 2회)
– 진술조력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회의 실시(매월)
– '20년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 2,684건 (상근 1,326건 + 비상근 1,358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20. 2명 증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구 분	해 당 임 무	겸직 여부	인원(명) ('20.누계)
전 담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의 법률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 보호	불가	23
비 전 담		가능	598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노력
* 기존 형사절차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개명신청 · 주민등록변경신청 등 민사적 보호조치도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를 위한 권역별 심화 교육 실시('20.7.~12. 총 328명 교육)
– '20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 26,007건 (전담 4,240건 + 비전담 21,767건)

<table>
<tr><td rowspan="2">결 과 분 석</td><td>추진성과</td><td>○ 형사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강화
– (진술조력인)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상 모든 단계에 걸친 지원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진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으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신속하고 효율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배치 필요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20.12.)
<table>
<tr><th>계</th><th>서울</th><th>부산</th><th>대구</th><th>광주</th><th>대전</th><th>울산</th><th>경기</th><th>충남</th><th>전북</th><th>경남</th></tr>
<tr><td>14</td><td>2</td><td>2</td><td>1</td><td>1</td><td>–</td><td>1</td><td>5</td><td>–</td><td>1</td><td>1</td></tr>
</table>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현황('20.12.)
<table>
<tr><th>구 분</th><th>인원</th><th>배 치 지 역</th></tr>
<tr><td>법률구조공단</td><td>18</td><td>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의정부, 고양,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부산, 부산동부, 울산, 창원, 광주, 목포, 전주, 제주</td></tr>
<tr><td>해바라기센터</td><td>5</td><td>서울남부, 인천동부, 인천북부, 경기남부, 대구</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향후추진계획</td><td>○ 상근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른 유관기관 홍보 및 원활한 지원방안 모색
–「장애인복지법」 개정 · 시행으로 '21. 6. 30.부터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대상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시행으로 '21. 3.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정</td></tr>
</table>

18	Ⅰ-3-④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안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4과
	과제목표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주요내용	○ 형사절차상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차단, 피해자 증인신문 시 신문방식 및 내용의 제한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정보공개 금지 및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 매뉴얼 수립 ○ 피해자 심리안정 · 신체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하도록 임시숙소 안전성 확보 ○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 · 귀가 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관련예산	○ 해당사항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9년 이행실적 (1.1.~12.31.)	○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 피해자 조사 시 가명조서를 작성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최소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검찰에서 보유 중인 172대 구형 위치확인장치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 ○ 형사조정 시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전국 청 형사조정실에 CCTV 설치 실시 ○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관련하여 피해자 통지 및 피해자지원 안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5대 강력범죄 사건 기소 시 피해자 의사확인 및 피해자지원 안내 의무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의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 제도를 안내하는 문자 자동 발송' 등 KICS 기능 개선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검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범죄 2차 피해 방지 온라인 교육 실시** ○ '배상명령 대상 사건의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 제도를 안내하는 문자 자동 발송' 등 KICS 기능 개선 ○ 임시조치 효력 상실 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KICS상 통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추진(기능개선 의뢰 필) ○ 일선 청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치확인장치 신형 교체 및 형사조정실 CCTV 설치 등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KICS 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 ○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이전비 189건/ 189명/ 207,509천원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고지 및 통지가 신속하고 누락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KICS상 사건접수 및 조사단계에서 입력하는 피해자 인적사항(연락처 포함)에 대한 정보가 검찰 KICS와 공유되어야 하나, 경찰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음

향후추진계획	○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고지 및 통지가 신속하고 누락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경찰과 KICS피해자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현재 실무협의회에서 추진 중)

19	Ⅰ-3-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발과 추진 기반인 기금의 안정적 운영

주요내용

○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
- 형사사법기관 실무자의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시행
- 민간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정책추진 기반의 정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 현황의 파악 및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안정성 제고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예방 교육, 홍보, 지도점검)	320	32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범죄피해 실무자 및 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 2018. 11. 20.~11. 3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79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3과정을 운영하여 종사자 전문화에 노력함.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무 위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였고,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 2019. 9. 3.~9. 2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68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2과정을 운영하여 종사자 전문화에 노력함. 특히, 전년도에 이어 현장 실무 위주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순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초교재를 개발하여 배포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확보
- '18. 1. 29. 및 '18. 5. 18. 총 2회에 걸쳐 범피기금운용심의회 개최하였음. 범피기금심의회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개선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실시(2019. 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의 내실화
- '19. 1. 21. 및 '19. 5. 21. 총 2회에 걸쳐 범피기금운용심의회 개최를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20년 이행실적 (1.1.~12.31.)	○ 범죄피해 실무자 및 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주임 ·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 온라인 화상회의 교육(20. 9.)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9년도 기금 결산, 운용 결과 보고, '21년 기금 예산편성 내역 보고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함('20. 1., '20. 5.)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확보 및 개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개선 및 지원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20. 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벌금의 기금 전입비율을 상향하여 기금 확보('20. 10)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확보 – 기금의 주요 재원인 벌금전입비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기금 재정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한 기금 개편 및 증액 지속 검토필요

향후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교육 지속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운용의 내실화 도모 – 범피기금 체계개편 연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타부처 사업 회계이관 등 사업구조조정) – 벌금 전입비율을 1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법령 개정 필요)

20-1	Ⅰ-3-⑥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사회재난대응정책과

과제목표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안전점검 신뢰도 확보

주요내용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많은 판매시설 등에 민간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훈련관리	90	90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컨설팅 지원)	90	9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2018년)

○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가 현장 컨설팅 추진

– 17개 시 · 도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200개소*

* 서울(40), 부산(14), 대구(9), 인천(8), 광주(7), 대전(5), 울산(4), 세종(1), 경기(41), 강원(10), 충북(5), 충남(7), 전북(5), 전남(10), 경북(7), 경남,(20), 제주(7)

※ 선정기준 : ① 지자체 추천시설 ② 판매, 숙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시설 ③ 신규시설

○ 다중이용시설 대상 화재안전특별조사

– 1단계('18.7.9.~12.31, 6개월간) : 17만 3천개동 실시 / 화재빈도와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우선 조사하였으며, 173,296개 건축물 중 양호한 대상은 33.9%인 58,792개동, 불량대상은 61.3%인 106,180개동, 휴 · 폐업 등 조사제외 대상은 4.8%인 8,324동*으로 조사됨.

* 미실시 대상 : 8,324개동(휴업 1,928, 폐업 3,856, 철거 1,064, 기타 1,476개)

– 불량대상 중 중대위반사항은 3,876동 11,588건, 경미한 불량사항은 102,304동 496,414건 지적

(2019년)

○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가 현장 컨설팅 추진

– 17개 시 · 도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207개소*

* 서울(43), 부산(14), 대구(8), 인천(9), 광주(7), 대전(6), 울산(6), 세종(1), 경기(43), 강원(11), 충북(6), 충남(6), 전북(6), 전남(11), 경북(9), 경남,(11), 제주(10)

※ 선정기준 : ① 지자체 추천시설 ② 판매, 숙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시설 ③ 신규시설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컨설팅 추진 – 17개 시·도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270개소* * 서울(42), 부산(16), 대구(17), 인천(11), 광주(8), 대전(34), 울산(8), 세종(6), 경기(36), 강원(12), 충북(9), 충남(8), 전북(9), 전남(17), 경북(11), 경남,(14), 제주(12) ※ 선정기준 : ① 지자체 추천시설 ② 판매, 숙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시설 ③ 신규시설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앙–지방–민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컨설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 전문가들이 시설별 현장 방문하여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컨설팅 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만족도 제고 및 대응능력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1년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가 현장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 사전회의 및 컨설팅 추진

20-2	Ⅰ-3-⑥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관광산업정책과 스포츠산업과
	과제목표	○ 문화 · 체육 분야 시설, 서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			
	주요내용	○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 다중이용 문화시설 ·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 개선으로 안전 확보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5회) 및 법령, 제도 개선(검사기관 부실검사 제재근거 마련, 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물놀이형 유원시설 하계 성수기 수질 검사 주기 단축 시행, 안전성검사기관의 위탁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 (야영장) 안전점검(연 3회) 및 제도 개선(안전위생기준 강화, 보험가입 의무화)
- (관광숙박시설)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진단 2~4월, 여름철 안전점검 5~6월, 콘도 위생 및 안전점검 9~10월 등), 호텔 등급평가 대상으로 가족호텔업까지 확대 및 안전위생 수준 제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9.11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소규모 숙박업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 규정(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11월)

○ **(체육시설 안전 기준 개선)**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8. 9. 18.)
  * 체육시설의 정의에 '가상체험 체육시설' 내용 포함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추가
-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 관련 정보 일체를 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해 공개('19.4.17.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8.10.16.)
- 합기도장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19.12.26.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6.25.)
- 반기별 1회 정기 안전점검 실시, 취약 시기 긴급 안전점검 실시(여름 · 겨울),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9.2.~4.),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19.5.~'20.3.)

'20년 이행실적 (1.1.~12.31.)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구축('20년 4월 완료)을 통한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현황에 대한 정보(안전관리자, 보험가입, 안전성검사결과 등) 제공, 안전성 검사 절차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강화
- (야영장업) 야영장 내 먹는 물 수질검사 의무화('20.1월), 사업주 외 관리요원까지 안전교육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20.1월), 폐교재산 활용 야영장의 면적 제한을 완화('20.4월), 경보기 대여 시범 사업 시행('20년~)
- (관광숙박시설) 한옥체험업을 지정업(관광편의시설업)에서 등록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숙박시설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 마련('20.4월), 관계부처 합동 불법숙박 단속('20.5~8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20.2월) 등

○ **(체육시설 안전 기준 개선)**
-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조항 신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2.8.)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0. 5. 19.) * 체육시설업 정의에 교습 내용 추가, '체육교습업'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2.22., 12.23.)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정기 안전점검 실시(코로나로 하반기 1회 실시), 취약 시기 긴급 안전점검 실시(여름 · 겨울), 스키장 정부합동점검(경기도 5개소),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20.5.~'21.3.), 코로나19관련 방역점검 실시('20.3.~'20.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유원시설 및 숙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 야영장 안전점검,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야영장 안전 · 위생기준 강화 추진으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제고 도모 ○ 신고 체육시설업 확대로 이용자 안전 제고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원시설)** 안전에 취약한 중소규모 유원시설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4월~), 유원시설 합동점검 실시(상하반기, 물놀이, 동절기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항목 신설 검토(결합잔류염소 등) ○ **(야영장업)** 야영용 트레일러 등록기준 정비 및 지도 · 점검을 통한 변칙 운영사례 확산 방지('21.하반기 예정), 공용 야영용품 세탁 및 위생기준 신설 등 위생관리 강화('21.하반기 예정) ○ **(관광숙박시설)** 관계부처 합동 불법숙박 단속 및 안전민박 활성화 홍보사업 추진, 관광숙박업소(호텔, 콘도 2,301개소) 대상 매월 방역비용 지원(133억원)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하위법령 마련('21년 상반기 예정) –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인공암벽장) 신설(체육시설법 개정, '20.5.19.)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1년 상반기 예정) – 반기별 1회 정기 안전점검 실시, 취약 시기 긴급 안전점검 실시(여름 · 겨울),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21.5.~'22.3.), 코로나19관련 방역점검 실시('21.1.~'21.12.)

21 Ⅰ-3-⑦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시설안전과, 건축안전과 교통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사고예방 체계 강화
- 지진·화재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강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교통·시설안전 예방체계 구축

* SOC 내진 보강 및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취약부분 내진설계 기준개선,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지진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기준 강화
- 지진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사회기능 조기 회복이 가능토록 우리부 소관 SOC 내진보강

○ 건축물 취약부분 내진설계 기준개선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사업용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통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
- 사고 발생 운수회사 교통수단안전점검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및 주택도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교통사고예방지원	3,290	1,100	△2,190	△66.6
(차로이탈경고장치, 바상자동제동장치)	3,290	1,100	△2,190	△6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SOC·건축물 내진 보강 및 설계강화 〉

○ (내진성능 확보) 우리 부가 관리하는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물의 내진성능은 총 26,129개소 중 25,548개소(97.7%)를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581개소(2.3%)는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추진('19.12 기준)

○ (내진설계기준 강화) '97년 이후 미국 기준에 따라 제정된 SOC 내진설계기준을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에 맞추어 시설별 기준(10종)**을 제·개정('18.12)

* 공통적용(6) : 지역계수·지반분류·지반운동·내진성능수준·재현주기·내진등급 분류체계

** (도로) 도로교·터널 설계기준 (철도) 철도·도시철도 설계기준, 궤도시설 설비기준 (하천) 하천설계기준 (공항)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공동구) 공동구 설계기준 (건축) 건축구조기준('19.3) (공통) 내진설계기준 공통편

○ 건축물 안전 관련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마련('18.4, 국무회의)
-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금지 등 신축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및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사업 추진결정('19~)

○ 건축안전에 대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 「건축안전 전담조직」 신설('19.3)

○ 「범부처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19.4)
- 의료시설·노유자시설, 3층 이상 건축물 및 필로티 구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 전방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첨단경고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 지원

○ 사망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분기별)

* 사망1명 또는 중상3명 이상 등 사고 유발업체

** (1분기) 운수회사 142개, (2분기) 운수회사 62개, (3분기) 운수회사 115개, (4분기) 운수회사 66개

'20년 이행실적 (1.1.~12.31.)

〈 SOC · 건축물 내진 보강 및 설계강화 〉

○ (내진성능 확보) 우리 부가 관리하는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물의 내진성능은 총 26,340개소 중 25,741개소(97.7%)를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599개소(2.3%)는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추진('19.12 기준)

– ('20년) 75개소 내진보강공사 완료, 2,250개소 성능평가 실시

○ (지진대응체계 개선) 효율적인 지진재난 위기대응을 위하여 실무매뉴얼(1) 및 소속 · 산하기관 행동매뉴얼(16)을 지속적으로 보완

– 실무매뉴얼(국토부) 및 행동매뉴얼(소속 · 산하기관 16개소) 관리실태 점검 실시(2회, 6월&11월)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활성화

– 사업 관련 근거법령 시행(「건축물관리법」, '20.5)에 따라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유자시설 등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의 탄력적 추진으로 '20년 목표치 초과 달성*

* 목표 384건, 사업 접수 638건(목표대비 160%달성)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 버스 ·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 전방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첨단경고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 지원

○ 사망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분기별)

* 사망1명 또는 중상3명 이상 등 사고 유발업체

** (1분기) 운수회사 89개, (2분기) 운수회사 63개, (3분기) 운수회사 92개, (4분기) 운수회사 82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SOC · 건축물 내진 보강 및 설계강화 〉

○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 발생시 피해 최소화 기대

○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통해 화재로 인한 국민생명 보호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 '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79명으로 전년 대비 8.1%(270명) 감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SOC · 건축물 내진 보강 및 설계강화 〉

○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21~'25) 및 '2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SOC 시설물 내진보강 정상 추진

– ('21~23년) 내진보강공사 233개소, 내진성능평가 178건 수행 예정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 개소수는 변동할 수 있음.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사업 지속 추진(~'22년)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 사업용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22)

○ 운수회사 교통수단안전점검 추진(지속)

23	Ⅰ-3-⑨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공공기술기반팀

과제목표

○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을 위해 우수 R&D 결과를 대상으로 실증, 인증 및 공공조달 연계 등 패키지 지원
○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전달의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제품·서비스 창출

주요내용

○ 기존연구 성과 중 국민생활문제 해결이 가능한 주제를 Bottom-up으로 발굴, 기술고도화, 리빙랩 기반 실증, 시험·인증 및 제도개선 등 지원
○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 현장 적용 가능한 우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 및 상시 전문가 컨설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성과관리 확산·체계 구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R&D)	2,188	-	△2,188	△100.0
■ 공공조달연계형국민생활연구실증사업화지원(R&D)	3,714	9,053	5,339	143.8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R&D)	3,500	5,000	△1,500	42.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19.1.~)

- 시급한 연구 착수를 위해 행정 절차 및 양식 최소화 등 관련 규정 개선('19.3. 개정)
  * 공고기간 단축 : 30일 → 공고생략 및 단축 / 계획서 항목(분량) : 12개(제한 없음) → 5개(10쪽 이내) / 평가단계 : 2 → 1단계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36개 기관),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 출연(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시스템 마련

○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추진('19.1.~)

- 9개 신규과제 선정 및 리빙랩 기반 실증, 시험·인증 및 제도개선 추진
- R&D 성과의 현장적용 및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방안 강구
  * 공공조달 연계 컨설팅을 위한 kick-off회의 개최('19.9.), 리빙랩 현장 방문('19.12.)

○ 조달청과의 협업(MOU 체결, '19.1.) 체계 구축을 통해 종료과제 우수성과 시장 진출

- 사회문제해결사업의 우수성과 2개*가 혁신시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해서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에 선정('19.9.)됨으로써 판로 개척
  * '15~'17년 과제 연구성과(안저카메라, 야간작업자용 발광조끼)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지원대상 선정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운영('20년 총 7회 개최) – 재난 · 안전 사고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 공인인증서 폐지, 도로 살얼음 등 국민 관점의 주제 논의 ○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 사업화 지원」 '20년도 신규과제 선정('20.8) – 초경량 접이식 방패 등 2개 과제 지원('20년 총 5억원)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코로나19 대응 신규과제 선정('20.3.)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과제 6개 선정 및 착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을 실시 ○ 수요발굴부터 기술개발, 현장 적용 등 R&D 전 과정에서 걸쳐 관련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재난 · 안전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민생활연구 수요조사 시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 필요 ○ 국민생활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 등을 위해 수요기관(부 · 처 · 청, 지자체)의 적극적 성과 활용 의지 제고 및 노력 필요

향후추진계획	○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긴급대응연구 수요 발굴 · 추진(상시) ○ 「공공조달연계형국민생활연구실증사업화지원」사업 연차점검 실시('21.6.)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분석 실시('21.上)

24	Ⅰ-3-⑩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지진방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
과제목표	○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기반 구축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 국가 내진율 향상 – 지진방재 연구기반 확대			
주요내용	○ 내진보강대책 추진 ○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연구 ○ 지진대비 교육·훈련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844	3,111	△733	△19.1
■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3,500	2,925	△575	△16.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8.12.4.)을 통한 내진설계 의무대상 시설물 확대(31종→33종)
– 물류시설(물류터미널), 공급시설(열수송관) 등 2종 시설물 신규 추가

○ '19년('18년도 실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19.4.)
– 31종 공공시설물 187,950개소 중 117,165개소 내진성능 확보로 내진율 62.3% 달성('18.12.31.기준)

○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2·3차년도 사업 추진
– 동남권 단층조사 및 활성단층 조사·평가기술 표준화

○ 지진 교육기반 마련 및 지진 안전문화 확산
– 유아, 장애아동용 지진 교재 및 영상 등 교육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지진 교육 실시
– 지진안전주간 운영, 생활 속 매체를 통한 지진 대피요령 홍보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년('19년도 실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20.4.)
– 33종 공공시설물 188,880개소 중 126,994개소 내진성능 확보로 내진율 67.2% 달성('19.12.31.기준)

○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한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20.12.21.)
– 민간전문가 자문회의(4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3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심의(3회) 실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20년말 기준, 총 151건(공공 69, 민간 82) 인증 완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홍보* 추진
* 홍보영상 도심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보드 송출, 리플릿 제작 및 홍보영상 배포 등

○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4차년도 사업 추진('20.1~12)
– 안동·의성·구미 등 동남권 23개 구역 단층조사 및 활성단층 조사·평가기술 표준화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을 고려한 지진 대비 훈련 실시
– 비대면 토론식 훈련 중심, 지진 초동대응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집중 실시(하반기)
※ 지자체 현장·합동훈련 대체 계획 수립(6월), 기관별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 훈련 등 실시(7월)

	○ 맞춤형 지진안전 컨텐츠 제작 및 집중 홍보 실시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지진 행동요령 영상 제작(6월) 및 영상 송출(7~11월) – 외국인을 위한 지진 행동요령(12개국어) 온라인 홍보(9~11월, www.지진안전.com) ○ 생애주기별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진 교육 추진 –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지진재난 통합교재 개발 및 배포**(12월)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및 보호자용 ** 전국 도서관 및 학교 등 5,500여부, 행안부 홈페이지 게재 등 – 특수학교 대상 찾아가는 지진 교육 실시(6~11월) ※ '19년 특수학교 교사(12개교) → '20년 특수학교 교사 및 학생(48개교)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년('19년도 실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전년대비 4.9%p(62.3→67.2%) 향상으로 지진 안전성 강화 – 역대 최대 예산인 8,722억원 투입하여,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 8,800개소 내진성능 추가 확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20년 기준, 151건 인증완료)'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 유도 ○ 전국 활성단층 조사를 통한 안전 확보 – 활성도가 명확한 단층주변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 파악 및 내진대책 수립 추진으로 주요시설물 지진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재난상황을 고려한 교육 · 홍보 및 훈련을 통해 지진안전 의식 향상 – 행동요령 인지도 조사 : '19년 : 74% → '20년 : 75% ○ 연중, 상시 지진 대비태세 유지로 지진 재난 대응체계 확립 – 기관별 훈련 참여확대 실시 및 환류 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1년('20년도 실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21.4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계속) * 인터넷, 유관기관 간행물, 옥외 · 역사 전광판, 편의점 계산대 등 ○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5차년도 사업 추진('21.1~12) – 영덕 · 청송 등 동남권 16개 구역 단층조사 및 활성단층 조사 · 평가기술 표준화 ○ 지속 · 반복적인 지진 대피 훈련 · 교육 · 홍보 실시(계속)

25 | Ⅰ-3-⑪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정책·훈련과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등

과제목표

○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 예·경보 예측 및 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재난상황정보 신속·정확 전파로 재난 피해 최소화 *21년 3월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주요내용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관리 전문성 및 현장대응 능력 강화
- 재난안전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안전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비상 대응능력 강화

○ 재난 예·경보 체계 고도화
-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21년 3월까지)
  *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PS-LTE 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8대 이용기관 333개 기관(24만명) 이용 예정)
- 지진해일 피해산정을 위한 한반도 전해역 침수범람 예측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등

○ 재난조사 및 치료 강화
-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및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재난관리평가지원	673	639	△34	△5.1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412	2,426	14	0.6
■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3100	3100	-	-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1,690	1,876	186	11
■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민방위훈련,접경지역 대피시설)	8,734 (2,252)	9,148 (1,931)	414 (△321)	4.7 (△14.3)
■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비상대비 훈련 기술 개발)	4,230 (1,330)	3,430 (1,030)	△800 (△300)	△18.9 (△22.6)
■ 비상대비훈련 (을지태극연습)	893 (131)	1028 (133)	135 (2)	15.1 (1.5)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정보화)	152,819	103,508	△49,311	△32.2
■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14,823 (1,200)	15,081 (900)	△258 (△300)	△1.7 (△25)
■ 재난심리회복지원	913	767	△146	△16.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41개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70개 개정(98%, '19.12. 기준)
○ 2018~19년 재난관리평가 실시
 – '18년도 결과: 326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6.29. 결과 공개),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컨설팅 추진
 – '19년도 결과: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4.29. 결과 공개),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컨설팅 추진
○ 재난대비훈련 체계 구축 및 기능 중심의 상시·합동 훈련 실시('18년 634개기관, 1,072회 → '19년 705개기관 1,050회)
○ 안전한국훈련 및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확대
 – 민간기업 등 참여 확대('18년 1,013개 → '19년 1,166개) 및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확대('18년 34개 → '19년 46개(특수5, 초등41)
 – (연구용역) 어린이 시설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맞춤형 현장 훈련 시나리오 배포('19.6.)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종합발전방안 마련(4월), 지진방재 분야 대학원 개설(5개)·운영(9월),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개정(9월3일) 등
  * (추진결과) '17년 9개 대학, 21억원 → '18년 15개 대학 26억원 → '19년 15개 대학 31억원
○ 방재·안전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인프라 구축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5월7일),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추진(5~11월)
 – 연구용역 2건(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기준 및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분석·유망산업도출 관련)
○ 재난안전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기술 사업화 지원*,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18.2월~)
  * 지진방재, 산업안전, 재난감지 및 제어 등 10개 품목 20개 기업 기술사업화 R&D지원('18~'19년)
 – 안전산업 관심 제고와 기업판로 확대, '안전산업박람회' 개최(9.25.~27.)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2019 시행계획 수립('19.3.), 중앙-지방 재난 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신설('19.4.)
○ 을지태극연습 과학화, 정부 비상대응역량 강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 재난 예·경보 체계 고도화 〉
○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계획수립('18.5), 발주 및 계약('18.6~11)
 – 본 사업 1단계 완료(중부권*, '18.12~'19.9) 및 본 사업 2단계 추진(남부권**, '19.11~)
  * (중부권) 대전, 세종, 강원, 충남/ ** (남부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재난조사 및 치료강화 〉
○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추진
 –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위원실, 행안위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설명('18.11월) 및 국회 본회의 제출('19.11월)

'20년 이행 실적 (1.1.~12.31.)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7,536개 개정(89.2%, '20.9. 기준)
○ 2020년 재난관리평가 실시
 –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6.3. 결과 공개),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컨설팅 추진
  * 재난관리 단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별 평가체계로 개편·적용 및 국민체감도 반영
○ 재난대비훈련 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훈련시나리오, 실무책자 등 훈련콘텐츠 제작, 훈련기반 강화
 – 나라배움터·안전한TV 학습, 시나리오 자료집, 재난대비훈련 실무책자 등 보급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폭 확대 실시 '20년 93개교(특수8, 초등85)
  ※ '16년 2개 → '17년 17개 → '18년 34개 → '19년 46개 → '20년 93개
 – 온라인 수업대비 교육자료(비대면 수업용 안전수업 자료) 제공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협약(8.5.), 사업 추진('20.9월~)
 – 선정대상/사업기간 : 교육기관 10개(재난관리분야 5, 지진방재분야 5) / 2년(4학기, '20.9.1.~'22.8.31.)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산업박람회, 재난안전 인증제품 활성화
 – 안전산업박람회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내외 판로 개척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제품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제도 정비·개선
  * (시행규칙) 시험·성능 자료의 유효기간 도입(1.7.개정) / (시행령) 위탁관련 세부규정 마련(6.2.개정)
  ** (인센티브) 우수조달물품 심사 가점 반영(6.17),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품목 지정(7.14)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2020 시행계획 수립('20.3.)
○ 코로나19로 민방위훈련 취소에 따라 접경지역 대상 민방위대 운영, 주민대피시설·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실태 등으로 대체 실시(10.28.~11.6.) 및 접경지역 주민대비시설 6개소 확충(인천 3(강화2, 옹진1), 경기 2(양주1, 파주1), 강원1(화천1))

〈 재난 예·경보 체계 고도화 〉
○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 본 사업 2단계 완료(남부권, '19.11~'20.9) 및 본 사업 3단계 추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6~)

〈 재난조사 및 치료강화 〉
○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총괄 대응
 –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재해구호법(1.29.) 및 시행령(7.28) 개정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7.30)
  *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심리지원 관계 부처 및 재난심리 관련 학회 임직원 등 22명
○ 재난 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심리상담 적극 실시(11,314건)
  ※ 코로나19(6,958건), 호우·태풍(1,388건), 이천·울산·군포 화재(123건), 기타(2,845건) 등
○ 재난피해자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전화(1670-9512 구호심리) 개설(11.20.)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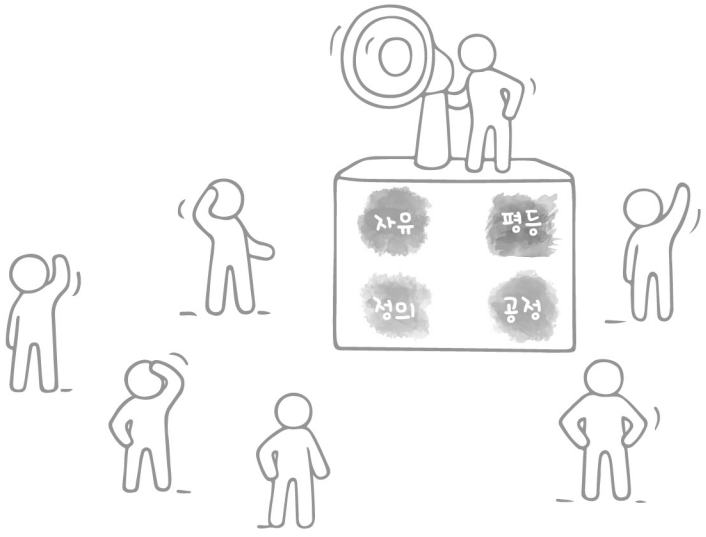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12	-	11	1	-
1. 차별금지	12	-	11	1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차별금지】			
26	Ⅱ-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추진지연**
27	Ⅱ-1-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상추진
28	Ⅱ-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정상추진
29	Ⅱ-1-④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정상추진
30	Ⅱ-1-⑤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정상추진
31	Ⅱ-1-⑥	장애인 고용 개선	정상추진
32	Ⅱ-1-⑦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정상추진
33	Ⅱ-1-⑧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정상추진
34	Ⅱ-1-⑨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정상추진
35	Ⅱ-1-⑩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정상추진
36	Ⅱ-1-⑪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정상추진
37	Ⅱ-1-⑫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상추진

과제별 이행상황

26	Ⅱ-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인권 향상 및 보호를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에 대한 확인 시행 ○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외국 법안 및 사례 연구
'20년 이행실적 (1.1.~12.31.)	○ 「차별금지법」 제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법무부 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제출('20. 7.) ○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실시('20. 하반기) ○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외국 법안 및 사례 연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일반적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제도 등에 대한 성과 미비 * 차별금지 사유·영역·구제절차 등에 관한 심각한 사회적 의견대립 ○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령과의 충돌 및 법적용상 혼란 우선 해결 필요

향후추진계획	○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협조 지원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마련을 위하여 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 외국의 법안과 사례 연구(EU지침,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차별금지 관련법안 및 사례 분석) 검토

27 | Ⅱ-1-②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과제목표

○ 생활밀착형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별통계 개선·이용 활성화 강화 등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전문가 심층 분석 실시
- 대국민 공모 등 수요자 참여를 통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정책개선 추진

○ 성별 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신규 승인 통계, 주요정책 분야 통계 등 국가 승인통계의 성인지 관점의 점검 및 개선

○ 성인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관리자 과정, 담당자 과정 등 대상자별로 분리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방식 다양화로 참여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4,203	4,438	235	5.6
■ 성인지정책분석평가 운영	4,203	4,438	235	5.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 ('18) 중앙부처 35개 기관, 152개 사업 대상 → ('19) 중앙부처 39개 기관, 159개 사업 대상
- 건강증진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등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별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기업경영 분야(72종)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및 지표 개선 통보(34종)

○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실시

연도	총계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여성친화도 시교육
		젠톡	창의형	강의식	사이버		
'19년	48,421	3,186	4,989	672	33,585	5,201	788
'18년	12,984	1,247	1,970	1,363	2,884	5,083	437

'20년 이행실적 (1.1.~12.31.)

○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고려하여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년) 평가 2,383개(21.7% 증) / 개선과제 284개(48.7% 증)
-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생활체감형 정책개선 권고 주요내용 〉

개선권고 내용	대상 부처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시 남녀차별 개선 및 여성후보생 선발 확대	국방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성별항목 중 이상지혈증 검진대상자 연령기준에 대해 성별 및 생애주기 특성 고려	보건복지부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 성별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 및 결과표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의 검토와 개선의견 제시 * '19년 신규 승인된 국가승인통계 76종 중 31종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통계청) – 사회조사 분야(103종)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및 지표 개선 통보(13종) ○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실시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5,921명) –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젠더토크콘서트 7,475명, 창의형 2,940명, 사이버 131,142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 주류화 제도가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 개선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목표에 근거한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을 발굴, 정책개선 강화 ○ 국민의 성평등 의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단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시 및 콘텐츠 개발 · 확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문체육 분야 정책, 학교폭력 · 코로나 19 대응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안 도출 ○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지원, 성인지예산의 성평등효과 분석 심의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성 주류화 제도 개선 추진

28	Ⅱ-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과제목표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주요내용	○ 유사업무에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 및 개선 지도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076	1,929	△147	△7.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872	644	△228	△26.1
■ 직업능력 인프라구축	27,014	22,201	△4,813	△17.8%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14,405	12,987	△1,418	△9.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18년 659개소, '19년 700개소)을 통해 여성고용환경 개선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1,022개, '19년말 기준) 및 중견·중소기업에 NCS 기반 채용·재직자 훈련 등 NCS 기업활용컨설팅 지원(700개, '19년)

'20년 이행실적 (1.1.~12.31.)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수행('20년 400개소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점검대상 사업장 축소(800→400개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을 지속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2항제1호)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20.8월)

- 고용상 성차별 관련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검토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업무 전문성 강화 도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20년부터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대상을 AA 전체사업장으로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20.9월)

* ('18년) 42개소 → ('19년) 50개소 → ('20년) 52개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개* 추가 개발(총 1,039개**)

* 자율주행하드웨어개발, 스마트물류플랫폼구축, 스마트물류통합관리 등

** 기존 '비파괴검사' NCS는 총 8개 NCS로 분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의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원인 분석' 제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다소 완화 * '16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23개국 중 1위('16년 기준)였으나, '18년에는 34.1%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 AA 대상 사업장 지속 확대('18년 2,146개사 → '19년 2,442개사 → '20년 2,486개사)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증가 및 목표치 달성 * '18년 659개 → '19년 700개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목표 800개에서 400개로 축소) ○ 능력중심 체계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산 추진 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지속) – 대상 사업장에서 제출한 임금격차 원인분석의 적정성 여부 평가체계 구축('21년~) ○ '21년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21년 점검대상 사업장 목표는 900개) ○ 현장직무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확산 및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지속

29	Ⅱ-1-④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여성인력개발과

과제목표

○ 공공 및 민간부문 의사결정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역량강화, 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등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

주요내용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지원
○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사업 활성화
○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 위원회 관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청년여성 멘토링)	74	-	△74	△100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354	450	96	27.1
■ 미래 여성인재 양성				
(여성인재풀 확충)	90	90	0	-
(여성 역량강화사업 운영)	561	281	△280	△49.9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156	156	0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민간부문 성별균형 제고 위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19.3)
- 기업과의 자율협약 추진('19년 11개 협약, 63개 기업 참여, 체결 당시 기준)
-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 조사·발표 등 관련 연구·조사 추진
-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 지원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19년 27개 기업)

○ 청년여성 진로설계 및 네트워킹 위한 멘토링 사업 추진
- '19년까지 누적 12,278명 멘토링 참여

○ 여성인재DB 등재 인원 확대('19.12월말 기준 120,072명)

○ 지역여성, 중간관리자 등 여성 특성·경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
- '19년까지 누적 46,660명 교육 수료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3, 9월), 지자체 소관 위원회(7월)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현황 조사·발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지속 추진
- '20년까지 누적 48개 자율협약 체결(100개 기업 동참, 체결 당시 기준)
-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 조사·발표 등 관련 연구·조사 추진(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4.5%)
-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 지원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20년 18개 기업)

○ 여성 리더 발굴·양성
- 청년여성 진로설계 및 네트워킹 위한 그룹 멘토링 및 멘토링의 날(6회) 개최
- 지역여성, 중간관리자 등 여성 특성·경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9개)
- 여성 참여 저조분야 등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적극발굴 및 등재('20.12월말 기준 129,782명)

○ 위원회 관리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2, 8월), 지자체 소관 위원회(7월)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현황 조사·발표
-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발표(8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추진으로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기여 ○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성과 – 청년여성 325명 참여, 토크콘서트 형식의 실무 멘토링의 날 6회 진행 ○ 여성인재 아카데미 추진성과 –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인원 4,272명 교육 – 지역거점기관 운영(9개)하여 지역여성 교육접근성 제고 ○ 여성인재DB 확대* 및 활용 강화로 의사결정권한 확대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18년) 110,208명 → ('19년) 120,072명 → ('20년) 129,782명 ○ 지자체위원회 여성참여율 지속 확대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한 확대 * 광역 : ('18년) 44.4% → ('19년) 44.9% * 기초 : ('18년) 39.1% → ('19년) 40.8%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기업 지속 확대 필요 ○ 위원회 성별 참여율 40%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중점관리 필요 ○ 여성 참여 저조분야(과학기술, 신산업 등) 여성 인재 확충 노력 강화

향후추진계획	○ 기업과의 자율협약 지속 체결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 확대 노력 지속 ○ 여성인재가 부족한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자원, 바이오 등

30	Ⅱ-1-⑤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 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확산을 위해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 성평등 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추진			
주요내용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 추진 – 성평등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 운영)	704	704	–	–

※ '20년 부터 양평평등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예산으로 이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추진
– 연극형교육, 젠더토크콘서트, 집합교육 등 성인지 교육 실시
('18) 25회 4,580명→ ('19) 33회 8,847명
– 언론인 등 방송관계자 성평등 교육 실시
('18) 1회 16명→ ('19) 2회 37명
– 사이버교육 교육인원 및 과정 확대를 통한 성인지 사이버교육 활성화
('18) 3개 과정 7기수 2,884명→('19) 4개 과정 10기수 9,446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추진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대상 문화공연콘텐츠를 활용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 (22회 10,415명)
* 연극형교육 11회 2,940명, 젠더토크콘서트 11회 7,475명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라 정원 확대 운영
– 언론인 등 방송관계자 성평등 교육 실시 (269명)
* 방송 · 언론인269명
– 공무원 사이버 교육 6개 과목* 운영 (10기수 10,608명)
* 과목명 : ① 모두의 행복을 위한 법령 성별영향평가 ② 성인지 통계의 이해와 활용 ③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패러다임 ④ 모두가 행복한 조직 만들기 ⑤ 재난안전과 젠더 ⑥ 한국사회의 성별 불평등 이해 (10기수 10,608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무원, 언론인 등 전략집단 대상 온 ·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 확대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부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등 운영 (30회, 6,000명)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운영 및 학습환경 고도화 (11,000명)

31	Ⅱ-1-⑥	장애인 고용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확산 및 고용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추진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372	4,145	△1,227	△22.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17.11월 개정, '18.5월 시행) 및 현장 안착 계획 수립 ('18.4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동 업무 전담 조직(인식개선센터) 신설 · 운영

* 교육 강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교육콘텐츠 제작 · 보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구축 등

○ 효과적 교육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공공 · 민간 협력(국회, 정부, 민간 등) 체계 구축 등

* 정책 토론회 개최(국회 환노위), 사업체 맞춤형 콘텐츠 개발 · 보급, 법정의무 교육 공동 홍보(대한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20.6월)하여 사업체 자체 교육시 사내 강사 자격 기준 마련

*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이며, '21.1월부터 적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

* 교육강사 양성(1,031명), 교육기관 지정(131개소), 교육의무 이행지도(2,054개소), 교육강사 지원(18,695개소)

- 문화·체험형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단순 정보제공 위주에서 장애감수성과 흥미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 인식개선 교육 실시('20년 167회)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무료 강사지원 확대로 사업주 의무이행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업체의 원활한 교육의무 이행을 위해 교육 인프라 확대

- 교육 강사 양성: 1,031명 양성(장애인 강사 291명) [누계 3,120명(장애인 1,037명)]
- 교육 기관 지정: 131개소(장애인관련단체 84개소) [누계 598개소(장애관련단체 376개소)]
- 교육 의무 이행지도: 2,054개소
- 교육 강사 지원: 18,695개소

		– 문화·체험형 교육 실시: 167회 – 교육콘텐츠 제작 · 보급: 4종(누계 11종) – 교육 포털 기능 확대: 5대 법정의무교육 플랫폼, 불법교육 신고센터 신설등 ○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 인지도 및 교육 효과 제고 * '20년 기업체장애인실태조사 – 교육 인지도: ('19년) 83.9%→ ('20년) 87.2% (3.3%p↑) – 교육 효과: ('19년) 66.2%→ ('20년) 68.6% (2.4%p↑)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장안착을 위해 인프라 지속 확충 필요 –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410만개소 사업체, 22백만명 근로자) ○ 코로나19를 비롯한 천재지변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인한 대면(집합)교육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 교육 인프라(교육강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 관리, 콘텐츠 개발 · 보급 등) 강화 – 교육 강사 양성: 매년 강사 1,000명 양성(장애인 강사 30%), '22년까지 총 5,000명 양성 – 전문 교육기관 지정 · 관리 강화: 매년 100개 기관 지정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콘텐츠) 인증제도 도입 – 교육대상(사업주 및 근로자)을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LMS) 구축 · 지원 ○ 사업주의 교육 결과보고 의무 규정 마련 등(법령 개정)

32	Ⅱ-1-⑦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과제목표	○ 국어사전의 성 차별 내용 개선			
	주요내용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성차별적인 단어 뜻풀이, 용례 등을 조사하여 보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뜻풀이 및 용례 수정)
- '도락' 뜻풀이, '의붓아버지' 뜻풀이, '눈요기하다' 용례 등 단어의 뜻풀이 및 용례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 부분 수정 혹은 삭제 완료
- '연애' 뜻풀이, '연모' 뜻풀이, '가장' 용례, '종용하다' 용례 등 단어의 뜻풀이 및 용례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 부분 수정 혹은 삭제

○ (우리말샘 신어 및 추가된 단어)
-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비소수자' 등의 단어 및 뜻풀이 등재 완료

'20년 이행 실적 (1.1.~12.31.)

○ (뜻풀이 수정)
- 사전 뜻풀이가 '여자가', '여자들이'로 시작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 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항목의 경우 뜻풀이 수정 완료(총 17항목)

〈예시〉

표제어	변경 전	변경 후
립스틱	여자들이 화장할 때 입술에 바르는 연지. 막대 모양이다.	화장할 때 입술에 바르는 연지. 막대 모양이다.
가계04	여자들이 쪽 찐 머리를 꾸밀 때에 다리를 곁들여서 땋음.	쪽 찐 머리를 꾸밀 때에 다리를 곁들여서 땋음.
단유003	여자가 입는 짧은 길이의 저고리.	짧은 길이의 저고리.
파라솔	「2」 여자들이 햇볕을 가리는 데 쓰는 양산.	「2」 햇볕을 가리는 데 쓰는 양산.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 뜻풀이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성차별적 용례, 뜻풀이, 관용어 등은 기계적으로 일괄 검토 하여 수정하기가 어려움. ○ 예전에 사용되던 단어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표준국어대사전 및 우리말샘에 있는 성차별적 표현 및 정보에 대한 지속적 보완

33	Ⅱ-1-⑧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방송기반총괄과
과제목표	○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주요내용	○ 방송 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심의 강화 -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적용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4,667	36,221	1,554	4.5
(방송심의활동)	7,390	7,555	165	2.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 내용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위반 방송사에 대해 제재 추진

- ('18년)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58건
- ('19년)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55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38건 실시

〈관련 조항 방송심의 의결 현황〉

(2015년~2020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정제재	7	8	2	17	13	3
행정지도	15	13	2	41	42	35
계	22	21	4	58	55	38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적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18년의 경우 4건→5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제재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방송을 통한 인권이 개선되고 있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지속 추진

34	Ⅱ-1-⑨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중매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
○ 차별, 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발굴하고 시정을 추진하여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내용

○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
○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으로서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350	3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요청
– 오락·예능, 광고 등 매체별 내용분석 실시('18년 12회, '19년 17회)
– 내용분석 결과물 활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개선 요청 ('18년 275건, '19년 323건)
○ 성평등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인식개선 온라인 캠페인 실시
– 방심위 기초심의원 및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18년 9회, '19년 73회)
– 미디어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실시('19년 3회)

'20년 이행실적 (1.1.~12.31.)

○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요청
– 매체별 내용분석(17회)
* 예능·오락, 광고, 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등
– 내용분석 결과물 활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개선 요청 확대(579건)
○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한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추진
–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대면 56회, 비대면 177개교)
– 방송·언론인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5회)
○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 추진
– 미디어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실시(5회)
– 시민 대상 성평등 미디어 특집강연회(1회) 및 성평등 미디어 포럼(1회)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중매체 매체별 내용분석(17회), 성차별 사례 심의요청(579건),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청소년 대면 56회·비대면 177개교, 방송·언론인 5회), 시민 대상 미디어 인식개선 캠페인(5회)·강연회(1회)·포럼(1회)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21년)
– 협력기관 운영(3기관) 및 매체별 내용분석 보고서 발간(17종)
– 협력기관 모니터단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강화
○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 청소년·언론인의 성인지 관점 제고를 위한 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 추진
– 시민 대상 캠페인·토론회 실시 및 인식개선 자료 보급

35	Ⅱ-1-⑩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방송기반총괄과 인터넷윤리팀
과제목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기능 강화 ○ 차별·비하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주요내용	○ 방송 모니터 요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8~2019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별·비하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해 총 3,758건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구 분	심의	시정요구
2018년	2,638	2,352
2019년	1,886	1,406
계	4,524	3,758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20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별·비하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해 총 473건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구 분	심의	시정요구
2020년	1,580	473

결과분석

추진성과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해 인터넷 상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지속 실시

36	Ⅱ-1-⑪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주요내용	○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추진 강화 –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추진 –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확대를 통한 및 양성평등 교육 기반 마련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	340	340	–	0.0
(시도교육청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1,000	500	△500	50.0

* 시도교육청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응투자(5:5)를 원칙으로 함.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추진

– 인권·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18.12월)

– 초중등 양성평등 학교 진단지표 개선 추진('18.10월) 및 양성평등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개정된 진단기준 배포·활용('19.2월~)

– 2018 양성평등교육 우수학교 유공자 포상('18.12.31.), 2019년 양성평등교육 유공자 포상('19.12.31.)

*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교육 및 예방교육 분야 우수학교 및 업무담당자에게 교육부장관 표창

○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 학교현장의 양성평등 교육 전문성 향성과 문화조성을 위해 '인권 및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운영('19.7.29.~8.2.)

– 양성평등 연구학교* 지정·운영('19.1월~)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양성평등 교육공간 조성, 교원 학습공동체, 자율연수 등 연구활동 및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구성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추진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개발 연구(~'20.12월)

– 양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가이드 및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수업자료집 개발(~'20.12월)

○ 단위 학교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 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실시('20.8월)

– 초·중등 국립학교 양성평등 연구학교(4개교) 운영 지원('20.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상별 맞춤형 교육·연수 내실화 및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 확산 ○ 학교현장의 양성평등 교육 전문성 향상과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양성과 양성평등 연구학교 지정 지속 추진을 통한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추진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추진 – 학생·교원용 양성평등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양성평등 관련 교수·학습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자체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을 통해 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 구축 ○ 단위 학교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강화 – 학교현장의 양성평등 교육 전문성 향상과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양성 및 네트워크 운영 – 초·중등 국립학교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4개교) 지속 지원

37	Ⅱ-1-⑫	장애인 교육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장애이해(인권)교육 추진 강화를 통한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

주요내용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체험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확대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국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특교)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467	364	△103	△22.1
■ (국고)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200	248	48	24.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방송(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드라마) 방영
- 초등학생 대상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3라디오)
  ※ 대한민국 1교시 제목: ('18) 우리별을 구하라 → ('19) Happy Together 공감교실
-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드라마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TV)
  ※ 장애이해드라마 제목: ('18) 반짝반짝 들리는 → ('19) 오늘도 안녕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실적(교): ('18) 1,905 → ('19) 1,880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자료 및 학교교육활동 연계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현황: ('18) 초등학교 → ('19) 중학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 활용 장애이해교육 실시('20.4월~)
- 유치: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두리의 고민' 제작·보급
- 초등학생: 대한민국1교시 '함께 그리는 그림' 송출(KBS 1·3라디오)
- 중·고등학생: 장애이해 드라마 '거북이 채널' 방영(KBS 1TV)

(유치) 두리의 고민

(초등) 함께 그리는 그림

(중등) 거북이 채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1,972교)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연중)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개최 및 자료집 배포('20.3월~12월)

※ 백일장 응모 편수 : 7,272편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20.3월~12월)

※ 공모전 응모 편수: 130편(성인 69편, 장애학생 40편, 비장애학생 21편)

○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자료(각 40차시) 개발 및 보급

– 학교교육활동 연계 장애이해교육 콘텐츠(20편)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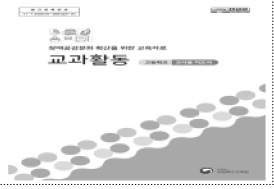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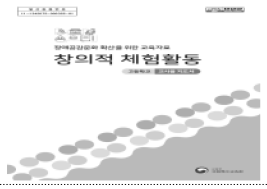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표지〉

〈교육자료 예시〉

〈자료 연계 콘텐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이행률 증가 ※ ('19년) 90.4% → ('20년) 91.7%)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18) 초등학교 → ('19) 중학교 → ('20) 고등학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1년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 특별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21.4월~)

– 초등학생 대상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3라디오)

–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드라마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TV)

○ 시도교육청별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운영 연중 추진(1,970교 예정)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21.3월~)

○ 누리과정, 유아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21.1월~)

Ⅲ.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3. 결사·집회의 자유

4. 사생활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6. 인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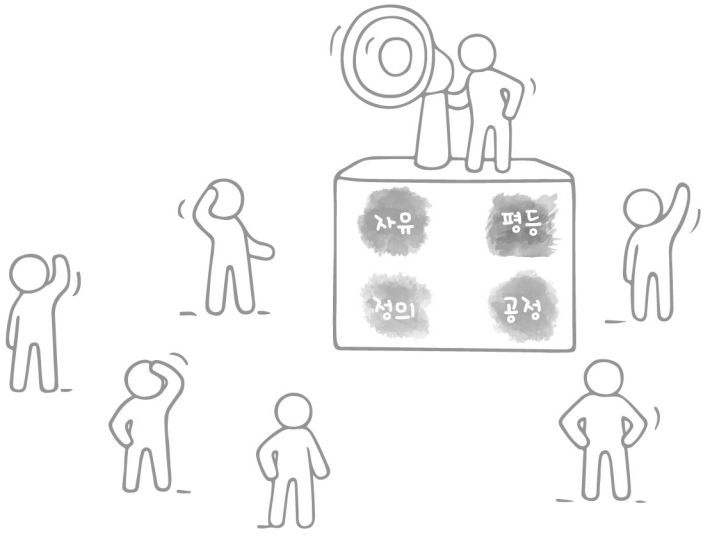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23	7	16	–	–
1.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2	1	–	–
2. 표현의 자유	5	–	5	–	–
3. 결사 · 집회의 자유	5	3	2	–	–
4. 사생활의 자유	7	2	5	–	–
5. 거주 · 이전의 자유	2	–	2	–	–
6. 인격권	1	–	1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Ⅲ-1-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정상추진
39	Ⅲ-1-②	「보안관찰법」상 사상 · 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과제완료('18)**
40	Ⅲ-1-③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과제완료('20)**
【표현의 자유】			
41	Ⅲ-2-①	공적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정상추진
42	Ⅲ-2-②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정상추진
43	Ⅲ-2-③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정상추진
44	Ⅲ-2-④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정상추진
45	Ⅲ-2-⑤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 공개	정상추진
【결사 · 집회의 자유】			
46	Ⅲ-3-①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상추진
47	Ⅲ-3-②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과제완료('20)**
48	Ⅲ-3-③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과제완료('18)**
49	Ⅲ-3-④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과제완료('18)**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50	Ⅲ-3-⑤	아동 · 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확대	정상추진
【사생활의 자유】			
51	Ⅲ-4-①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정상추진
52	Ⅲ-4-②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정상추진
53	Ⅲ-4-③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정상추진
54	Ⅲ-4-④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정상추진
55	Ⅲ-4-⑤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정상추진
56	Ⅲ-4-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제완료('19)**
57	Ⅲ-4-⑦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과제완료('18)**
【거주 · 이전의 자유】			
58	Ⅲ-5-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정상추진
59	Ⅲ-5-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정상추진
【인격권】			
60	Ⅲ-6-①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정상추진

과제별 이행상황

38	Ⅲ-1-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주요내용	○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기소 ○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 적극 검토 ○ 남용방지를 위한 수사 관계자 교육 및 수사지휘 체계 확립 지속 ○ 남북관계 변화상황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필요성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2018년 주요 이행 실적 – 국가보안법위반 총 38명 중 12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18명 포함)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240명, 수사관 80명) ○ 2019년 주요 이행 실적 – 국가보안법위반 총 53명 중 18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30명 포함)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284명, 수사관 48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최근 4년 간 입건 및 기소 건수 감소 추세 ※ 2017년 42명 입건, 14명 기소, 2018년 20명 입건, 6명 기소 → 2019년 23명 입건, 1명 기소 → 2020년 32명 입건, 5명 기소(신수 기준) ○ 국가보안법위반 총 51명 중 11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19명 포함)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47명) ※ 공안분야 검사 타켓 교육 등을 통한 국가보안법위반 의율 신중 교육 지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법적용 지속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 기소유예 등 적극 고려하여 입건자 중 기소유예 처분자 비율이 약 31% 차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인 국가보안법의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적용으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40	Ⅲ-1-③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주요내용	○ 헌재 결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방안 마련 ○ 대체복무 도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대체복무 시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대체역법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19년 4월) -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를 통해 이뤄지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 설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병역법' 개정 ○ 대체역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 실시('19년 7월)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19년 12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대체역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완료 : '20년 6월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완료 : '20. 6. 9. ○ 대체역 편입심사 접수 시작 : '20. 6. 30. ○ 대체복무요원 대체복무 시작 : '20. 10. 26. ~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 제·개정 완료 - (복무기간)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이유로 36개월로 설정 - (복무분야) 합숙 시설이 갖춰져 있고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 - (복무형태)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없이 합숙근무 ○ 법령에 따라 현재 730명이 대체역으로 편입되었으며, 106명이 소집 근무 중('20.12월 기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대체복무 정상추진 중이며, 장애 요인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도 개선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축 완료에 따라 향후 일정은 대체역 접수 - 심사 - 편입 - 소집의 순으로 계속 진행 ○ 매년 약 600명(추정) 이상의 대체역이 편입·소집될 전망

41 Ⅲ-2-① 공적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공공데이터정책과
과제목표	○ 국민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주요내용	○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결과('18년)를 토대로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추진 ○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22,560	18,885	△3,675	△2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 수립
- 중장기('19~'21) 개방계획 수립('19.2.) 후, 기관이 보유한 개방 가능한 데이터 전면개방 추진
- 전수조사('18년) 후 '기관별 데이터 개방 이행계획' 수립·추진 중이며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점검

○ 제2차('17년~'19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에 따른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 스마트 교통정보, 먹는샘물정보, 철도종합정보 등 '19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96개 분야(누적) 개방 완료

'20년 이행실적 (1.1.~12.31.)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에 따른 '20년도 목표치 이행
- 2020년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20.6.~'20.12.)

※ 200개 기관 239회 현장 컨설팅, 비공개 대상 보유 테이블 재검토 등 수행

※ 기관보유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테이블기준) : ('18)2.8만개 ⇨ ('19)4.9만개 ⇨ ('20)9.8만개

○ 제3차('20년~'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생활환경(미세먼지 포함) 등 6개 영역 25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21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20.8.~'21.1.)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7)48개 ⇨ ('18)77개 ⇨ ('19)96개 ⇨ ('20)121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호갱노노, 직방 등), 날씨 및 미세먼지 정보(케이웨더, 미세미세) 등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서비스 개발사례 (누적) : ('18) 2,036건 ⇨ ('19) 2,448건⇨ ('20) 2,615건 ○ 민관협력을 통해 마스크 앱서비스를 개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정부가 Open API 형태로 개방한 공적마스크 제고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 맞춤형 서비스(웹 · 앱)로 개발하여 마스크 정책에 기여 ※ 100여개 이상의 마스크 앱서비스 출시(네이버 지도, 굿닥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 ○ 인공지능,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제1 · 2차 개방계획 및 '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활용 통해 신기술 개발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 부문 3회 연속('15,'17,'19) 세계 1위 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에 따라 '21년도까지 데이터 추가 개방(누적 14.2만개) ○ '21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지원(22개 중 12개) 사업 수행

42	Ⅲ-2-②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과제목표	○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주요내용	○ 시청각장애인용 TV 편의기능 개선 추진 및 저소득층 보급 확대 ○ 시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100	1,550	450	40.9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10,911	10,91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시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보급 확대(누적보급률 '18년 69.7% → '19년 83.5%)
○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막·수어·화면해설방송 제작비 지원
○ 수어영상의 위치변경 및 제거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개시('19.7)
※채널(6개) : KBS·MBC·SBS·YTN·JTBC·TV조선, 플랫폼(3개) : SKB·LG헬로비전·Skylife
○ 청각장애인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 자동변환 1차 시제품 제작('19년~)
※ 뉴스·시사·다큐 방송장르 평균 음성 인식률 : 90% 이상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전국 광역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용자 맞춤형 기능을 탑재한 시청각장애인용TV 무료 보급(16,067대) ※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 ('19) 83.5% → ('20) 99.4%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104개사, 46억원),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콘텐츠 제작(38편) 및 장애인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송콘텐츠 제작(3,490편)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청각장애인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브리핑 및 뉴스특보 시 현장 수어통역 영상 확대 송출(전면방송)
-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장애인단체·방송사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지상파3사 메인뉴스 한국수어 제공 (KBS : 9.3, MBC : 8.31, SBS : 9.21)
○ 시청각장애인용 특화기능을 부과한 유료방송(KT) 호환성 셋톱 개발
○ 시청각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 이용을 위한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활성화(KBS·MBC·SBS)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2차 시제품 개발 및 1차「음성-자막 자동변환」애플리케이션 시범서비스* 추진 *(방송장르) 뉴스·시사·다큐분야, (대상) 전국 만18~60세 청각장애인 약 300여 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정부브리핑 및 뉴스특보시 청각장애인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 수어통역 영상 확대 송출하여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돕기 위한 맞춤형 장애인용 TV 보급(연 15,000대)
- 시청각장애인용TV 성능개선 및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100% 목표
○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사업자(132개사) 대상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콘텐츠(30여편) 및 장애인 교육물 방송 콘텐츠 제작·보급(3,000여편)
○ 장애인방송 VOD 제작지원 확대(지상파3사 → EBS 추가 지원)
○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시청각장애인의 뉴미디어 접근성 제고
※ ('19~'20)음성-자막 변환 → ('21~'22)자막-수어 변환 → ('23년~)시스템 고도화
○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43	Ⅲ-2-③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목표

○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이용환경 개선

주요내용

○ (보조기기개발·보급)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 임대·보급 및 개발 지원 추진

○ (정보접근성 제고)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실태조사·컨설팅·인식제고 활동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4,236	4,805	569	13.4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2,974	3,350	376	12.6
(정보접근성 제고)	1,262	1,455	193	15.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웹에서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로 확대*, 취약계층 이용시설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지원(80개소), 민·관협력 정책 세미나 등 인식제고활동** 전개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 모바일 앱 관련('18.2), 무인정보단말 관련('19.12)

** ICT 전문기업(네이버, 구글 등) 연계 정보접근성 세미나(2회), 장애인단체 협력 컨퍼런스(1회), 국회 정보접근성 세미나(1회) 개최, 웹 실무자 대상 정보접근성 기술교육(8회) 운영

– (정보통신기기 개발·보급) 취약계층 대상 보조기기 체험기회 확대* 및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개발·보급**으로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향상

* 신규 ICT 생활체험관 구축(1개소) 및 찾아가는 보조기기 체험전시회(10개 시·도)개최

** 보조기기 개발보급 : '18년 정보통신기기 개발(4건)·보급(3,295대), '19년 개발(4건)·보급(3,351대)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 및 접근환경 개선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완성도 높은 표준 키오스크 개발(1종)*,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취약계층 주 이용시설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지원(40개소)***, 민·관협력 정책 세미나 등 인식제고활동**** 전개

* 시각장애인용 간편키보드 셀프체크인 키오스크(김포공항 국내선 내 설치 운영)

** 웹 사이트(1,000)건, 모바일 앱(300건), 키오스크(800건) 대상 실태조사

*** 복지관, 특수학교 등 총 40개 대상 전문가평가 96.8점(+47.4점), 사용자평가 96.4점(+26.9점)

**** 민간 ICT 전문기업(네이버, 구글 등) 협력 세미나(1회), 장애인단체 협력 컨퍼런스(1회) 개최, 실무자 대상 정보접근성 기술교육(4회) 운영

○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 (정보통신기기 보급) 취약계층 대상 보조기기 체험기회 확대* 및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보급**으로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향상

* 신규 ICT 생활체험관 구축(1개소) 및 찾아가는 보조기기 체험전시회(4개 시·도)개최

** 보조기기 보급 : 91종 3,450대 (시각 38종, 지체·뇌병변 27종, 청각·언어 26종)

결과분석	추진성과	○ 키오스크 · 웹 접근성 등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 - (키오스크) '19년 59.8점 → '20년 64.5점(4.7점↑) ○ 수혜자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 보급 지원을 통한 만족도 상승 - (영세기업) 기술 역량 제고(4개 기업) 및 판로 확대(10개 기업, 37억 규모 수출 상담)를 통해 디지털 포용기업으로 동반성장 지원 -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만족도 향상 : '19년 82.3점 → '20년 84.0점(1.7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이 관심과 시급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20. 1.58억)하여 개선 한계 → 키오스크 개선 관련 예산 확대 추진('21. 2.5억)

향후추진계획	○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20.6)에 따라 정보접근성 준수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 기준 등 우선구매 제도 확립 추진 ○ 지능정보 기반 취약계층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디지털 체험관 구축 등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 서비스 개발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임대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보급 편의성 증진

44	Ⅲ-2-④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과제목표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주요내용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개선 –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 확대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년 주요이행실적 〉

○ (임시조치 제도 개선) 임시조치 제도 개선 연구반을 통해 마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대상 의견 수렴(3.24, 4.13), 국회 의원실과 제도 개선안 협의 및 설명회 등 개최(9회)

○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사이버명예훼손 제도개선 정책연구반(5월~12월) 및 정책협의체 구성·운영(8월~12월),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12.11)

○ 위법한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 및 명예훼손 관련 주요 사례 전파('18. 11.)

○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지휘체제 확립하여 위법한 허위조작 정보 제작·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18. 11.~)

○ '18. 1. ~ '18. 12. 명예훼손범죄 총 487명 구공판(9명 구속, 478명 불구속)

〈 19년 주요이행실적 〉

○ (임시조치 제도 개선) 국회 이상민 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 주관 임시조치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7.4.),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의(4.23.), 제도개선 전문가회의(6.25.), 국회 상임위, 행정실 등과 제도 개선안 논의 등(6회)등

○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정보통신망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추가 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19.1월)

– 사이버 명예훼손의 위원회(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안*(위성곤 의원, '17.2.8.)이 기 제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상임위, 행정실 등과 협의 등 입법 지원(6회)

○ 가짜뉴스 등 명예훼손 사례 검토 및 수사기법 공유 등으로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인권, 명예, 수사지휘, 감찰」전문검사 커뮤니티에서「명예훼손」분야를 독립시켜 커뮤니티 신설('19. 3.)

○ 언론·미디어 명예훼손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검사TF를 구성하여 정기적 연구모임 개최('19. 2.~현재), 최신 이슈에 대한 사례분석 및 법리검토('19. 2.~6. 3회 개최)

○ '공적 인물 대상 악성 댓글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왜곡(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모욕적 표현에 대해 엄정대응 지시('19. 11.)

○ '19. 1. ~ '19. 12. 명예훼손범죄 총 493명 구공판(4명 구속, 489명 불구속)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임시조치 제도 개선)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등 반론권 보장을 위한 국회 협의 및 사업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원 계속

– 임시조치 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의(6.23.),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임시조치 제도 개선 사업자 간담회(7.1.) 등을 통한 입법 지원(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 ('20.5.29))

○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원 계속

–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19년)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방심위, 3.4.)

– 사이버 명예훼손의 위원회(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안*(위성곤 의원, '17.2.8.)이 기 제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상임위, 행정실 등과 협의 등 입법 지원 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20.5.29.)로 폐기

○ '20. 1. ~ '20. 12. 명예훼손범죄 총 544명 구공판(5명 구속, 539명 불구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표현의 자유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국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반론권을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연

향후추진계획	○ 표현의 자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시민단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지원(계속) – 정보통신망법 개정 의원안 발의(박광온 의원('21.1.22))의 입법지원

45 | Ⅲ-2-⑤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 공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 경 부	과·팀명	화학물질정책과
과제목표	○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물질별 유해성 확인 및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 심사결과를 고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내용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를 위해 1톤 이상 제조 · 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은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여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하도록 의무화 – 유해성정보를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되, 영업 비밀을 요구할 경우 사전심사제 도입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이행 지원	47,128	53,690	6,562	13.9
■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개선	4,857	5,696	839	17.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제도 운영 및 결과 공개**
– 기존화학물질 제조 · 수입 전 신고(물질명, 분류 · 표시, 용도 등)하는 경우, 제조 · 수입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 유예
* ('19년) 16,821종, 7,661개소 신고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및 공개**(누적 1,694종, ~'19.12)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통해 유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공개(화학물질정보시스템, 초록누리)
* ('18) 1,143종 → ('19) 1,694종

○ **화학물질 · 제품 관리 강화대책 발표**('19.1.31) **및 이행**
– 화학물질 등록체계 전면 개편('19.1.) 등 신규제도의 원활한 안착 도모, 국민 불안해소 등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1.31, 관계부처 합동)

'20년 이행실적 (1.1.~12.31.)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제도 운영 및 결과 공개**
– 기존화학물질 제조 · 수입 전 신고(물질명, 분류 · 표시, 용도 등)하는 경우, 제조 · 수입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 유예
* ('20년) 17,045종, 8,018개소 신고

○ **화학물질 등록으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물질 유해성정보 확보 ·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을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공개('20 누적, 2,012종)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5.7, 8.6, 10.27)를 통해 '20년 318종의 유해성정보 추가 공개

○ **화학물질 등록 등 산업계 이행지원 추진**
– 중소기업 대상 취급물질 확인 · 정보관리 등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19.2~12, 1,325개소)
– 소량 · 다품목 취급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6개 업종*)를 대상으로 공동등록 전과정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취급물질 중 업체수요, 국내 · 외 자료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54종) 및 저가 제공(609개소)
* 시험자료 생산비용의 3~5% 수준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 제공

○ **화학물질 양도시 영업비밀로 정보를 미제공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건강 · 환경 유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한 관리 유도**
– 화학물질 정보제공 현황조사(약 2,700개사) 통한 영업비밀 등 정보제공 관련 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6~7월), 실제 기업사례를 적용하여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범운영('20.10~11월)
– 현황조사 및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영업비밀 승인제도 관련 고시 제정('20.11월), 산업계의 이행 안내 위한 가이던스 제작 · 배포('20.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영업비밀 승인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 시행(21.1.16.)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이행 체계 마련** – 영업비밀 승인 상호 인정을 위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 (시행규칙 개정) 영업비밀 승인절차 등을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근거규정 신설(12월) * (고시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은 화학물질은 환경부에 영업비밀 승인신청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11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영업비밀 승인제도 안착 추진 필요** – 산업계 제도 이행 안내·교육 실시(계속)

향후추진계획

○ **연간 제조·수입량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1,963종 1,851개社) 등록 및 유해성 심사 추진**
– (등록) '21년까지 등록유예된 연간 1천톤 이상 기존화확물질(1,963종, 1,851개소)의 등록 추진
– (심사)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 380여종(기존 130종*, 신규 250종**) 등에 대해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인체·환경 유해성 47개 항목 유해성평가

* 기존물질 : 346종 중 188종 심사 완료('20.12월)

** 신규물질: '20년 등록물질 중 심사 미완료 물질 151종 포함 약 약 250종 심사

○ **화학물질 등록제도 산업계 이행 지원**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연중)
· 소량·다품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업종 주요 신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핵심·공통물질에 대하여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연중)
· 국내 GLP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 등록에 필요한 취급 물질에 대한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자료 조사·제공(연중)
· 물질별 기존 유해성 자료의 유무 확인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해, 등록·승인 시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 및 공개

○ **화학물질 정보제공 심의제도 운영**
–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정 및 정보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21.1)
–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21.3)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알권리 강화**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유독물질 지정(연중)
·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실시하고 유해성이 큰 물질은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공개(연중)
·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화학물질 관리제도 홍보 및 소통창구 운영**
– 산업계 지원단 운영을 통한 제도 이행 안내(연중)
– 산-민-관 협의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해소(수시)
– 기업, 국민 대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연중)

46	Ⅲ-3-①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정보상황과
	과제목표	○ 평화적 집회·시위 자유 적극 보장			
	주요내용	○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 ○ 대화경찰 도입,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강화			
	관련예산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금지통고 최소화〉 신고절차·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어 '일시적' 통행·생활불편 등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명확히 저촉되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시위로 간주, 금지통고 최소화 * (금지통고) '15년 193건→'16년 96건→'17년 74건→'18년 12건→'19년 9건 ○ 〈대1화경찰〉 '18.10.5부터 전국 全 경찰서에 대화경찰제도 시행 중이며, 집회시위 직·간접 관련 부서의 경찰관 中 대화·소통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 「대화경찰 인력풀(現 1,433명)」 구성, 운영 중

'20년 이행 실적 (1.1.~12.31.)	
	○ '20년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인해, 중대본·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집회금지·제한조치에 따라 경찰에서도 방역上 위험 최소화를 위한 금지통고(집시법 제5조1항〈공공질서 위협〉) 증가하였으나 * 코로나19 관련 금지통고 총 4,378건 / (서울행정법원, 2020아849)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특정 장소 운집하는 방식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방역지침內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절차·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로 '일시적' 생활불편·업무상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명확히 저촉되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시위로 간주, 금지통고 최소화 * (금지통고) '15년 193건→'16년 96건→'17년 74건→'18년 12건→'19년 9건→'20년 2건(코로나19 관련 제외) ○ 또한, '18.10월부터 전국에 대화경찰제도 시행 중으로, 집회시위 관련 부서의 경찰관 中 대화·소통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대화경찰 인력풀(現 1,677명)」 구성, 집회시위 현장에 적극 배치 중 * 전체 집회 대비 대화경찰 배치율: '19년下 16.8%→'20년上 53.9% →'20년下 56.7%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집회시위 신고·진행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 배치 활성화를 통해 주최측과의 소통, 참가자 및 주변 시민들의 마찰 방지, 각종 민원 해소 등의 활동을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대화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및 복제·장비 등 지속 개선 필요

향후추진계획	
	○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집회·시위 신고 등 관련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선 지속 검토 ○ '21년 대화경찰 운용 계획에 따라 △활동기준 마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복제·장비 개선 등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우수 활동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적극 시행, 제도 정착 유도

47	Ⅲ-3-②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경비과
	과제목표	○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법집행 과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지침 개정			
	주요내용	○ 살수차 운용요건 강화 및 장비사용 교육 – 살수차 △사용요건·명령권자 △거리별 수압기준 △최루액혼합살수 근거규정 등을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개정			
	관련예산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차벽 – '18.6월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도록 차벽운용지침 개정 완료 ○ 살수차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 – 개정안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요청 및 심의 – 살수차 안전검사 및 운용요원 안전교육 병행 실시(분기 1회)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완료('20.1.7) – 경찰개혁위 권고('17.9월)·헌재 결정례('18.6월) 등 반영, 살수차 사용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최루액혼합살수 근거규정 등 마련 ※ △살수차 사용요건 엄격화(대통령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시·도경찰청장으로 규정(제13조의2 제1항)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규정 및 준수의무 부여(제13조의2 제2항) △최루액혼합살수 근거규정 마련(제13조의2 제3항) ○ 살수차 안전검사 및 운용요원 안전교육 병행 실시(분기 1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경찰개혁위 권고안 등을 반영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 안전한 장비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해 인권·안전에 최우선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법집행 구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없음 (과제완료)

50 Ⅲ-3-⑤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주요내용	○ 정책제안 활동,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수렴 등 참여기구 역량 강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 촉진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 참여지원	3,020	2,815	△205	△6.8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1,539	1,539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정책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19년 188개소), 특별회의(19년, 385명), 운영위원회(305개소, 5,400여명) 등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

○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 마련·배포 등 독려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 친화적 정책 지속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233개소, 4,400여명), 특별회의(505명), 운영위원회(331개소, 5,500여명) 등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
- '제16회 청소년특별회의' 연간 활동을 통해 총 33개 정책제안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
  * '청소년 자립' 선정, 취업·정보·보호·경제 등 4개 분야 정책과제 발굴
  * 누구나 정책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포탈' 시스템 개편하여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추진
-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 마련·배포(연 2회) 등 독려 추진
- 지역별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6개 시군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의 부처 최종 수용률 96.9% 달성(총 33개 정책과제 중 32개 수용) ○ 청소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활동 기반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참여 등에 한계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코로나19 고려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소통팀 확대 구성, 청소년참여포탈 모바일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참여 활성화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정책참여 모델 운영 확대('20년 6개 지자체 → '21년 10개 지자체)

51	Ⅲ-4-①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주요내용	○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지속적 시행 – 당사자에 대한 대면·전화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조사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대상자 등에게 유리한 진술 기회 부여 ○ 보안관찰처분 면제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 –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요건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9년 상반기 기존의 검사 출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을 비검사 출신(교수, 변호사)으로 교체하는 등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시도 ○ 2018년 보안관찰처분 2건, 기간갱신 7건, 기간갱신기각 1건, 면제 2건 의결 / 2019년 보안관찰처분 1건, 기간갱신 4건, 기간갱신기각 3건, 면제 3건 의결 ○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요건을 적극 해석하는 등 검사 직권 면제 청구 수 증가
'20년 이행실적 (1.1.~12.31.)	○ 당사자가 불응하지 않는한 가급적 대면, 전화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사안조사 시행 ※ 일부 사안에서는 사안조사공무원이 직접 가족, 병원, 담당 경찰관과 연락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적극 노력 ○ 2011년 이후 5회 연임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을 교체하는 등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 2020년 보안관찰처분 5건, 기간갱신 6건, 기간갱신기각 1건 의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신중 검토하여 3건 불청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한 적극적 사안조사 통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도모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도모하고 외부의견 적극 청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안조사시 대상자들이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안 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안보 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 ○ 양심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52	Ⅲ-4-②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주요내용	○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요건과 절차 철저히 준수 – 전국 검찰청에서 통신 수사 시 법정 요건과 절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지도 ○ 인권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통신비밀보호 법제 정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인권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되고 선진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정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검찰수사지원 전화요금 및 우편료 등	110	11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 1.~'19. 10. 총 8회에 걸친 관계기관(대검, 국정원 경찰 등) 협의 과정에서 통신수사 시 법정 요건과 절차, 판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자는 공감대 형성

○ 통신비밀보호법 1차 개정('19. 3. 28. 정부안 제출 → '19. 12. 31. 시행)

1차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내용

►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 신설(기한없음 → 원칙 1년, 안보범죄 3년)
►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수사 시 요건 강화(보충성 요건 신설)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범위 확대(기소중지·수사 중 미통지 → 통지)
► 통신사실확인 사유 통지 신청권 부여(사유 미통지 → 통지)

'20년 이행실적 (1.1.~12.31.)

○ 통신비밀보호법 2차 개정('20. 2. 10. 의원 발의 → '20. 3. 24. 시행)

2차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내용

► **인터넷 회선 통신제한조치 집행 종료 후 법원 승인청구 제도 도입**
– 보관 등이 필요한 취득자료에 대해 법원에 승인 청구, 미청구 또는 미승인 자료는 폐기, 폐기결과보고서 법원 송부

○ 사경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검사 승인청구 · 기각서, 폐기결과보고서 등 법 개정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서식 정비

– 대검, 경찰, 국정원 의견 취합('20. 4.~6.) → 국정원 인터넷 회선 감청장비 시연 참관 및 서식 마련('20. 11.) →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21. 1. 1.)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준수를 통한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호 철저 노력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통신비밀보호 법제 정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 사후 허가 필수화 등을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3차 개정 추진
– '21. 3. 4. 차관회의, '21. 3. 9. 국무회의 의결(각 원안의결)
– '21. 3. 중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53	Ⅲ-4-③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주민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과제목표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 예방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번호 변경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381 (381)	467 (467)	86	22.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주민과 제도개선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류* 확대('19.11.)
* 긴급전화센터(1366)의 상담사실확인서 추가

○ 위원회 활동내역 및 성과
– (위원회 운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건 관련 총 49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1,292건 의결
– (제도 개선) 가족관계증명서상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시행('18.11.~), 처리기간 단축 운영('18.10.~), 지자체 통지 의무 이행 점검 강화('18.11.~), 피해자 권익 구제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19.2., '19.1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경찰청 소관)에 변경제도 포함('19.6.), 주민등록번호 변경심사 처리현황 온라인 조회 서비스 실시('19.7.)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 신문(지면광고, 기고문 게재 등),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용 리플릿 제작·배부
– 일선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은행연합회 등 현장방문 및 제도홍보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주민과 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성별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20.10.5.~)

○ 위원회 활동내역 및 성과
– (위원회 운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건** 관련 총 24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983건 의결**
– (제도 개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2조의11) 개정을 통한 민간위원 비중 확대(6→9명) 등('20.10.13.)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 온·오프라인 **광고, 보도자료·인터뷰·자료집** 발간 등 **매체 활용** 등 **다각적 홍보** 병행 실시
– 자치단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업무편람 제작 및 배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설치('17.7.~) 및 총 2,71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에 앞장섬('19.12.31. 기준) ○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는 피해를 막아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안전 장치 역할 ○ 여성위원 확대 · 현장전문가 위촉 등 성별 · 지역별 · 직능별 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토대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주민등록번호 업무 처리 과정상 엄격한 법률 적용 및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한계 ○ 읍 · 면 · 동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번호변경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부족

향후추진계획

○ 주민과 제도개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 의결 기간 단축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21.2.26.) 및 국회 의결('21.하반기) 추진

○ (위원회 운영)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운영 활성화 등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제도 개선) 국민 권리구제 확대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 의결 기간 단축
- 인터넷 변경 및 이의신청 제도 신설('21.연도중)

○ (제도 홍보) 대국민 홍보 및 피해자 접점기관 대상 맞춤형 홍보 병행
- 변경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홍보* 지속 실시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및 SNS 활용, (오프라인) 방송매체 및 버스 · KTX 광고 등

54	Ⅲ-4-④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전자감독과
	과제목표	○ 신상정보 오등록 등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시스템 고도화 및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신상등록 정보의 정확성 · 신속성 제고 ○ 신상정보등록의 면제제도의 안정적 시행			
	주요내용	○ 유관기관과 협업강화 – 신상정보제도 유관기관 법무부(전자감독과),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경찰청(여성대상 범죄수사과)과 정기(연 3회) 및 수시 실무자 협의회 개최 ○ 등록정보 변동여부 및 불일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 신상정보등록의 면제제도의 안정적 시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신상정보등록의 면제제도 시행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20. 2. 4.) –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신청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 생략 ○ 신상공개 · 고지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 실시('19년 4회 실시, 9,362건) ○ 법무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연 3회) – 신상정보의 신속성 · 정확성 제고, 신상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및 정책 반영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신상공개 · 고지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 실시 – '20년 6회에 걸쳐 14,541명 점검하였으며, 불일치자 1,198명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현행화 실시 – 주거부정 · 제출의무 불이행 등 소재불명자 등록정보 점검 결과를 경찰과 공유,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소재불명 상태 최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최소화 ○ 신상정보등록 면제제도 시행('20년 320건, 누적 811건)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 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 · 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협의를 위한 협업 강화 – 신상정보 등록 · 관리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보유정보(주민등록 · 수용 · 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 등록정보 등)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정보 등록 · 관리 ○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서울메트로, 부산 · 광주 ·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역사, 객차 모니터)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연중), 유튜브 · KTV 등 활용 신상등록제도 및 성범죄 예방 홍보 영상 게재 ○ 신상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등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2020 성범죄백서」 발간, 범죄예방 및 성범죄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상정보공개·고지자에 대한 일제검검 통한 정보 현행화로 공개·고지대상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최소화에 기여 ○ 신상정보 오등록 ZERO 달성 –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등으로 신상정보 오등록 전무 ○ 신상등록제도 홍보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신상정보 등록면제를 통해 등록기간 중 재범이 없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 ○ 성범죄백서 제작('20. 2. 발간 및 배포)을 통해 범죄예방 및 성범죄 재범방지 대책 수립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일제검검 정기화 지속 실시, 인권침해 최소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신상등록정보 변동여부 및 불일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 기록보존의 안전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종이문서로 보관·관리 중인 신상등록 기록물에 대해 이미지화 추진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화문서 사용을 위한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 신상정보 유관기관과의 협업 지속 및 강화, 오등록 방지 등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 신상등록 면제제도의 안정적 시행으로 등록의무 이행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원활한 사회 복귀 도모

55	Ⅲ-4-⑤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팀명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제목표	○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주요내용	○ SNS, 인터넷 등을 통한 사진·동영상 유포 등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에 따라 '20.8.5일자로 행안부 및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국회 제출('17. 12. 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18. 1. 31.)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국회 심의 대응(~'19. 12. 31.)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폐기('20. 5. 29.) ○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및 개인영상정보 관련 제도개선 검토('20. 8. 5.~ 12. 23.) ○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제9회 전체위원회 보고('20. 12. 23.) –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새로운 영상기기 출현을 대비한 위임규정 신설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검토

58	Ⅲ-5-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생활교통복지과 모빌리티정책과 택시산업팀

과제목표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전국적 확대
–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주요내용

○ 저상버스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 · 시외버스 도입, 이동편의 실태조사, BF인증 시범사업 추진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
– '18년부터 균특별회계 '시 · 도 자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시 · 군당 5천만원/年 지원

관련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64,813	72,710	7,897	12.1
■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택시지원사업)	3,636	5,392	1,756	48.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
○ ('18) 17개 시·도에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지원(34,000백만원, 798대), 14개 시·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 지원(3,660백만원, 150대), BF인증시범사업 추진(390백만원, 세종, 강원) 및 이동편의 실태조사 추진(특·광역시 대상)
○ ('19) 17개 시·도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지원(46,698백만원, 1,085대), 15개 시 · 도 특별교통수단도입 국고보조금 지원(4,700백만원, 239대), BF인증시범사업(390백만원, 충북 음성, 보은) 및 이동편의 실태조사(9개道),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사업 추진(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도입 4개노선)

〈공공형 택시〉
○ ('18) 78개시 39억원 편성(5천만원/시)하여 지자체 교부요청에 따라 44개시 25억7백만원 지원, 공공형택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 개최('18.6) 및 사례집 배포('18.9), 공공형택시 철도연계 서비스 개시('18.7)
* 공공형택시와 철도를 연계시켜 지역주민이 전화 한통화로 두가지 교통수단을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19) 예산 31.5억원 편성하여 지자체 교부요청에 따라 전국 51개시에 전액 지원, 농어촌 대중교통 개편 시범사업관련 지자체 간담회 및 지침 배포('19.1), 공공형택시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용역 착수('19.8),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범사업지 효과분석 설명회 개최('19.12)
* 공공형택시 운영현황 검토 및 도입효과 분석, 대중교통 낙후지역 효율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
○ 17개 시·도에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지원(57,701백만원, 1,355대)
○ 14개 시 · 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 지원(5,261백만원, 259대)
○ 이동편의 실태조사(8개 특·광역시·자치시), BF인증사업 추진(390백만원, 충북 증평, 경남 고성)

〈공공형 택시〉
○ 사업예산 36.4억원 편성하여 지자체 교부요청에 따라 전국 54개시에 전액 지원
○ 공공형택시 확대보급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형택시 운영현황 검토 및 도입효과 분석('20.5)
○ 공공형택시 사업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정산시스템 보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점검('20.6)
○ 공공형택시 운영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20.9) 및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운영성과 점검('20.11)

결과분석

추진성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도입보조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지원(1,355대)
- 이동편의 실태조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등 조사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259대)
- BF인증 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법을 적용하여 이동편의시설 개선(충북 증평, 경남 고성)
- 교통약자 장거리이동지원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연장 추진(4개노선,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당진, 서울↔전주) 및 휴게소터미널 등 시설개선 10개소

〈공공형 택시〉

○ 기존 100개 시·군('17) → 126개 시·군('18) → 136개 시·군('19) → 140개 시·군('20) 확대

- 공공형택시 혜택주민도 약 22만명 증가('17. 22만 → '18. 36만 → '19. 40만 → '20. 44만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

○ 「제3차('17~'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에 따라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 도입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내버스대수	34,302	34,737	35,172	35,607	36,042
저상버스 보급대수	6,647	8,663	10,681	12,926	15,178
보급률 (%)	(19%)	(25%)	(30%)	(36%)	(42%)
필요대수	-	2,016	2,018	2,245	2,252

- '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저상버스와 일반버스간 차액)을 지속 지원 중이나, 보급률('20년 28.8%)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
- 특히, 일부 버스업체는 대·폐차시 기존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고 있어 보급률 답보 상태이며, 지역별 보급률 편차도 있는 실정

〈공공형 택시〉

○ 공공형택시 확산을 위해서는 버스 중심의 노선체계의 개편 없이는 한계

향후추진계획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

○ 저상버스 도입보조

- 제3차('17~'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에 따라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를 저상버스로 도입 지속·확대 및 저상버스 대폐차 의무화 추진(천준호 의원 발의예정 '21.3)

○ 이동편의 실태조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지속적인 예산 반영 필요
- 매년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 제3차('17~'21)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17.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운행 전지역 법정대수 100% 달성 추진

○ BF인증 사업

- 전국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선정하여 인증사업 추진
- 인증사업 완료지에 대한 효과평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 '21년에는 시외버스 노선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후 '22년부터 점차적으로 노선을 확대하여 본사업 실시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 법정 5개년 계획인 제4차('22~'2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21.12 고시예정)

〈공공형 택시〉

○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주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1년도 사업비 조기교부 완료

○ 공공형택시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21년 사업 집행율을 제고하여 '22년도 예산 증액 추진

59	Ⅲ-5-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연안해운과

과제목표

○ 도서민의 여객 운임지원을 통한 이동권 증진
-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 교통비 부담 지속 완화

주요내용

○ 도서민의 여객선·차량 운임 지원
- 도서민 여객·차량 운임의 최대 50%를 정부 및 지자체가 정률 지원
  * 도서민 여객운임 부담이 최대 5,000~7,000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추가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내항여객선운임보조사업	14,595	14,595	-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595	14,59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19년 **12,050백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서민 3,557천명** 및 **도서민 차량 645천대** 수송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년 **14,595백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서민 2,994천명** 및 **도서민 차량 684천대** 수송

○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
- 약 1시간 이내(8,340원 미만 구간, 도서민의 약 70%가 이용 중)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및 도서민 소유 화물차(5톤 미만)는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기존 도서민 운임 지원 기준)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되, 고운임 여객선 구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7천원까지 부담,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각각 30%, 50%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도서민에 대한 지속적인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20년도 단거리 생활구간 운임과 비영업용 화물차 운임에 대해 지원율 확대(20%→5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감소 추세로 도서민 여객선 이용률 감소(△16%) ○ 운임지원율 확대 시 지방재정 추가 확보 곤란 등

향후추진계획

○ 도서지역 내 거주중인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운임지원(무료승선)을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
  * 시내버스·기차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무임승차 기시행중이며, 대중교통법 개정('21.1.5)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편입

60	Ⅲ-6-①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전자감독과
과제목표	○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은 억제하되 인권침해 최소화			
주요내용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능 개선을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활 편의성 증진 ○ 부착명령 임시해제 제도 활성화 –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임시해제 심사·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수사나 재판자료 등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특정범죄관리	18,687	22,215	3528	18.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한 일체형 전자장치 2,982세트 보급('18. ~ '20.)
* 휴대용 추적장치의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 재범위험성이 없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임시해제를 통해 사회복귀 증진
– 재범위험성 분석을 통한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총 157명
○ 법령에 근거한 수신자료 제공 및 '수신자료 폐기 대상 확인의 날'(월1회) 운영 등 체계적 관리
– '18년 ~ '19년 수신자료 제공 건수 : 총 68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대상자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한 '2020년형 전자장치' 제작(1,293세트)·추가 보급('20. 11. ~ 12.)
○ 재범위험성 분석을 통한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총 123명
○ 법령에 근거한 수신자료 제공 및 폐기 등 체계적 관리
– '20년 수신자료 제공 건수 : 총 22건
○ 범죄피해자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도입, 시행('20. 2 ~ 12.)
*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 접근 시 경보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시행('20. 8.)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및 인권 보장 : 총 136명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피고인들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소형화·경량화된 '2020년형 전자장치' 제작·보급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 재범위험성이 없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임시해제를 통해 사회복귀 증진 ○ 수신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체계적 관리 이행 ○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를 도입하여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 기여 ○ 전자보석 제도 도입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 확대, 미결구금 부작용 해소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자장치의 소형화·경량화 및 측위정확도 향상 등 지속적인 성능 개선 추진
○ 범죄피해자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지속적 추진
○ 전자보석 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및 인권 보장
○ 재범위험성이 없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임시해제를 통해 사회복귀 지원

Ⅳ.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2. 참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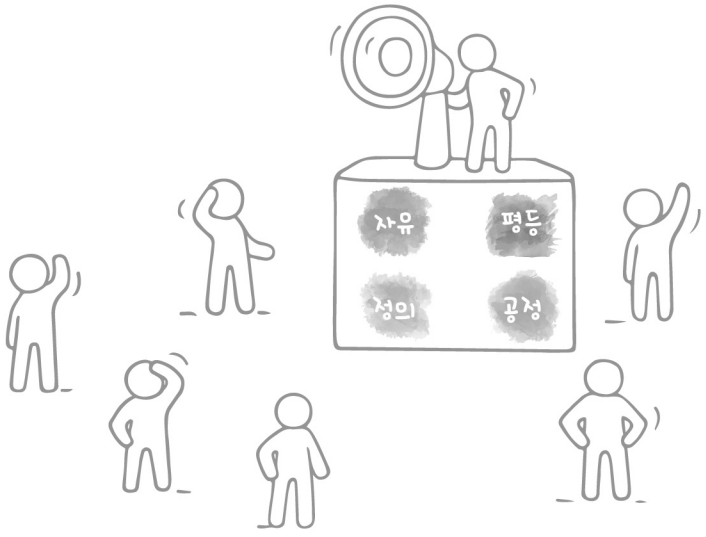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8	-	8	-	-
1.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3	-	3	-	-
2. 참정권	5	-	5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61	Ⅳ-1-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정상추진
62	Ⅳ-1-②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정상추진
63	Ⅳ-1-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정상추진
【참정권】			
64	Ⅳ-2-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정상추진
65	Ⅳ-2-②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체계적 보장	정상추진
66	Ⅳ-2-③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정상추진
67	Ⅳ-2-④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정상추진
68	Ⅳ-2-⑤	지역인재의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정상추진

과제별 이행상황

61	Ⅳ-1-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강화 추진			
	주요내용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
 * 2018년 – 영월교도소 등 36개 기관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60건, 설문조사 3,013건, 면담 457건
 * 2019년 – 진주교도소 등 31개 기관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97건, 설문조사 3,801건, 면담 261건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2018년 162회 6,161명 교육 → 2019년 157회 7,211명 교육
○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직접조사 강화
 * 직접조사 '17. 1,745건 → '18. 1,778건 → '19. 2,138건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한 신속한 직접조사 활성화
 * 화상조사시스템 '17. 32개소 → '18. 40개소 구축 완료 → '19. 47개소 구축 완료

'20년 이행실적 (1.1.~12.31.)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
 * 부산구치소 등 47개소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150건, 설문조사 5,642건, 면담 251건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34회 1,846명 교육
○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직접조사 강화
 * 직접조사 '17. 1,745건 → '18. 1,778건 → '19. 2,138건 → '20. 2,532건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한 신속한 직접조사 활성화
 * 화상조사시스템 '17. 32개소 → '18. 40개소 → '19. 47개소 → '20. 55개소 구축 완료
○ 중요사건 현장조사 활성화
 * 인권침해사건 현장조사반을 사전 편성하여, 중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시에 현장에 임장하여 효과적인 조사 실시(보호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에 대해 신속한 인용·구제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인권침해적 요소 사전 제거, 대상기관 인권지수 향상 ○ 다양한 인권교육으로 인권의식 향상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강화, 화상조사시스템 지속적 확대 실시 등으로 인권 사각지대 발굴·해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정기 실태점검, 인권교육 지속 실시
– 신속한 직접조사 활성화
– 인권침해사건 현장조사반 지속 운용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추진

62	Ⅳ-1-②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병영문화혁신팀 인권담당관실 양성평등정책과 정신전력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장병의 고충 및 복무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적극적 관리 및 지휘 조언으로 복무 적응 여건 보장
○ 병영 내 취약계층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필요 침해를 방지하여,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장병 기본권 보장 추진
○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 육성에 기여
○ '책 읽는 병영' 조성을 통한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주요내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 : 383명('17년) → 660명('21년)
○ 취약계층 사적 생활영역 및 복무여건 개선
– 장병들에 대한 기본권·고충처리 교육 강화
– 장병들의 구직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구직휴가 신설, 장례 휴가 확대 등
○ 장병 인권침해 상담/신고시스템 및 인권자문제도 운영
– 군 인권지키미시스템·국방인권모니터단·군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등
○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한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및 여군 인권 향상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고충 상담관 운영, 현장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 등
○ 장병의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위한 독서 코칭 프로그램 사업 확대
– 독서 코칭 전문가를 부대로 파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코칭 실시
* 대상/운영 : 각군 및 국직의 대대급 이상 부대, 참가인원 40명 내외/ 부대당 6회씩 코칭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32,639.4	36,556.2	3,916.8	12.0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28,135	31,501	3,366	12.0
■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22.4	22.2	△0.2	△0.1
■ 군대내 성폭력 근절 관련	4,153	4,375	222	5.3
■ 독서코칭 프로그램*	329	658	329	100

* '20년부터 국방부 예산 신규편성 / '20년 : 문체부 300개 부대(2,007백만원), 국방부 50개 부대(329백만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 증원 추진 : 383명('17년, '18년) → 522명('19년) → 633명('20년)
– 예산 편성 확대 : 158억원('17년) → 166억원('18년) → 201억원('19년) → 281억원('20년)
○ 병영문화 개선을 통한 장병 기본권 보장
– '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제정('17.12.27.),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정책 추진
* 정책 추진과제 : ① 군인 기본권 증진기반 조성, ② 군인의 의무준수 생활화, ③ 존중과 배려의 병영생활 정착, ④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 장병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19. 2. 1. 부),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19. 2. 1. 부) –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개시, 점진적 확대('18. 4월 부) – 장병 사적지시 및 운용 근절을 위한 규정 반영('18. 12월) * 행정규칙(국방부훈령인「부대관리훈령」), 육 · 해 · 공군 및 해병대 규정 정비 – 취약계층의 불필요한 침해 방지를 위한 현장활동 정례화 : 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반기 1회) * 장병 설문조사, 병영문화 개선 관련 현장 확인 등 –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 선발 정례화(반기 단위) * 포상금(2,800만원), 부대/개인표창 등을 통해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일선 부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병 구직휴가 신설(2일) 및 가족 장례목적 휴가 기간 확대(자녀 · 조부모 사망시 2일 → 3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19. 9. 3. 부) ○ 장병 인권침해 상담/신고시스템 및 인권자문제도 운영 등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을 통한 상담/진정 실적) 상담 3,239건, 진정 139건 처리 – 국방인권모니터단 제안 검토(224건) 및 제도 개선* 반영 * 군인권지키미 모바일전용체계 구축, 마트 관리병의 휴대폰 사용 차별 해소, 불법 사이버도박 처벌기준 상이 해소 등 8건 – 군 인권자문변호사제도 운영 : '19년 8개부대 시범운영 ○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및 여군 인권 향상 – 군 고위급 등 전 장병 대상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방법 다양화 및 교관역량 강화를 통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성인지 교육체계 정착 – 국방부「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 및「양성평등위원회」 발족, 전담조직 기능 보강 등을 통해 군내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성폭력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보강 및 법무관 등 사건처리 관계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가해자 처벌을 엄정히 함으로써 성폭력 없는 군대문화 조성
'20년 이행실적 (1.1.~12.31.)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 인원 증원 : 522명('19년) → 633명('20년) – 예산 편성 확대 : 201억원('19년) → 281억원('20년) ○ 병영문화 개선을 통한 장병 기본권 보장 –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20. 7. 1.) – 폐지된 군 영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군기교육제도 신설('20. 8. 5.) – 군기훈련(구, 얼차려)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20. 5. 26.) – 변화된 병영환경을 반영한 '대대급 이하 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최신화 재발간('20. 12월) * 일선부대에서 각종 병영문화 개선 정책 구현 및 부대관리시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자료 ○ 장병 인권침해 상담/신고시스템 및 인권자문제도 운영 등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 운영 * 상담 및 진정 접수/처리(총 2,807건)

구분	상담	진정
국방부	172건	41건
육군	2,050건	60건
해군(해병대 포함)	280건	8건
공군	194건	2건
계	2,696건	111건

	– 제7기 국방인권모니터단(장병 40명, 시민 14명) 운영 * 모집·선발('20.4~5월), 제6기 활동우수자 포상(5.27.), 위촉식 및 간담회(6.23.), 모니터단 제안내용 검토(33건) * 모니터단에게 주요정보(군 인권콘텐츠 공모전, 군 인권송, 인권침해사례 웹툰 등) 제공 – 군인권자문위원회 운영(분기 1회) * 위원장 포함, 5인~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인권 정책 및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군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및 구제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군인권 자문변호사제도 운영('20년 전면 시행, 105개 부대 대상) * 군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변호사 중 각급 지휘관이 위촉, 부대에서 직면하는 인권현안 해결방안을 자문 ○ 맞춤형 성폭력예방(성인지) 교육 내실화 – 전 장병 성인지교육 의무화 및 참여율 제고('20년 이수율 95.0%, 전년대비 0.5% 상승) * 코로나19 고려 토의식 교육대상자는 민간 전문강사에 의한 소집교육 및 원격교육, 그 외 계층은 원격교육 및 평가 또는 부대 자체교육 실시 – 고위직 및 사건처리관계관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 대령 진급자 교육과정 중 성인지교육, 군법무관·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 담당관 대상 대외위탁교육 실시(6~12월) –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관 역량 강화 * 사관학교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8월) 및 4대 폭력예방, 양성평등, 성인지력 향상 등 동영상 콘텐츠 개발(12월) ○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시스템 보완·발전 – 사건 발생 시 가해자 공간적 분리(피해자 의사 고려) –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중 적용(지속) * 징계양정기준 강화(기본:중징계),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 회부/퇴출 조치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부대관리 훈령 개정(10월) * 가해자 및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압력, 회유, 소문 유포 등 행위 차단 명시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및 성폭력사건처리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 성고충전문상담관 (38명→48명), 대외위탁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7월, 11월) 등 참여 – 신고 즉시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과 연계하여 심리안정 지원 * 해바라기 센터, 민간국선변호사 등 외부기관과 거버넌스 구성 통합지원 – 군인 간 성폭력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 운영실적 제고 * 신청 건수(32건) 대비 100% 지원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21. 1. 1.시행) * 성폭력 피해자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결정,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 진행 경과 통지 제도 마련 –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2월) ○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 軍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및 내부 징계기준 마련 *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처리기준(표준안)' 각 군 검찰부 하달(5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발령(8월) * 디지털 성범죄 형사 및 징계사건 양형기준 준수 및 엄중처리 재강조(10월) * 군 장병용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군법교육 동영상 자료 제작(10월) – 디지털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4월, 7월, 12월) * 최근 N번방 사건 관련 지휘관 주관 특별 정신교육, 군법교육 등 실시 ○ 여군 인권 향상 – 주요 직위 여군 보직 확대 및 우수 여군 상위 계급 진출률 향상 * '20년말 기준 여군 확대계획 대비 총 13,922명으로 전체 간부의 7.5% 차지, 계획대비 초과달성(+0.1%) * 정책부서 영관급 보직율 지속 확대('18년 5.4% → '19년 5.9% → '20년 6.6%) 및 접적·경계부대 보직 확대 ('18년 644명 → '19년 702명 → '20년 888명) * '16년 대비 '20년도 여군 상위계급 진급률 지속 향상 : 소령 → 중령 300% 증가(20명 → 71명), 중령 → 대령 400% 증가 (2명 → 8명)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임신 초기(15주 이내) 유 · 사산휴가 일수 확대(5 → 10일) 및 배우자 유 · 사산 휴가(3일) 신설, 임신검진휴가 개선(임신기간 중 매월 1일 → 10일) 등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19. 12월)
  * 군어린이집(2개소), 공동육아나눔터(7개소) 확충으로 양육여건 개선
  * 20인 이상 시설 군 어린이집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9년~)
- 각 군 여성 편의시설 확충
  * 全 부대(육군, 해병:독립 소대급 이상, 해 · 공군:대대급 이상) 여성 필수시설 부족소요 파악('18.11.~'19.3월) 및 '20년 개선계획 수립
  * '20년 계획된 여성 필수시설 1,338동(562억) 설치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병사 대상 독서코칭 프로그램 수혜부대 확대
- '12년부터 독서코칭 프로그램 운영, '19년 300개 부대 → '20년 350개 부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도별 운영 현황	50개	50개	50개	150개	200개	250개	260개	300개	350개

* '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예산 전액 지원 / '20년 국방부 예산 신규 편성(329백만원)

- 20년 코로나 집단감염 방지 위해 독서코칭 수업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온라인 실시간 강의, 코칭 영상과 독후활동지 작성) 병행 활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장병 고충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장병 복무 적응 지원을 강화

○ (병영문화 개선) 사회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 장병 설문조사 결과 비교('19.4월 → '20.2월) : 사회와의 소통(65.8% → 98.4%), 군생활 만족도(92.9% → 95.5%), 부조리 신고(85.2% → 93.0%), 자기개발(83.7% → 96.8%), 부대단합(73.5% → 89.2%) 등 긍정적 효과 발휘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한 인권침해 신고 · 상담 처리,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및 각종 인권자문제도 운영으로 군내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군인권실태 조사(국방부 · KIDA 공동조사, '20. 8. 27. ~ 9. 25.) 결과, 병사(4,371명)의 경우 "군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8.1%('19년 86.2%)로 증가, "인권침해 경험 있다"는 4.9%('19년 6.0%)로 감소

○ 성인지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 현장중심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

○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보강(38→48명) 및 군 수사관 등 사건처리 관계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립

○ 여군의 역량개발과 군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부서, 전투부대 주요 지휘관, 접적 · 경계부대 등 주요직위 보직을 지속 확대

○ 독서코칭을 통한 집단적 독서활동으로 장병 독서습관 및 소통문화 형성, 군 복무 적응성 증진
* (독서코칭 참여 전) 월평균 독서량 1.6권 → (독서코칭 참여 후) 월평균 독서량 3.3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군 인권자문변호사제도 운영
- 격오지 부대의 경우 자문변호사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자문료 등 예산의 현실화 필요

○ 군내 다각적인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
- 계급 사회인 군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다수 발생
* 성폭력 피해자는 신분노출 및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 상담 ·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

○ 전 장병 대상 원활한 상담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 여성 인력 확대 및 격오지 산재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 상담인력 현실화 필요
* 현재 군단급까지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사 · 여단급 이상 부대까지 확대배치 필요

○ 독서코칭 프로그램은 '12년부터 문체부(사업예산 전액 지원)와 협업하여 운영 중이나, '18년 이후 문체부 예산 삭감 추세에 따라 '20년에 국방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함.
→ 독서코칭은 장병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633명('20년) → 660명('21년), 27명 확대), 운영예산 확대 추진(지속)

○ 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 등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병영문화 개선소요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 제8기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 시민 인권모니터단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및 부대 현장견학 기회 제공 등

○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내실화

– '군 인권자문변호사제도 운영지침' 마련 및 부대별 통합 자문 등 부대 특성에 맞게 운영

○ 성인지 교육 실효성 제고

– 성인지 원격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표준교안 개발 : ~12월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전 장병 성인지 교육방법 개선 검토 및 시행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정책 이행실태 현장 확인 : 연중

* 「양성평등위원회」 현장방문, 국방부 · 각군본부 주관 지도활동 등

○ 성과 있는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전군 성폭력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 : 반기 1회(하절기 및 연말연시)

* 지휘관 주관 특별 정신교육, 법규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등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지속 추진 : 연중

* 장병 일과 이후 휴대폰 사용 전면시행('20. 7월)에 따른 인식전환과 교육체계 다양화, 식별 및 예방체계 구축, 단속 및 위반자 처벌강화 등 지속 추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분기 1회

* 성평등제도개선 및 성평등교육문화, 성폭력예방대책 소위원회 활동 등

○ 피해자 보호 · 지원, 사건 처리의 공정성 강화

– 성고충전문상담관 지속 확대('21년 50명 배치)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등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 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연구용역 추진 : 7월

– 성폭력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 지원 활성화 및 보완요소 도출

○ 여군 인권 향상

– 여군 인력을 간부 정원의 8.1%까지 확대(~12월) 및 각 군 보직심의 시 여군 보직방안 검토 지속

– 군 어린이집(신규 8개소) 확충, 군 부대 가족친화인증(신규 14개) 확대 등 일 · 생활 균형 기반 조성 지속(~12월)

–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여성 필수시설 확보

* '20년까지 1,338동 확보, '21년 27동 추가 확충 예정

○ 독서코칭 프로그램 수혜부대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수혜부대 연차별로 확대 지속

–「'19~'23 독서문화진흥계획」에 따라 '23년까지 수혜부대 500개(대대급 부대 약 30%)로 확대

* '20년 350개 부대→'21년 400개 부대(문체부 300개, 국방부 100개)

63	Ⅳ-1-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민권익위원회	과·팀명	민원조사기획과
과제목표	○ 장기간 미해결상태의 집단민원을 적극 조정하고,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한 각급기관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고충의 근원적으로 해소 추진			
주요내용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해결 추진 ○ 각급기관의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충민원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295	1,625	330	2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총 112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44,332명의 민원을 해소

○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지원
- 지자체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지자체의 고충처리 역량 증진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17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총 53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37,498명의 민원을 해소

○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지원
- 공직자 대상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총 11회, 11,946명 수료)
-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8회, 893명)
- 지자체의 고충처리 역량 증진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조정해결함으로써 주민숙원 해소 * (사례)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70년 묵은 민통선 내 무주토지 집단민원에 대해 범정부 TF 구성으로 국유화 및 주민 매각 조정으로 537명의 주민 숙원 해결('20.8.4) → 강원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 매각('20.8.4, 537명), 경주시 한센인촌 주거·환경개선대책 마련('20.10.28, 137명), 김포시 장기 자동집하시설 악취 피해대책 마련('20.10.27, 1,470명) ○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민원처리 마인드 제고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 51.1점('18년) → 52.3점('19년) → 55.4점('20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집단민원 조정 추진 계속(연중)
- 전문적·효율적·체계적 대형 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특별법 체계 마련 추진(계속)

○ 각급기관 민원담당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계속)

64	Ⅳ-2-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인사혁신기획과
	과제목표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허용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 대안 마련			
	주요내용	○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추진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 조정 등			
	관련예산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17년~'20년) –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 조정 관련 논의 실시('17.11.29)하였으나,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음, '20.5월 임기만료폐기 * 이재정 의원안, 이양수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등 ○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2.8. 공개, 교원 및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관련 검토의견 포함), ILO총회(최종 안건 제외) 등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논의사항 검토 ○ 인권위 권고('19.4.25, 공무원 ·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 관련 이행계획 제출('19.7.25.)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 제출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정 대비 검토('20년~계속) – 국민동의 입법청원, 강민정 · 이재정 · 민형배 · 강은미 의원안 발의 ○ '정치단체' 범위 구체화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8헌마551, '20.4.23.)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결취지에 따라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 확보,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지방공무원법, 군형법 등 4개 법률 일괄 개정 추진, '20.9.24. 입법예고 보도자료 배포 * 입법예고('20.9월~11월) → 법제처심사(~12월) → 차관·국무회의(12월) → 국회 제출('20.12.28.) ○ ILO 비준협약 이행보고서 추가조치 제출('20.8.11.) – 차별협약(제111호) 관련, '19년 기제출된 이행보고서에 대한 추가조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무원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범위 구체화를 통해 명확성 확보,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8헌마551)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법안 심사 지연, 임기만료폐기

향후추진계획	
	○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 '정치단체' 범위 구체화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및 대응

65	Ⅳ-2-②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체계적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 전체 여성공무원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직 비율 개선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주요내용	○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추진 – 정책결정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 확대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542	527	△15	△2.8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130	115	△15	△11.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년 여성 고위공무원 6.7%, 본부과장급 17.5%로 각 목표(6.8%, 15.7%)대비 99.1%, 111.4% 달성
○ '19년 여성 고위공무원 7.9%, 본부과장급 20.8%로 각 목표(7.2%, 18.4%)대비 109.7%, 113.0% 달성
– 여성고위공무원 워크숍('18.3월)·여성고공단 미임용기관 제로화 간담회('18.5월) 개최, 여성고위공무원 미임용기관 인사담당관 회의('19.8월) 개최 등 여성 고공단 임용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 분기별 현황 점검 및 임용확대 관련 부처 협조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보직관리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 신설('18.7월)
○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공개('18.8월 정부부처, '19.8월 지자체 확대)
○ 균형인사 지수를 활용하여 최초 기관별 여성분야 등을 포함한 균형인사 수준 진단 실시('19.2~4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국가공무원법 개정 : 국가직 공무원 임용 시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1월)
○ 여성 고위공무원 8.5%, 본부과장급 22.8%로 각 목표(8.2%, 21.0%)대비 103.7%, 108.6% 달성
–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부처 간담회' 개최(3월), 주요직위 여성 임용지수 관련 카드뉴스 배포(4월)
–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현황 분기별 점검·독려(4월, 7월, 10월, 12월)
○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공개(8월, 공공기관까지 확대)
○ 균형인사 지수를 활용한 균형인사 수준 진단 실시(2~4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의 지속적 추진, 여성관리자 대폭 확대(고위공무원 '19년 7.9%→'20년 8.5%, 본부과장급 '19년 20.8%→'20년 22.8%) 및 주요보직 임명 등을 통한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 정부 최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18~'22)'수립('18.6월) 및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19.9월)에 따른 공직 내 양성평등제고 등 공공부문 균형인사 확산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 회의 개최 및 임용상황 월별 점검(연중)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20년 실적 및 '21년 계획」국무회의 보고(3월, 여가부 주관)
○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공개(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8월)

66 Ⅳ-2-③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직 진출 지원 ○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여건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주요내용	○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인사처 주관 7·9급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 선발) – 인사처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인 선발 확대 *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공무원 대상, 공학기술을 응용한 보조공학기기 제공 –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상,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 제공 ○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의견 청취를 위한 정례적 중증장애인 소통간담회 개최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근무환경 개선 사항 점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1,214	1,233	증 19	1.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한 선발 : ('18년) 7급 40명, 9급 222명 / ('19년) 7급 41명, 9급 263명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으로 중증장애인 '18년과 '19년 각각 25명 선발 완료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제공 실적 : 936명('18년) / 931명('19년)
* 예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답안지/점자 문제지·답안지/음성지원 컴퓨터 등 제공, 대필 등
– 공직 채용정보 제공 등을 위한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공직설명회' 개최('18년, '19년 3월)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 2018년 지원 실적 : 54명(보조공학기기 24명 + 근로지원인 30명)
– 2019년 지원 실적 : 117명(보조공학기기 77명 + 근로지원인 40명)

○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의견 청취를 위한 중증장애인 소통간담회 개최 ('18년, '19년 4월)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자료집 "동행" 제작·발간('18.12월, 정부·교육기관 등 배포)
–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균형인사지침」 개정('18년 12월)
–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발표 ('19년 7월)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는 인사관리를 위한 균형인사지침 이행실태 점검 ('19년 11~12월)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발굴·제작 및 각 부처 활용을 통해 일상적 장애인식개선 추진 ('19년)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영상, 장애바로알기(장애유형에 따른 상황별 에티켓)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7급 48명, 9급 207명 선발 완료('20년)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으로 중증장애인 39명 선발 완료('20년)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제공 실적 : 943명('20년)
  * 예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답안지/점자 문제지·답안지/음성지원 컴퓨터 등 제공, 대필 등
- 공직 채용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20년 3월)
  ※ 설명회 내용 : 장애인 채용제도 소개,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등
- 공직 채용 확대를 위한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20.3월~10월 / 7개 부처, 64개 기관 대상)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인원 177명(보조공학기기 128명 + 근로지원인 49명)
  * 장애인 근무지원사업 개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사업('15.10월 업무협약 체결)

구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대상	경증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한 기기인 보조공학기기 제공 * '의수·의족·휠체어' 등 의료기기는 지원 제외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공 * '신장투석 기간동안 대체 근무'와 같은 업무수행 대행은 지원 제외
한도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5백만원)	법정근로시간 내(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복무지침개정) 재활치료 위한 병가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20년 1월)
- (여비지침개정)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출장 시, 자차운행 전구간에 운임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20년 1월)

○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의견 청취를 위한 중증장애인 소통간담회 개최('20년 11월)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응시 요건 완화*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 개정('20년 2월)
  * 8급 이하 선발시 : 1) (경력) 관련분야 3년 → 2년 이상, 2) (학위) 관련 전공 석사 이상 → 학사 이상 등
-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20년 3월)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발굴·제작 및 각 부처 활용을 통해 일상적 장애인식개선 추진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영상, 장애바로알기(장애유형에 따른 상황별 에티켓)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권 및 다양성과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채용확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
- (편의지원)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맞춤형 수험 편의지원을 통해 동등한 수험여건 조성
- (정보접근성 확대)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통해 공직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 보조공학기기(중·경증) 및 근로지원인(중증)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여건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사업예산 : ('15~'16년) 1.98억원 → ('17~'18년) 5억원 → ('19) 7.9억원 → ('20) 12.14억원
  ※ 수혜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만족도 91%('20년 목표 달성)

○ 장애인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일하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 달성(3.56%)했으나 일부기관은 적합직무 부족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직 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에 대해 지속적 개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에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인원의 우선 배치 등 전 부처 장애인 의무고용률 신속한 달성 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중증장애인 공무원 인사상담창구 개설

67	Ⅱ-2-④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 교육환경 및 수험준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채용확대로 공직 대표성 강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추진			
주요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보호대상자) 채용 지속 추진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채용			

관련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비예산사업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공채인원대비 2.7%) 선발 완료
– (2018년도) 선발예정인원 134명, 선발인원 137명 선발 완료
– (2019년도) 선발예정인원 136명, 선발인원 133명 선발 완료

'20년 이행실적 (1.1.~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공채인원대비 2.7%) 선발 완료
– (2020년도) 선발예정인원 138명 , 선발인원 119명 선발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보호대상자) 채용 지속 추진으로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 노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보호대상자) 채용 지속 추진

68	Ⅳ-2-⑤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여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하고 및 지방학교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 ○ 지역인재 7·9급 선발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비예산사업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로 지방인재 추가 합격
-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4명('19년), 12명('18년) 추가 합격
- (7급 공채) 12명('19년), 20명('18년) 추가 합격,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행 연장('20~'24년) 완료('19년)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우수 인재 공직 등용 기회 확대
- (지역인재 7급) 140명('19년), 130명('18년) 선발 완료
- (지역인재 9급) 210명('19년), 180명('18년) 선발 완료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로 지방인재 추가 합격
-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10명 추가 합격
- (7급 공채) 49명 추가 합격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우수 인재 공직 등용 기회 확대
- (지역인재 7급) 145명 선발 완료
- (지역인재 9급) 244명 선발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및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노력 -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지방인재 합격자 22명 중 10명이 지방인재로 추가합격 - (7급공채) 지방인재 합격자 164명 중 49명이 지방인재로 추가합격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전년 대비 선발인원 확대 및 지역별 균형 있는 공직 등용 노력 - 전년 대비 지역인재 선발인원 증가('19년 350명 →'20년 389명) - 특정 광역시·도 소재하는 학교가 일정비율(7급 10%, 9급 20%)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방인재(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채용 목표제 운영
○ 지역인재(7·9급) 선발 추진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1. 노동권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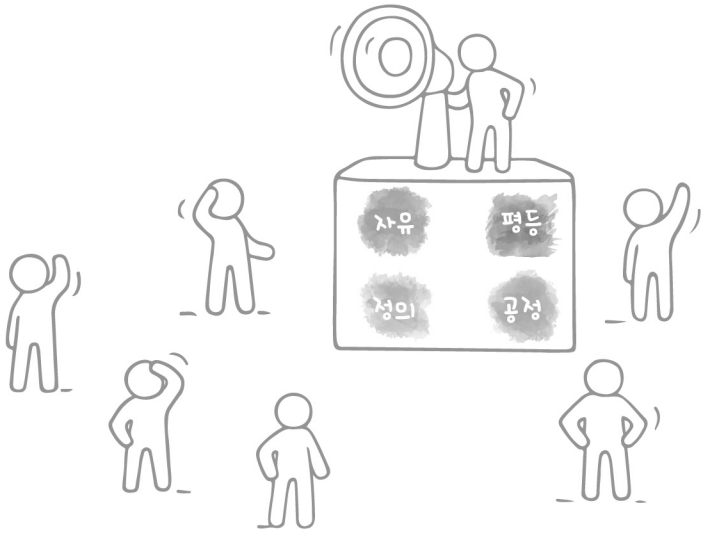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93	8	85	-	-
1. 노동권	19	-	19	-	-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9	1	18	-	-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22	1	21	-	-
4. 교육을 받을 권리	12	5	7	-	-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3	-	13	-	-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8	1	7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노동권】			
69	Ⅴ-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정상추진
70	Ⅴ-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정상추진
71	Ⅴ-1-③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정상추진
72	Ⅴ-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정상추진
73	Ⅴ-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상추진
74	Ⅴ-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정상추진
75	Ⅴ-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정상추진
76	Ⅴ-1-⑧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정상추진
77	Ⅴ-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정상추진
78	Ⅴ-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	정상추진
79	Ⅴ-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정상추진
80	Ⅴ-1-⑫	신중년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정상추진
81	Ⅴ-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정상추진
82	Ⅴ-1-⑭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정상추진
83	Ⅴ-1-⑮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통로 확대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84	Ⅴ-1-⑯	임금체불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정상추진
85	Ⅴ-1-⑰	공정임금체계 확립	정상추진
86	Ⅴ-1-⑱	장시간 근로 개선	정상추진
87	Ⅴ-1-⑲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정상추진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88	Ⅴ-2-①	공공부조 혁신	정상추진
89	Ⅴ-2-②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정상추진
90	Ⅴ-2-③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상추진
91	Ⅴ-2-④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과제완료('20)
92	Ⅴ-2-⑤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정상추진
93	Ⅴ-2-⑥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정상추진
94	Ⅴ-2-⑦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물관리일원화	정상추진
95	Ⅴ-2-⑧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정상추진
96	Ⅴ-2-⑨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상추진
97	Ⅴ-2-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정상추진
98	Ⅴ-2-⑪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상추진
99	Ⅴ-2-⑫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상추진
100	Ⅴ-2-⑬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정상추진
101	Ⅴ-2-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정상추진
102	Ⅴ-2-⑮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정상추진
103	Ⅴ-2-⑯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정상추진
104	Ⅴ-2-⑰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정상추진
105	Ⅴ-2-⑱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정상추진
106	Ⅴ-2-⑲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107	Ⅴ-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정상추진
108	Ⅴ-3-②	비급여 진료관리체계 개선	정상추진
109	Ⅴ-3-③	지역균형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상추진
110	Ⅴ-3-④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정상추진
111	Ⅴ-3-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정상추진
112	Ⅴ-3-⑥	희귀 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정상추진
113	Ⅴ-3-⑦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정상추진
114	Ⅴ-3-⑧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115	Ⅴ-3-⑨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정상추진
116	Ⅴ-3-⑩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정상추진
117	Ⅴ-3-⑪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정상추진
118	Ⅴ-3-⑫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정상추진
119	Ⅴ-3-⑬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정상추진
120	Ⅴ-3-⑭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정상추진
121	Ⅴ-3-⑮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강화	정상추진
122	Ⅴ-3-⑯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정상추진
123	Ⅴ-3-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상추진
124	Ⅴ-3-⑱	생활소음 대책 마련	정상추진
125	Ⅴ-3-⑲	국토 및 환경보전계획의 지속가능 발전기반 확보	정상추진
126	Ⅴ-3-⑳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과제완료('18)**
127	Ⅴ-3-㉑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정상추진
128	Ⅴ-3-㉒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정상추진
【교육을 받을 권리】			
129	Ⅴ-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상추진
130	Ⅴ-4-②	성취평가제 실현	정상추진
131	Ⅴ-4-③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정상추진
132	Ⅴ-4-④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정상추진
133	Ⅴ-4-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정상추진
134	Ⅴ-4-⑥	고교 교육제도 개선	정상추진
135	Ⅴ-4-⑦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정상추진
136	Ⅴ-4-⑧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과제완료('20)**
137	Ⅴ-4-⑨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완료('18)**
138	Ⅴ-4-⑩	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과제완료('18)**
139	Ⅴ-4-⑪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보장 강화	**과제완료('18)**
140	Ⅴ-4-⑫	청년과학기술인의 발명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과제완료('18)**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41	Ⅴ-5-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상추진
142	Ⅴ-5-②	청소년 주도 문화활동 확대	정상추진
143	Ⅴ-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144	Ⅴ-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145	Ⅴ-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146	Ⅴ-5-⑥	지역문화기반 구축	정상추진
147	Ⅴ-5-⑦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정상추진
148	Ⅴ-5-⑧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정상추진
149	Ⅴ-5-⑨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정상추진
150	Ⅴ-5-⑩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정상추진
151	Ⅴ-5-⑪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정상추진
152	Ⅴ-5-⑫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정상추진
153	Ⅴ-5-⑬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정상추진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54	Ⅴ-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정상추진
155	Ⅴ-6-②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정상추진
156	Ⅴ-6-③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상추진
157	Ⅴ-6-④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정상추진
158	Ⅴ-6-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정상추진
159	Ⅴ-6-⑥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정상추진
160	Ⅴ-6-⑦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정상추진
161	Ⅴ-6-⑧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과제완료('18)**

* 해당과제 소관부처에서 '19년 이행상황 제출시 "과제완료"로 제출하였지만, '20년도 제출시 "정상추진"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여 정상추진 과제로 판단

과제별 이행상황

69	Ⅴ-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공정채용기반과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제목표

○ 청년 등 취업 촉진

주요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운영

– 청년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21.1.1.~)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저소득층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월50만원×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청년의 장기근속 확대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편견없는 채용 · 블라인드 채용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277,128	828,647	551,519	199.0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회계)	330,563	327,231	△3,332	△1.0
■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보험기금)	991,900	1,201,802	209,902	21.2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보)	1,281,972	1,401,694	119,722	9.3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778,704	998,102	129,398	16.6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503,268	493,592	△9,676	△1.9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일반)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 및 확산)	915	775	△140	△15.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일자리위원회 발표('19.6.4)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3월 사업 시행, '19년 7.7만명 지원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 '18.1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확대 및 지원방식 개편 등 제도개선(1.16), '18.3월 청년일자리대책에 따라 제도 확대 · 개편 시행(6.1)

* (지원금액) 1인 667만원 → 900만원(3년 2,700만원)으로 인상 등

– '18년 신규 128,275명 지원(목표 9만명 대비 142.5%)

– '19.8월 추가 제도개편* 및 물량 확대('19년 본예산 신규 9.8만 → 19년 추경 신규 11만(+1.2만))

* 기업당 지원한도(90명→30명), 최소고용유지기간(0개월→6개월), 기업규모별 차등지원(30~99명 2번째, 100인이상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19년 신규 141,566명 지원(목표 11만명 대비 128.6%)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청년의 장기근속 확대 –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16.7.1.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19년까지 청년 250,361명과 기업 72,701개소가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았음 – 또한 '18년에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지원 강화(3.15. 청년일자리대책, 정부합동) * 2년형: 청년 300 + 기업 400 + 정부 900 =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기업 600 + 정부 1,800 = 3,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 내실화 추진 * 주요내용: 임금상한액 신설(500만원 이하), 최소 근로시간 규정(주30시간) ○ 편견없는 채용 · 블라인드 채용 확산 – 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17.7.5.),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17.7.13.) – 민간기업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 개정 · 배포(7월말, 1,000부) – 고용부, 기재부 합동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10.8, 10.29, 11.20) –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 압력 ·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19.7.17)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운영 –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참여자 현황: 104,237명 – 청년의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20.5.20.) → '21.1.1.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시행 등으로 청년층 참여 확대 ㄴ,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참여자 10.4만명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59만명 중 청년 23만명 지원 목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9.6만명 지원, '20.10월 신규선정 마감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 '20년 신규 105,584명 지원(목표 9만명 대비 117.3%) – '18.1월부터 '20.12월까지 6.7만개 기업, 37.5만명* 청년 추가고용을 지원하여 기업당 평균 5.6명의 신규고용 지원 * ('18년) 128,275명, ('19년) 141,566명, ('20.12월) 105,584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13.7만명, 기업 54천개소를 신규로 지원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 누적가입 현황(청년, 명) : ('18) 151,789 → ('19) 250,361 → ('20) 387,587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의 내실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방식을 유선,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 기업의 휴업 증가에 따른 납입중지기간 연장(6개월→12개월), 채용감소에 따른 재가입 기간 연장(6개월→12개월)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체계 유지 – '20.12월말 기준 76,680명이 만기공제금*을 수령, 이 중 459명이 내일채움공제(중기부, +5년)에 연계 가입 * 만기공제금(1,600만원) = 청년(300) + 기업(400, 고용보험기금) + 정부(900) ○ 편견없는 채용 · 블라인드 채용 확산 –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합동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 발표('19.11.8) – 관계부처 합동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집중 컨설팅 제공 * '20년 컨설팅 참여율 87%(381개 기관), 참여기관 만족도 74.4점 달성 – 9개 소규모 공공기관 컨설팅 지원: 채용 全 단계 집중 컨설팅 *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상의 문제로 직무기술서 및 평가도구 개발 등의 어려움 존재 – 면접관 pool 보완 및 제공: 면접관 교육 28회 실시(누적면접관 494명) – 취업지원생 전용 웹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오픈 채용설명회 실시(16회/4,053명), 블라인드 면접 대비 1:1 컨설팅 지원 (82회/490명) – 능력중심 채용 모델 개발 · 보급: 13개 직군 모델 개발 – 공정채용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능력중심 채용 700개소 컨실팅 실시 – 채용절차법 현장안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지도 · 점검 실시 * 중복비위 사업장 등 총 487개소 지도 점검 결과 56개 사업장 위반 → 시정 명령 7개소, 과태료 49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7.7만명, '20년 9.6만명 미취업 청년의 구직 지원 – '20년 사업효과 분석 결과 구직활동 증가 등 지원금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효과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분석 연구용역」, '20.4~12월 한국고용정보원) *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증가: 수급 전 5.15시간 → 수급 후 6.19시간 (+1.04시간) * 아르바이트 참여비율 감소: 수급 전 26.2% → 수급 후 18.2% (△8%p)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 '20년 최초로 장려금 활용한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전년 대비 21.0% 증가하였고, 청년층은 36.1% 증가 – (코로나19 위기 기업의 고용유지 기여) '18~'19년 장려금 지원기업(5.1만개소)의 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7~'20.12월말까지 기간에도 기존 고용 규모 유지 *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명): '19년 28.3~5명 → '20년 28.2~28.5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일반 中企 재직 청년보다 공제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비율도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촉진 효과가 있다고 판단 * 1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46.6%, 공제 가입청년 78.6%(32.0%p↑) 〈고보DB,〉 2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33.0%, 공제 가입청년 67.3%(34.3%p↑) 〈고보DB〉 –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에도 효과적 *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 노동연) ○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확산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 97.2%('20.12.) – "직무능력중심채용 인식개선률" 목표대비 초과달성: 실적80.85%(목표: 62%) * '20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인사담당자 700명 대상 설문조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 청년층 대상 폭넓은 지원을 위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 참여 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등 추진 –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 * '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존 선정자의 계속지원만 시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 '21년 신규 9만명을 목표로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계속 – '21년 신규 10만명 및 기 가입자 25만명 지원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정채용 기반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부문 확산

70	V-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장애인 고용 확대			
주요내용	○ 의무고용률 상향 및 공무원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 ○ 장려금 단가 인상, 경증 장애인 연차별 감액제도와 6급 장애인 한시지원 제도 폐지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장애인 노동문제 상담 등 전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 고용장려금	229,655	252,191	22,536	9.8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6,289	67,254	△7,511	△8.7
(장애인훈련인프라 확대)	44,091	17,545	△26,546	△60.2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98,837	161,192	62,355	63.1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878	1,707	829	94.4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법정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강화 안내,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 기관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일자리 확대 유도
* ('17년~'18년) 공공 3.2%, 민간 2.9% → ('19년 이후) 공공 3.4%, 민간 3.1%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18년)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중증 남성 10만원↑), 중증장애인 지급제한 폐지 등

○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일자리 확대 유도
- 공무원 부담금 최초 적용 안내: 국가기관(316개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2회), 신문광고(1회), 장애정보 점검결과 통보(99개소 4,875명)
- 장애인 고용 의무 미달에 따른 부담금 기초액 상향*을 통한 고용의무제도 실효성 강화
* ('19년) 1,048,000원 → ('20년) 1,07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강화 안내 및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 기관 교육 등
* 인사담당자 간담회 739개소(코로나로 인해 영상교육 대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731개소 823,872명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경증여성 5만원↑, 중증남성 10만원↑, 중증여성 20만원↑)
* '20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
* 경기남부직능원 중간설계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신설(누계 19개소, 전국 17개 광역시·도 설치 완료)

○ 차별·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3개소, 서울·광주·부산)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의무고용률 및 부담기초액 상향, 공무원 부담금 부과 예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 → 장애인 고용률* 증가 및 신규고용 창출 * ('18년) 2.78% → ('19년) 2.92% (장애인 18,337명 고용 증가) ○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체 장애인고용률: ('19년) 9.39 % → ('20년) 10.58%(전년대비 1.19%p 증가) * 장애인 고용증가(지급연인원): ('19년) 552,724명 → ('20년) 566,701명 ○ 훈련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 직업능력훈련 서비스 수혜 인원 및 장애인 고용 확대 – 발달장애인 진로교육 · 훈련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국 확대 * ('16년) 2개소 → ('17년) 4개소 (신설 2) → ('18년) 7개소 (신설 3) → ('19년) 13개소 (신설 6) → ('20년) 19개소 (신설 6) – 기업 수요에 부응, 현장인력 양성 · 지원을 위한 맞춤훈련센터* 확대 * ('14년) 1개소 → ('17년) 3개소 (신설2) → ('18년) 6개소 (신설3) → ('19년) 7개소 (신설1)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동시장에서 인권침해 · 노사분쟁 · 장애차별 · 부당해고 등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직업생활 유지 지원 – 전문가(전문상담원, 변호사 · 노무사)를 활용해 고충상담(353건), 노무법률교육(120명) 실시

향후추진계획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공기업 ·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성과평가 강화 및 고용컨설팅 실시 ○ 고용장려금 및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유지와 신규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편성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 훈련인프라 지속 확대를 통해 훈련수요 불균형 해소 – 수도권 훈련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남부직능원 신축사업 지속 추진('21년 실시 설계 · 착공 → '22년~'24년 건축) – 미래 디지털산업사회 대비 IT특화 맞춤훈련센터 확충: '21년 2개소(신설1, 전환 1) → '22년 3개소(신설 1)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확대 –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노동문제 상담,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1개소를 설치하여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구축(3개소 → 6개소)

71	V-1-③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참여 제고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 제출의무 신설

○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을 위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적용방안 마련 · 추진

* 임금(제8조), 임금 외의 금품 등(제9조), 교육 · 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 · 퇴직 및 해고(제11조제1항)

○ 직장 내 성차별 예방을 위해 건강(임신 · 출산) · 고용(사업장)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 대상 집중 근로감독(매년 500개소)

○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개선 및 기간제 여성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 최소화, 고객의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 등 추진(「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식 영역의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맞벌이 여성의 가사 · 보육부담 완화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076	1,929	△147	△7.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107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66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866			
(적극적고용개선조치)	872	644	△228	△26.1
(고용평등업무지원)	65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1년 예산이 26.1%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20년 대비 실제 예산(관리용역비)은 1억원 증가하였음. 관리운영비 일부예산이 이관, 조정됨에 따라 감액 표기된 것임〈세부사업명: 노사발전재단지원(인건비 등328백만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19년부터 AA 대상을 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19.1.1 시행)

* 기존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 300인 이상 지방공사 · 공단

– '20년부터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의무 부과 ('19.12월 고평법 시행규칙 개정)

○ '19.1.1.부터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18.5월 고평법 시행령 개정)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18) 659개소, ('19) 700개소) * (3대 법위반 의심사업장) ①출산휴가 미부여, ②육아휴직 사용부진(출산휴가 대비 30% 미만), ③임신·출산을 사유로 부당 해고한 사업장 (대상 사업장 수) '16년 535개소→ '17년 555개소→ '18년 659개소→ '19년 700개소(〈목표대비 100% 실시〉 – 임신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SMS 등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실시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근거 명문화('19.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예방)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19.7),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무료강사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10~29인 사업장 → 300인 미만 사업장)* * (100인 미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100~300인 미만) 연1회 초과 시 지원 – (구제)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 운영, 신고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자동 접수 등 시스템 자동화 및 2차 피해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20년부터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및 분석('20.1월~12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20.9월) * ('18) 42개소 → ('19) 50개소 → ('20) 52개소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20) 400개소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점검대상 사업장 축소(800→400개소) – 임신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SMS 등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실시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안내 * (임신 근로자) ('19) 166,811명 → ('20) 234,298명(이메일 및 LMS), (사업장) ('19) 229,662개소 → ('20) 314,808개소(이메일 및 팩스) ○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 –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조치 의무 관련 구제절차 신설 추진(20.10월 개정안 국회 제출) * (현행) 지방노동관서 진정,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인권위 권고 중심 → (개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피해구제 절차 신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예방)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20년 439개소), 사업장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배포('20.2) – (구제)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 운영*, 신고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자동 접수 등 시스템 자동화 및 2차 피해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 * ('20.12월) 신고·접수 2,395건, (진정사건 처리) 545건, (근로감독) 124건, (행정지도) 524건, (기타종결 등) 1,202건 ○ 기간제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추진 – 기간제 여성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0. 12월) ○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제화 추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국회 제출('20.7.13.), 상임위 계류 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추진 과제 정상 추진 중이며, 특히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비율 지속 상승 * (여성고용률) '18년 38.18% → '19년 38.41% → '20년 38.73% ** (여성관리자) '18년 20.56% → '19년 21.13% → '20년 22.29% ○ AA 대상 사업장 지속 확대('18년 2,146개사→'19년 2,442개사→'20년 2,486개사)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증가 및 목표치 달성 * '18년 659개 → '19년 700개 → '20년 400개 사업장 ○ 기간제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추진 – 기간제 여성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0. 12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21년부터 AA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제출받은 임금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공개('21.5.27.) ○ 스마트근로감독 지속 시행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감독 지속('21년 900개소 목표) ○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 지속 추진 –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조치 의무 관련 구제절차를 신설 지속 추진 ○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제화 추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및 하위법령 마련

72	Ⅴ-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 경력이 단절된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일자리 복귀와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확대 및 역량확충 지원

주요내용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참여를 지원하고, 그간의 연구공백 해소와 복귀 후 경력 안착을 위한 교육·멘토링·컨설팅을 병행 지원

○ 과학기술분야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우려 해소 및 기관의 업무공백 부담을 완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10,475	12,800	2,325	22.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R&D 관련 직무 복귀 지원 확대

※ 경력복귀 지원 수혜자 : ('18년) 418명 → ('19년) 426명

○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모델 제시 및 멘토링을 통해 수혜자의 경력유지 및 성장 지원

※ 경력디딤 멘토링 : ('19년) 멘토 14명, 멘티 26명

○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대체인력 수요기관과 R&D 직무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연결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와 과학기술분야 경력개발 지원

※ 대체인력 지원 수혜자 : ('18년) 23명 → ('19년) 26명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여성과학기술인력 경력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R&D 경력 복귀(398명) 및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41명)하여 여성과기인의 연구활동 지속참여 제고

– (경력복귀 지원) 예비복귀자 교육 운영 확대(210명) 및 경력복귀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강화(316명), 경력사다리 컨설팅(102건)을 통해 경력 복귀단계별(준비-복귀-성장) 역량 강화·취업 활동 지원

– (경력단절 예방) 대체인력 신규 풀 확보(463명) 및 매칭 지원, 대체인력 및 휴직자의 경력 지속 성장을 위한 교육(24명)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력복귀자 근무조건 개선, 연구현장의 인권 존중·보호 이행 의무화 등 일자리의 질적 관리 강화

– (지침 제·개정)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중단사유 및 제재조치 기준 세분화, 인권보호·존중 이행 등 사업운영지침 및 양식 제·개정, 배포('20.3.)

– (선정기준개편) 민간기업 재무기준 마련, 기존 우수 참여기관 우대(가점) 정책 마련 등 좋은 일자리 유입 확대 노력

– (인권보호강화) 사업공고 및 협약서에 참여기관의 인권경영 책임 명시, '인권보호·존중 이행 서약서' 양식 마련 등 경력복귀 일자리 현장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과학기술인력 경력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 (경력복귀 지원) COVID-19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 및 여성일자리 위기에도 불구, 사업 지원종료 후 수혜자의 취업유지율 ('20) 81.1% 달성 ※ 참고 : 4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 65.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일·가정 문화 확립 및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해소 기여 –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및 이를 통한 대체인력의 정규직 채용 증가('19년 61.5% → '20년 73.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COVID-19에 따른 돌봄 문제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여성과학기술인 특성상 경력 재단절 위기 및 장기적 경력 지속의 어려움 존재

향후추진계획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활성화 지원 확대 추진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경력복귀 과제 지원('21년 450명 예정)

– 경력복귀 단계별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및 경력컨설팅**운영, 경력현황 모니터링 통한 수혜자의 지속적 경력유지·성장 지원

* 예비복귀자 준비교육, 복귀자 역량강화 교육, 복귀자 경력디딤멘토링 운영

** 산업분야별 경력설계·관리, 일·생활균형, 대인관계, 인사·노무 등 전문가 온라인 컨설팅 상시 제공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확대 추진

– 과학기술분야 기관의 R&D 대체인력 매칭 및 지원기간 확대*

* 지원기간 : ('20년) 최대 12개월 → 최대 15개월 / 지원규모 : ('20년) 41명 → ('21년) 80명 예정

– 대체인력 및 휴직자의 경력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 휴직자 교육 확대로 복직 이후 조직·업무 적응을 통한 경력단절예방 및 지속 지원

73-1	Ⅴ-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권익기반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
과제목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요내용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대상 '성희롱'관련 온오프라인 특별점검 실시 및 실태조사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활성화(신고센터 운영)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사건대응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엄정한 사건대응 기준 마련 ○ 직장내 성희롱사건처리 컨설팅 위원단을 운영하여 사건발생기간에 컨설팅지원 ○ 성폭력피해자 상담, 의료 및 심리치료 확대 등 지원서비스 내실화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추진점검단 설치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 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	600	500	△100	△16.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추진
- 공공부문 보완('18.2), 직장 및 문화예술('18.3), 사회관계장관회의 추가대책(성희롱·성폭력 근절)('18.3), 이주여성 대책('18.4),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18.7), 교육분야 근절대책('18.12),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마련('19.1)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19.9) 등 마련

○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이하 범정부 협의회) 및 추진점검단 구성·운영('18.3~'19.12., 8회 개최),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운영(3.8~),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18.3~5월), 기관장 등 고위직 교육 관리 강화 실시(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강화 등) 등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사건발생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 공공부문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내실화
- 미투대책 등을 반영한 '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시행('19.2월~)
  * 고위직 참여율 강화, 교직원 이수율 신설,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 실시 등
- 대학의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에 반영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9.9월)
- 공공부문 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체육계 공공기관 100개 기관('19.2~7월) 및 스쿨미투 관련 각급학교 400개 기관('19.4~7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민관협의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점검·현안 대응 강화('20.2월~, 6회 개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을 기반으로 최초의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월) 수립 등 통합·체계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사건발생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20.1.1.~12.31. 단위:건)〉

익명 상담	신고사건 현황					피해자 지원 연계 실적*			
	소계	초기 상담	기관 조치	이관 (고용부 등)	취하 등 종료	소계	상담소	법률	의료
2,797	116	4	34	30	48	1,533	812	563	158

*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복수 연계한 경우 각각 산정

○ 공공기관(총 17,556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장 · 고위직 등 참여율 제고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의무화('20년~)하고, 온라인 교육 지원 등 기반 내실화

* 2차 피해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및 교재 개발(~12월), 온라인 강의 시연회 실시(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범정부 협의회 및 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대책 마련 및 이행점검을 통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대책 이행력 제고

○ 성희롱 ·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및 재발방지대책 특별점검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신고한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 · 축소하지 않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시스템화

○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을 통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의 이행력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 재 ·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성희롱 · 성폭력 근절대책 이행상황 점검, 환류

○ 공공부문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추진체계 지속 강화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정보(실시율, 참여율 등) 공개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73-2	Ⅴ-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의료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다각적 실태점검 및 실태조사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 추가·강화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엄중조치 –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 및 부적정 대응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의사(전문직군)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28,617	36,263	7,003	23.9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연구)	300	650	350	11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년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18.3월)
– 의료인 보수교육 필수과목인 직업윤리 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 포함하여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3년 이내 반드시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

○ 의료인 성폭력 예방·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하여 수련병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18.11월)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 병원에 배포('18.12월)

○「성폭력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공포('19.1.15)
– 수련환경평가 항목 중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 준수 여부 항목 포함(제14조) 및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제19조) 마련 완료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19.6월~)
– '18.12월 마련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병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병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19.12.18.)
– 성추행·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포함하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간 지정 완료('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권침해 등 상담·지원 전문기관으로 인권침해 상담센터 구축 예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 – 전공의 성폭력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 등 ○ 인권침해 등 상담·지원 전문기관 지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 상담 센터 운영

73-3	Ⅴ-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역량 강화

주요내용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담조직 설치 확대 및 역량 강화, 대학 전담기구 역량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348	389	41	11.7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1,000	625	△375	△37.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대학 내 성 고충 상담 전담기구 및 학생 예방교육 실태조사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조직·인력·예산 및 사안 접수·처리,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을 등을 조사하여 법령·제도 개선 등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19.12월)
* 조사항목 : 전담기구 운영 현황(겸직 여부, 예산, 인원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 사건 접수 및 조사 현황, 업무 담당자 현황(고충, 전문성, 경력, 고용형태 등), 예방교육 운영 현황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18.3월~)
– '18.3월 신고센터 개소 이후 385건 신고 접수('19.12.31. 기준, 신고 사안 240건, 교육분야 외 145건)
○ 대학정보공시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공시항목으로 반영 완료('18.10월~)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20년도 대학 내 성 고충 상담 전담기구 실태조사 완료('20.11.)
– 대학 일반사항, 성 고충 상담 전담기구 운영현황, 성 고충 상담업무 담당자 현황, 사건 접수 및 사건 조사 관련 문항 등을 조사, 향후 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18.3월~)
– '18.3월 신고센터 개소 이후 총 555건 신고 접수('20.12.31.기준, 신고 사안 370건, 교육분야 외 185건)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12개 교육청), 시도교육청별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모든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정·배포('20.9.)
– 대학 전담기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중앙센터 선정·운영('19.3.~) 및 담당자 연수·전문가 컨설팅 등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도출하여 사업계획, 예산요구서 등에 반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시도교육청 전담조직 설치확대 및 대학의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교육청/대학별 대응 역량 편차 존재 – 전담조직 미구성 교육청(5개)의 전담조직 구성 필요 – 대학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교육청별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 확대 및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온라인 직무연수 콘텐츠 개발, 시도교육청 협의체 운영 및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운영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고등교육법」 개정('21.3.23.) 및 시행 예정('22.3.24.) ○ '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사업 운영 지속을 통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역량강화

73-4 | V-1-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 및 근절방안 마련

주요내용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문화·예술·체육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문화예술분야 신고·상담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1,063	1,063	-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성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700	700	-	-
■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콘텐츠공정상생 환경조성) * 보라 운영비	163	163	-	-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00	200	-	-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영화정책지원 (영화정책지원) * 든든 운영비	295	450	155	52.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분야별 실태조사)**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조사('18.3.~6.)
- 체육계 선수, 지도자, 학부모 (성)폭력 실태조사('18.6.~12.) 및 프로스포츠 분야 실태조사('18.5.~10.)
- 공연예술·대중문화·출판 성폭력 실태조사('18.6.~'19.3)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 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상담센터'('18.6.20~),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18.3.29~),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18.3.1~) 운영
- 문화예술계 상담센터 홍보(17개 시·도) 및 피해자 지원 한도액 일원화(심리상담, 법률, 의료)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의무화 지속 추진('18~)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8,382명)
-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9종) 및 행동강령 개발(4종)

'20년 이행실적 (1.1.~12.31.)	○ (분야별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및 비교분석을 위한 공통조사표 개발 연구 ○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상담센터 활성화) – 문화예술용역관계 성희롱 · 성폭력 심사 및 피해구제 강화(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등 개정, '20.11월) – 센터 간 정례회의(3회) 등을 통한 상담센터 연계 강화(통일적 지원기준 마련 등)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문화예술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8,587명) –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6종) 및 행동강령 개발(4종) – 민간보조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등 예방안내서(안) 마련('20.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센터 운영 및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한 연계체계 구축 ○ 문화 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문화예술인은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 법적인 조치 등에 한계가 있으며, 3개 상담센터에 조사권이 없어 피해자 지원 이외 사안처리에 한계

향후추진계획	○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상담센터 연계강화 및 민간보조사업 예방교육 의무화 확산 추진

73-5 | V-1-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균형인사과 복무과

과제목표

○ 성비위 임용결격 강화 및 가해자 엄정 조치 등을 통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범죄 관련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성비위 징계 강화 등 공직내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 성비위 고충처리 절차 개선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공직 내 성비위 신고처리체계 구축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35	3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성희롱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18.5.30)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 통보 의무화
※「국가공무원법」 개정('18.10.16./'19.4.17. 시행), 「공무원 징계령」 개정('19.4.17)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19.4.17)
- 온라인·익명신고가 가능한 신고상담 체계 구축

○ 성 비위 은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감경 제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19.4.30)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제정('19.5.29)
- 피해자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중심의 신고처리절차 마련

'20년 이행실적 (1.1.~12.31.)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20년 총 86건 접수(상담 82건, 심의 4건(4건 중 2건 성희롱 인정, 징계·재발방지대책 권고))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개정('20.5.29)

○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1/3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
※「공무원 징계령」 개정('20.7.28.)
- 민간위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 심의 체계 구축

	○ 성희롱 ·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컨설팅, 기관 담당자 교육 등 조직문화 개선 사업* 실시(3개 부처) – 기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회),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2회) ○ 기관내 원활한 성고충 해소 및 성고충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개최('20.11) ○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10년으로 연장 추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1.26.)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직 내 성 비위 신고처리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신고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직 내 성비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성비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및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제고 ○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심의가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절차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국가공무원 성희롱 · 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개정('21.3월 시행 예정) – 신고대상* 및 처리범위** 확대를 통한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강화 * 국가공무원간의 사건 → 국가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 성희롱 · 성폭력 → 성희롱 · 성폭력 및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 – 카메라 촬영 ·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신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 추진('21년 중)

74	Ⅴ-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개선에 기여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를 통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노력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5,273	4,714	△559	△10.6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	20,827	15,396	△5,431	△26.1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8,724	7,045	△1,679	△19.3
■ 외국인력고용지원	2,441	2,318	△122	△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18년) 3,128개소(제조업: 1,187개소, 농축산업: 1,092개소, 어업: 356개소, 건설업: 226개소, 서비스업: 267개소)
('19년) 3,063개소(제조업: 1,238개소, 농축산업: 1,041개소, 어업: 298개소, 건설업: 149개소, 서비스업: 337개소)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연중 상시)
- (교육)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고충해소를 위한 교육(입국전 취업교육, 한국어·정보화교육), 노동관계법 등 관계 법령 교육(입국후 취업교육, 생활법률교육) 및 사업장변경자·재직자·귀국예정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 (정책안내) 입국 외국인근로자 필수교육에 외국인고용법 내용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사항 안내

'20년 이행실적 (1.1.~12.31.)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1,502개소(제조업: 668개소, 농축산업: 501개소, 어업: 178개소, 건설업: 56개소, 서비스업: 99개소)
* 적발 1,597건(시정지시: 1,443건, 사법처리 17건, 과태료 78건, 고용제한 등 37건, 관계기관 통보 22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2회)
- (실태조사) 7,464개소, 13,019명
- (현장점검) 실태조사 결과 취약의심 사업장 281개소
* 113개소 방역취약사업장에 발열검사 지도 등 128건 조치

○ 농어업 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실태조사(농식품부·해수부 공동)
- (기간 및 대상) '20.9.21.-11.10., 사업장 3,500개소, 외국인근로자(E-9) 8,616명
- (조사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현황
- (개선 방안)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등을 숙소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연중 상시)

– (교육)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고충해소를 위한 교육(입국전 취업교육, 한국어·정보화교육), 노동관계법 등 관계법령 교육(입국후 취업교육, 생활법률교육) 및 사업장변경자·재직자·귀국예정자 대상 교육 실시

– (정책안내) 입국 외국인근로자 필수교육에 「외국인고용법」 내용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사항 안내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관
입국전 취업교육		E-9	필수	한국어, 한국문화 등	송출기관 지정 기관
입국후 취업교육		E-9, H-2	필수	한국문화, 관계 법령, 산업안전 및 기초기능, 고충처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		E-9, H-2	희망자	한국어, 정보화, 산업안전 등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교육		E-9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1년 미경과자	사업장 변경절차, 한국문화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E-9	취업자 중 희망자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등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훈련	한국어	E-9	희망자	한국어	
	취창업			용접, 중장비운전, 한식조리, 제과제빵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취약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강화

– 법 위반 비율이 높고 타 업종 대비 근로조건이 취약한 농축산업·어업 분야에 대한 점검을 전체 물량 대비 46.5% 실시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

○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로 주거환경 개선 기여

–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설치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기여

교육기관	교육명	실적 (2020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기관	입국후 취업교육(E-9, H-2)	20,754명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어·정보화·생활법률교육 등	87,162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취업적응교육	93명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훈련(한국어)	48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농축산업·어업 등 취약사업장 점검 비중 유지(40% 이상)

○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설치기준 등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 현행 수준의 필수·선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노력

75	Ⅴ-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공무원노사관계과 고용차별개선과
과제목표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비정규직 차별 개선			
주요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 및 차별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1,040	1,768	738	70.0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18,141	15,331	△2,810	△1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19.12월말 기준 19.3만명 전환결정(계획 20.5만명의 94.1%) → 실제 전환완료 인원은 13.3만명

–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월), 3단계 민간위탁 정책방향('19.2월) 등을 발표하여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 추진

○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

– 비정규직 관련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TF 구성·운영('17.12월~'18.10월)

*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로드맵 마련·발표('17.10월)

– 고용노동부 주관 연구회('19.9월~'19.10월) 및 경사노위 내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회」('19.10월~'20.7월)에서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전체 근로감독에 비정규직 차별을 필수 점검 항목에 포함하여 적발 및 시정조치

* 차별적발건수 449건, 시정조치율 99.6%('18.12월 기준)

– 지방고용노동관서 내 차별 전담 감독관 53명 지정·운영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전국 543개 사업장 자율적 차별시정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19.1월, 고시 개정), 지원총액 인상(122억원→181억원, 전년동기 대비 17.9% 증가) 등 제도 활성화로 지원실적* 개선 추진

* ('17년) 773개소 4,691명 → ('18년) 1,005개소 5,025명 → ('19.12월) 1,000개소 4,900명

–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 안내* 및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차별없는 일터지원단)과 연계하여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19년)

* 피보험자 2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중 기간제 비중이 20% 이상인 사업장 865개소

'20년 이행실적 (1.1.~12.31.)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20.12월말 기준 19.9만명 전환결정(계획 20.5만명의 97.1%) → 실제 전환완료 인원은 19.2만명
-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지도(전체 공공부문 중 77.9%)
-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이루지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9.12월) 이행여부 점검 실시

○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
- 경사노위 내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대화 지속('19.10월~'20.7월)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적극 시정
  * 차별적발건수 150건, 시정조치율 100.0%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 내 차별 전담 감독관 53명 지정·운영 계속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SNS 홍보, 지하철 및 KTX 영상 송출 등을 실시하여, 전국 321개 사업장 진단·컨설팅 제공
- 권역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을 통해 희망사업장 대상(30개소) 고용구조 진단·컨설팅 제공 →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1년 컨설팅 예산(1,025백만원) 확보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 고용구조개선 유도
- 기업수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환 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속 제공 * 4,323명, 967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9.9만명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임금 인상 효과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
  * 정규직(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300인 미만 사업장)
  : ('16년) 37.4% → ('17년) 40.3% → ('18년) 41.8% → ('19년) 42.7%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점진적 고용구조 개선
- 근속기간 1년 6개월 초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 증가 추세
  * ('16.6월) 16.8% → ('17.6월) 18.3% → ('18.6월) 26.0% → ('19.6월) 26.0%
- 30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중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 비중 감소
  * 기간제 근로자 : ('18년) 23.5%, 931천명 → ('19년) 22.3%, 886천명
  ** 소속 외 근로자 : ('18년) 18.5%, 901천명 → ('19년) 18.1%, 881천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15년 제도 도입 이후 정규직 전환 지원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수요가 감소하여 실적 미흡

○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우려

향후추진계획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연 기관 지도
- 전환기구 구성 여부, 기관 규모, 미결정 사유, 전환논의 단계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춤형 지원 실시

○ 전문가 논의체 등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보호 제도개선 관련 논의 지속

○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 지도·감독 등 지속 추진

○ 기업의 정규직 채용 확산 및 격차해소 분위기 조성
-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구조 자율개선 지원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전문성 제고 및 심층 컨설팅 지원

76	Ⅴ-1-⑧	사내하도급 노동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차별개선과 디지털노동 대응 TF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원 · 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원 · 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불법파견 감독 강화 등 하청 노동자 보호 강화

– 파견 ·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 및 직접고용 시정지시, 원청(도급인)의 사업장 밖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도 원청(도급인)의 공동 사업주 책임 확대* 등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9.12.24. 공포, '20.1.16.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레미콘 1개 직종에서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전체 27종으로 확대('19.1.1.)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고, 배달종사자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 논의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원 · 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등 보장,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등 산업안전 보호 등 반영

– 권역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을 통해 희망사업장 대상(30개소) 고용구조 진단 · 컨설팅 제공 →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1년 컨설팅 예산(1,025백만원) 확보

○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 추진

– 파견 ·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 및 직접고용 시정지시

○ 특고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20.12.21.)

– 특고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하는 보호대책 마련 및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등 5개 직종 특고 적용 확대('20.7.1 시행) 및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특고 적용 확대 추진

* 노무제공 실태조사 및 노사 의견수렴 → 적용방안 마련 및 당정협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0.6.)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21.1.12.) → 시행('21.7.1.)

결과분석	추진성과	○ '19년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 비중이 9.9%로 전년대비 0.4%p 감소 * ('18.8월) 10.3%, 2,071천명 → ('19.8월) 9.9%, 2,045천명 ○ 불법파견 지도감독 성과의 양적 · 질적 개선 * 감독 사업장 수 : ('17년) 1,349 → ('18년) 1,609 → ('19년) 1,630 ○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화물차주**(7.5만명) 등 약 27.4만명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 * ①방문판매원 ②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③방문교사 ④가전제품 설치기사 ** ①수출입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인화성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6.6만명)를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 * 직종 확대시 실태조사, FGI면담 등을 통해 보험필요성, 보험행정, 보험수용도 등 노사의견수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감독 지속 추진하여 불법파견 근절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마련('21.1분기 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 (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14개 직종 → ('21.7.1. 시행 예정)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1개 직종 추가 확대 시행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특고 적용확대 시행('21.7.1.)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 철저 –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용범위 확대 추진 – 질병 ·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사유 엄격히 제한 시행('21.7.1.~, 기존 적용제외자 약 44만명 산재보험 적용) * 적용제외 사유제한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위험 · 저소득 특고 직종 대상 보험료 50% 한시적 경감 추진

77	Ⅴ-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근로자의 안전보건 예방
○ 근로자 산업재해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체계 혁신을 통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 추진
○ 노동자의 정신건강 영역까지 안전보건 보호영역 확대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근로자 체험교육 강화
○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재해 조사 역량 강화

관련예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산재예방시설건립	6,134	11,173	5,039	82.1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2,858	4,352	1,494	52.3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1,000	574	△426	△42.6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1,631	6,247	4,616	283.0
종합안전보건체험교육장 건립지원	645		△645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원청의 책임확대, 유해작업의 도급 제한 등 그간 3차례 발표한 대책*의 제도개선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9.1.16) 및 4개 하위법령 개정('19.12.26.)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

– 매년 산재은폐로 전년도에 형사처벌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산재은폐로 공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감독 실시(18년~)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 (뇌심혈관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18년 만성과로기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 작업환경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등 7가지

– (직업성 암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직업성암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기준*을 다른 업종까지 확대

*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8대 상병의 역학조사 생략 및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18.7월)

** ①석고보드, 슬레이트 등 석면 관련 업종의 폐암, 악성중피종 ②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의 폐암 ③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종, 조혈기계질환

'20년 이행실적 (1.1.~12.31.)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1.1.16.)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 설문조사 결과, 산안법 내용 숙지(86.3%), 긍정적 변화 인식(65.6%) 등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양형위원회에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조정 요청

* 산안법 위반 범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 편재,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검토('21.1월 양형기준안 공개 → '21.3월 의결 예정)

○ 고객응대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콜센터 상담원 등 직종별(11종)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방문노동자 직종에 대한 보호 매뉴얼 제작·배포('20.12월)

	○ 건강보험자료, 119 등 출동 내역, 요양 신청 자료,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은폐 사업장을 적발하여, 과태료 · 벌금 등 처분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해조사 역량 강화 – (업무관련성 특진 확대) 직환의 등 전문가가 직접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특진대상* 확대 * 근골('17.10월) → 뇌심 · 소음성난청('18.4월) → 정신('19.4월) → 50인 미만 제조업체 · 하지정맥류('20.11월) – (특진 외부의료기관 확대) 공단병원 외 외부의료기관 특진확대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20.4월) * 녹색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원주 기독병원, 고신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개 민간병원 인증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CIE) 양성 및 지원(2급 30명, 3급 50명)('20.9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산재 사고사망자수 800명대 진입 등 감소 추세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양형기준 개선 추진(양형위 협의) 등을 통해 기업, 경영책임자,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참여 제도 활성화 착수 ○ 사업장의 산재 미신고 관련 행정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미신고 · 은폐 근절 분위기 조성 ○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강화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상 신속성 강화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및 특진대상 확대 등으로 특진건수 증가 * 질병 처리기간(일): 166.8('18년) → 186.0('19년) → 172.4('20년) * 특진실시(건): 5,398('18년) → 6,025('19년) → 9,352('20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 ○ 법 ·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 지속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판정위원회 운영개선, 재해조사 효율화 등 다각적 제도개선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여전히 산재처리기간 장기화

향후추진계획	○ 기업의 상시적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지도 · 점검, 컨설팅, 재정사업 지원 등 추진 – 산재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여 실시 –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위험기계 · 기구 교체, 노후공정 개선 등 안전투자혁신사업 집중 지원('21년 3,271억)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경비원 등)로 확대('21.上)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 지역별 ·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체험교육장 확충 추진 * ▸ 여수 석유화학 특화 체험장 ('21년) 착공 → ('23년) 개관 ▸ 익산 ICT 기반 체험장: ('21~'22년) 기본설계 → ('23년) 착공 → ('24년) 준공 · 개관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 (산재처리 신속성 강화) 추정의 원칙 적용강화, 판정위원회 심의제외 확대, 재해조사 단계별 과정관리, 조사업무 효율화 등 산재처리 단축 – (판정위원회 운영개선) 자살사건 분산 심의, 회의횟수 확대 등 운영 개선

78	Ⅴ-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제목표	○ 최저임금 합리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원 –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및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 영세기업 부담 완화 추진 ○ 최저임금 준수 사전계도 및 지도 · 점검 – 최저임금 업무 전담자 지정, 편의점 · 음식점 등 취약업종 대상 기초노동질서 준수 중심으로 사전계도 및 지도 · 점검 – 최저임금 자율적 개선 지원 및 최저임금 준수 관련 집중 홍보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164,716	1,296,564	△868,152	△40.1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18.6.12. 최저임금법 개정, '19.1.1. 시행)

○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후 지도 · 점검,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 진행

* 10,053개소에 대해 자율개선 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20년 최저임금 정책광고(12월, 생활매체 중심), 홈보물 제작 및 인터뷰 실시 등 다양한 현장안착 지원 활동 추진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18.1월~)

* ('17.7.15.) 최저임금위원회 '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전년 대비 16.4% 인상)

* ('17.7.16.)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의 하나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발표

* ('18.8.22.)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 으로 사업주 부담경감을 위해 '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발표

– ('18년) 노동자 264만명, 사업장 65만 개소에 2조 5,465억원(85.6%) 집행

– ('19년) 노동자 343만명, 사업장 83만 개소에 2조 9,165억원(99.97%) 집행

'20년 이행실적 (1.1.~12.31.)	○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지원)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지원 – '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 간담회(15개소), 토론회(5개 지역), 현장방문(2개소) 등 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 ○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 정책캠페인 및 최저임금 준수 지도, 영세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 영세소상공인 대상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통해 정책안내·사전계도* 실시 및 노무관리 지도** * 161,296개소, 187,178명 계도·홍보 /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실시(5,057개소)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20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노동자 360만명, 사업장 83만 개소에 2조 6,610억원(99.995%) 집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최저임금 결정 투명성·합리성 제고)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의 원만한 현장안착) 영세사업장 지원과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를 통한 현장 안착 ○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 최저임금 영향이 큰 10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 및 노동자 고용 안정에 기여 * (규모) 5인 미만(73.3%), 5인~10인 미만(16.1%), 10~30인 미만(8.9%), 30인 이상(1.7%) (업종) 도·소매(24.8%), 숙박·음식(18.2%), 제조(15.4%), 보건업(8.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 상황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속적인 지원 필요

향후추진계획	○ (최저임금 결정 투명성·전문성·합리성 제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전문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토론회 확대, 사업장 방문 등 ○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 '21년 적용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캠페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 영세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등 계속 예정 ○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 '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금을 고려하여 '21년에도 계속 지원(예산 규모 1.3조원)

79	V-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직업능력정책과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 소외없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강화
– 기존의 베이비부머 훈련 성과, 신중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지정·운영
– 기본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능력(digital literacy)을 습득하는 기초 ICT 과정 보급·확산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학습할 수 있는 직업훈련 분야의 온라인 공공 플랫폼, 플립러닝 등 선진 훈련방식 확산 매체로 활용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비정규직 종사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훈련 실시
– 자영업자·특고 대상 직업훈련 계좌 신설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2,518	2,756	238	△9.4%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786	366	△420	△53.4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지역산업맞춤형훈련)*	31,343	31,343	–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체계적현장훈련)	3,600	9,300	9,300	–
■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1,866	2,399	533	28.6
신기술장비확충(신중년특화개편)	2,000	2,000	–	–

* 중장년 기초 ICT 보급은 지역산업맞춤형훈련(내역사업) 중 일부 예산을 심사하여 운영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강화
– 신중년의 취·창업을 위한 장기 훈련(6개월 이상)을 제공하는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확대운영 (실습 위주 수업 및 자격증 취득과 연계)
* ('18년) 4개 캠퍼스 7개 과정 시범운영, 300명(그린에너지설비, 자동차, 스마트전기 등)
* ('19년) 7개 캠퍼스 12개 과정 운영, 500명(의료정보, 스마트전기, 컴퓨터 응용기계 등)
– 신중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능력(digital literacy)을 습득하는 ICT 과정 보급·확산
* ('18~'19년 총계) 향상 123개 과정 1,346명, 양성 125개 과정 2,430명, 총 3,776명 훈련 실시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18.2월), 플랫폼 구축 착수('18.11월),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 콘텐츠 1,191개 탑재*('19.8월~) * 민간 콘텐츠 154개(6개 기업 입점) 및 한기대 · 산인공 등 기개발 공공 콘텐츠 1,037개 등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 훈련컨설팅 581건, 안내 및 상담 1,643건, 훈련실시 지원 589건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지원 * 훈련수료인원: ('18년) 1,541명 → ('19년) 2,122명 – 자영업자 · 특고 대상 직업훈련 계좌 신설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 · 특고 대상 특화된 훈련과정 지원('19년 60개 과정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확대 – 신중년특화과정 참여 연령층을 확대하여 '20년 하반기부터 40대 이상 참여 가능 – 신중년 특화캠퍼스 확대 운영, 취 · 창업을 위한 신중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10개 캠퍼스 16개 과정(자동차과, 녹색산업설비과, 스마트전기과, 외식조리과 등) 운영, 700명 정원(704명 참여) – 신중년 대상으로 기초 ICT 과정 지속 확대 운영 * ('20년) 향상 189개 과정 2,177명, 양성 3개 과정 44명, 총 2,221명 훈련 실시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1차 고도화 완료('21.12월) ㆍ쌍방향 원격훈련 시스템, 콘텐츠 저작도구 등 STEP 기능 확장 ㆍ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14.56억원) 확보를 통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증설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 혼합훈련 도입 지원 ㆍ민간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원격훈련 인프라(LMS, 콘텐츠, 서버 등) 제공: 290개소 * 분양LMS(서버독립형): 62개소, 분양ASP(서버공유형): 228개소 ㆍSTEP 온라인강의실 활용기관 대상 현장방문 컨설팅(176회) ㆍ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 신규 콘텐츠 확보·탑재(592개) * 공공 콘텐츠 257개(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 참여), 민간 콘텐츠 335개(현대씨앤알 등 20개 기관 참여)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체계적현장훈련(S-OJT) 425개소 지원,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유형 다양화*로 인한 확대(11개소) * 지역 5개 →지역 5개, 광역 2개, 특화센터 4개(스마트팩토리형2, 산업지구2) * 훈련컨설팅 1,198건, 안내 및 상담 7,448건, 훈련실시 지원 1,274건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지원(2,897명)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자영업자 · 특고 대상 특화된 훈련과정 지원(20개 과정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확대 –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확대 운영,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 지원('20년 700명 정원, 704명 훈련)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기초 ICT 과정 확산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및 장기화로 중단된 집체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원격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직업훈련 공백 최소화에 선제적 대응: ('19년)40개소 → ('20년)290개소

		–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 혼합훈련 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전년 대비 인원을 크게 확대 ('19년 11.9만명 → '20년 31.7만명)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대상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지역, 광역, 특화센터)를 통한 체계적현장훈련 지원으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강화
–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확대('21년 13개 캠퍼스 20개 과정 900명 훈련 예정)
– 신중년 재직자 중심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을 제고하는 ICT 특화과정 지속 운영('21년 2,500명 이상 훈련 목표)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STEP)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 강화 및 쌍방향 비대면 실시간 강의 시스템 등 STEP* 2차 고도화** 추진
* STEP 구축 및 개통('19.10월), STEP 1차 고도화 완료('20.12월)
** ①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 ②PBT(Project Based Training) ③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 ④고객관리시스템 ⑤STEP 기능 개선 등
– 공공, 민간, 개인 등이 개발한 훈련콘텐츠를 유 · 무료로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 오픈 마켓」에 탑재
– 혼합훈련 확산을 위한 LMS 분양, 과정 개발 · 운영 컨설팅 등 원격훈련 인프라 지원사업 확대
– 민간 훈련기관의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
、(인프라지원) 한기대 보유 스튜디오 직업훈련기관 활용 지원
、(개발컨설팅) 훈련기관의 영세성으로 변화 적응에 한계가 있는 기관에 원격훈련 콘텐츠 관리·지원 체계 설계 및 지원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의 직업훈련 종합컨설팅 실시 및 및 K디지털 특화훈련 시범실시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지속 지원('21년 366백만원)

80	Ⅴ-1-⑫	신중년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근로기준정책과
과제목표	○ 신중년근로자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신중년근로자 실업급여 보장 ○ '생애경력설계서비스-직업훈련-재취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개선 · 확충 ○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 확산 ○ 경영상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중장년층 취업지원	25,640	22,252	3,388	△13.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설('18.1월~), 6,447명 지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발표('18.8월)

신중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 신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 (신중년 특화훈련 확대)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 후 취업연계,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 확대**
- (민간일자리 지원 강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해당 직무 범위 및 지원 규모 2배 이상 확대**, 금융권 퇴직자 전직지원 강화, 민간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지원

○ 신중년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제도 개선 운영

–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분기당 24 → 27만원)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사업주 사정 → 퇴직 준비 및 부양가족 질병 등 개인 사정 포함)

* '19년말 기준 7,433명 지원으로 전년 대비 876.3% 지원 증가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연령대 맞춤형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적극 지원

* (19년) 28,112명 → (20년) 32,514명

○ 경영상 해고 및 희망퇴직 남용 방지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통해 쟁점사항 보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근로관계 종료 관련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희망퇴직 및 경영상 해고 제도 파악 및 법 ·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자문 회의: '18.6.7, 7.10, 7.26, 8.17, 9.4, 10.2)

'20년 이행실적 (1.1.~12.31.)	○ 신중년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신설 –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20년 지원규모 246억원, 9천명) ○ 계속고용 및 고령자 고용연장 논의 준비 – 고용연장의 사회적 논의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 포럼 운영 * (연구)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효과 분석, ▲기업 고용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총 9건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비자발적 이직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 – '20.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의무 부여 ○ '퇴직전문인력을 지역의 전문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매칭 공공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코로나 시국에도 참여자 증가 : ('19년) 2,051명 → ('20년) 2,349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중년 취업자 및 상용직 비중의 증가로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코로나19에도 불구,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성은 지속적으로 개선 – '15년 이후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연장 추세가 지속('15년 14년 8개월→'20년 15년 7개월) 되는 등 고령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점차 더 오래 근무하는 경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시행하는 첫 해로, 사업주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향후추진계획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안착 – 의무대상 기업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업 · 직종 특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보급 ○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 수립 – 점진적 퇴직 지원,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 재취업지원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 수립 ○ 경영상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도 지속 ○ 신중년 구직자가 재취업하기 적합한 적합직무 추가 발굴 지속

81-1	Ⅴ-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과제목표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주요내용	○ 청소년 다수 근로 업소 ·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 청년 체불노동자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간소화(확정판결요건 폐지)하여 체당금 수령기간 대폭 단축 ○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관련예산	○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청소년 다수사업장 점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인 편의점 · PC방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 · 점검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 · 홍보 실시

○ (피해 청소년 권리구제)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재직자 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사실 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발표('19.1.17),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신창현 의원, '19.2.11)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19.7.1)

'20년 이행실적 (1.1.~12.31.)

○ (청소년 다수사업장 지도) 소규모 · 취약사업장 대상 최저임금 준수 등 노무관리지도 실시

* 12월말 기준 현장지도 5,057개소, 서면지도 5,000개소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 · 홍보 실시

*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693회 · 69,351명 대상 교육 실시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전국 117명 위촉, 현장 홍보 161,296개소 실시

○ (피해 청소년 권리구제)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 · 권리구제 실적: 상담 17,502건, 권리구제 481건

○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재발의('20.10월)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9.2월)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 완료로 폐기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전적으로 충분한 제도 안내, 교육 등 계도활동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 사후적으로는 심층 상담 및 신속한 무료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열정페이 방지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에 기여 ○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체불청산 확대* * ('18년) 1,865억원, 64,106명 →('19년) 2,911억원, 75,678명 → ('20년) 4,697억원, 96,171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전히 근로조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 인식 제고도 필요

향후추진계획	○ '21년에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노무관리지도 등 자율개선 중심의 지도점검 실시(12,000개소)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81-2	Ⅴ-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종합상담, 분쟁중재 등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근로권익 보호

주요내용

○ 부당처우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24시간 상담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방문 등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 확인,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 청소년의 생활 여건 및 근로 사유에 맞는 청소년 관련 기관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연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5,921	6,094	173	2.9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1,250	1,2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및 근로현장도우미의 찾아가는 중재·해결 서비스 제공(82,831건)
- 청소년의 근로사유 및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종합서비스 지원(286건)

○ 학교,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4,457회 151,694명)
○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제공('19.9월~)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및 아르바이트 길잡이 안내서 배포

'20년 이행실적 (1.1.~12.31.)

○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상담 수요 대응(상담 및 현장지원 71,004건)
- 비대면 상담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야간 전화상담 운영 및 챗봇 상담 도입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고용주를 직접 찾아가 신속한 중재·해결 지원
-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41건)

○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접근성 제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597개교)
○ 청소년 스스로의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학교,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1,118회, 54,390명)
○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724건)
○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 개발 추진(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협조)
○ 지자체를 통한 '아르바이트 길잡이' 안내서 배포로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정보제공(88,000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확충으로 전국적 보호 지원 체계 및 기반 마련 * ('13~'17년) 시범운영, 중앙지원단 1개소 → ('18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3개소 → ('19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4개소(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부당처우 해결 지원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 '근로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업주와 면담·중재 해결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20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 99%, 재상담 요청 의사 99% ○ 정부합동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점검, 정당한 근로문화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연예인 등 대상 노동인권교육 운영 ○ 노동인권교과서 개발 및 보급 추진(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협조)

81-3	Ⅴ-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근로권익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확대			
주요내용	○ 직업계고 3학년 대상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 운영			

관련예산

(교육비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직업계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이버 교육)	200	200	△0	△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8년)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3학년 전체 (97,680명 이수)
- 교육 기간 및 시간 : '18.5.1.~12.31.(8개월), 15차시
- 교육 내용 :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주요 내용

○ (2019년)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3학년 전체 (90,625명 이수)
- 교육 기간 및 시간 : '19.5.1.~12.31.(8개월), 12차시
- 교육 내용 :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주요 내용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직업계고 3학년 대상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3학년 전체
- 운영 기관 :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기관별 역할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고용노동연수원) 컨텐츠 개발 및 학습 운영, 이수자 관리
- 교육 기간 및 시간 : '20.3.1.~12.31.(10개월), 12차시
- 교육 내용 :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주요 내용
- 교육 방법 : https://youth.koreatech.ac.kr 접속 후 수강
- 운영 예산 : 200백만원(교육부 특별교부금)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업계고 3학년 대상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 교육 실적 : 수강 인원 83,285명 이수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의식 함양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의식 함양을 통한 권익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직업계고 3학년 대상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속 추진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약 8만여명) – 운영 기관 :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교육 기간 및 시간 : '21.3.1.~12.31.(10개월), 12차시

82	V-1-⑭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과제목표	○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주요내용	○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대표성·민주성을 제고하고 논의의제를 확대하는 등 전면개편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정비 * 국제과제 변경: (기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종 사회 기본 계획' 수립 → (변경)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 극복 및 노동존중 사회 실현 ○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체계적·전문적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여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동존중 인식 확산			
관련예산	○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노동인권교육 강화사업)	1,810	1,81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개편'에 합의('18.4.2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舊 노사정위원회법, '18.6.12), 4개 의제별위원회 운영('18.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18.11.22)

○ 민주노총 불참('19.1월), 노동계 계층위원(3인)의 경사노委 본위원회 불참에 따른 대화 중단 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 의제·업종별委 논의 지속 및 합의 도출*, 경사노委 개편('19.9월)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력
*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합의('19.2.19.) 등 3건

○ 경사노委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논의를 통해 최종 공익위원안 도출('19.5월)
–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동조합법」 정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19.10월)

○ '18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헌법상 보호된 근로자의 권리 등의 노동권 내용 반영,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 (※ 중학교 '사회' 검정교과서 8종,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교과서 5종)

'20년 이행실적 (1.1.~12.31.)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및 대화 활성화
–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노사정 공감대 하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합의('20.3.5) → 양노총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노사정 협약 잠정합의('20.6.3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7.28. VIP 참석)
– 중앙 단위 선언 이후 지역(71개소), 업종(5개), 사업장(88개소) 단위에서도 사례 확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시스템 내실화 및 체계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 확대와 함께 노사정 합의문, 공익위원 권고문 등 다양한 성과* 도출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3.2) 등 13개(합의12, 권고1) – 사회적 대화의 참여주체 대표성 제고 및 취약계층 이해대변 채널 구축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20.8.3), 소상공인('20.11.26) 등 계층별 위원회(4개) 발족 ○ 1년여의 사회적 대화로 마련된 공익위원안, ILO 협약 및 권고 등을 토대로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12.9) – '20.7월 노조법 개정안 등 국회 再 제출 전후, 노사단체 · 학회 · 전문가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해 청소년부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 '20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원 수: 62,176명 (당초 목표대비 103.6%) – 전문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현장보급을 위한 콘텐츠 보급체계를 수립하여(20.10.16) 체계적 현장수요 대응 및 콘텐츠 품질관리 * '20년부터 학교 · 공공기관 ·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각종 강의안, 지도자료, 웹툰/소책자 등 제작 · 배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모바일 강의 및 리플릿 배포("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경사노위 개편(2기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당면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실천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와 더불어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일자리의 확산 지원 – 경사노위 내 업종 ·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서도, 세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력 지속 ○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본권인 ILO 핵심협약의 발판을 마련 –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30년만의 약속을 이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EU FTA 등 노동권과 관련한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 분리 · 독립시키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20.10.1.)으로 노동인권교육 기틀 마련 – 단순 집합강의에서 벗어나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방식과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청소년) 참여형 교육운영 등으로 자주적 진로설계 역량 배양 ▲(소규모사업장)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교육수요 대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은 경사노위 출범 지연('18.11월) 및 본회의 연기 지속('19.3~9월) 등으로 사실상 노사정 대화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나(국정과제 변경), –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은 그간 각각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 · 추진 중 * 국제과제 변경: (기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종 사회 기본 계획' 수립 → (변경)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 극복 및 노동존중 사회 실현 ○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등 맞춤형 교육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경사노委 중심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업종-지역 단위 연계를 강화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 개정 노동관계법 하위법령 정비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설명자료 배포, 교육, 홍보 등 추진 ○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노동인권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 보급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비대면 교육 확대 · 효율화

83	Ⅴ-1-⑮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통로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과제목표	○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지원체계 구축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주체별, 지역별 이해대변 ·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 활성화 ○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 강화			
주요내용	○ 중소 · 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와의 소통채널 마련 및 정례 협의체계 구축 ○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 강화를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이익대변 강화 –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성 · 대표성 확보 * 근로자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관리 등 구체적 선출 절차 신설 등 – 근로자 이해대변기능 확충을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관련예산	○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변단체(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관련 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중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변단체 지원	240	223	△7	-7.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소통 활성화) 중소 · 영세 미조직 취약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별 · 권역별* 중층적 소통 채널 구축 추진
* (대상별)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근로자 대변단체 ↔ 본부
* (권역별) 지역별 미조직 취약근로자 이해대변 단체 ↔ 지방관서
– 중층적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계층별 대변단체와 정보교환 및 이대대변 창구 기능 수행
–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변단체 지원사업 추진('19년): 8개 단체 선정 및 지원(227백만원)

○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
– ▲(1기 경사노위, '18.7월~'19.7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 핵심 현안 논의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논의 지연 → ▲(제2기 경사노위) '19.11.18.부터 중요 의제로 논의

○ (현장지원) 법 · 제도 개선 이전 현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노사협의회 설치 · 운영멘토링」 실시('18.1월~)
– 노사협의회가 실질적 근로자이해 대변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19.4월)」 수립 · 시행 → 노사협의회 설치 · 운영 지도 강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미조직 이해대변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변단체 지속적인 정례협의체 가동)
* 비정규직: 3.12, 3.19, 6.17, 9.11, 12.4, 12.22
* 청년, 여성: 3.12, 6.2, 9.23

○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추진(계속)
– 8개 단체 · 9개 사업 선정('20.2.10.) 및 지원(240백만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계층별 위원회' 출범
– 취약계층의 노동현안 의제 발굴 · 권익구제 방안 논의 및 사회적 공론화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20.10.16)

– 10개월간에 걸친 논의(공식회의 10회 이상)를 진행하여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 의결로 합의

* 노사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20.6.12)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조정·중재 노력으로 논의 진행

〈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 〉

1. 근로자대표의 선출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회의'(과반수 의결로 의사결정)
   - ○ (과반수 노조 및 노사협의회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 금지
2. 근로자대표의 임기
   - ○ 3년 보장(노사합의로 3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3.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 ○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사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면합의 체결·이행 관련 근로자의 3고충 해결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협의 요구 ▲근로자대표 활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개입·방해 금지
   - ○ (근로자대표 책무) 근로자 의견수렴 및 비밀유지 의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년·여성·비정규직 이해대변을 위한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변단체 정례협의체 지속 운영하여 노동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소통 강화

– (중부청)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 구성 시범 추진 등, (부산청) 특성화고 실습공간 산업안전 교육 실시 방안 마련 협의, (광주청) 아파트 용역 관련 6자 협의체 구성 등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을 통해,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업 지원

– (청년유니온센터) 노동상담사 양성, 노동인권 콘텐츠 제작 등

– (여성노동자회) 성별임금격차 조사·연구 등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현장 교육, 배달노동자 실태 조사 등

○ 노사정합의를 반영한 근로자대표제도 법·제도화 시 대표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위와 활동을 보장받아 실질적인 근로자 이해대변 가능

– 특히, 노사 간 이견 조율을 통해 노사정합의로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역 내 청년·여성·비정규직 미조직단체들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정례협의체 구성 및 협력을 위한 단체 발굴·정기적 네트워크 참여 여력 부족

향후추진계획

○ 이해대변을 위한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변단체 정례협의체 지속 발굴·운영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사업과 연계하여 의견수렴·현장·서면점검 등 추진

○ 경사노위 노사정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참여법」 등 관련 입법 추진

84	V-1-⑯	임금체불근로자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과제목표	○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근로자 생계 안정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제 적용대상 확대(퇴직자→ 퇴직자+재직자) ○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지급기간 단축 등 체당금 제도를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생계보호 강화			

관련예산

(임금채권보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체당금 지급	433,460	669,831	236,371	54.5
(체당금 지급)	433,460	669,831	236,371	54.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제 적용대상 확대 등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의원, '17.11.3) 및 입법 지원

○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관계부처 협의(15회), 전문가 (5회, 근로기준정책자문委 및 고용노동행정개혁委), 현장 노사단체(5회), 지방관서(3회), 체불노동자 간담회(1회) 등 적극적 의견수렴

○ 재직자 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사실 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발표('19.1.17),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신창현 의원, '19.2.11)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19.7.1)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의원, '20.6.29) 및 입법 지원
-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근로자 확대
* (現)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 지연이자 부과 → (改) 퇴직근로자+재직근로자
- 상습·과다 임금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
*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체불임금액이 3개월분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부과

○ 재직자 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재발의('20.10월)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9.2월)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 완료로 폐기

○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20.1.1.)

○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출산전후휴가간 중 급여 포함) 및 체당금 수급계좌 보호('20.12월)

○ 소액체당금 청구 방법을 온라인, 팩스로 가능하도록 개선('20.8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재직자 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체당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체불청산 확대* * ('18년) 3,740억원, 92,376명 →('19년) 4,599억원, 100,085명 → ('20년) 5,797억원, 110,177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충분한 논의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 실시

○ 재직자 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추진

85	Ⅴ-1-⑰	공정임금체계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공정임금체계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내용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 확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사업장 확대(지방공기업 등 추가) 및 임금분포공시제와 연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추진 ○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 체계로 개편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076	1,929	△147	△7.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872	644	△228	△26.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19년부터 AA 대상을 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19.1.1 시행)

* 기존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

- '20년부터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의무 부과

○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및 공감대 확산
- (임금체계) 직무평가 도구를 활용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개발
- (임금정보)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전면 개편('19.11월), 임금통계를 통해 규모·직종별 임금 현황·격차를 보여주는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개발
- (현장확산)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19년 615건), 경사노위 논의(공공기관委·보건의료委·양극화해소委) 등 공감대 확산 노력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20년부터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및 분석('20.1월~12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20.9월)

* ('18) 42개소 → ('19) 50개소 → ('20) 52개소

○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및 공감대 확산
- (인프라 구축)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매뉴얼 추가 개발(9종→11종),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개발 등
- (정보 제공)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임금·직무 정보 제공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최초 공표(2월 최초, 11월 2차 공표)
- (현장 확산) 임금·평가체계 컨설팅 확대('20년 659건)와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16건) 실시, 경사노위 논의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노력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의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원인 분석' 제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다소 완화 * '16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23개국 중 1위('16년 기준) 이나, '18년에는 34.1%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 AA 대상 사업장 지속 확대('18년 2,146개사→'19년 2,442개사→'20년 2,486개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20년부터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및 분석('20.1월~12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20.9월) * ('18) 42개소 → ('19) 50개소 → ('20) 52개소 ○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매뉴얼 추가 개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정기 공표(매년 하반기) 등 임금 · 직무 인프라 확충 ○ 임금 · 평가체계 컨설팅 확대('21년 670건)와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8건) 실시

86 | V-1-⑱ | 장시간 근로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임금근로시간과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과제목표

○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일 · 생활의 균형' 실현

주요내용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명확화하고, 법정근로시간 적용대상 확대
-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최소화

○ 주 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한 지도 · 감독 강화
- 장시간 근로 업종과 특례업종 등 예외 부문을 중심으로 지도 · 감독 확대
- 포괄임금제 남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기업이 보전할 경우 기업의 보전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근로조건개선지원	15,306	15,043	△263	△1.72
(장시간근로개선)	3,350	2,424	△926	△27.64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창출장려금	1,779,221	186,481	△1,592,740	△89.5
(고용창출장려금)	352,261	186,481	△165,780	△47.1
- 일자리함께하기	49,045	64,625	15,580	31.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노동시간 단축 법안 개정('18.3월 공포)
-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
  * ('18.7월) 300인 이상→ ('19.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 ('20.1월) 50~299인→ ('21.7월) 5~49인
- 특례업종 축소(26→ 5개, '18.7월 시행), 특례 유지 업종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월 시행)
  *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고 취약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 지원

○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 추진('18년 604개소 → '19년 303개소)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내 주근로시간 단축형* 신설('18.7.1.) 및 추진
- 고시(고용창출장려금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 '18년 231개사 5,578명 및 '19년 299개사 10,540명 지원
  * 주 근로시간 단축 및 증가근로자수 증가시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탄력근로제 개편('19.2.19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반영)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20.12.9. 국회통과)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준비 지원 ○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사업장 등에 대해 장시간근로 감독 실시 ○ 일자리함께하기 207개 사업장 13,825명 42,603백만원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기업이 보전할 경우 보전금액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에 기여 * ('15) 2,071시간→ ('16) 2,052시간→ ('17) 2,014시간→ ('18) 1,986시간→ ('19) 1,978시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18년도 버스업종 참여 부진 등으로 지원 실적이 다소 저조(집행률 51.7%)했으나,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산 및 사업장 대상 집중 홍보 등으로 '19년 집행률이 98.6%로 개선 ○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률이 다소 감소(86.9%)하였으나, 지원인원수는 전년대비 증가

향후추진계획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준비 지원 ○ '20.7.1. 5~49명 사업장의 주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에 따른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 집중 홍보 추진

87	Ⅴ-1-⑲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임금근로시간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제목표	○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일 · 생활의 균형' 및 '국민의 휴식있는 삶' 실현			
	주요내용	○ 근로시간 혁신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추진 – 초과근로를 적립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로 대체 · 활용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 휴일 · 휴가제도 개편, 근로문화 개선 등 노동자 휴식권 보장 ○ 노동자의 상황(육아, 돌봄, 학업, 훈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추진 * 단축사유 범위, 사용자 의무 및 거부 사유, 전일제 근로 복귀권 등 종합 검토 ○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민관합동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등 '일 · 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연중) * ① 정시 퇴근 ②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 유연한 근무 ④ 연가사용 활성화 등			
	관련예산	○ 비예산 사업임			
	추진상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완료(2020.1.1. 시행)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18.3월 공포)
* ('20.1월) 300인 이상→ ('21.1월) 30~299→ ('22.1월) 5~29인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19.8.27. 공포) 및 시행령 마련('19.12월)
* 300인 이상, 공공기관('20.1.1.)→30~300인 미만 사업장('21.1.1.)→30인 미만 사업장('22.1.1.)

○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 혁신 등을 주제로 공익광고 제작 · 송출('18~'19년),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수립 · 발표('19년)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19.5월), 제3회 일 · 생활 균형 컨퍼런스('19.11월) 등 개최

'20년 이행실적 (1.1.~12.31.)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제도 신설('20.3월 공포)

○ 300인 미만 민간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지원 방안」 추진('20.11월)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20.1월)

○ 일 · 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하는 문화 혁신'을 주제로 집중 홍보
– 버스, 지하철, 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매체 활용('20.3~12월), 공익광고 제작 · 송출('20.9~11월), 블로그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400여건 콘텐츠 제작 · 송출(연중)

○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마련 · 배포, 온라인상담소 개설('20.9월)
– 재택근무 도입 · 운영지원을 위한 도입절차, 인사 · 노무관리 방안, Q&A, 컨설턴트 상담 등 제공

○ 중소 · 중견기업의 일 · 생활 균형 자발적 참여를 위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확대('19년 45개소 → '20년 100개소)
*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지원 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일 · 생활 균형 핵심 3분야(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실천 캠페인 참여 유도
– 일 · 생활 균형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홍보, 소속근로자 제휴할인 제공(2,548개소 참여)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민간의 휴가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문체부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 '18년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17년 대비 1.4일 증가('20.2.5. 문체부 보도자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일부 기업에서 인건비 상승 등 우려

향후추진계획	○ 300인 미만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을 지속 지원

88	Ⅴ-2-①	공공부조 혁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기초생활보장과
과제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빈곤층 해소 등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소득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17.11~)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36,487	411,206	174,719	73.9

* 내역사업이 아닌 사업 내 제도개선 예산의 일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구 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1단계 ('17.11월)	▸ 수급자 ·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 장애인 · 노인이 포함된 경우
2단계 ('18.10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단계 ('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가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아동(생계·의료)인 경우
4단계 ('22.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단계, '18.10.~)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준비를 위한 TF* 운영('17.12.22, '18.1.12, 4.25)

○ '18년 소득분배악화 상황에 대응,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일부 조기 · 추가 시행('19.1~)

* 당초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는 '22.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월)을 통해 조기 시행

○ '19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50%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8월)

* 당초 '22.10월 추진하기로 하였으나(「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저소득층 소득 악화 대응을 위하여 '19년 중 조기 시행

'20년 이행실적 (1.1.~12.31.)	○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5.16, 국가재정전략회의)을 통해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월~)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 –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 ○ 생계급여 제도개선 방안* 시행('20.1~) * ▲근로연령층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수급자 재산기준(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17.6만명, 의료급여 7.4만명, 주거급여 73.5만명 신규 지원('20.12월 기준 누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노인·한부모 포함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21.1월~)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

89-1	Ⅴ-2-②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제목표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신규가입률 제고 및 가입촉진 활동 강화

주요내용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위주 제도 개선
- 지원 대상 월 보수 인상 및 지원 수준 확대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활용 강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지원, 미가입 사업장 발굴 등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촉진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지자체 등과 사회보험 가입촉진 협약 체결
-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직종 등 가입촉진 및 타겟 홍보

* 알바천국, 알바몬 및 생활정보지, 지하철(KTX포함), 아파트 등 생활밀착형 홍보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011	810,347	△338,664	-29.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사업 목적(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상 사중손실 논란이 있는 기가입자 지원을 중단하여 '20년 대비 '21년 사업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신규가입자 지원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19: 58만명 → '20: 76만명 → '21.5월: 81만명

'19년 이행실적 (1.1.~12.31.)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위주 제도 개선
- 기존가입자 지원축소('19년 40%→30%) 및 지원중단('21년부터)
- 신규 지원대상 확대 ('19년 월보수 210만원 미만 → '20년 215만원 미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19.12.27.)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19.12.31.)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촉진(계속), 취업포털(알바몬 등) 사회보험 가입정보 제공, 사회보험 바로알기 릴레이캠페인 추진(4회, 전국 216개 대학 협업) 등

* 충남도('19.4.17., 보험료추가지원), 제주도('19.8.22., 보험료추가지원) 등

- 전국 48개 지역별 협의체 구성(1년간 173회 운영), 가입서비스요원(440명) 8.4만개소 신규가입 발굴, 집중홍보기간 운영(5월, 10월), SNS 홍보(120개 채널, 1,500회)

'20년 이행실적 (1.1.~12.31.)	○ 사회보험제도 개선 – 지원대상 월보수 인상('20년 215만원→'21년 220만원) – '21년부터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시작(근로자와 동일하게 80%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12.28. 개정)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 ('20.12.29. 개정)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지자체*와 업무협약(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촉진(계속) 및 취업포털(알바몬 등) 사회보험 가입 정보 제공 * 정부 지원금(두루누리 등)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전라북도('20.4.27.), 서울구로구청('20.7.6.) – 취업포털(알바몬 등) 사회보험 가입 정보 제공 – 전국 48개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총 294개 유관기관 참여), 집중홍보기간 운영(4월~6월, 10~12월), 민간기업(네이버)과 비대면 온라인 홍보 및 모바일 지원 안내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규가입자 지원비율 및 지원대상 확대로 신규가입자 지원비율 증가 – '20년 전체 지원자 중 신규가입자 비율 27.9%로 전년대비 2.4%p증가 * '19년 25.5% → '20년 27.9% ○ 고용보험가입 확대추진에 따른 지원자수 증가 – '20년 지원자 274만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 * '19년 265만명 → '20년 274만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신규가입자 지원중심 제도 개편에도 기가입자 사중손실 논란 지속
향후추진계획	○ 예술인·특고 및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계속 – 전국민고용보험가입 로드맵에 따라 보험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대상도 확대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지자체 협업, 유관기관 정보연계, 집중홍보 계속

89-2	Ⅴ-2-②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국민연금정책과
과제목표	○ 사회보험 신규가입률 제고 및 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주요내용	○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신규가입률 제고 – 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 대국민 사회보험 인식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 **고용노동부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1,318,611*	810,347	△508,264	△38.5

* 추경 및 예비비 반영 금액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인상
* 지원수준 : ('17) 최대 60% 지원 → ('18) 최대 90% 지원
* 월 소득 기준 : ('17) 140만원 미만 → ('18) 190만원 → ('19) 210만원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근로일수 20일 → 8일 또는 60시간 이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8.7.31.)

'20년 이행실적 (1.1.~12.31.)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20.1월~) 및 관련 고시 개정('20.1.1 시행)
* 월 소득 기준 : ('19) 210만원 → ('20) 215만원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 전면시행('20.8.)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8.8.1.)되었으나,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조치 2년 적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두루누리 지원) 제도 시행('12.7.) 이후 177만 개 사업장, 748만 명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20.12월 누적기준) * ('18년) 사업장 83.5만 개소, 221만 명, ('19년) 사업장 92.5만 개소, 252만 명, ('20년) 사업장 92만 개소, 240만 명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증가 – (일용근로자 가입자 수) '18년 126만 명 → '19년 134만 명 → '20년 221만 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2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기준 및 소득기준 등 반영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21.12월)

90	V-2-③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고용보험 고령자 및 자영업자의 적용 및 가입요건 완화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경비원 등 도급사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현재는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 – 자영업자 창업 후 1년 → 5년 이내로 가입기간 연장 ○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 등 적용제외 대상자의 고용안전망 적용 확대 –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 산재보험 특고 적용제외 사유제한 및 적용직종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특정사유에 한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고위험, 낮은 근로조건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으로 특고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특례 적용업종 확대 – 1인 자영업자(자동차정비업)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당연적용 직종 지속 확대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구직급여	9,515,779	11,348,600	1,832,821	19.3
■ 자영업자 실업급여	4,103	5,038	증 935	22.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18.12.27. 국회 통과, '19.1.15. 시행)

* ① 도급 등 65세 이후에 사업주가 변경된 모든 경우(영업 양수도, 자산매각),
② 바뀐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 변경

○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당연소멸기간 연장(3개월 연속 미납 → '19.1월 6개월 연속 미납) 및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 (기존) 개업 후 1년 이내 → ('18.1월) 개업 후 5년 이내 → ('19.7월) 가입제한기간 폐지

– 또한, 실업급여 지급수준 10%p 인상(50% → 60%), 지급일수 +30일 추가(90~180일 → 120~210일)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 사회적 대화,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고용보험위원회, '18.7.31) 및 이를 토대로「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제출(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18.11.6)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다만,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및 모든 건설공사로 대상 확대('18.7.1.)

	–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레미콘 1개 직종 →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전체 27종으로 확대('19.1.1.) – 중소기업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20.1.7.) *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 → (개선)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허용 ** (기존) 12개 업종 한정 → (개선) 모든 업종 가입 허용 –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 추진 * 노무제공 실태조사 및 노사 의견수렴 → 적용방안 마련 및 당정협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10.8.)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21.1.12.) → 시행('21.7.1.)
'20년 이행실적 (1.1.~12.31.)	○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20.6.9.), '20.12.10. 시행 *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노·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20.9.11.) 및 국회통과('20.12.9.) *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우선 적용 검토 –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20.12.2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구성 · 운영('20.7.31~)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21.1.5. 공포, '21.7.1. 시행예정) * (현행) 사유에 관계없이 종사자의 적용제외 허용 → (개선) 특고 종사자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만 적용제외 허용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등 5개 직종 특고 적용 확대('20.7월)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1개 직종 특고 적용 확대('21.7.1. 시행 예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중장년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혜자(명): '18년 56,223→ '19년 63,811 → '20년 80,941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 자영업자 가입자수(명): '17년 16,455 → '18년 18,265 → '19년 22,529 → '20.12월 30,071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20.12.10.),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국회통과('20.12.9., '21.7.1. 시행) 등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고 적용제외 사유제한으로 특고 적용제외 신청자 대다수가 산재보험 적용 예상되어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안정망 강화 ○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화물차주**(7.5만명) 등 약 27.4만명을 산재보험 보호 대상으로 확대 적용 * ①방문판매원 ②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③방문교사 ④가전제품 설치기사 ** ①수출입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인화성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6.6만명)를 산재 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 확대(21.7월 시행 예정) * '21.3.4.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946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예술인 · 특고(14개직종 중심) 도입 초기 가입 확대 및 안착 추진 – (예술인, '20.12월~) 고용보험 제도시행 홍보*, 집중가입기간(~'21.3.10.) 운영 및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정착 등을 통해 가입 확대 및 제도안착 추진 – (특고, '21.7월~) 우선적용 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금년 7월 차질없는 적용 준비 및 초기 가입 확대 노력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 철저('21.7.1.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 (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14개 직종 →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 추가 →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용대상 확대 추진

91	Ⅴ-2-④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산재보상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과제목표	○ 고용산재보험 보호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주요내용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공적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구직급여	9,515,779	11,348,600	1,832,821	19.3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용보험법」 개정안(정부입법) 국회제출('18.4.6)
-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의원 설득(법안소위 위원 설명 20여회), 당정협력 강화(11.12. 당정협의 안건 상정) 등 적극적인 입법 지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용보험법」 개정(정부입법) 및 시행('19.10.1)
* 국회 환노위('19.3.22), 법사위('19.4.4) 의결 → 본회의 통과('19.8.2) → 공포('19.8.27)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완료('19.9월)
*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상한조정(13만 2천원→11만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3%p 인상(1.3→1..6%)
- 법 개정에 따른 제도 홍보,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시달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 (뇌심혈관계)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18년 만성과로기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근골격계질병 추정의원칙 강화) 근골격계 6대 질병*에 대해서 종사직종, 근무기간 등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토록 별도 기준 마련
*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외상과염
- (직업성 암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직업성암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기준을 다른 업종까지 확대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월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및 지급자에 대응하여, 3·4차 추경 예산투입(3.6조원)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급여 지원

○ 신종 감염병 대비 업무관련성 지침 마련을 통한 노동자 산재보상 강화
- (코로나19 대응) 업무관련성 판단지침 마련 및 신속처리를 통한 적극 대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공유 근거 마련('20.12.)
- (감염병 종합지침 마련)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위한 업무지침 수립('20.11월)

○ 신속·공정한 질병판정을 위한 인정기준 및 절차 개선
- (주요 질병별 판단기준 개선) 뇌심혈관·근골격계·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판단 및 절차 구체화
- (재해조사 표준화) 처리절차별 조사내용 및 표준문답서 개발, 단계별 지연사유 분석·공유를 통한 절차관리 강화 등

	– (추정의 원칙 적용강화) 인정기준 충족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사건 현장조사 생략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속심의 등 처리 신속성 제고 – (판정위원회 운영개선) 심의내실화 지속운영하되 준상임위원제 전면확대를 통한 안정적 회의운영, 유해물질노출 명백한 질병 심의제외 확대, 소위원회 의결권부여 등 선택과 집중의 회의운영 개선 * 준상임위원제: (기존) 3개 판정위원회→(확대) 전국 6개 판정위원회('20.1.) * 심의제외확대: 일사병·열사병, 쯔쯔가무시증 등 업무관련성이 명백한 질병 심의제외 * 소위원회 의결권 부여: 질병명 확인 위해 보류된 건은 소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의·의결 ○ 출퇴근 재해 소급입법*에 따른 취약계층 산재노동자 보상 확대(산재보험법 개정, '20.6.9. 시행) * 기존 적용일: '18.1.1. → 개정 적용일: '16.9.29. – 321건('16.9.29.~'17.12.31.) 신청, 269건 승인 7,138백만원 집행('20.12월 기준) ○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요양종결 후 1년 이내 → 3년 이내) – 신청기간 확대를 통해 산재장해인 훈련지원 강화 및 최소 생계보장(최저임금) 통한 경제자립 유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5조('21.2.1. 시행) ○ AI 기술 융합 지능형 재활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활 예측·추천을 통한 맞춤형 재활 제공 ○ 지자체와 양방향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누락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공공 협업(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자치단체)을 통해 시니어 노동자 직접 일자리 창출(시니어 산재가이드 시범사업 운영-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 재활인증병원 확대 운영(111개소 → 150개소)으로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및 신체기능 회복 지원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도입으로 산재노동자 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21.6월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발의* 및 통과 지원 * 안호영 의원안(2020.7.23.) – 의원실 협의 지속 및 개정안 통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합동 법률안 설명 및 노사 의견수렴 진행 * (저출산위) 개정안 및 개정필요성 설명(11.3, 11.4) * (소득성장위) 노사 및 전문가 대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개정안 통과 필요성 설문조사(FGI) 등 진행('20.10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20.6.9. 개정, '20.12.10. 시행)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20.12.9. 개정, '21.7.1 시행)을 통해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자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보장성('19년 10월)을 토대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상 신속성 강화 – 산재보상 신속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질병 처리기간 단축추세 * 질병 처리기간(일): 166.8('18)→186.0('19)→172.4('20) * 특진실시(건): 5,398('18)→6,025('19)→9,352('20) – (판정위원회 운영) 준상임위원제 운영 등을 통한 회의횟수 증가 및 심의신속성 제고, 심의제외질병 확대 추진을 통한 회의운영 개선 * 심의건수(건): 10,006('18) → 14,206('19)→ 14,422('20) * 회의횟수(회): 1,058('18) → 1,517('19)→ 1,525('20) * 심의기간(일): 29.4('18) → 39.9('19)→ 35.3('20)

		○ 출퇴근 재해 홍보 및 재도개선에 따른 산재보상 확대 – '20년 출퇴근재해 접수 건수는 9,279건으로 전년도(8,761건) 대비 5.9%(518건) 증가 ○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70% 돌파(71.5%)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직업재활급여 인상 등으로 원직장복귀율 1.0% 향상('19년 43.4% → '20년 44.4%) ○ 직업훈련수료자의 직업복귀율 1.2%p 향상('19년 60.3% → '20년 6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 * 안호영 의원안(2020.7.23.)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판정위원회 운영개선, 재해조사 효율화 등 다각적 제도개선으로 처리기간 단축하였으나 여전히 산재처리기간 장기화 *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일): 166.8('18) → 186.0('19) → 172.4('20) ○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필요

향후추진계획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 (산재처리 신속성 강화) 추정의 원칙 적용강화, 판정위원회 심의제외 확대, 재해조사 단계별 과정관리, 조사업무 효율화 등 산재처리 단축 – (판정위원회 운영개선) 자살사건 분산심의, 회의횟수 확대 등 운영개선 – (데이터 기반 인정기준 개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행 인정기준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 * (뇌심혈관) 업무시간 및 가중요인 등 인정현황, (근골격계) 직종별 · 업종별 다빈도 상병 분석 및 판정결과 일치율 분석 등)으로 특별진찰 대상 추가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 온라인 등 디지털 생태환경에 맞는 재활시스템 개편 추진 – 공급자(사업) 중심에서 수요자(사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과 내외부 협업 · 확산 ○ 산재노동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재취업 지원금 신설 추진 ○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촉진을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 제출 제도 법제화 추진 ○ 개정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실 등 협의 지속

92	Ⅴ-2-⑤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과·팀명	물이용기획과(상하수도연구과)
과제목표	○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인체위해 여부를 평가하여 노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지속적 관리강화			
주요내용	○ 전국 주요 정수장 수돗물 원·정수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 지역분포 및 처리공정 등을 고려한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유해물질 65종 조사 – 조사항목의 노출수준 및 인체위해도 평가 등으로 수질기준/감시항목 등 관리방안 마련			
관련예산	(환경특별회계) 4(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R&D) (상하수도관리체계 선진화)	421	421	0	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수계별 주요 70개 정수장 원·정수에서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 총 65개 항목 미량유해물질 함량 조사

○ 원수 및 정수공정의 신규물질 탐색을 위한 추정/비표적 조사(2,153종 library 구축활용)
– 원수에서 총 25종(농약류 19종, PPCPs 5종)을 정량 확인

○ 인체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한 수질관리방안 마련
– 최근 4년간 조사항목별 인체 노출 및 위해도 평가, 정수처리율 조사
– 우선관리후보물질에 대한 수질기준/감시항목 설정 검토 등 관리방안 마련

○ 위해도 평가에 기반한 수질감시 강화방안 검토
– (수질기준항목) 위해도 평가결과 수질기준 설정 요건을 충족하는 Nitrosamines(Total)과 Vanadium은 관련 포럼운영을 통해 수질기준 운영여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최종 설정 여부 판정
– (수질감시항목) Quinoline이 최근 3년 연속 95분위 위해도가 감시항목 설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감시항목으로 추가 설정하여 감시 강화 필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수계별 주요 70개 정수장 원·정수에서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 총 65개 항목 미량유해물질 함량 조사
– 총 65개 항목 중 원수에서 총 25종이 정수에서 소독부산물 검출로 원수보다 많은 29종 검출

○ 원수 및 정수공정의 신규물질 탐색을 위한 추정/비표적 조사(PPCPs 70여종)
– 원수에서 PPCPs 총 29종, 정수에서 PPCPs 7종을 정량 확인

○ 인체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한 수질관리방안 마련
– 최근 4년간 조사항목별 인체 노출 및 위해도 평가
– Vanadium, Quinoline, Total Nitrosamines은 최근 4년간 95분위 위험지수(HQ) 또는 초과발암위해도(ECR)가 허용위해수준의 10%를 초과하여 감시항목 설정 검토

○ 위해도 평가에 기반한 수질감시기준(안)마련

○ Vanadium

관리기관별 독성값 차이가 커서 국가 단위 적용사례인 USPEA(2016) Vanadium 참고치 설정에

적용한 독성값을 적용하고, 먹는물에 의한 노출기여율(20%), 국내 표준체중(60kg), 일 음용수량(2L)을 적용하여 감시기준 도출

○ Quinoline

세계보건기구의 위해관리 권고수준인 10만명 당 1명의 발암확률에 해당하는 USEPA(2016)의 독성값을 적용하여 감시기준 도출

○ Total Nitrosamines

감시항목으로 운영중인 NDMA(0.07ug/L)와 NDEA(0.02ug/L)의 감시기준 값이 만명당 1명 수준인 독성값에 근거하여 설정된 점을 고려, Nitrosamines의 통합독성 관리를 NDMA수준인 0.07ug/L로 설정·운영

감시항목 대상물질	감시기준(안)	독성값	일음용수량 (L/일)	먹는물 할당율 (%)
Vanadium	18 ug/L	3 (㎍/kg-day)	2	20
Quinoline	0.09 ug/L	0.003 (per ㎍/kg-day)	2	20
Total Nitrosamines	0.07 ug/L		2	20

결과분석

추진성과

○3종의 미량유해물질을 신규 수돗물 감시항목으로 설정 제안
- Nitrosamines, Vanadium, Quinoline

○ 신규물질 탐색 강화를 위한 비표적 분석 기반시스템 구축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수질자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예산 및 투입인력의 한계로 조사지점 및 항목 확대에 제한

향후추진계획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경로, 제거효율 평가 등 조사 내실화

○ 지속적인 신규 조사항목 및 지점 등의 확대로 먹는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강화

93	Ⅴ-2-⑥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물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 · 추진으로 수질관리 강화				
주요내용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의 차등화를 통해 수질관리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530	940	410	77.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완료(42개, ~'19.12)
– 수계별 유역특성을 고려, 점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대책 수립
* 한강 12개, 낙동강 11개, 금강 11개, 영산강 8개

○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 등 점검 실시(~'19.12)
– 한강, 낙동강, 영산강 21개 중권역 대상으로 대책내용의 이행 점검
* 한강 11개, 낙동강 3개, 영산강 7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완료(51개, ~'20.9)
– 수계별 유역특성을 고려, 점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대책 수립
* 한강 12개, 낙동강 18개, 금강 11개, 영산강 10개

○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 등 점검 실시(~'20.12)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2개 중권역 대상으로 대책내용의 이행 점검
* 한강 12개, 낙동강 11개, 금강 11개, 영산강 8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계 내 유역특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권역별 적합한 수질개선대책 수립 · 추진(51개 중권역)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51개, 매년)

○ 차기 물환경관리계획 수립(11개, '21년)
– 계획기간(~'21년)이 만료되는 11개 중권역 대상으로 차기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94	Ⅴ-2-⑦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물정책총괄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생활하수과
과제목표	○ 수량·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민 물복지 향상			
주요내용	○ '18년 물관리일원화 추진 – '22년까지 취수원 다원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km), 물순환선도도시 5개소 조성,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후상수도 정비	488,955	461,506	△27,449	△5.6
■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33,360	20,171	△13,189	△39.5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5,366	34,461	△905	△2.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제·개정('18.6)으로 수량-수질 물관리 일원화
*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댐, 하천, 지하수 등의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기반 확보
– 유역단위 용수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18.5~'19.6)
– 용수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취수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9.12~'20.5)

○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추진
– 노후 상수관망 정비(72개소), 노후 정수장 정비(15개소)

○ 물순환 선도도시(광주, 대전 등 5개소) 조성사업 추진
– 물순환 회복 조례 제정('18.4),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18.6), 도시별 물순환 순회포럼*('18.10~12)
* 김해('18.10.16), 광주('18.11.16), 안동('18.11.28), 울산('18.12.05), 대전('18.12.12)
– 물순환 선도도시(울산) 착공('19.10), 실시설계안(대전 등 4개소) 마련('19.12), 국회물포럼「물순환과 물포럼」선도도시 조성사례 홍보('19.9)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연구
– 낙동강 수계 중 폐수배출량이 많은 구미·대구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년~)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하천관리 기능 이관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20.12)으로 물관리 일원화 완성

○ 국가수도종합계획(안) 마련('20.12)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안)을 마련
*「수도법」개정(윤준병의원 발의, '20.11)을 통해 국가의 수도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추진

○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추진
– '잔여사업대상지 사업 일괄착수 완료 및 추가 신규사업 지원(공모사업 14개소, '20.4.) 등 사업추진
* 총 146개사업(관망 112개소, 정수장 34개소) 착수완료

○ 물순환 선도도시(광주, 대전 등 5개소) 본격 조성 추진
– 물순환 선도도시(김해, 광주, 안동, 대전)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20, 하반기)
– 저영향개발(LID) 기법 **시공가이드라인 및 행정지침 마련('20.12)**
– 저영향개발(LID) 기법 **온라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물순환 및 LID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연구
– 낙동강 수계 중 폐수배출량이 많은 구미·대구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구미산단 ~'20.9월, 대구성서산단 ~'20.12월)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역단위 공급계획 마련('20.11)
* 161개 지자체 전수조사('19.2~'20.2)를 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계획수량 산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도 관련 국가 수립계획 통합 및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성 강화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실행력 확보 ○ 노후상수도시설을 정비하여 누수를 저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도시 불투수면을 줄이고 물순환을 회복하여 수질 및 가뭄·홍수 등 도시 물문제 개선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22) ○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17~'24, 계속)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18~'21, 계속)

95	Ⅴ-2-⑧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물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과제목표

○ 물환경기준 선진화, 수질 유해물질 환경 배출 최소화, 녹조 저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등으로 하천·호소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주요내용

○ 물환경기준 선진화
- 하천 유기물질 목표기준에 TOC 도입 등 유기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
- 카드뮴, 수은, 납 등의 건강보호항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

○ 수질 유해물질 환경 배출 최소화
- 감시물질 지정으로 관리대상 물질 확대
- 환경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고도화 및 누출사고 예방

○ 녹조 저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 영양물질 유입 차단 및 적정수속 확보로 사전예방
- 녹조 감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33,559	30,923	△2,636	-7.9
·조류경보제 운영	2,116	2,064	△52	-2.5
·수질감시선 운영	488	488	-	-
·녹조원격모니터링기법개발	1,100	1,100	-	-
·입체적녹조모니터링 운영	210	210	-	-
·보구간수심별수질정밀조사	1,100	1,100	-	-
·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	500	1,000	500	100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3,244	-	-	-
·가축분뇨 실태조사	1,775	-	-	-
·가축분뇨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900	-	-	-
·비점오염원 조사연구 및 홍보	1,858	-	-	-
·시범설치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6,696	8,085	1,389	20.7
·비점오염원관리 모범사례 조성 시범사업	1,500	1,500	-	-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2,400	2,590	190	7.9
·범부처 통합 녹조연구체계 구축	-	200	-	-
·상수원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	-	6,990	-	-
·취수·친수시설 개선보상	-	5,59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오염원 감시 · 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 · 폐수 처리장, 폐수배출시설 등 오염원 특별점검 * ('18) 점검 3,380건/개선명령 · 처분 606건, ('19) 점검 2,019건/개선명령 517건 – 녹조 빈발 수계 공공 하 ·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운영 * ('18) 115개소, 총인 390톤 저감, ('19) 128개소, 392톤 저감 – 비점오염원(도로변 쓰레기 등) 수거실시 및 드론을 활용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 조류경보제(주요 상수원, 친수활동구간 28개소) 정상운영 및 먹는 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수장 일제점검 실시(101개소('18), 102개소('19), 5~6월) – 조류대응 모의훈련 개최(대전 월평정수장, 7.19), 중 · 소규모 정수장 기술지원(30개소, 5~10월) 실시 * 정수장 조류독소 검사결과('18.1월~10월) : 393개 시료에서 모두 불검출 ○ 조류경보제(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간 등 28개소)운영, , 먹는 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수장 일제점검 실시(102개소, '18.5~6월), 조류대응 모의훈련 개최(온라인, '18.6월),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지원(100개소, 5~12월) 실시 * 정수장 조류독소 검사결과('19.1월~12월) : 561개 시료에서 모두 불검출
'20년 이행 실적 (1.1.~12.31.)	○ 물환경기준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미관리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연구(Ⅳ, '20.4.29~'21.3.25) ○ (오염원 감시 · 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 · 폐수 처리장, 폐수배출시설 등 오염원 특별점검('20. 5~9월, 점검 936건), 녹조 빈발 수계 공공 하 ·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운영(94개소, 396톤 저감), 비점오염원(도로변 쓰레기 등) 수거실시 및 드론을 활용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 조류경보제(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간 등 29개소) 정상운영, 먹는 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수장 일제점검 실시(102개소, '20. 5~6월), 조류대응 관계기관 사전 모의훈련 실시('20.6월),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지원(124개소, '20.5~12월) 실시 * 정수장 조류독소 검사결과('19.1월~12월) : 236개 시료에서 모두 기준 미만
결과 분석	추진성과 : ○ 물환경기준 선진화를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등 관련연구 자료 축적 ○ 사전예방 대책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로 최근 3년간 조류경보 발령일수 감소 추세* 및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먹는물 안전, 친수활동 제약)사례가 미발생 * 조류경보 발령일수: '18년 11개소 552일, '19년 7개소 492일, '20년 9개소 459일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 특이사항 없음
향후 추진 계획	○ 물환경기준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미관리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연구(Ⅳ, '20.4.29~'21.3.25) ○ 녹조감시 지점 확대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조류발생 피해 예방 – 녹조우심지역 상류 수질감시체계 구축, 조류경보제 운영개선 등

96	Ⅴ-2-⑨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과제목표	○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GAP 농가의 인증 부담 완화, 인증품 판로 확대, 소비자 협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 유도 및 소비자 안심 제고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상시 조사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사전 예방 ○ 축산물 생산단계(농장·도축장 등) HACCP 활성화, 안전성 검사 및 축산물 위생 취약시기(설·하절기·추석 등)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실시			

관련예산

(GAP,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6,812	6,000	△812	△11.9

(농산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산물안전성조사	23,590	23,302	△288	△1.2
■ PLS교육홍보	580	500	△80	△13.8

(축산물, 축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도축검사운영	22,723	20,313	△2,410	△10.6
■ 축산물HACCP지원	1,650	1,567	△83	△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GAP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컨설팅 등으로 '19년까지 농가 99,050호(전체농가의 11.3%) GAP 참여

– ('18)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유통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영양사 자발적 학습조직 운영, 학교급식관계자 팸투어 실시

– ('19) 민관협업 강화로 GAP 농산물 취급 확대 및 신규수요 창출(대형마트 기획판매전, 유통업체 정기협의회 개최, 생산자단체 업무협의회 및 소비자 단체와 국회토론회 등 개최)

○ 생산단계 유해물질(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 안전성조사로 부적합품의 유통을 사전차단 및 농산물 안전성 제고(부적합률: '18. 1.3% → '19. 1.2%)

* '18년 안전성 조사: 73,371건 / '19년 안전성 조사: 60,988건

○ 도축장·집유장 HACCP 적용 우수사례 가이드북 제작·배포('19년), 생산단계 식육·식용란에 대한 탐색조사·모니터링* 및 취약시기(설·하절기·추석 등) 축산물작업장 특별감시 및 기획감시** 실시

* 18년: 미생물 : 115,605건 / 잔류물질 : 177,200건 / '19년: 미생물 : 114,210건 / 잔류물질 : 183,589건

** '18년: 도축장 110건, 집유장 45건/ '19년: 도축장 116건, 집유장 47건

'20년 이행 실적 (1.1.~12.31.)

〈GAP〉

○ 토양·용수·농산물의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 개보수 지원 및 컨설팅으로 인증농가 114,264호(11.3%), 면적 126,986ha 달성

○ 민관협업 강화로 GAP 농산물 소비자인지도 및 유통업체 취급확대 도모

– 대형 유통업체 협의회(5.8, 11.6), 온라인 기획판매전 개최(쿠팡, 위메프 등 2회), 오프라인 기획판매전 개최(롯데 2회, 농협 4회 등 6회), 급식주간 운영(푸드머스 2회), 전용판매대 설치(114개소) 등

○ 교육 · 홍보 강화로 GAP 가치확산 추진

– 언론매체(라디오 470회, TV 3회, 신문(기획광고 20회, 기획기사 8회, 기고문 2회)) 등 언론매체 및 온라인 매체(카드뉴스 21회, 온라인이벤트 5회, 유튜브 2회, 네이버 2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농산물〉

○ 생산단계 유해물질 사전차단과 안전기준 부적합품의 유통차단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안전성조사 : 59,323건)

○ 재배환경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기반 마련

– 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배환경(토양, 용수)에 대한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재배환경 실태조사 : 6,786건[농지 6,526, 용수 260]

○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PLS 교육 · 홍보

– 교육 · 홍보 동영상 배포(5.6), 문자전송(매월), 유튜버 활용 온라인 홍보(5.29), SRT 열차 내 영상 홍보(8.10.~10.9.), TV 홍보(KBS(4.22.,6.29.), SBS(9.1.,9.8.), 농업방송 등

〈축산물〉

○ (HACCP) 축산물 HACCP 컨설팅, 현장기술지도, 조사 · 평가 · 교육 · 세미나 · 홍보 및 193개 도축장 · 집유장 대상 조사 ·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작업장 선정 및 발표

* 정부포상 12점 : 도축장 8(포유류 4, 가금류 4), 집유장 2, 지자체 2

–「축산법 시행규칙」의 축산업허가자 준수사항에 HACCP 선행요건(농장시설, 위생관리, 동물약품관리 등) 중요 항목을 추가하여 농장 위생관리 강화 및 축산농가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관련 고시 개정

* HACCP 인증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대상 확대(업소 → 농장까지 확대)

○ (축산물 안전성 검사) 매년 식육 · 식용란에 대한 축산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 ('20년 검사 실적) 미생물 : 114,640건 / 잔류물질 : 114,200건

○ (위생감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 집유장)에 대한 연간 위생감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취약시기(설 · 하절기 · 추석 등) 특별감시 및 기획감시 실시

* ('20년 위생감시 실적) 도축장 115건(포유류 76, 가금류 39), 집유장 45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GAP)** 생산 · 소비 홍보 강화와 유통업체 협업 등으로 GAP 인증 농가 지속 증가 * GAP 인증농가 : '16.) 75천호(6.9%) → '17.) 86(8.1) → '18.) 87(8.3) → '19.) 99(9.7) → '20.) 114(11.3) ○ **(농산물)** 농약 안전사용 교육 · 홍보 등 사전 예방적 지도를 추진한 결과 부적합률 감소 * 연도별 부적합률: ('17). 1.9% → ('18) 1.3 → ('19) 1.2 → ('20) 1.0 ○ **(축산물)** 농장 · 도축장 · 집유장 HACCP 운영을 내실화하고, 안전성 검사와 위생감시를 통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GAP〉

○ 유통업계와의 지속적 협업, 영양(교)사 · 소비자 단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 홍보로 인증확대 추진

○ GAP인증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내부심사자 지정 확대('20. 30% → '25. 80)

〈농산물〉

○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지속 추진

〈축산물〉

○ HACCP 인증농장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및 인증농가 대상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생산단계 축산물의 미생물 · 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와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 집유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96/98	Ⅴ-2-⑨,⑪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관리 강화로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공급하여 국민건강 확보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로 위해요소 사전관리 기반 조성 ○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등 검사·조사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8,685	6,780	△1,905	△21.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차단**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운영 확대
* 현장검사소 설치 개소수(전체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중 검사비율) : ('18) 17개소(87.4%) → ('19) 24(95.8)
**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차단율(%) : ('15) 57 → ('17년) 71 → ('19) 71.5

○ **유통단계 계란 살충제 검사 부적합률 감소**로 유통 계란 안전성 확보
- '17년에 비해 부적합은 상당히 감소하여 생산단계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개선 확인
* ('17) 1,276건 검사 / 19건 부적합(1.5%) → ('18) 2,325건 / 5건(0.2%) → ('19) 1,947건 / 0건(0%)

○ **원유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NRP) 제도 도입 추진
- 원유 잔류물질 오염수준 시범조사 사업('19.6~'20.3, 9개월)
* (검사실적) 301건 검사 (검사항목) 항생물질·합성항균제 등 71종
- 원유 국가 잔류물질검사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12월)

○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 활동으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률 감소**
* 비브리오패혈증 신고건수(사망자수): ('18) 47건(20명) → ('19) 42(14)

'20년 이행실적 (1.1.~12.31.)

〈농산물〉

○ 신속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 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운영 확대**
*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시장 중 26개소에 현장검사소가 설치('20년 2개소 추가)

○ **미국**에서 국내산 팽이버섯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망사고**(3월)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와 합동 대응**→ 국내에서는 팽이버섯 섭취에 따른 식중독 미발생 유지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6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컨설팅 실시**
- 위생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업체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안전관리 유도

○ **유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실시(4~12월, 생산단계 3,474건-농식품부, 유통단계 1,650건-식약처)

○ **계절별 다소비, 부적합 빈발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 봄철 다소비 봄나물 수거검사(98건), 학교 등에 납품하는 농산물 수거검사(438건 검사, 부적합 2건),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185건), 농산물 취약시기 곰팡이독소 집중 수거검사(6~9월, 941건 검사) 등

〈축산물〉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 도입**('20.4.25) →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 공급 기반 조성

○ 우유의 원료인 원유에 대해 「**국가잔류물질검사체계**」 도입·시행(7월~) → 우유의 안전성 강화

○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냉장차량 지원**(250개소),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등 지원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

○ 최신 유통·소비 트랜드에 대응하여 **지도점검·수거검사** 실시
*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집중점검(2월 328개소 지도점검, 330건 수거검사, 11월 240개소 지도점검, 357건 수거검사), 홈쇼핑 판매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5,232개소 점검) 등

	○ 여름철 식육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분쇄·육회용 포장육 제조업체 특별점검** * 위생점검 257개소 점검 5개소 적발, 수거검사 180건 검사 1건 부적합 ○ **하절기 대비 유통단계 축산물**(달걀·닭고기·알가공품) 살충제 성분 등 **잔류물질 검사** * 8~11월, 달걀 1,402건, 닭고기 137건, 알가공품 49건 검사 ○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의무 도입**('20.10.8), **식육가공업 HACCP 의무 도입 확대***('20.12.1) * (기존) 매출액 20억 이상 → (확대) 매출액 5억 이상 〈수산물〉 ○ 해수부와 협업하여 **바지락 조개젓 원료 사전검사제** 시행, **생산단계 바지락 모니터링 검사 강화** 등 전주기 안전관리를 통해 A형 간염환자 발생 저감 * A형 간염환자수의 획기적인 감소 유도 : ('18) 2,437명 → ('19) 17,598명 → (20) 3,516명 ○ **유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실시**(5~12월, 23개 품목 720건 검사) ○ 생산환경 변화(양식수산물 증가) 등에 대응한 **계절별 수산물 안전관리** *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합동점검(1,476개소 점검), 유통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5월, 10월, 400건),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3,119건),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20.12월~'21.2월) 등 ○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정보 제공 –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1,647건) 및 지도점검(1,352개소), 홍보활동 – 해역별 비브리오패혈증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여 예보지수를 제공하는 예측시스템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생산·유통 환경의 관리와 유통길목 검사 강화** – 농산물 유통단계 잔류조사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료수거 등 업무절차 개선 – 유통 전 신속검사가 가능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확대 설치 – 원유에 대해서도 국가잔류물질검사체계 도입 시행 – 유통 전 부적합 농산물 차단을 위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2개소 추가 설치 * 농산물 유통길목 신속검사 대상이 공영시장 거래물량의 97.2%까지 확대 *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차단율(%): ('18) 70.6 →('19) 71.5 →('20) 72.1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통·소비트랜드의 변화**, 생산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안전점검** 추진 * 축산물 위생감시·수거검사 적합률: ('18)97.2% → ('19) 97.7 → ('20) 98.3 * 농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적합률: ('18)99.2% → ('19) 99.2 → ('20) 99.2 ○ 안전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사건·사고 예방 및 이슈 재확산 차단** – 조개젓 A형 간염 증가에 대응, 해수부와 협업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관리 강화 * A형 간염환자수: ('18) 2,437명 → ('19) 17,598명 → ('20) 3,516명 – 미국에서 국내산 팽이버섯 생식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망사고(3월) 발생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는 팽이버섯 섭취에 따른 식중독 미발생 유지 – 쿠팡 등 물류센터 코로나 19집단발생 관련 축산물 보관업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554개소 점검, 방역수칙 지적사항 현장 개선조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위해 농축수산물 조기차단을 위한 **농축수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관리 강화** –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요인에 대하여 수거검사 강화 및 특별점검 실시 등 식품사고 사전 예방 – 위해 농축수산물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 차단, 회수 등 유통 전 조치로 국민건강 보호 및 안심 제고 ○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정책수단 발굴** 개선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가정용에서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까지 확대 추진 – 식육포장처리업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도입('21.6월) – 데이터 기반의 농축수산물 검사대상 선별시스템 및 수산물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온라인 거래 증가, 외식 문화 발달 등 최근 소비트렌드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 ○ 유통 전 부적합 농수산물의 차단을 위한 **길목검사 확대** –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검사업무 표준화 및 유통업체와 지자체간 협력관계 강화 – 수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신속검사 키트 개발

97-1	Ⅴ-2-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사회복지과 식량정책과
과제목표	○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및 지역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 – (국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 (지역)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관련예산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5,050	10,650	5,600	1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추진
– 민관실무단 구성·운영('18.2~3월) 및 관계부처(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등) T/F 구성·운영('18. 5.31~)

○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을 위한 선도지자체 9개소 선정('18..2.23) 및 선도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18.6회, '19.2회)

○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19.2.13, 9개소)
* 나주시, 완주군, 전주시, 세종시, 화성시, 청양군, 군산시, 상주시, 해남군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1.20, 18개소)
* 광역 6개소(강원도, 경북도, 울산시, 인천시, 전북도, 충북도), 기초 12개소(홍천군, 금산군, 예산군, 남원시, 광양시, 영암군, 김천시, 영주시, 칠곡군, 거제시, 통영시, 광주광산구)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5.13, 8개소)
* 서산시, 장성군, 유성구, 이천시, 구미시, 남해군, 진주시, 김제시

○ 푸드플랜 운영(안전·품질관리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지자체 선정(~5월)
* 안전·품질관리 14개소, 기획생산체계 구축 16개소

○ '로컬푸드 지수'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6월)

○ 푸드플랜 관련 지역사회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7월~)
* 시민사회-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푸드플랜 실행전략 수립 실무교육, 지자체별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교육 등

○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추진상황 현장점검(8월~)
* 연구용역 추진현황, 푸드플랜 추진체계, 애로사항 등 파악

	○ '21년 푸드플랜 수립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9월, 16개소) * 남양주, 강릉, 원주, 청주, 제천, 영동, 증평, 천안, 정읍, 임실, 여수, 무안, 의성, 함양, 양산, 합천 ○ '21년 푸드플랜 운영(안전 · 품질관리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지자체 선정(9월) * 안전 · 품질관리 17개소, 기획생산체계 구축 17개소 ○ '로컬푸드 지수' 결과 발표 및 시상(11.3) * 159개 시 · 군 대상 평가 결과 발표 및 13개 우수 지자체 선정 · 시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 확대** ○ 선순환 체계의 마중물로서 **공공기관 · 군대** 등의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급 확대 **선도모델 창출 · 확산** * 군/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비중(%): ('19) 36.1/27.2 → ('20) 48.5/35 ○ 중소농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 ('13) 32 → ('17) 188 → ('18) 229 → ('19) 469 → ('20) 554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지자체, 농업인, 주민 등 실행주체들의 인식 개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에 맞게 푸드플랜을 수립 ·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시민사회 간 협조체계 구축 - 지역 푸드플랜이 자생적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푸드플랜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식량계획(안)을 바탕으로 우리부 추진계획 수립(상반기)

97-2	Ⅴ-2-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유통정책과
과제목표	○ 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산업 기반 조성			
주요내용	○ 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 수산물 급식 지원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3,146	40,974	17,828	154
(수산물판로확대 – 단체급식 활성화)	450	4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산물에 대한 관심 유도('19.3~11월)
– (교육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 대상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교육하고 수산물 급식 지원
* 지원 수산물 : 전복, 꽃게, 갈치, 고등어, 갑오징어, 장어, 오징어
* 전국 초등학교 "수산물 영양교육키트" 204세트 제작 및 보급
– (쿠킹클래스)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수산물 레시피를 소개하고 조리 실습, 시식 기회 마련

'20년 이행실적 (1.1.~12.31.)

○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산물에 대한 관심 유도('20.3~11월)
– (교육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 대상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교육하고 수산물 급식 지원
* 지원 수산물 : 전복, 꽃게, 갈치, 고등어, 갑오징어, 장어, 오징어
* 단체급식 레시피 어플 개발 및 보급('20.11)
– (쿠킹클래스)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수산물 레시피를 소개하고 조리 실습, 시식 기회 마련
*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교육은 교육키트 및 교육영상 제작 · 배포(1,000명)로 대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우리수산물의날' 캠페인 · 이벤트 실시, 수산물에 대한 관심 유도 ○ 단체급식 레시피 어플 보급을 통해 영양교사에게 수산물 레시피 개발 독려,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 대면교육 개최에 어려움 발생하였으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국내산, 수입산을 지정하여 발주하고 있어 국내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 필요

향후추진계획

○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쿠킹클래스 운영 및 학교급식 우리 수산물 DAY 캠페인 지속 추진
– 학교 급식 쿠킹클래스(비대면방식 우선) 및 우리수산물 Day 진행(50개교 이상 목표)
○ 단체급식 레시피 어플을 활용한 새로운 래시피 개발 및 보급 활성화

98	Ⅴ-2-⑪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어촌양식정책과 유통정책과

과제목표

○ 생산단계에서의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전년대비 7%)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매년 30개소 이상 등록 추진)
-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품목 확대

주요내용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속 강화 및 HACCP 등록 확대

○ 주요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조사 및 오염원 관리

○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한 백신개발 확대

○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산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및 사고발생단계를 파악하고 문제 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조치 등 피해범위를 최소화

관련예산

(농특회계·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20,766	21,418	652	3.1
■ 수산물 위생관리	18,546	19,198	652	3.5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지역자율)	-	-	-	-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제주)	-	-	-	-
■ 수산물이력제 (수산물이력제지원)	2,220 1,890	2,220 1,890	- -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 ('18) 6,600백만원 / ('19년) 1,443백만원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시행(매년)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5월)
-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 지도·점검(5월~10월)
-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사전차단
  * 안전성 조사실적(건) : ('16) 13,268 → ('17) 13,776 → ('18) 16,354 → ('19) 14,921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 등록현황(누계) : ('17) 155개소 → ('18) 194개소 → ('19) 237개소

○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일반해역)에 대한 위생조사 실시
  *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패류 섭취 시 인체에 위해 가능성 물질 조사[('18) 4,552건 → ('19) 5,560건]

○ EU의 생산해역 및 등록시설에 대한 방한점검의 효율적 대응('19.3)
  * 효율적 점검 대응으로 수출국 지위 유지

○ 넙치 연쇄구균 다가백신의 특허 등록 및 기술 이전 완료

○ 사료와 혼합하여 먹이는 경구백신 개발 추진
- 나노 리포좀 경구백신 및 캡슐백신 원천기술 개발 완료

○ 「'18~'19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 수립 및 통보('18.10월)

	○ 참조기, 생굴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19.1) – 이력표시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QR코드) 개발('19.4~7) – (2차연도) 시범사업 판매처 확대 대비, 유통현황 조사('19.8.7)
'20년 이행실적 (1.1.~12.31.)	○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안전관리센터 건립(경남)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 ('19년) / 12억, ('20년) / 18억 – 2020년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 시행('19.12.23일) – 2020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행('20.2.25일)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20.5.22) –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 지도 · 점검('20.5월~10월) –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사전차단 * 안전성 조사실적(건) : ('17) 13,776 → ('18) 16,354 → ('19) 14,921 → ('20) 17,928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 2020년 양식장 HACCP 추진계획 수립('20.1.9) – 2020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20.2~12월, 6억원) – 양식장 HACCP 대형마트 입점협의회('20.6.18) – 양식장 HACCP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관계기관 워크숍('20.8.13) – 양식장 HACCP 등록 양식수산물 대형마트 입점('20.8.) – 양식과정에서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 · 관리하는 HACCP 등록을 확대* 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 · 공급 * 등록현황(누계) : ('18) 194개소 → ('19) 237개소 → ('20) 284개소 ○ 미 FDA 패류생산해역 방한점검 대비 TF 구성 및 운영('20.1) ○ '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 이행을 위한 워크숍 개최('20.10.28~29) 및 계획수립('20.11.5)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해수 및 수산물 위생조사 실시('20.3~12) – 패류 생산해역(총 64개소)에 대한 중금속 · 미생물 등 42개 항목에 대해 4,288건 조사 실시 ○ 일반해역을 대상으로 강우에 따른 패류채취제한 기준설정 11개 해역 완료('24년까지 67개 해역 완료) ○ "패류생산 해역 위생관리안전관리 방안"을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안건으로 상정 ○ 일반해역 위생관리 기준 마련(개정 '20.7.31, 시행 8.19) ○ 넙치 연쇄구균 주사용 아쥬반트 및 서브유닛 백신 개발 완료 ○ 사료와 혼합하여 먹이는 나노 리포좀 연쇄구균 경구백신 기술 이전 완료 – 경구백신 산 · 연 공동연구를 통한 리포좀 백신 시제품 제작 및 효능 검증 추진 ○ 참조기, 생굴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18.12~21.12) ○ 참여 희망업체 컨설팅 추진(총 76건, 등록 57개소/등록률 75%) * 지난 5년간 컨설팅 실적 : ('19년) 66건, ('18년) 55건, ('17년) 51건, ('16년) 95건 ○ 제주 광어 이력제 도입 판매처 확대(홈플러스 전국 108개 지점, 협력업체 7개소) ○ 정부비축 수산물 가공 방출품 이력제 시범도입('20.5/ 참조기, 마른멸치 가공품)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안전성조사를 통한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HACCP 등록 확대*로 양식장 위해요소를 잘 관리하여, 양식장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낮아지는 추이**이며, 최근 2년간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율이 1%를 넘지않아 HACCP 정책 효과로 평가 * HACCP 등록현황 : '05~14까지 43개소 → 18년 194 → 19년 237 → 20년 284 **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16년 0.7% → '17년 0.9% → '19년 0.7% → '20년 0.6%

		○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의제로 상정(6.9)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와 협업으로 패류생산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장 71개소 확충 협의 – '25년까지 지정해역 주변에 37개소 완공, 일반해역은 34개소 착공 또는 정비계획 반영

구 분	총계획	'18~'20	'21~'25
지정해역 하수처리 시설 확충	37개소 확충	■ 대상해역 및 마을 선정	■ 총 37개소 확충 추진 (37개 마을)
일반해역 하수처리 시설 확충	86개 마을 확충계획 반영	■ 대상해역 및 마을 선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반영 추진(34개 마을)

*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위생상태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패류생산 기반 확대를 기대

○ 넙치 연쇄구균 백신의 기술이전 및 조기 산업화를 통해 질병 피해 및 항생제 사용 저감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 유도

○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측면에서 생굴 및 굴비 품목 대상의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19년~21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수산물 이력제 참여희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예산반영 추이) '17~'20년 2,220백만원

향후추진계획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HACCP 등록 추진

○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패류 생산 일반해역에 대한 위생조사 강화

– 조사 항목 : '20(42) → '21~'22(83개) → '23(113)

– 조사 해역 : '20(64) → '21~'23(67) → '24(69)

○ 일반해역(67개해역)의 강우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추진

– '20(11개소) → '21(11개소) → '22(15개소) → '23(15개소) → '25(15개소) → '26(채취 금지 고시 마련)

○ '22.3월 예정된 미 FDA 점검의 효율적 대응(지속적 대미 패류 수출기반 유지)

○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백신개발 및 지원사업 확대

– 사료와 혼합하여 먹이는 나노 리포좀 연쇄구균 경구백신 품목허가 취득을 통한 산업화 완료

○ 수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검토를 위한 평가용역 추진

– 참조기, 포장굴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종료시점(~'21.12월)에 맞춰,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의무화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평가 용역 실시('21.11월)

99 | Ⅴ-2-⑫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중독예방과

과제목표

○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 구축
-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 도모

○ 만성질환, 섭식기능 저하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쉬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필요

○ 음식점 위생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주요내용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를 활용하여 어린이·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 급식시설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 판매환경 개선

○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50,403	56,194	5,791	1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8,250	54,867	6,617	13.7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1,928	1,102	△826	△42.8
식생활 교육 홍보	225	225	-	-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6,366	8,785	2,419	38.0
식중독 예방 관리	1,642	1,866	224	13.6
식중독균 추적 관리	1,597	3,101	1,504	94.2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1,264	1,846	582	46.0
노로 등 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945	952	7	0.7
식중독 예방 홍보	916	1,020	104	11.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어린이,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등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급식관리 지원 확대 : ('18) 34,292개소, 64% → ('19) 39,711개소, 75%
-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 1,755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급식관리 전문인력 일자리(누계) : ('18) 1,637명 → ('19) 1,755명

○ 전국 **7개 지자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요양·보호시설 등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19.7.~, 307곳)
- 어르신·장애인 등 급식관리 지원 근거 마련('19.1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신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반** 마련('18)
- 현장 맞춤형 컨설팅(1,656개소), 위생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삭제·개선('18.5)으로 참여 유도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주방문화개선 협의체 운영**('18)
- 업계, 학계 등 전문가(15명) 자문단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4회) 운영
- 등급제 활성화 노력 및 평가체계·항목개선으로 신청 증가, 7,243건 신청, 3,504건 평가('19)
  * 신청 : '18년 대비 25.3% 증가(1,364건), 예산상 평가 건수(4천건) 초과달성

○ **프랜차이즈업체 및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반으로 참여 분위기 확산('19)
  * 대상 확대('18.12) :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228개소) →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 유치원**(약 40천개소) **급식 서비스 확대**

* 센터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율 : ('19) 75% → ('20) 90%

– 센터 미설치 지역의 신규설치(4개소) 및 사업규모 확대(14개소) 추진 및 급식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연중)

* 경력, 직급, 담당업무 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48회 1,951명

– 식재료부터 조리 · 배식까지 위생관리 지원, 성장단계별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손씻기 및 당 · 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 · 영양교육 및 생활방역 교육 등 지원

* 위생 · 영양교육 지원 어린이 현황 : ('19) 114만명(68%) → ('20) 123만명(9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영양사 · 위생사 등 전문 일자리 창출(연중)

* 전문인력 일자리(명) : ('18) 1,637 → ('19) 1,755 → ('20) 1,811

○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 의무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한 어린이 급식 위생 · 영양관리의 사각지대 해소(12.29)

– 모든 시군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등록 의무화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7개소)에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307개소) **급식관리 서비스 지속제공**(연중)

○ 유관기관(문체부) 사업과 제도 연계를 통한 **위생등급 지정 확대**

– '호텔 등급결정 평가기준' 연계 → 등급 결정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사항 가점 반영(2.18)

*「호텔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

* 호텔업 협회, 관광 협회 등을 통한 위생등급제 홍보 등 신청 유도

–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내 음식점 지정 시 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등급 지정 확대 및 휴가철 식중독 예방 홍보 협의(2.19)

* 휴게소 재계약 시 가점 제공, 전체 1,536개 휴게소 중 1,427개소(93%) 등급 지정

– '음식점 관광품질인증*' 연계 → 위생관련 평가기준을 위생등급 지정결과로 대체하도록 기준 반영(12.1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5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개정

* 음식점 분야로 확대 시행되는 관광품질인증 추진 시 위생등급제 참여 유도

○ 동일 업종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브랜드별 참여 유도를 통해 **자율경쟁 분위기 확산**

– 브랜드 본사 위생담당자 대상 평가항목 교육 등 기술지원을 통해 가맹점으로 위생등급 참여 확산 독려

* 프랜차이즈 영업자 등(22회, 40개 업체), 브랜드 위생담당자 집합교육(9회, 505명)

○ 코로나19 상황 반영한 **생활방역 연계 제도개선 추진**

– 거리두기 지침 실천업소는 위생등급 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9.7) 및 등급 현장평가 시 홍보 병행

– 거리두기 · 식문화 개선 음식점 대상 캠페인 등 홍보 추진

* 음식문화개선 민관협의체 간담회(5.15): 생활방역 연계,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등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원 확대** (전년 대비 15%p 증가)

* 급식관리 지원 확대 : ('19) 39,711개소, 75% → ('20) 40,154개소, 90%

– 영양사 · 위생사 등 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전년 대비 56명 증가)

* 급식관리 전문인력 일자리(누계) : ('19) 1,755명 → ('20) 1,811명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확산 환경 조성

– (위생등급 지정 확대) 우선구역 지정,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한 등급제 활성화 노력 및 평가항목개선 등으로 신청 증가, 신청 13,815건, 평가 11,549건 및 지정 9,991건

* 신청/지정 : '19년 대비 224%/320% 증가('19년 6,170건/3,125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1년 6개소 설치) 및 사업확대(60개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 유치원**(약 44천개소) **급식 서비스 확대** – 식재료부터 조리 · 배식까지 위생관리 지원, 성장단계별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손씻기 및 당 · 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 · 영양교육 및 생활방역 교육 등 지원 * 센터의 어린이 시설 급식지원율 : ('20) 90% → ('21) 9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영양사 · 위생사 등 일자리 창출(연중) * 전문인력 일자리(명) : ('20) 1,870 → ('21) 2,100 ○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400개소) **급식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연중) ○ 비대면 유통 · 소비 증가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지정 확대** – 배달앱 등록 음식점 대상 위생등급 우선 지정 추진(3월~) – 치킨 등 배달업체 브랜드별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 평가항목 교육 등 기술지원(연중) * ('19, 20년) 커피, 제과 등 → ('21년) 치킨, 피자, 햄버거 등 ○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등급 지정업소 정보 표출 확대** – 배달하는 조리식품 포장지에 지정업소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 방안 마련(1월) – 배달앱 등 연계를 통한 홍보 확대 및 인지도 제고(연중)

100	Ⅴ-2-⑬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 주거권 보장			
	주요내용	○ 국민의 주거권 신장을 위한 국가 역할 정립 –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국가의 역할 강조 ○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거복지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포럼, LH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쪽방·노후고시원 등 취약거처 거주자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제도 안내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여부 상담 ○ (**취약계층 우선지원**) PC·만화방 거주자, 아동 빈곤가구 등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자의 경우 자산검증을 생략하여 신속 지원 ○ (**상담역량 강화**) 마이홈 상담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이홈 상담사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표준적 대응요령 전파
'20년 이행실적 (1.1.~12.31.)	○ (**비주택거주자 전수조사**) 정부-지자체(광역·기초·주민센터)-주거복지센터 등이 전국 쪽방촌(5,418가구)·노후고시원(1,793개 68,007실)을 대상으로 이주희망자 조사 ○ (**이주비용 지원**)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진입장벽인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종합 지원 ○ (**취약계층 지원대상 확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 추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쪽방·반지하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로 공공임대 입주희망 6천6백 가구 발굴 및 5천5백가구 입주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반지하 거주자 주거지원 – 행정복지·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 반지하 거주자 및 반지하가 포함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 반지하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지자체·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입주신청·주택물색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과정과 조기 정착을 현장 밀착 지원

101	Ⅴ-2-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재생과

과제목표

○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정비함으로써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정착에 기여

주요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산사업 기반시설비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반 시설비 등 지원
-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00	267,500	-	-

추진상황 :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에 '18년 67,505백만원(21개지구), '19년, 150,000백만원(38개지구)의 기금지원

○ 제도개선
-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시행('18.2.9, 시행)
  * (주요내용)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 마련
-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개정·시행('19.10.24)
  * (주요내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요건 확대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강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에 386,900백만원(90개지구)의 기금지원

○ 제도개선
-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시행령 개정('20.6.30)
  * (주요내용)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대 30%) 인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 특례규정 도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및 법령 정비 등 지속 추진

102	Ⅴ-2-⑮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과제목표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서민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주요내용

○ '18~'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연간 공공지원임대주택 리츠·펀드형 2.4만실 공급 추진

관련예산

(주택도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13,989,585	15,778,912	1,789,327	12.8
■ 영구임대출자	276,788	363,476	86,688	31.3
■ 국민임대출·융자	1,152,252	1,383,549	231,297	20.1
■ 행복주택출·융자	2,321,987	2,879,450	557,463	24.0
■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2,947,700	3,797,300	849,600	28.8
■ 전세임대경상보조·융자	2,982,927	4,000,165	1,017,238	34.1
■ 공공임대융자	1,544,239	897,212	△647,027	△41.9
■ 민간임대융자	1,452,512	1,907,640	455,128	31.3
■ 임대주택리츠출자	1,311,180	550,120	△761,060	△58.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건설형 7만호, 매입·임차형 6만호) 공급 계획수립(2.28)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 실적점검 및 점검회의 실시

*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급실적 1/4분기점검(4.27), 상반기 점검(7.30) , 3/4분기 점검(10.31)

○ 공공주택지구 內 공공분양 비율 상향(15→25%) 및 장기임대 최소비율 상향(15→25%)을 위한 제도개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4.16) 개정완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대료, 임차인 자격, 촉진지구사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7.17)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별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층에게 특별공급 추진 등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 등 임대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청년을 위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2.4만실 공급('18년)

○ '19년 공공임대주택 13.6만호(건설형 6만호, 매입·임차형 7.6만호) 공급 계획수립(4.16)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 실적점검 및 점검회의 실시

* 주토실장 주관 LH 점검회의 1회(9.26), 주거복지정책관 주관 LH 점검회의 2회(7.23, 12.5) 개최

* 공공주택총괄과장 주관 지자체·지방공사 점검회의 2회(7.23, 11.27) 개최

○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중기부와 협업하여 창업지원주택** 2곳 입주자모집 완료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주택

** 판교제2테크노밸리(200호, '19.6 모집완료), 창원반계(316호, '19.12 모집예정)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경제자유구역의 중기근로자까지 입주대상자로 포함)를 위한 관련 법령 등 공급제도 보완 추진

○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1.7만호 공급

– 역세권 또는 대학 인근의 노후주택·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개인공간이 보장된 셰어형 청년주택으로 공급

○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산업단지 인근 등 위주로 공공지원임대주택 2.6만실 특별공급

– 리츠·펀드 방식으로 2.4만실(1.2만호, 호당2실)을 청년(신혼포함)에게 집주인임대사업·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청년에 2천실 공급

– 복합지원시설 설치(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지원주택 거주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 주거질 향상 도모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공공임대유형	'18			'19			비고
	계획	실적	달성도	계획	실적	달성도	
건설형(만호)	7	7	99.5%	6	6	99.5%	
매입형(만호)	2.1	1.9	92.6%	3.1	3.0	97.7%	
전세형(만호)	4.1	5.9	144.1%	4.5	4.8	107.3%	
합계	13.2	14.8	112.3%	13.6	13.8	101.8%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년 공공임대주택 14.1만호(건설형 7만호, 매입·임차형 7.1만호) 공급 계획수립(2.27)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 실적점검 및 점검회의 실시
*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등 점검회의 3회(6.26, 9.24, 12.28) 개최

○ '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14.1만호 대비 15.0만호(106.4%) 공급
– (건설임대) '20년 공급목표 7만호 대비 7.2만호(102.9%) 공급
– (매입임대) '20년 공급목표 2.73만호 대비 2.8만호(102.6%) 공급
– (전세임대) '20년 공급목표 4.35만호 대비 5.0만호(114.9%) 공급

○ '20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목표 6.5천호 대비 8천호* 공급(준공기준)
* 창업·지역전략지원주택 : 1.1천호, 중기지원주택 : 1.5천호, 산단형 행복주택 : 2.4천호, 전세 : 3천호

– (공모 추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20년 상반기 13곳(1,918호), 하반기 9곳(2,136호) 최종 후보지 선정
* '16년부터 지자체 등에서 70곳 13천호의 공모 제안을 받아 그 중 55곳 11.2천호를 선정(선정율 86.2%)

○ 지원대상을 확대(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추가)하여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2.1만호 공급 및 신규 공급모델 지속 발굴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0월)을 통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최초 도입(200호)하고, '기숙사형'의 경우 지방국립대 소재 도시에도 공급(300호)

○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산업단지 인근 등 위주로 공공지원임대주택 2.6만실 특별공급

– 리츠·펀드 방식으로 2.4만실(1.2만호, 호당2실)을 청년(신혼포함)에게 집주인임대사업·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청년에 2천실 공급

– 복합지원시설 설치(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지원주택 거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주거질 향상 도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혼인감소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이 기존 생활거점 또는 원하는 지역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에 임대되고 있어, 집값하락 등을 걱정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 발생,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될 우려가 있음

–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지자체, 주민, 공공주택사업자 등) 갈등조정을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갈등 최소화 노력

향후추진계획

○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연차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103 Ⅴ-2-⑯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택기금과
과제목표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지원			
주요내용	○ 제도개선을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 대출요건 조정 –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신규사업 시행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등 출시			

관련예산

(주택도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9,399,200	9,900,000	500,800	5.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18년		'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258,538	225,093	284,848	230,898
구입	100,517	127,779	54,643	68,741
전세	158,021	97,314	230,205	162,157

* 기금, 유동화, 은행재원 포함 작성

○ '18년 주요 제도개선
– 전월세 자금의 저리대출 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 등 금융지원 신규사업 시행

○ '19년 주요 제도개선
–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지원 실적

– '19년 284,848건(23.1조원)대비 '20년 227,276건(18.9조원)으로 지원실적 57,572건(0.4조원)감소

(단위 : 건, 억원)

구분	'19년		'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284,848	230,898	227,276	188,699
구입	54,643	68,741	48,094	59,789
전세	230,205	162,157	179,182	128,910

* 기금, 유동화, 은행재원 포함 작성

○ '20년 주요 제도개선

① 신혼 및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신혼 구입자금 금리 인하	· 금리 – 1.7% ~ 2.75%	· 금리 인하(2차례) – 1.55% ~ 2.10%	'20.5월 '20.10월
아동양육가구 주거안정 지원	· 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범위(혼인기간 7년이내)	· 아동양육가구(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포함	'20.6월

②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주거비 지원 강화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청년전용 전세대출상품 개편	· (연령 요건) 만 25세 미만 · (보증금 기준) 5천만원 · (대출한도) 3.5천만원 · (금리) 1.8% ~ 2.7%	· (연령 요건) 만 34세 이하 · (보증금 기준) 1억원 · (대출한도) 7천만원 · (금리) 1.2% ~ 2.1%	'20.5월 '20.8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금리 인하	· 금리 – (보증금대출) 1.8% – (월세금 대출) 1.5%	· 금리 인하 – (보증금대출) 1.3% – (월세금 대출) 1.0%	'20.8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19년 23.1조원(구입 6.9, 전세 16.2)을 지원하였으며, '20년 18.9조원(구입 6.0, 전세 12.9) 지원

○ '20년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지원강화를 위해 제도 및 주거비 지원 강화 지속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향후추진계획

○ 신혼부부 ·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

– SNS, 수탁은행 영업점 내 홍보물 배치 등 온 · 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

104	Ⅴ-2-⑰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주거급여	1,632,475	1,987,925	355,450	21.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확대

– 임차 및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수준 상향 등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수급가구) 81만('17년) → 118.9만('20년), (월평균 급여액) 11.7만원('17년) → 15.3만원('20년)
** (자가가구 지원상한액) 최대 978만원('15~'17년) → 최대 1,026만원('18년) → 최대 1,241만원('19년)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가구 확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년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1년의 경우 코로나 19 추이를 감안한 수급가구 확대지원하고(127.7만 가구), 기준 급여액 인상(최저보장수준 확대 : 90%→95%) 및 청년 분리지급(약 3.1만) 신규 추진 결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지속 확대

–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을 통해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45→50%),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 방안을 중장기 검토 지속

105	Ⅴ-2-⑱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여건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주거 여건 개선			
주요내용	○ 65세 이상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의 개량지원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주거급여	1,632,475	1,987,925	355,450	21.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노인주거 지원 결정

– 중생보를 통해 19년부터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내 신규 지원 결정

○ 고령 자가가구 신규 편의시설 설치 (한도 50만원) 지원시행('19.1), 주거약자 냉방설비 등 추가 설치를 위한 지침 개정 및 지자체 안내 완료(3.6)

'20년 이행 실적 (1.1.~12.31.)

○ 21년 1.85만호 수선세대 중 고령자 6,097호 대상(약 32%)으로 추가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설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65세 이상 자가가구 고령자의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추가 지원으로 주거안전 및 편리성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고령자(만 65세~) 대상 수선유지 급여 외 편의시설 설치비용 50만원 한도 내 지속 지원

106	Ⅴ-2-⑲	원스톱 주거지원안내시스템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보 통합 · 제공			
주요내용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운영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통합안내 *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센터(오프라인), 마이홈 콜센터(전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주거급여 (정보화사업)	1,590	1,978	388	24.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마이홈센터 대민 접근성 향상**) 기존에 접근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였던 일부 마이홈센터를 교통 · 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고 신규 마이홈센터 설치

○ (**마이홈포털 기능강화**) 마이홈포털 통해 생애주기별로 주거지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하여 수요자 편의 제고

○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강화**)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련 기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마이홈센터 기능강화**)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중인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확대 개설하고 기존에 LH · 주택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주택관리공단으로 일원화

○ (**마이홈포털 고도화**) 로그인 시 네이버 · 카카오 · 페이스북 계정 연동기능 도입, 공공주택 찾기 등 주요 검색 서비스 이용 시 회원 맞춤형 검색결과 자동조회 서비스 기능 구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온 · 오프라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 고도화를 통해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주택 주거통합포털 ISP 추진
– 공공주택 시스템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공공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주택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ISP 추진

○ 마이홈포털 기능개선
–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업무지원을 통해 임대등록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용이하도록, 마이홈포털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정보 등 연계

107	Ⅴ-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공공의료과

과제목표

○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기능 정립,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부재지역에 민간의료기관 활용 또는 지방의료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보완 등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
-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2,632	75,134	△27,498	△26.8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7,045	7,775	730	10.4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5,500	5,500	0	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5,480	10,825	5,345	97.5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1,800	1,950	150	8.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증축 7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 1개소, 리모델링 8개소, BTL임대료 5개소, 장비보강 24개소, 기능특성화 8개소('18), 증축 9개소, 리모델링 16개소, BTL임대료 6개소, 장비보강 28개소, 기능특성화 12개소('19)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장비보강 4개소('18), 리모델링 3개소, 장비보강 6개소('19)
- 지방의료원 53명, 적십자병원 1명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18), 지방의료원 59명, 적십자병원 2명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19)
-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10개소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필수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19)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8개 설치('19)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18.10.1)
- 국정기획자문위 '의료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확정('17.7월), 새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필요성에 따라 '18.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공공보건의료발전위 발족 · 운영('17.11~'18.3월), 관계기관 · 전문가 자문('18.3~6.월), 관계부처 협의('18.7~'18.9월)

-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11)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의 후속조치로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지역의료 자원 육성 및 지역의료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 진료권 분석, 책임의료기관 육성전략, 공공의료 연계방안 등 연구용역('18.11~'19.6월), 시도, 공공병원, 유관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19.1~'19.10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증축 11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 3개소, 리모델링 22개소, BTL임대료 6개소, 장비보강 31개소, 기능특성화 20개소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리모델링 3개소, 장비보강 5개소 ○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확대 –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속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추진(코로나19 등 감염관리 협력사업 조기 추진, 추경 12억원)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응급환자 이송협력, 감염병 관리 등 ** ('19년) 권역 10개소/3억 → ('20년) 권역 12개소/4억, 지역 29개소/2.4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 지방의료원 59명, 적십자병원 8명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12개(+4개) ○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20.12) –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공공의료체계 확립,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등 3개 분야, 9대 주요 정책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인력 확보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내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 이용환자 만족도 향상 : 74.9점('06) → 85.3점('20), 13.9% 증가 ○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월)」을 수립하여 지방의료원 예타면제 및 제도 개선, 국립대병원 공동평가 추진 등 실효적 방안에 대한 협의 도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 내 감염병 관리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추경예산(12억)을 확보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4개소)하고 당초 '21년 예정되었던 감염관리 사업을 '20년부터 조기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권역/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추진체계 구축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수립' 연구('20.5~'21.2), 부내·외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추진

108	Ⅴ-3-②	비급여 진료관리체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의료보장관리과
	과제목표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 공개를 통한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제고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추진(표본조사 실시 등)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18년 3,762개 → '19년 3,825개) ○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실시**('18.6월, '19.5월) – ('18.6월) 서울·경기지역 1천개소 207항목 – ('19.5월) 전국 3천개소 340항목 ○ **비급여 의무 공개항목 확대 고시개정**('18.12월, '18년 207항목 → '19년 340항목) – 행위 232항목, 치료재료 77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20년 이행실적 (1.1.~12.31.)	
	○ **비급여관리 종합대책 수립 (비급여 관리 TF 운영)**('20.12월) - 중증질환 등에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고, 그 밖의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비급여 종합대책' 수립** * 정책연구 및 TF운영('20.6~12월), 정책공청회(8.27, 11.26) 및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8.4, 11.2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용분과 과제(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확대, 사전설명)의 추진과 함께 비급여 표준화, 비급여 보고체계 구축 등 관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 ○ **비급여 의무 공개항목 확대 고시개정**('19.12월, '20년 564항목) – 전문가 간담회,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거쳐 사회적 관심도 높고 단계적 급여 전환,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개항목 선정 – 행위 402항목, 치료재료 131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결과 분석, 공개**('20.4월, 3,925개) ○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실시**('20.10월, 7,373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를 통한 환자 알권리 및 선택권 제고** – (병원급) 전년대비 인하 144항목(61.3%), 변동계수 감소 항목 118항목(50.2%)로 비교적 안정세이나 일부 항목에서 큰 격차 보임 – (의원급) 시범사업 분석 결과 항목별, 지역별 가격격차 확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21년) – 전국 의료기관 69천여 개소 대상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공개 ○ **심평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건강정보')**를 통하여 진료비용을 공개, 의료기관 변경사항 수시 반영

109	Ⅴ-3-③	지역균형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소득복지과
과제목표	○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주요내용	○ 어업 작업과 어업인 질환과의 연관성 조사 및 어업인 질환 예방교육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활용하여 낙도 등 취약지역 거주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행 * 센터: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735	3,800	1,065	38.9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900	9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낙도 및 낙후지역 거주민 **1,069명**('18년 451명, '19년 618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20년 이행실적 (1.1.~12.31.)

○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활용하여 의료시설이 없어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낙도·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수혜자 755명**)

– 기존의 진료중심 서비스를 **코로나19를 포함한 예방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어선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도서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

* 해양수산부가 어업안전보건센터(어업인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 규명 연구, 현장교육 등을 수행)로 지정('18.1~'20.12)한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진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혜자 확대('19년 618명 → '20년 755명, 22.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속('21년 수혜자 약 6백명)

110 | V-3-④ |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치매정책과

과제목표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 지원체계 구축
- 국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 조성

주요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치료 · 돌봄서비스 제공
○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치매관리체계구축	206,765	204,741	△2,024	△0.98
■ 노인요양시설확충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69,196	47,831	△21,365	△3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설치

○ 지역 치매관리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 확충,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설치 등

○ 중증치매산정특례 적용('18.8월)* 및 치매검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본인부담금 20~60%→10%로 인하

**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17.10~) 약 30~40만원 → 15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영상검사(MRI, '18.1.~) 약 60만원 → 14~33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기요양 확대
- 인지지원등급자인 초기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20년 말 기준 총 19천여 명 등록)

○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지속 확충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총 105개소 확충/'20년 말 기준)

○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20년 총 55개소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 운영('20년 총4개소 지정)

○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프라 확충 완료 및 서비스 다양화
-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 기관인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설치 완료('17.12월~'19.12월)
- 치매안심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20년 말 기준 368만여 명 서비스 이용)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구별 치매안심마을 조성('20년 449개소),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 이용 ·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확대 시행 등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 치매관리체계 기틀 확립 –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완료 ○ 치매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치매안심센터 외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구축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중 ○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안심마을 전국 확대 시행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전국 확대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매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필요 – 치매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형평성 제고 필요* * 지리적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산간·농어촌 지역에 분소 설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 완화 등 필요

향후추진계획	○ 치매서비스 이용 제한 완화 및 서비스 다양화 –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찾아가는 치매서비스 제공 등 ○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지속 확충

111 | Ⅴ-3-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 평가지표 개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의료기관정책과

과제목표

○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 및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주요내용

○ 환자안전사고 분석결과 및 환자안전기준과 연계, 환자안전기준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 지표('환자안전지표') 개발
-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환자안전지표 마련

○ 개발된 환자안전지표를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환자안전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급된 지표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여 관리

* 「환자안전법」 시행('16. 7.) 초기에 환자안전수준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 수준 측정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 공개는 신중 접근 필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8,581	9,615	1,034	△12.0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4,516	3,146	△1,370	△30.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환자안전활동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환자안전 기준 및 지표 개발·보급 연구 수행('18.4.30. ~ '21.6.30.(총 3개년))
- **(연구명)** 환자안전 기준 및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NECA)

○ 환자안전지표 게시 및 보급('19.1.)
- **(목적)**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수행 정도의 자율적 점검·관리를 위한 환자안전지표 4개*에 대한 시범 보급 및 공유

* ① 환자확인율, ②낙상 발생 보고율, ③ 손위생 수행률, ④ 욕창 발생 보고율

- **(방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 게시 및 환자안전정보 배포 대상기관* 공문 발송

*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노동계·시민, 소비자 단체, 전문가 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환자안전활동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보급 연구 수행

– **(연구명)**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연구 과제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제적 환류방법 개발 연구' 세부과제로 진행 중

– **(연구목적)**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의 개발 보급 방안을 마련하며, 수가 등 보상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 **(연구기간 및 예산)** '18.4.30. ~ '21.6.30.(총 3개년)

연구기간	1차년도('18.4.30. ~ '18.12.31.)	2차년도('19.1.1. ~ '19.12.31.)	3차년도('20.1.1. ~ '21.6.30.)
연구개발 내용	– 환자안전활동 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 – 국내·외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조사	– 환자안전 영역별 우선순위 기준 분석 – 환자안전 영역별 우선순위 지표 분석	– 주요 지표 분석 및 산출, 모니터링 방안 –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방안 제언

* '코로나19'로 연구기간 연장(6개월)

○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성과 확산 방안 논의('20.5)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될 환자안전 기준 및 지표 개발·보급 방안 논의

– 환자안전 지표 우선순위, 기준·지표 구체화 및 실행항목, 환자안전활동 수행에 따른 보상방안 모색

결과분석

추진성과

○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보급 관련 연구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환자안전지표 보급 및 안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대상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증가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 '17년 73.7%, '18년 76.0%, '19년 85.0%, '20년 93.7%

**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 '17년 3,864건, '18년 9,250건, '19년 11,953건, '20년 13,919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인 환자안전지표 관리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도록 교육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확대 등 추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안전 기준 및 지표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 연장된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보급 정상추진

○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환자안전기준 개정 및 세부지침 마련, 환자안전지표 정의 및 측정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보급

– 보건의료기관에서 자발적인 환자안전 수준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 환자안전지표 관리를 위한 표준연계프로그램 고도화

– 보건의료기관과의 직접 연계가 가능한 표준연계프로그램에 대해 환자안전지표 관리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환자안전수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활용

112	Ⅴ-3-⑥	희귀 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의약품정책과

과제목표

○ 희귀 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주요내용

○ 희귀질환 환자치료 등을 위해 긴급도입이 필요한 국내 미허가 의약품 특례 공급
○ 필요시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한 보험등재 요청

관련예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희귀의약품 사업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90	90	-	-
(의약품 구입비)	4215	0	△4215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희귀질환** 등 치료를 위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국내 허가제품 및 대체제가 없는 필수적 치료제를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
- 품목: ('18년) 분만 후 출혈 방지제 '메틸러'('18.9월),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18.9월), 갈색세포종 치료제 '디벤지란 캡슐'('18.12월)
  ('19년) 악성 고열증, 악성 증후군에 사용되는 '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19.4월), 결핵 치료 주사제 '스트렙토마이신'('19.9월), 말라리아 치료제 '알테슌'('19.10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 치료제 '루타테라'('19.11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희귀질환** 등 치료를 위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국내 허가제품 및 대체제가 없는 필수적 치료제를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
- 품목: 필수항생제인 '페니실린G 주사', 항말라리아 치료제 '퀴니딘 정제' 등 37품목('20.7월), 소아 뇌전증 약 '자론틴 시럽', 뇌종양·호지킨씨병 치료제 '로무스틴 캡슐' 등 28품목('20.9월), 심방세동 치료에 사용되는 '탬보코주', 알코올 중독 치료제 '안타부스정', 루타테라 병용약제 '리사케어주'('20.12월)

○ **의약품 구입비** 42.1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긴급도입 의약품을 사전 비축**함으로써 환자 수요에 따라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

* (예)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종전 3개월이 소요되던 의약품 공급 기간을 1주로 단축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긴급도입 제도를 통하여 희귀질환 치료제 및 국내 공급중단 의약품 등을 공급하여 국민의 안정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희귀 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원 지속**

113 | Ⅴ-3-⑦ |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장병들의 진료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시범운영 등 장병 의료접근성 보장 ○ 군 병원내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을 통한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 ○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소 계	79,185	781	△78,404	△99
■ 원격진료시스템	–	–	–	–
■ 원격진료시스템 유지보수비	249	250	1	0.4
■ 원격의료센터회선료	117	117	–	–
■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인근로자 임금	387	414	27	7
■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사업	78,432	–	△78,432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사업 : '20년 사업완료

'18~'19년 주요 이행실적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 원격진료 실적('18~'19)

단위 : 건

연도	총계	진료				상담/교육
		소계	투약	후송	경과관찰	
2018	23,017	6,534	4,856	1,425	253	16,483
2019	23,843	7,012	5,533	1,267	212	16,831

○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 관련 원격진료 장비 이전 · 설치('18년)
– GP 철수에 따른 원격진료 장비 이전 10개소
○ 원격진료팀 근무체계 재정비 24시간 원격진료 지원('18년)
* 점심 · 저녁시간에도 지원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조정
○ 원격진료 시범사업 5차 확대사업 추진('19년)
– 서북도서와 산악지대 부대 13개소(해군 6, 육군 7)
○ 육군 격오지 부대 철수 및 이전에 따라 원격진료소 이전 설치('19년) : 4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 국군대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18년)
○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센터 개소 위한 시설 개선('19년)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 의무후송전용헬기 조달 요구/양산계약 : '18. 10월 / '18. 12월('19년 2대, '20년 6대)
○ 정부부처 헬기 공동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참여 추진 : '18.12월~'19.6월
○ 의무후송헬기 운항체계 개선을 위한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19년).
* 합참(지휘통제실)에서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하여 항공의무후송 지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원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 '19.7.15.
○ 전군 응급후송체계 구축 관련 컨퍼런스 시행 : '19.11.14
* 의무후송전용헬기 활용한 전군 응급후송체계 구축 논의

'20년 이행실적 (1.1.~12.31.)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 원격진료 실적('20.1.1.~12.31)

단위 : 건

총계	진료				상담/교육
	소계	투약	후송	경과관찰	
22,818	5,820	4,557	1,060	203	16,998

○ 원격진료 시범사업 5차 확대사업 추진
- 서북도서와 산악지대 부대 13개소(해군 6, 육군 7) * 장비설치 : '19.12~'20.2월
- '20년 의료종합상황센터 원격진료팀 보강(원격진료 군의관 5명 → 6명)

○ GP 안전점검 결과, 부대 철수에 따라 원격의료소 이전 설치 : 3개소

○ 원격진료 코디네이터(간호장교)에 의한 적극적인 환자 관리
- 군의관 진료 후 환자경과 관찰 및 진료진행 여부 '더블체크', 환자 면담 및 진료시행

(정신건강증진센터)

○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센터 개소 추진('20.3.9.)
- 정신과 환자 전문 치료, 정책 발전, 교육 및 연구 등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로 목표로 육성

○ 현재 총 5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에 따른 민간인 항공후송보험 가입(3월)

○ 의무사-양구군 업무협약(10월) : 양구기지 정비고 신축공사 조기 착공 협의

○ 의무후송전용헬기 기체 인수(의무후송항공대) : 총 8대(완료)

○ 의무후송전용헬기 임무 투입 : 용인기지(6. 8.), 포천기지(7. 24.), 춘천기지(8. 24.)

•기지별 항공기 배치계획 및 보유현황

구분(범위)	용인(한수이남)		포천 (서부축선)	춘천 (동부축선)
	임무투입	대기/교육		
배치수량	1대	5대	1대	1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성과는 심리적, 의학적, 만족도 측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남
- 아프면 언제든지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제공, 간부 지휘부담 경감
- 외진 소요 및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중증으로 발전 할 가능성 환자 조기 식별로 적시적 진료제공
- 전년 대비 원격진료 만족도 감소 : 1.6%(보통 이상 93.5%→92%)
  * 병사 92%→92%, 간부 95%→92%
  * 원격진료 재이용의사항목 감소 : 선별진료체계 강화로 진료소요 발생시 대면진료 지원 강화

○ 격오지 원격 진료량 매년 지속 증가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진료량	451	2,162	5,458	6,534	7,012	5,820

(정신건강증진센터)

○ 국군구리병원을 정신건강의학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
- 배경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
- 국군구리병원 리모델링 통해 정신과 입원 병동 및 외래 개선 사업

○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 거점병원으로 운영 활성화
- 군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외래환자 지속 증가

(단위 : 명)

년도	수도	양주	춘천	대전	포천
2016	10,019	3,227	2,927	4,492	1,146
2017	12,369	3,239	2,296	4,796	1,503
2018	12,955	3,912	2,705	5,701	1,985
2019	15,236	4,080	2,757	6,682	2,166
2020	12,682	3,983	2,735	6,186	2,361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와 연계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참여로 군 응급후송 역량 및 대민지원 역할 강화 ○ 민간인 항공후송 보험 가입을 통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참여 여건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간병원 이용에 일부 애로가 발생하고, 군내 감염병 확산 방지지침에 의거 선별진료 시행이 강조되어 군내 의료체계에 의한 선별진료 중심 진료 시행으로 원격진료건수는 감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 ○ 전방병원의 열악한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제한 – 정신건강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퇴사 및 채용 반복 –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 부족으로 환자 입원 및 병동 운영 제한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생산일정 전반적 지연 발생 – 민간이나 군 구분없이 관련 기관/업체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발생, 재택근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 생산 일정, 군 인도 일정이 지연됨 – 전력화 지연일정에 대해 계약업체인 한국항공에 지체상금 부과 ○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과 연계 현 의무후송헬기(KUH-1)의 후방지역(2작전사) 재배치를 추진하였으나 기동헬기 운영전력 공백문제로 불가 결정(육본) ○ 후송지원 범위 확대 / 신속한 후송지원, 정비·교육비행 여건 고려시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수량 부족(추가 전력화 소요 검토필요)

향후추진계획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 격오지 부대 중 원격진료가 필요한 곳으로 원격진료 장비 설치 ○ 일일단위 원격진료시스템 점검 및 장애발생 부대 조치(유지보수업체 연계) ○ 365일 24시간 원격진료 시행 및 중증 발전 가능성 있는 환자 조기식별 시 후송 연계 하 조치 (정신건강증진센터) ○ 구리병원 정신건강 특성화 기능 강화 – 병상 확장 위한 리모델링, 인력 추가 확보, 운영 프로그램 수립(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 추진 완료(8대)

114 | Ⅴ-3-⑧ |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 ·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 강화			
주요내용	○ 단위학교의 위생 · 안전관리 및 교육청 주관 위생점검 강화 ○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관련예산

(국고 및 특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노후급식시설 개선))	750	1,920	1,170	156
■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영양교육 내실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원)	150	13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위생점검)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점검(10,755개교, '18.2~3월 / 10,743개교, '19.1~2월) 및 신학기 시작 전 급식실 개 · 보수('18년 3,503교, 29,800백만원/'19년 5,487교, 42,472백만원) 실시
- 급식시설을 갖춘 전국 10,579개교 대상 연 2회 위생 · 안전점검 실시(실시율 100%)

○ (식중독 예방교육)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교육 추진 및 자료 보급
- 시 · 도부교육감 회의 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요청('18년 2회)
-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 · 안전관리 강화' 공문 시달('18년 6회, '19년 6회) 및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관 회의 개최('18년 3회, '19년 2회)
- 식중독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강식단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18년, 13천부)
- 급식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급식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위험 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19.6.27.~7.19. / 15교)
- 교육청 담당자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19.5.22~8.2 총 4기 운영)
-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 담당자 워크숍 추진('19.8.19.~8.20)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위생점검)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점검(9,637개교) 및 노후 급식시설 772교 현대화사업 추진
- 학교급식소 9,637개교 위생 · 안전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100%)

○ (식중독 예방교육)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교육 추진 및 자료 보급
-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학교급식 점검관리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시 · 도교육청 회의 개최 및 안내(총 3회),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시달(총 5회)
- 신규 영양교사 배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지원('20.11.2.~11.24./17교)
- 최근 개정된 급식관련 법령 등을 반영한 제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발 · 보급(2종, 14천부)
-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안내서 개발 · 보급(3종, 8천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치원을 학교급식 관리체계로 포함하여 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 수준 제고 ○ 시도교육청의 급식위생 관리 추진상황의 점검 · 평가 등을 통한 우수사례 보급 및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유치원의 식재료 관리, 위생적 조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보급
○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학교급식 위생 · 안전관리 강화

115	Ⅴ-3-⑨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성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성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 행정지도 강화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 '학교 성교육 표준안' 운용 및 성교육 내용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 시도교육청별 개설·운영			
관련예산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9년 주요 이행 실적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성교육 실시
– 학교성교육 표준안 적용 지속('15.2~)
– 모든 학교에서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교육 실시추진('19.2., 학생건강증진정책 기본방향)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시·도교육감은 성교육 담당교사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성교육 담당교사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토록 추진('19.2., 학생건강증진정책 기본방향)
– 교사용 성교육 관련 자료 제공

'20년 이행실적 (1.1.~12.31.)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성교육 실시
– 학교성교육 표준안 적용 지속('15.2~)
– 모든 학교에서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교육 실시추진('20.2., 학생건강증진정책 기본방향)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시·도교육감은 성교육 담당교사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성교육 담당교사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토록 추진('20.2., 학생건강증진정책 기본방향)

결과분석

추진성과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포괄적인 성교육 실시
– 2020년 학교 성교육 현황(단위: 시간)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15.2	15.3	15.2	15.2	15.3	15.3
중	15.8	15.5	15.4			
고	15.0	14.7	14.4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성교육 운영 추진

116	Ⅴ-3-⑩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교육부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교육을 통한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감소 및 흡연·음주에 관한 위험성 강조			
주요내용	○ 교육과정 내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 흡연·음주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 교육 * 초·중·고 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편성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안내(18.1월, 19.1월)

○ 유치원 및 초·중·고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 교원 연수를 통한 흡연학생 관리역량 강화

– 교원 연수 시 흡연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 전국 각급학교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음주 예방교육자료 지원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

* 금연 웹툰, 영상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학생 교육) 학교급 별 눈높이에 맞게 '관련교과,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활용 '담배의 유해성, 금연실천 방안 등' 교육 지속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담배의 역사와 성분 이해 – 간접흡연의 해로운 점 인식 – 담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 흡연권유시 거절방법 – 담배의 유해성 인식 –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인식 – 담배연기없는 환경 만들기	– 담배의 유해성 인식 –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금연의 필요성 인식 – 금연실천방안	– 담배의 유래와 역사, 청소년의 흡연실태 파악 – 담배의 유해성분 이해 – 금연관련 법규 및 정책 이해 – 담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20년 이행실적 (1.1.~12.31.)

○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안내(20.1월)

– 중고등학교 음주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반입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 안내

○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다양한 자료들로 관련교과 시간에 학생 대상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인식개선 – 금연 후 식단관리, 간접흡연의 위험성, 담배거절하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청소년의 실생활에 밀접한 흡연 예방교육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등교일수 감소 및 교사 방역부담 으로 인한 교육기회 제한 ○ 흡연학생의 자진상담 및 교육요청 유도 한계, 전문기관 지원 등도 어려움 초래

향후추진계획	
	○ 학교 정규수업, 재량시간 등을 통한 흡연·음주 예방 교육 계속실시 ○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확대를 통한 학교단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교육청 단위 별도사업추진 및 학교지원체계 구축(보건복지부 공동)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 학교흡연예방 사업 추진 중(지속)

117	Ⅴ-3-⑪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마약정책과

과제목표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주요내용

○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구축 및 단속 강화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마약류 · 원료물질 취급자 지도점검)	41	41	-	-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	877	873	△4	△0.5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대국민 예방교육)	279	260	△19	△6.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희귀 · 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관리**로 신종물질 확산 방지 : ('18) 58종, ('19) 73종
○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기법 개발 및 활용(연 4회)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대중매체 광고 제작 및 송출('19.1~'20.12, 계속)
○ 제15~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19.5, '20.12)
○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 구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실시('18.5)
– **자가치료용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허용**('18.10)
○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 지도 · 점검**
– 마약류 · 원료물질취급자 기획 · 합동점검 : ('18)132개소 점검, 23개소 적발, ('19)174개소 점검, 64개소 적발
–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 특별 · 수시점검 : ('19)132개소 점검, 57개소 적발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청소년 · 일반시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현장 캠페인 실시(140회)
○ **청소년 등 마약류 폐해 경각심 예방교육** 실시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 :
* 학교내 청소년 : ('18)4,648회/ 310,459명, ('19)4,549회/ 263,943명
* 온라인 학교 청소년 : ('18)15,400회/ 54,144명, ('19)15,891회/ 66,823명
○ 약물노출 고위험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예방교육 실시**
– 학교밖 청소년 등 : ('18)472회/ 6,613명, ('19)321회/ 2,416명
–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 ('18)597회/ 8,283명, ('19)693회/ 11,258명
– 사회복지시설 등 : ('18)120회/ 2,094명, ('19)177회/ 6,769명
○ **온라인 교육시스템 학교교사 직무연수과정** 운영: ('18)159회/ 1,359명, ('19)57회/ 1,652명
○ **마약퇴치전문가 양성 및 성인대상 예방교육** : ('18)287회/ 6,141명, ('19)142회/ 10,274명

<table>
<tr><td>'20년
이행실적
(1.1.~
12.31.)</td><td colspan="2">○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관리로 신종물질 확산 방지 : 40종
○ 과학적 기법(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사업 추진('20.4~'21.4)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대중매체 광고 제작 및 송출('20.1~12)
○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여('20.12)
○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 지도·점검
–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 기획·합동점검 : 185개소 점검, 86개소 적발,
–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 특별·수시점검 : 150소 점검, 73개소 적발
○ 청소년 등 마약류 폐해 경각심 예방교육 실시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 : 2,640회/ 134,843명
* 학교내 청소년 :2,640회/ 134,843명
* 온라인 학교 청소년 등 : 19,567회/ 13,179명
○ 약물노출 고위험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예방교육 실시
– 학교밖 청소년 등 : 191회/ 1,431명
–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 368회/ 5,867명
– 사회복지시설 등 : 74회/ 1,308명
○ 온라인 교육시스템 학교교사 직무연수과정 운영: 25회/ 535명
○ 마약퇴치전문가 양성 및 성인대상 예방교육 : 99회/ 2,354명</td></tr>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국내외 불법 유통되는 신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여 국내 유통 사전 차단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강화
○ 적시에 법령 개정으로 마약류 사고 신속대응 및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정보 활용을 통한 마약류 안전관리체계 구축 강화
○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수립·시행으로 마약류 감시 위반행위 적발률 제고
* ('17~'19년) 평균 적발률 28.8% → ('20년) 적발률 45.2%
○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에 대한 적정처방 유도로 처방량 감소
* 처방정보 분석자료를 수신한 의사들의 수신 전·후 3개월 기간 비교 결과,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약 8.3% 감소
○ 의료현장 마약류 오남용 예방환경 조성
– 의사별 주요 마약류 처방내역 비교·분석 결과 제공(분석리포트 우편발송)으로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처방 유도
– 의료현장에 적용가능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 마련
* ('20년)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 ('22년) 전체 마약류로 확대</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향후추진계획</td><td colspan="2">○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정보를 축적으로 향후 지역·시기별 마약류 사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오남용 예방 홍보 및 유입·유통 차단, 집중단속 등에 활용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국민 활용서비스 지속 운영
○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지속 추진</td></tr>
</table>

118	Ⅴ-3-⑫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 경 부	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의 분포, 변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 (환경보건기술개발) 환경보건 공공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환경성 질병 부담 저감 및 환경보건 선진화 구축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반 강화 및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민 체내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 33종의 노출수준 파악을 통한 국가 대푯값 산출, △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환경유해물질 노출관련 설문조사, △혈액학 검사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과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임상검사

○ (환경보건기술개발) 아토피,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위험(risk)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과의 상관관계 연구·조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17,145	13,027	△4,118	△31.6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환경건강연구)	1,574	1,830	256	14.0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1,628	7,254	△4,374	△37.6
■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환경보건센터 운영)	3,943	3,943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2차년도 사업 추진, 제3기('15~'17) 기초조사 결과 대표값 공표

- 전국 300개 조사구, 초등 696명, 중·고등 804명, 성인 2,625명 대상 설문조사, 임상검사 및 환경유해물질 33종 농도 분석 등
-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 26종에 대한 국가 대푯값 공표(국가승인통계 제106027호) 및 대국민 공개('18.12)

○ (환경보건기술개발) 생활환경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개발 등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17개 연구과제 추진 지원(154억원)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성질환 조사·연구, 정책지원 등 환경보건기반 강화를 위해 12개 환경보건센터 운영(3,943억원)

- 환경성질환 연구사업 추진,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및 DB구축, 환경보건콘서트(4회), 환경보건이동교실(105회, 약 6천명)등 교육·홍보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차년도 현지조사 추진 – 전국 126개 조사구 내 우리나라 국민 1,801명(성인 1,223명, 영유아 578명)의 27종*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체내 노출수준 조사 *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조사(혈액채취 미시행, 기존 33종 → 27종 분석) ○ (환경보건기술개발) 생활환경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개발 등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7개 연구과제 추진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성질환 조사·연구, 정책지원 등 환경보건기반 강화를 위해 16개 환경보건센터 운영(3,943억원) –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 및 연구정보 센터 추가 지정(5개 센터),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및 DB구축, 환경보건콘서트(5회), 환경보건이동교실(214회, 약 8천명)등 교육·홍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4기('18~'20) 기초조사 사업 완료 등 기초자료 확보 ○ (환경보건기술개발) 225편의 SCI 논문 등록, 특허 등 지식재산 5건 등록,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고시개정(안) 등 정책 활용으로 국가 환경보건 정책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성질환 원인 규명 연구, 질환자 모니터링 등을 통한 환경보건정책 기초자료 확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외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과 비교하여 환경유해물질 항목 수가 적으나, 생체시료 중 환경유해물질 분석의 고비용에 따른 조사항목 확대에 제한점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5기('21~'23) 기초조사 1차년도 현지조사 추진 – 전국 6,000명 대상 환경유해물질 분석항목을 55종으로 확대하여 조사 – 전국 약 100개 조사구내 국민 약 1,500명(성인) 대상 현지조사('21년) ○ (환경보건기술개발) 환경보건정책 추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보건 R&D 지속 지원('21년 신규 R&D 추진, 146억원) ○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 추진

119	Ⅴ-3-⑬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 자연방사능 물질로 흡연과 함께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의 적정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주요내용

○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
-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실내공간의 라돈 관리강화
- 실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조사 실시 등

○ 환경오염 민감·취약 계층의 건강 우선 보호
-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 대상 유해인자 노출 저감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생활공해관리	12,501	7,967	△4,534	△36.3
실내라돈 종합대책	2,475	2,195	△280	△11.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 추진**
- **(관리강화)**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강화*,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제작·배포**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0Bq/㎥→148Bq/㎥(「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8.10), 시행('19.7))
  ** 신축 공동주택 건축자재 선택 시 사전예방적 라돈 관리를 위해 '방사능 지수' 활용 권고('19.11)
- **(실태조사)** 제4차 전국 주택 라돈 실태조사('17-'18.12, 7,200여 가구) 및 라돈 고농도 지역(강원·대전)·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실태조사('19-'20, 5,000여 가구) 실시, 전국 실내라돈지도 작성·제공
- **(취약가구 지원)** 1층 이하 거주자, 마을회관 등 라돈 취약가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 ('18년) 무료 측정·컨설팅 1,335개소, 알람기 보급 241개소, 저감시공 45개소, ('19년) 무료 측정·컨설팅 1,320개소, 알람기 보급 250개소, 저감시공 50개소

'20년 이행실적 (1.1.~12.31.)

○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 추진**
- **(관리강화)**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마련('20.1),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법 적용대상 시설 추가*
  *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추가(「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19.4), 시행('20.4))
- **(실태조사)** 라돈 고농도 지역(강원·대전)·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실태조사 실시('19-'20, 5,000여 가구), 라돈 고농도 지역(충남) 실내(3,000여 가구) 및 주변 환경(200여 지점) 라돈 실태조사('20-'21)
- **(취약가구 지원)** 1층 이하 거주자, 마을회관 등 라돈 취약가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 ('20년) 무료 측정·컨설팅 2,027개소, 알람기 보급 600개소, 저감시공 73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라돈 저감·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실현** –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권고기준 강화(200Bq/㎥→148Bq/㎥) 및 법 적용대상 시설 추가 등으로 국민의 건강 확보 – 취약가구 실내 라돈 저감 지원으로 환경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실내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고농도지역 라돈 집중조사, 신축 공동주택 라돈 실태조사 / ** 실내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등 ○ **라돈 고농도지역에 대한 라돈 우선 저감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120	V-3-⑭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감 계층과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적 정책 생활환경 개선 지원

주요내용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추진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물질이 성장발달, 신경인지발달, 알레르기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여 인과관계 규명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임산부 7만명 모집(대규모 코호트 6만 5천명, 상세코호트 5천명)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유해인자의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지원(벽지·장판지 등 교체, 공기청정기 지원 등)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7,091	7,195	104	1.5
(건강나누리캠프)	(588)	(588)	-	-
■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12,060	13,211	1,151	9.5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952)	(952)	-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4,737)	(4,737)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전문 의료인 상담·교육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 (18년) 114회, 4,695명 참여, (19년) 109회, 6,950명 참여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유해인자 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 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에게 시설개선(장판, 벽지교체 등) 지원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등에게 진료 지원 서비스 제공

* (18년) 진단·컨설팅 1,700개소, 시설개선 650가구, 진료지원 301명, (19년) 진단·컨설팅 1,700개소, 시설개선 650가구, 진료지원 202명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18년) 산모 15,000명 모집, 환경노출, 채혈 등 건강 조사, (19년) 산모 11,335명 모집, 환경노출, 채혈 등 건강영향 조사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20.2~12)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131회, 5,434명) –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전문 의료인 상담·교육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20.2~12) –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700개소를 선정·방문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유해인자 관리방안 컨설팅, 개선이 시급한 650가구에 대해 벽지, 장판 교체 등 시설개선,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어르신 303명에게 진료 지원 서비스 제공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어린이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참여자 7만명(상세코호트 5천명, 대규모코호트 65천명) 모집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립공원 15개소, 환경보건센터 4개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5개소 등 지역의료기관 9개소가 함께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 95.6점으로 나타남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목표 인원 7만명 모집완료, 기존사업 참여자 추적관찰(계속), 설문조사 및 생체시료(혈, 뇨) 확보 등 건강영향조사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대상(1,700가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96.2점으로 대다수가 서비스에 만족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의 수혜자 편의성 향상 방안(협업병원 확대 등) 강구 필요

향후추진계획	○ '21년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21.2~12)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5,100명)·비대면(1,570명) 프로그램 병행*운영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목표인원 내에서 캠프 유형별 참여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21년도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21.2~12) – 1,750가구 진단, 550가구 시설개선(벽지, 장판 교체 등),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확대 예정(303명 → 400*명) * 진료제공 편의성을 위해 협업병원 확대('20년 10개 병원 → '21년 15개 병원),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취약계층 대상 의료인(간호사) 환경성질환 방문서비스 제공(100명)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적관찰 – 7만명의 영·유아 코호트가 모집(~'20.12)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노출·거주환경 등에 따른 성장단계별 건강영향 추적 실시(~`36) * 과불화화합물, 중금속(Pb, Cd, Mn, As 등),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 고도화(중점가설·세부가설 점검, 추가 등) 및 추진 로드맵 마련

121 | Ⅴ-3-⑮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강화

과제 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위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통합평가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건강 보호			
주요내용	○ 발암 또는 위해성이 높은 물질 등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및 독성정보 DB 구축 확대 ○ 널리 사용되고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하여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체적용제품·물질의 통합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위해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강화	45	45	0	0
■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인체위해성평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231	1,025	△206	△17
■ 식품 등 안전관리(R&D) 위해평가 기반연구	4,079	4,639	560	14
■ 안전성평가 기술개발연구(R&D) 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	6,262	6,760	498	7.9
■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독성정보 DB 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	330	330	0	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발암 또는 위해성이 높은 물질 등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및 독성정보 DB 구축 확대**
- 살균보존제, 색소 등에 대한 단회·반복/경구·경피 독성시험 : ('18) 20건, ('19) 30건
- 살충제 등에 대한 동물독성정보, 인체영향정보 등 DB 구축 : ('18) 600건, ('19) 600건

○ 널리 사용되고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하여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체적용제품·물질 독성시험·통합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18.6)
-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유해물질 47종 통합위해성평가 착수('18~'20)

○ **인체적용제품·물질의 통합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19.4)로 통합위해성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8.6)
-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및 독성정보 연계사업' 완료('19.12)

'20년 이행실적 (1.1.~12.31.)	○ 발암 또는 위해성이 높은 물질 등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및 독성정보 DB 구축 확대** – 독성시험정보가 없는 생활화학물질 3종 및 식의약품 등 4종에 대한 독성시험 : ('20) 30건 – 살균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페타시테닌 등 독성정보 DB 구축 : ('20) 600건 ○ 널리 사용되고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하여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비스페놀류 등 14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20.4) – 통합위해성평가를 위한 혈액·소변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DB 2,487건 구축('20.9) –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 1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착수('20~'21) ○ **인체적용제품·물질의 통합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20.8) – 식품, 화장품, 생약 분야 통합위해성평가를 지원하는 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성평가 체계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 안전 중심 체계로 전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독성시험 60건 수행 및 **독성정보 DB 1,200건 구축** (~'22) ○ **인체적용제품·물질 60종 통합위해성평가 완료** (~'22) ○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계부처 시스템 연계** 완료 (~'2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1)

122	Ⅴ-3-⑯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제목표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			
주요내용	○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유도 ○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탄소발자국 인증 확대			

관련예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12,346	19,147	6,801	55.1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9,161	11,097	1,936	2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행평가('18.6, '19.9), 중간종합평가('18.11, '19.9) 등 정책 이행력 제고
- 쿨링&클린로드, 쿨링포그, 쿨루프 등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적응 인프라 구축(31개소 91억원)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표준모델 개발('19.12)
-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이동쉼터(트레일러 5대, 천막 15개) 시범사업('19.12)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항목 개발 확대('19.11, 누적 45개 항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유도
- 비산업부문(가정·상가·학교 등)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방문 컨설팅 추진

○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개선 및 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개선(아파트단지 평가방법 간소화, 인센티브 지급한도 상향 등, '18.2, '19.4)
- 지자체 담당공무원 권역별 교육 및 홍보 추진('18~'19)

○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확대
- 기존 제품 위주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운송서비스 및 생활관광 분야 확대* 추진('19.10월~)

* 부산지하철 1호선, 제주 동백동산 생태관광 저탄소 인증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수립,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을 위해 쿨링로드, 쿨루프 등 맞춤형 대응시설 구축(23개소, 40억원)
- 취약계층 창문형 에어컨 보급, 어린이 놀이시설 쿨 쉼터 시범사업 추진('20.6)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기후변화 적응사업 활용가이드', '폭염대응시설 설치·관리 가이드' 마련·배포('20.6~7월)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항목 개발 확대('20, 누적 57개 항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유도
- 비대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시스템 구축(8월) 및 가정 대상 온라인 컨설팅 추진(8월~)
- 취약계층 폭염대응 지원(20백 가구, 대응 수칙 안내 및 물품 지원)

○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개선 및 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사업 도입('20~)에 따른 내용 반영, 장기 참여자(인센티브 연속 4회 이상 수급자)의 유지인센티브 상향 조정(년간 최대 7천원→ 21천원)

○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확대
- 기존 제품 위주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대중에 노출빈도가 높은 제품 및 서비스 인증 확대* 추진('20~)

* 부산지하철 1호선, 유통사(이마트) PB제품 저탄소제품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20.12) – 폭염 취약계층(어린이) 폭염대응시설 시범사업 추진(쿨 쉼터 등) – 취약계층 폭염 · 한파 대응 지원(3,500여개 가구 및 시설, 대응 수칙 안내 및 물품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기후위험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선정하여 적응 인프라(무더위 · 한파 쉼터, 쿨링로드 등) 우선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123	Ⅴ-3-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대기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및 환경기준 강화**

○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주요내용

○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및 환경기준 강화
- '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질병결석 인정, 학교 공기정화장치 단계적 설치 등

○ 한·중 협력센터 출범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291,744	505,561	213,817	73.3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622,515	655,706	33,191	5.3
합계	914,259	1,161,267	247,008	27.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강화**
-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감축조치 시행('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9.11)

* '16년 26㎍/㎥ → '24년 16㎍/㎥

○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 유치원·학교 등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매뉴얼 교육('19.2~4월, 17개시·도 총27회, 1.6만명 참석) 및 현장점검('19.4~5월, 102개소)으로 일선기관의 고농도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 절차,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정('19.2),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19.8)

* 공기 정화시설 설치 및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우선 지원 등

○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 한·중 환경장관회담 개최('19.2) 계기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19.11~) 및 활용('19.12~), 한-중 맑은하늘(청천) 계획 세부이행방안 MOU 체결('19.1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공유('20.4) 등 국제협력 강화
- 한-중-일 '미세먼지 상호영향에 대한 보고서' 최초 공개('19.11)로 국가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

'20년 이행실적 (1.1.~12.31.)

○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강화**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한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여 배출 감축 가속화

* (감축목표)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황산화물(SOx) 41,404톤(35%), 질소산화물(NOx) 50,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1,054톤(6%) (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총 전국 36곳 지정(모두 '20년에 신규지정)

– 부처별 소관 취약계층(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국민건강보호 대책 강화

부처별 국민건강보호 대책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 개정(옥외작업자 대책, 오존 대책 추가 등)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246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 약 1억 2천 3백만매 보급, 취약계층 이용시설 7,760개소에 공기청정기 지원 등
· (고용노동부) 옥외작업자 약 19만명에게 마스크 415만매 보급 등
· (교육부) 전국 모든 교실(약 27만실)에 공기정화시설 지원 등
· (여가부) 공공육아나눔터, 청소년 쉼터 등 공기정화시설 지원(2,243개소) 등
· (지자체) 지자체 예산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마스크, 공기청정기 지원

○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 (韓)계절관리제–(中)추동계대책 공조 강화 방안 논의, 청천계획 이행 성과 점검 등 한–중 미세먼지 관리 협력 강화 추진(11.11,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청천계획 2020년 세부이행계획 정상 추진 중(온라인, 4월~계속)

한–중 온라인 협력 실적 및 성과

1. 제2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4.28)
2. 계절관리제 정책·성과 공유(4.28)
3. 한–중 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kick–off 회의(5.19)
4. 한–중 환경산업 협력 온라인 수출상담회(7.17~24)
– 국내 환경산업체 16개사, 중국 발주처 39개사 간 79건 57백만불 규모 상담 추진
5. 산둥, 후베이성 환경산업 기술교류회(9.16~18)
– 국내 환경산업체 10개사, 중국 발주처 20개사 간 36건 14백만불 규모 상담 추진
6. 한–중 환경산업기술 온라인 박람회(10.28~11.13)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19㎍/㎥로 '15년 관측 이래 최저

〈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단위 : ㎍/m3)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6	26	25	23	23	19

– 특히, 1차 계절관리기간('19.12~'20.3) 전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9㎍/㎥ 감소*(33→24, 27%)

* 나쁨 일수(35→22일), 고농도 일수(18→2일), 좋음 일수(13→28일) 개선

– 강화된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2차 계절관리제('20.12~'21.3) 시행 중

* 정량목표 설정(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5등급차 수도권 내 운행제한, 한·중 장관회담 등 한중 정책 교류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

– '20년 획기적 농도개선은 ①국내 정책효과, ②중국의 지속적인 개선추세, ③코로나19 영향 및 ④양호한 기상조건 등이 복합 작용

–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가능

향후추진계획	○ 제2차 계절관리제 철저한 이행 및 제3차 계절관리제 이행 – 1차 계절제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된 2차 계절제 시행계획의 철저한 현장이행 담보('20.12~'21.3월) – 2차 계절제 이행실적 분석(매월)과 효과 평가(~5월), 2차 계절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 과제에 대한 강화·보완방안*을 담은 3차 계절제 시행계획 마련(~10월) * 지역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등 ○ 민감·취약계층 보호 – 휴대폰 앱(우리동네 대기질) 및 도로전광판을 활용하여 오존 예·경보 현황, 다수의 사용자에게 신속 전파(고농도 발생시) – 현장 담당자 의견 등을 토대로 「오존·미세먼지에 대한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개정·배포 ○ 동북아 및 국제사회 공조 강화 – '20년에 마련한 한·중·일 대기오염 5개년 협력계획('21~'25) 및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5개년 작업계획('21~'25) 시행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책임 있는 저감을 유도 –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전략 제시를 위해 UN, OECD 등과 공동보고서 발간 및 연구사업 추진 – 주변 협력 국가의 대기분야 역량 지원을 위한 국제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21.9~) – 한-중 환경장관회의(3.16)시 합의한 내용* 등을 반영한 '21년 청천계획 세부이행계획 추진('21.4월~) * 고농도 예상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 제3차 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 수립시 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조 등

124 | V-3-⑱ | 생활소음 관리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 생활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실시간 소음도 공개제도를 활성화하고,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확대 추진

주요내용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공사장 현장 관리자 교육 강화 및 전문 현장진단을 통한 컨설팅

○ 도로변 교통 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등 추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지속 추진 및 교육 홍보 강화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2,387	3,028	641	26.9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운영	2,019	2,660	641	31.7
■ 층간소음 예방교육 운영	368	36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소음저감 자재 BANK 운영
-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86건) 및 사례집 발간('18.11)
- 주요 소음발생기계인 '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2종)의 소음관리기준 신설('19.12월)을 통한 공사장의 저소음 기계 사용 유도 및 생활소음 저감
- 국민들의 만족 및 규제 대상의 수긍을 동시에 유도하고 소음·진동 관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집행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해설서' 제작('19.12월)
- 대형 공사장 소음의 적정관리를 위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 관리를 위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누계, '19년 104)
-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확대(누계, '19년 584건),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노면포장(누계, '19년 2,349km)
- 정온지역 등에 대한 방음벽 등 설치(누계, '19년 1,535km)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도입을 위한 절차·내용 등 규정('19.12월)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소음도 표시기준 및 방법,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절차 등 신설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센터 '12년 개소 이후 전화상담 164천건, 현장진단 49.6천건 수행

(단위 : 건)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화상담	164,070	8,795	18,524	20,641	19,278	19,495	22,849	28,231	26,257
현장진단	49,604	1,829	3,271	4,465	4,712	6,306	9,225	10,142	9,654

– 유아 ·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14년 시행 이후 총 2,987회, 65천명 교육

(단위 : 회, 명)

구분	계	2014	2016	2017	2018	2019
교육횟수	2,987	20	460	593	1,019	895
교육인원	65,078	465	10,497	13,011	20,294	20,811

–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및 층간소음 정책 관점전환

* 국민생각함 공모전 실시(4.8~4.26, 권익위-네이버 공동)로 국민 26,642명 참여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층간소음 전문가 협의체' 구성('19.7)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19.12)

– 층간소음 갈등에 현장 · 조기 개입 실시를 위해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 관리사협회 협업('19.11월~)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캠페인 컨텐츠 공유, 현장중재 및 조사현장에 주택관리사(전문상담사) 동행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 사안에 대한 현장중심, 지속관리 체계 마련

'20년 이행실적 (1.1.~12.31.)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소음 · 진동 관리 종합계획('21~'25)」 수립으로 "공사장 소음관리 선진화 및 현장관리 강화" 추진

*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2)

– 주요 소음발생기계인 '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8종)의 제작 및 수입시 소음도 검사를 통한 소음도 표시로 공사장의 저소음 기계 사용 유도 및 생활소음 저감

– 공사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정공사 신고 41,823건 접수 및 공사장 소음기준 준수여부 등 50,212건 단속

– 대형 공사장 소음의 적정관리를 위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1.1~)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업무처리지침' 마련(3.2),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운영(20년 1~12월, 신고건수 47건)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센터 '20년 전화상담 42천건(누적 206천건), 현장진단 11.6천건(누적 58.8) 수행

* 층간소음 전화상담 전문기관 콜센터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 · 상담 및 갈등완화 지원, 공동체 중심의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200건), 아파트단지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캠페인 추진(민원감소율 25%),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층간소음 예방 홍보영상 제작(4편),. 포스터 제작 · 배포(10만부)

– 유아 ·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20년 총 826회(누적 3,813회), 21천명(누적 86천명) 교육

* 층간소음 예방교육 총 417건 21,517명 교육 및 연수 실시(유아 · 언리이 413건 21,085명), 교원연수 및 전문강사 양성, 교육교구 보급, 예방교육 홍보물 22개 제작 및 148회 실시(방송송출 2편 102회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5개년 기본계획인 「소음 · 진동 관리 종합계획('21~'25)」 수립

– 국민이 체감하는 소음 · 진동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장 소음 · 진동 현장관리 강화, 공사장 소음 · 진동 저감기술 개발 보급"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 추진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으로 교통소음의 사전적 · 근원적 예방

○ 도로변 교통소음 피해 저감을위한 교통소음 관리지역,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 지속 설치

○ 층간소음 상담 및 소음측정 및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조정지원 및 공동체 배려문화 확산

○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자율해결지원서비스 교육 등 관리역량 강화

○ 유아 · 어린이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로 갈등 사전예방 및 이웃 배려문화 함양등 공동체 의식 형성 기회 제공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소음 · 진동 수준(레벨) 관리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공사장 소음 관리 등 소음정책 전환 계기 마련 – 소음 · 진동 관련 전문인력 유인 부족 및 일반 관리역량 한계 극복 필요 ○ 특정공사 사전신고, 생활소음 및 도로 등 교통소음 관리,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소음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소음발생원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 미흡 –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 주간 · 야간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화, 개인 중심 문화의 확산 등으로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건설현장, 도로 및 철도의 확장, 교통수단(버스, 철도, 승용차 등)의 증가로 인한 소음발생원 다양화로 인한 소음관리 애로 ○ 공사장, 공동주택 공급자, 도로 및 철도 건설자 등이 방음시설 등 저감대책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회피함에 따라 자발적 관리에 한계 ○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따라 실내생활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확충 곤란 * 층간소음 전화상담 민원건수 : '19년 26,257건 → '20년 42,250건
향후추진계획		○ 기존 환경보건학적 접근이 부족했던 생활환경 유해인자(소음 · 진동)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로드맵* 마련 *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강질환 항목, 건강영향 분석을 위한 조사방법론 등 ○ 소음 측정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IoT기반 실시간 소음 · 진동 측정기반 마련 –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음 자동측정 지점 단계적 확대 등이 포함된 소음 · 진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운영 중장기 계획 맵 마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인력 지속 확충 및 현장진단 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의 사전 중재 적기 실시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이웃간 배려문화 확산

125	V-3-⑲	국토 및 환경보전 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자연생태정책과

과제목표

○ 자연보전정책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 및 에너지발전 사업 등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백두대간의 보전·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 녹지 및 공원의 보존과 지속적 확대로 대국민 환경권 확보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백두대간, DMZ 등 핵심 생태축 보전과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8,055	18,515	10,460	129.9
■ 국토환경관리	2,115	2,460	345	16.3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5,940	16,055	10,115	170.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 녹지 및 공원의 보존과 지속적 확대로 대국민 환경권 확보
- '18.4월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환경부 등)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 및 시행
  * 대책 주요내용 : 우선관리지역 선정,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국고사업 연계 등
-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18.4월)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및 시행('19.5월, 국토부, 환경부 등)
  *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50%→70%),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등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평가법('18.6), 및 하위법령('18.11) 개정]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고려 근거 마련, 지역주민 아닌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지역 확대,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 사업착공등 통보내용 주민공개,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등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평가법('19.11) 및 하위법령('19.12) 개정]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기준 추가, 재검토 통보 근거 마련 등
  *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국토부-환경부) 제정('18.3)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개최('19.11)
  * 통합관리를 최초 적용한 제5차('20~'40)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연계 수립('19.12)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신규사업예산 반영('19.12월, 13억원)

○ 백두대간, DMZ 등 핵심 생태축 보전과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18.12)」에 따라 부처합동으로 81개소 연결·복원 추진 (환경부 '20년, 대전 마달령 등 4개소 추진)
- 관계부처 합동(환경부·국토부·산림청)「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 수립('18.12)」
  *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단절지 중 복원이 시급한 8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19 ~ '23)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신규사업예산 반영('19.12월, 13억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기틀 마련 – (복원체계 마련) 환경부의 복원사업의 후보목록 작성, 추진절차, 사후평가 역할 등을 담은「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 ('21.1.5 개정) – (국가생태축 복원)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19~'23, 범부처)' 수립, 단절·훼손구간 생태통로 연결사업 등 추진(~'23, 81개소) – (도시훼손지 복원) 도시 훼손지를 대상으로 한 복원사업 실시('20.2개소), 정부·지자체·학계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시생태복원 25+" MOU, '20.11)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확대 추진* 등 도시 공원·녹지 보전을 위한 노력** 지속 * 훼손된 녹지축·수생태축 연결로 생태순환을 활성화시키는 복원사업 추진('20년 밀양곡성 2개소 실시('20~'22, 205억원) ** '19.5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추가대책 정상추진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20.5) ○ 지자체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이행을 위한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20.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연환경 복원 제도 기반 구축 및 도시 생태축 복원 신규사업 추진('20년 13억원, '21년 116억원)으로 훼손된 도시 자연환경 복원 ○ 관계부처 협력 강화를 통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계획* 마련,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신규 예산 반영(밀양·곡성 2개소) 등 도시 녹지 보존 추진 * (지자체 매입) 104.1㎢,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30.8㎢, (국공유지 실효유예) 83㎢ 등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수립으로 국토-환경 통합관리 기반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자연자원 총량 유지·관리 정책 도입 – 자연환경의 순손실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생태계 서비스의 유지·증진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는「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완료('21.4) ○ 훼손된 녹지축 연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연환경 복원체계 구축 – (마스터플랜 수립) 자연환경 복원 비전·목표,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21.下) – (복원사업 절차) "후보지 목록 작성 → 복원사업 계획 수립승인 → 추진실적 보고 →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절차 마련 *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마련('21.12월)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자연환경보전업(조사업, 복원 설계·시공업) 신설을 위한「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21.下)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20.1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협의지속 추진 – (도시훼손지 복원) 도시생태계 건강성 강화를 위해 도시 훼손지 대상 생태공간으로 복원('25년까지 국비 1,103억원 지원, 25개소 복원)

127	Ⅴ-3-㉑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험약제과
	과제목표	○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필수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 위험분담제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세계최초 허가 국내개발 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 – 협상명령 전 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자료를 건보공단과 신속 공유하여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보험평가·약가협상 연계 시행 ○ 약제 부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제 선별급여 도입 –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 우선 추진 – 약가 결정이 필요한 기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추진		
	관련예산	○ 건강보험 재정 활용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위험분담제도 운영
– ('18년) 위험분담제도 관리 보안 방안 마련* 및 위험분담 약제,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대상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함이 인정되는 약제) 신규 등재
* 위험분담계약 종료 이후 업무 처리방향 및 이에 따른 의약품 복용 환자 보호 방안 등
** 키프롤리스주(다발골수종 치료제, '18.2월), 사이람자주(위암 치료제, '18.5월), 실반트주(다발성 캐슬만병, '18.2월), 라트루보주(연조직육종, '18.2월), 빈다켈캡슐(가족성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18.10월)
– ('19년)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외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대상 확대 및 후발의약품 대상확대
* 심평원 관련 규정(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 보완
** 위험분담제도 적용 중인 의약품의 후발의약품도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 위험분담계약 적용

○ 약제 선별급여 도입
– ('18년) 전문가 간담회, 학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선별급여 관련 청구시스템 보완 및 관련 규정 등 정비
– ('19년) 5개년('18~'22년) 로드맵을 기반으로 '19년 대상 항목 검토 완료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위험분담제도 개선
–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후발약제),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및 3상 조건부 허가 약제에 대한 적용 확대

○ 약제 선별급여 지속 추진
– 5개년('18~22년) 로드맵을 기반으로 '20년 대상 항목 검토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험분담약제 및 경제성평가 면제약제 신규 등재 – 듀피젠트프리필드주(아토피피부염, '20.1월), 임핀지주(비소세포폐암, '20.4월), 벤클렉스타정(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20.4월), 스트렌식주(저인산효소증, '20.6월), 버제니오정(전이성 유방암, '20.6월), 바벤시오주(메르켈세포암, '20.10월), 키스칼리정(유방암, '20.11월) ○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 중 전액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총 72건(항암제 5, 비항암제 67) 검토 완료 ○ 항암제 약품비 65.2%↑(11,050억원→18,260억원),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 158.8%↑(946억원→2,448억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17년 대비 '20년 기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환자 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추진 시, 각 이해관계자별 의견 대립 * 위험분담제도 관련 제약계는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 주장 vs 시민사회계 등에서는 가격 투명성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

향후추진계획	○ 제도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필요

128	V-3-㉒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질병관리청	과·팀명	에이즈관리과
과제목표	○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을 위하여 의료인을 포함한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수행으로 HIV/AIDS 인식 개선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낙인 감소 기대			
주요내용	○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차별·낙인 해소를 위한 대국민·대상군별 교육·홍보 강화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에이즈 및 성병예방	14,343	15,086	743	5.1
(예방교육 및 홍보)	716	690	△26	△3.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에이즈 예방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실시
- 유투브 크리에이터 협업 교육영상 제작 및 송출
- 1020대상 뮤직페스티벌 기간 에이즈예방 부스 운영 및 영상 송출
- 웹툰 캐릭터를 활용한 에이즈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포스터, 리플릿)
- 대학교 내 에이즈 예방 메시지 담은 카페 컵홀더 광고 진행
- 지하철역사(14개) 에이즈예방 캐릭터를 활용한 스크린도어 홍보

○ 예비의료인 및 상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상담간호사 및 예방강사 등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대상 현장 집합교육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대상자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한 도달 효율성 및 접근성 강화
- 유투브 크리에이터 협업 교육영상 제작 및 송출(5월, 8월)
- 청소년 대상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브랜드 웹툰 제작 및 연재(8~10월)
- HIV/AIDS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포스터 3종(7,500부), 리플릿 1종(14만부))
- HIV/AIDS 바로알기 카드뉴스 제작 및 확산(9월)
- 신규 HIV 감염인 대상 역학조사 교육영상 제작(5월)
- 코로나19상황 고려 세계 에이즈의 날 온라인 진행을 통한 참여형 퀴즈 캠페인 실시(12월)

○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상담간호사 및 예방강사 등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대상 현장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길라잡이 개발
-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개발 및 보급(12월)
- 보도자료 배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학회를 통한 홍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비의료인 및 상담간호사 등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감염인 진료에 대한 상담의 질 향상, 감염인에 대한 차별·낙인 개선 * 상급교육과정 상담사 상담수행능력 ('19년) 91.3점/100점 → ('20년) 92.0점/100점 * 교육 전·후 에이즈에 대한 낙인 감소 – 상담간호사 (교육전) 2.11점/6점 → (교육후) 1.99점/6점 – 예비의료인 (교육전) 2.31점/6점 → (교육후) 1.59점/6점 ○ 대국민·대상군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실시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은 향상, 개인적인 낙인태도**는 긍정적으로 개선 * '17년 65.0점 → '19년 66.1점(1.1점 증가), ** '17년 3.47점 → '19년 3.40점(0.07점 감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홍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 다양화 및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차질없는 교육·홍보활동 수행

향후추진계획	○ 일반인 대상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추진('21.5월~'21.9월) ○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보완, 온라인 교육 개발 추진(연중) ○ 감염인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신규 메시지 개발 추진(연중)

129-1	V-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교육부	교육부	과·팀명	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주요내용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
-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검토 필요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속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대해 학부모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유아학비 보육료 지속 지원

○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989,979	3,916,771	△73,208	-2
■ 고등학교 무상교육	646,000	943,113	297,113	4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누리과정 지속 지원
- 안정적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을 위해「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효력 연장(~'22.) 및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매년 약 2조) 국고 편성 · 집행('18.~'19.)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 발표('19.4.9)
-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9년 2학기부터 고3학년(49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조기 시행('19.8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19.10.), '20년 시행을 위한 증액교부금(6,594억 원) 확보

'20년 이행실적 (1.1.~12.31.)

○ 누리과정 지원 단가인상 및 지속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100% 국고 반영 · 집행 및 '20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단가 2만원 인상(22→24만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 ('19.) 3조8,153억 → ('20.) 3조9,900억(+1,747억)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효력 연장(~'22.)을 통해 유아학비 · 보육료 지속 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20년 고 2 · 3학년 무상교육 확대 실시('19.2학기 고 1학년 → '20년 고 2 · 3학년)
- 코로나19 대응 고 1 무상교육 선제적 도입으로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
- 안정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 · 개정 및 예산 확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20.2.), '21년 전면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9,431억 원) 확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지속 지원 – '13년 만3세~만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최초로 단가 2만원 인상('13~'19. 22만원 → '20. 24만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비 안정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고교 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추진, 고 2·3학년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경감 – 고 1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적극적 완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누리과정 지속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대상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속 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21.3~)

129-2	V-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육사업기획과
	과제목표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속			
	주요내용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 –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지원 단가인상 검토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속 –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 계층에 대해 학부모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속 지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속 – 지원인원 : 561,812명('18.12월말기준), 562,976명('19.12월말기준) ○ '19년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월 3만원) 및 운영비 추가 지원(8,120원) 예산 확보

'20년 이행실적 (1.1.~12.31.)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속 – 지원인원 : 529,303명('20.12월말기준) ○ '21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24→26만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지속 협의

130	V-4-②	성취평가제 실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수학습평가과
과제목표	○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 중심의 성취평가제 실현			
주요내용	○ 성취평가제 현장 안착 ○ 학생 평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구성원 역량 강화 ○ 지식위주의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 존중 교육풍토 조성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학생평가 내실화	5,407	6,070	663	1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활성화 등 기반 마련('18.1)
- 수업-평가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중학교 자유학기 교사별평가 근거 마련 등('19.12.)

○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학생평가 관리 강화(시험지 보안시스템 및 관련자 징계 강화, 성적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평가 공정성 제고, 교사 평가 전문성 강화 및 관련 지침 정비)('18.12.)

○ 과정중심 학생평가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 구성·운영('19.3.~12.)
※ 연구학교 35개교(초17, 중18) 및 수업연구회 38개팀(초15, 중23) 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도구 개발·보급
※ 초등 5-6학년군 7종('18.), 중등 7종('19)

○ 과정중심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의 이해 제고를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18.~'19.)
* 과정중심평가 2종(초등 1종, 중등 10종) / 서·논술형 평가 2종(초·중등 각 1종)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도구 개발·보급
※ 초등 5-6학년군 7종('18.), 중등 7종('19)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20.1.)
- 중학교 표준편차 삭제, 고교 교과세특 기재 단계적 확대, 과제형 평가 금지

○ 「2017~2019학년도 성취평가 결과 자료 분석」(정책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 학생평가 운영 내실화 및 성취평가제 현장 정착을 위한 온라인 컨설팅 실시('20.10~11월, 36회)

○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체 초·중 교원 대상 실습·사례 중심 학생평가 연수 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및 평가 설계, 평가 실행, 피드백 및 기록 등 단계별 역량 강화 지원
※ 매년 초·중학교 전체교원의 20%를 대상으로 실습중심 연수 추진('18.~'22.)

○ 서·논술형 평가의 이해 제고를 위한 서논술형 평가 자료집 및 가이드북 개발·보급
※ 중등 5개 교과(국,수,사,과,영) 50건(165문항) 및 가이드북 10종 개발

○ 학생평가지원포털을 통한 학교급별 평가도구 지원 및 평가 결과 활용 제고(연중)
- 학생평가지원포털 기능 개선*을 통해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현장적합도 높은 자료 제공
*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검색 메뉴 보완, 성취기준 상세 설명 추가, 연수 및 연구공간 메뉴 추가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학생평가 담당자 정책협의 정례화(연중, 총11회 개최)

○ 과정중심평가 및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연중)
※ 초·중·고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앙지원단 52명, 지역지원단 569명)

○ 교원·학부모 등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 강화
※ (홍보자료) 리플릿 2종(과정중심평가, 학생평가지원포털 홍보), PPT 3종(초·중·고 교사용 각 1종), 홍보동영상 4종(대국민 인식개선용 1종, 초중고 교원 각1종)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생평가지원포털 기능 개선을 통한 현장교원의 만족도 제고(목표치 72, 만족도 72.7) ○ 과정중심평가 및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 초 · 중 · 고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앙지원단 52명, 지역지원단 569명) ○ 교원 · 학부모 등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 · 보급, 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 강화 ※ (홍보자료) 리플릿 2종(과정중심평가, 학생평가지원포털 홍보), PPT 3종(초 · 중 · 고 교사용 각 1종), 홍보동영상 4종(대국민 인식개선용 1종, 초중고 교원 각1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및 성취평가제 내실화(계속) ○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계속) ○ 현장적합성 높은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도구 발굴 및 확산 ○ 학생평가 정책을 반영한 학생평가 관련 안내 자료 개발 및 보급

131 V-4-③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육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교육급여	101,649	103,013	1,364	1.3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완료) '18년부터 교육급여 수급자 초등학생 대상 학용품비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등 지원단가를 학교급별로 차등 인상

〈 연도별 교육급여 지원 단가 〉

지원항목	지급대상	최저교육비	2017	2018
부교재비	초	131,208원	41,200원(31.4%)	66,000원(50%)
	중·고	208,860원	41,200원(19.7%)	105,000원(50%)
학용품비	초	70,494원	-	50,000원(70%)
	중·고	80,826원	54,100원(66.9%)	57,000원(70%)

○ (완료) 현재 3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적기 지원

→ 상시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www.bokjiro.fo.kr) 및 교육부원클릭(oneclick.moe.go.kr))

○ (완료)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고교학비·급식비·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PC및 인터넷 통신비)·학용품비·부교재비·교과서비 등 지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과제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20년에는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의 1.6배 더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부교재비 단가 인상(전년대비 60%) 및 물가상승률(1.4%) 반영하여 지원금액 인상

※ '21년 예산 확보를 통한 초중고 교육급여 평균 24%(전년대비) 인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30여만명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속 확대)

〈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단위 : 원)〉

구분	'18	'19	'20	'21
초	116,000	203,000	206,000	286,000
중	162,000	290,000	295,000	376,000
고	162,000	290,000	422,200	448,000

※ 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속적인 저소득층 지원 강화 추진

향후추진계획

○ 3차 기본계획의 과제는 완료되었으며,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원의 지속 확대 추진

132 V-4-④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과제목표	○ 장애학생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강화			
주요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도우미 배치 확대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학대를 위한 추진체제 구축,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2,230	2,213	△17	△0.8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2,335	2,297	△38	△1.6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732	26,305	25,573	3493.6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4,648	4,618	△30	△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18) 201개단 내·외부위원 2,383명, 4,176개교 지원 ('19) 202개단 내·외부위원 2,428명, 3,988개교 지원

○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에게 교육활동(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지원
- ('18년) 장애대학생 653명에게 교육지원인력 546명 지원, ('19년) 장애대학생 643명에게 교육지원인력 538명 지원
- 교육활동 지원 사업 수혜 장애대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87.1점 달성 * 2019년도 목표치 86.8점
- 사업 설명회 개최, 착수협의회,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관리자 연수 추진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 현장실습형 교육 도입 및 사전교육시간(100분→120분) 확대를 통한 교육지원인력 전문성 향상 및 장애이해도 제고

○ 특수교사를 2,209명('18. 1,173명, '19. 1,036명) 증원하고, 특수학교 5교 신설 및 특수학급 780학급 확충
- 국립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예체능, 직업 문야 등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사업 신규 추진('19. 공주대, 부산대 2교 설계비 총 27억원 확보)

○ 장애인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법·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기반 조성
- 교육부 전담부서 설치(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18.1.)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18.4)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평생교육법령 개정(법률 '19.4., 시행령·시행규칙 '19.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정('19.9.)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수립('19.12.),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지체, 중도·중복)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보급(86종, 누적)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20) 201개단 내·외부위원 2,486명, 2,925개교 지원

○ 전국 6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616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인력 568명 지원
- 교육활동 지원 사업 수혜 장애대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87.9점 달성 * 2020년도 목표치 87.1점
- 사업전담기관의 교육지원인력 사전교육(120분) 지원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장애이해도 제고
-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2.10~2.14), 착수협의회(5.14, 10.22),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관리자 연수(7.14~7.17) 추진

	○ 특수교사를 역대최대 규모인 1,398명 증원하고, 특수학교 4교 및 특수학급 556학급 확충 – 공주대 및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설계안 확정 및 체육 분야 특수학교 신축 예산('21. 설계비 19.5억원) 신규 확보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수립 –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3개년도 추진과제* 마련·추진 * 1. 장애대학생 지원 기반 조성, 2.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3.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확대, 4. 진로·취업지원 다양성 제고 ○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 및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강화 –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은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운영(5개) * ①경기 광명시, ②경기 오산시, ③부산광역시(6개구 연합팀), ④전북 군산시, ⑤충북 청주시 –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20.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표준안 마련('20.10.)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10회) 및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보급(124종, 누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20.5.) 등 지역기반 협력체계 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국 교육청별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 성과 공유('20. 12월) ○ 대학 원격수업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20.3월·8월·9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막제작 포함 및 문자통역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운영매뉴얼 개발·보급('20.5월), 우수콘텐츠 공모전('20.10월~11월) 및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20.12월), 온라인 전시관 운영('20.12월~1년간) 등 우수사례 전파 ○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사 정원('17년 대비 3,607명)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17) 67.2% → ('18) 71.9% → ('19) 74.8% → ('20) 79.3% – 특수학교(급) 확충(4교 신설, 556학급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비율 감소 * 과밀학급 0.4%p 감소: ('17) 16% → ('18) 14% → ('19) 12.1% → ('20) 11.7%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도입·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19년) 1,655개 → ('20년) 1,894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장애대학생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인력(구, 도우미) 지원 및 원격수업 수강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비 지원('21년 신규) ○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및 '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 신설 및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신·증설 추진 * 특수학교(총 24교 신설 예정) ('17) 173교 → ('23) 297교 * 특수학급(총 1,250학급 이상 확충) ('17) 10,325학급→('22) 11,575학급 이상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 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운영('21., 15곳) – 장애인 문해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36종), 교·강사 양성 연수(80명) 등 학력보완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133	V-4-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의 집중단속 및 이전·폐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이전·폐쇄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한 불법 유해시설 적발 및 이전폐쇄를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강화 추진 –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조정 –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계획 수립 대상 지역·지구 확대 ○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또는 학교주변 재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사전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보완			
관련예산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실시
* 교육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참여 개학기 각 1회 ** 매월 자체점검 실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설치규제 강화 추진(7~12월, 국정과제 54-4)
※ 교육환경평가항목 조정 :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 선정시 예정부지 300미터 이내 도박시설 설치 현황 파악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의무화
○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 보완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2019)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에 이전·폐쇄조치
– 관계부처 합동단속(코로나19 상황 고려 1회 실시) 및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등을 통해 연간 48개 불법시설 이전·폐쇄조치 완료
○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종 : 기존학교·신설학교)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교육청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전문연수 실시
※ 워크숍(2020.12.11.,199명 참석), 전문 연수 : 2020.6~12월, 283명 참석)
○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 추진('20.8.19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속국도 및 도시철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실시 후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시설 48개소 이전 · 폐쇄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이전 · 폐쇄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시 · 도교육청별 자체점검(수시) 실시 ○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 추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계속) ○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개정 및 항목 조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속)

134 V-4-⑥ 고교 교육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고교교육혁신과 학교정책과

과제목표

○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다양화, 운영 내실화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내실화
○ 고교 입시 경쟁 및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입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다양화, 운영 내실화
– 교과특성화학교를 확대하여 운영분야를 기존의 과학 중심에서 융합, 사회, 외국어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기 위탁과정으로 폐교 등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한 예술 위탁교육기관 운영
–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특정 교과분야의 다양한 과목 선택 이수가 가능하도록, 시도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특성화*, 해당교과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신장, 시설·기자재 등 지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 지침에 따라 집중이수단위 편성·운영(예시, 26단위 이상)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실질화
– 전문대학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일반고-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과정' 제공
– 전문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일반고 학생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제공
○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고입전형 동시 실시
– 전기전형의 자사고 등을 후기전형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 실현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교과특성화학교	9,720	5,608	△4,112	△42.3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3,480	2,720	△760	△21.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교과특성화학교의 경우, 특별교부금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와 대응투자(5:5)로 운용('21.)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교과중점학교)
– '18년 교과중점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및 확정('17.9)
– '18년 교과중점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18.1)
– 교과중점학교 운영현황 점검 및 학교컨설팅 실시('18.5~'18.6)
– 교과중점학교 사례집 제작·배포('18.7)
– 교과중점학교 우수사례 발표회('18.12)
– '19년 교과중점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및 확정('18.9)
– '19년 교과중점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19.1)
– 교과중점학교 지정·운영현황 점검 및 학교컨설팅 실시('19.5~'19.6)
– 교과중점학교 우수사례 발표회('20.1)
– 교과중점학교 사례집 제작·배포('20.3)

○ (위탁형 교과중점학교)
– 교과중점학교 특별교부금 예산 배부('18.1)
– 현장 방문 및 예술중점학교 운영 관련 의견 수렴 등('18.7)

	– 교과중점학교 사례집 제작 · 배표('18.7) – 교과중점학교 우수사례 발표회('18.12) – 교과중점학교 특별교부금 예산 배부('19.1) – 교과중점학교 우수사례 발표회('20.1) – 교과중점학교 사례집 제작 · 배포('20.3)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 2학년 2학기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계획 수립 및 선정('18.5)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컨설팅 1,2차 실시(1차 '18.7~'18.8 / 2차 '18.11~'18.12) – 언론보도(경기일보, 브릿지 경제)('18.8) – 전문대 연계 위탁과정 운영 가이드북 제작 · 배포('18.11) – 전문대 연계 위탁과정 성과보고회 개최('18.12) – 전문대 연계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19.1.15) – 전문대 연계 2학년 2학기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19.7.15)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컨설팅 실시('19.2월, 8월) – 전문대 연계 위탁과정 운영 가이드북 제작 · 배포('19.8월) – 전문대 연계 위탁과정 성과보고회 개최('20.1.16) ○ (고입동시실시) 고입동시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18.1.), 헌법소원 대응('18.3.~'19.4.)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9.9.), 시도별 고입설명회 101회 개최('19.5.~11.), 고입업무지원시스템 리뉴얼 및 담당자 연수('19.10.)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교과특성화학교 및 위탁형 교과특성화학교) – '교과중점학교'에서 '교과특성화학교'로 명칭 변경('20.~) – '20년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20.1.) – '20년 교과특성화학교 운영비 교부('20.1) – '20년 교과특성화학교 운영('20.3~) 및 운영 현황 점검 · 컨설팅 실시('20.4~5) – '20년 교과특성화학교 신규 지정 수요 조사 및 신규 지정('20.6~7) – 시도별 교과특성화학교 성과관리 및 교과특성화학교 만족도 조사('20.11~'20.12) – 교과특성화학교 사례집 제작 · 배포('21.3)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 전문대 연계 3학년 과정 지원계획 확정 및 예산지원('20.1) ※ 사업별 지원 금액 조정(안) 등을 반영한 사업 수정계획서 보완·제출 – 전문대 연계 2학년 2학기 위탁교육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안 확정('20.3~4) – 전문대 연계 2학년 2학기 과정 지원계획 확정 및 예산지원('20.6) – '20년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사업 계획 변경('20.7.)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컨설팅 위원 연수('20.8.) – 전문대 연계 위탁과정 운영 가이드북 제작 · 배포('20.8.)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탄력적 운영 지원 추진 – 운영대학 컨설팅 및 성과관리('20.3~11)

○ (고입동시실시)
- 시도별 온·오프라인 고입설명회 180회 개최('20.5.~12.)
- 코로나-19 대응 위한 학교장 선발교 안전관리 안내('20.7./11.)
-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사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20.7.~12.)
- 고입업무지원스템 연수 및 입학전형영향평가 실시('20.11.~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과특성화학교) 교과 특성화 분야를 다양화*하고, 교과특성화학교 간 공동 캠퍼스·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대학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내실화

* 관련 교과 확대 : 융합, 예술, 사회, 제2외국어, 국제, 과학, SW 등 366교(414과정) ('19. 311교 334과정)

○ (위탁형 교과중점학교) 대구예담학교 및 창원예술학교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위탁생 모집 및 지역단위 체육·예술 특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반고 진로기회 확대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

※ 대구예담학교: 교과(미술, 실용음악, 뮤지컬, 클래식, 체육), 대상(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2, 3학년 273명)
창원예술학교: 교과(음악, 미술), 대상(일반고 3학년 76명)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2학년 2학기 위탁과정의 연계과정인 3학년 과정을 신설(19.3월)하여 일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직업교육 기회 체공

※ (2학년 2학기 과정) 6개 시·도교육청, 20개 전문대학, 28개 과정, 502명 참여
(3학년 과정) 4개 시·도교육청, 9개 전문대학, 14개 과정, 245명 참여

○ (고입동시실시)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 실현 및 우수학생 선점효과·입시경쟁 완화
- 전기전형 76개교(자사고 38교, 외고30교, 국제고8교)가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전형 실시
- 고입동시실시 이후 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감소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전형 경쟁률 변화 추이(2018~2021) 〉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자사고	1.46	1.26	1.31	1.19
외고	1.57	1.49	1.49	1.12
국제고	2.29	2.37	1.97	1.53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반 여건 조성 강화('21.3~)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과정으로 통합 운영('21.3~)
○ 2022학년도 고입동시실시 추진 위한 시도담당자 워크숍('21.2.)

135 V-4-⑦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 과·팀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여 센터로 연계된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학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학교밖청소년 지원	22,691	23,356	665	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설정부터 목표달성 후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지원
- (발굴·연계) 교육부(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기관 연계, 취업지원
- (자립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자기계발,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19) 214개소 → ('20) 219개소(5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20개소, 신규)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실시(신규)
○ 학업·자립·건강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실시('20년 40,399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국 시·군·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1:1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5) 199개소 → ('16~17) 202개소 → ('18) 206개소 → ('19) 214개소 → ('20) 219개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하여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 (단위 : 명)

구분	지원인원	성과		
		소계(실인원)	학업복귀	사회진입
'20년	40,399	15,543(38.5%)	12,674	4,838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설치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년) 219개소 → ('21년) 220개소, 전용공간 : ('20년) 20개소 → ('21년) 40개소
○ 의무교육 대상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상담, 학업, 취업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136	V-4-⑧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진로교육정책과

과제목표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 양성평등한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 강화

주요내용

○「진로교육법」의 기본방향(제4조) 부분에 양성평등 가치 추가 개정 검토
○ 진학지도 등에 성별 다양한 진로에 대해 지도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교원연수 시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체험망 '커리어넷' 운영)	450	450	0	0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교육부의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 사업' 종료('19.12.) 및 해당 사업의 시도교육청 이양으로 인하여 '20년부터 예산 미반영

'18~'19년 주요 이행실적

○「진로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037) 교육위 상정
–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원입법 추진(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8.6.28.)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생 략)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현행과 같음) ②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발달————————————.

○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과정 운영(8개 과정)시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운영('18)
○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과정(6개 과정)에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운영('19)
*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학교관리자 총 11,518명 연수 이수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대 국회 종료로「진로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8.6.28.)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추진

–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 등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원입법 추진(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11.30.)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생 략)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 등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141 V-5-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예술교육과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독해, 활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 정규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 확대
- 아동/청소년의 능동적·비판적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

○ 아동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미디어교육 확대 및 품질강화, 인프라 구축

관련예산

(일반회계 및 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65,602	64,061	△1,541	△2.3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2,106	60,574	△1,531	△2.5
(학교예술강사 지원)	54,779	54,065	△714	△1.3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2,000	1,959	△41	△2.1
(토요문화학교 운영)	5,327	4,550	△777	△14.6
■ 언론공익사업 (미디어교육사업)	3,496	3,487	△9	△0.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전국 어린이집 · 유치원 등 918개소에 1,044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 · 중 · 고 8,481개교에 국악 ·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5,159명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아동 · 청소년 및 그 가족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18년) 933개 프로그램 지원, 66,069명 참여, ('19년) 618개 프로그램 지원, 44,193명 참여

○ **(미디어 교육 확대 및 품질 강화, 인프라 구축)**
- 전국 학교 및 지역 거점 청소년 시설(도서관 등) 대상 미디어교육 운영

* 총 705개 학교, 263개 평생교육시설, 88개 시설 · 단체 등에 미디어교육 시행, 총 1.8만명 참여

- 전국 초 · 중 · 고 교사 10,204명 대상 온 · 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연수과정 운영

'20년 이행실적 (1.1.~12.31.)	○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전국 어린이집 · 유치원 등 606개소에 703개 프로그램 지원, 유아 10,908명 수혜 – 학교예술강사 지원 * 초 · 중 · 고 8,594개교에 국악 ·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5,098명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아동 · 청소년 및 그 가족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국 543개 프로그램 지원, 50,592명 참여 ○ **(미디어 교육 확대 및 품질 강화, 인프라 구축)** –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324개교, 자유학기제 178개교 등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17,264명 대상 교육 제공 미디어리터러시 실천메뉴얼 등 교재, 미디어교육 인정교과서(1종)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 보급 * 청소년 대상 팩트체크 프로그램 '청소년 체커톤' 39개학교 155명 참여 – 교사연수를 통한 학교의 미디어교육 교수능력 제고 * 교사 3,010명 대상, 온 · 오프라인 직무연수 과정 운영 – 지역 거점 청소년 시설(도서관, 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및 뉴스읽기 캠페인 전개 * 도서관 · 영상미디어센터 등 77개 기관, 신문사 기자체험프로그램 14개사, 교육지원청 등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77개소 등 운영, 총 18,087명 참여 *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9,354명 참여 – 미디어교육의 중심기관으로 미디어교육원 개관('20.5월),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 등 진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적 감수성 향상 ○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을 제공,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아동 · 청소년 및 가족 대상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소양 함양 및 건전 여가문화 조성 ○ 미디어교육 지원을 통한 미디어 수용 및 능동적인 뉴스활용능력 강화 – 학교 · 사회 미디어교육 강좌 지원 및 교사 대상 미디어교육 연수과정 운영 등 사회 전반의 미디어역량 강화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국 초 · 중 · 고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 8,620여개교에 국악 · 연극 등 8개 분야 학교예술강사 5,065여명 지원('21년)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실화 – 지역별 문화시설 고유 콘텐츠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홍보 강화('21년) ○ 아동 · 청소년 및 가족 대상 토요문화학교 기획 · 운영 – 토요문화학교 주중 운영 확대(20→30~50%), 생태 · 환경 기획 프로그램 신규 운영 ○ 아동 ·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지속 확대 – 학교 및 교육관련 시설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강좌 지속 확대('21년) – 뉴스일기 캠페인 등 지속성 있는 일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21년)

142	V-5-②	청소년주도 문화활동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지역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 · 소비자로서 주도적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도모			
주요내용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청소년이 주체로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청소년주도의 참여활동 기반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활동 지원	3,924	4,124	200	5.1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1,512	1,51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 126개소 지원
- 16개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110개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을 시군구까지 확대 구성·운영
* '18년 16개 시도 대상 → '19년 16개 시도 및 110개 시군구

○ 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진로탐색형 어울림마당 운영('19년)

○ 전국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주간('19.10.26~11.9) 시범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 126개소 지원
- 16개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110개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의 비대면 방식 허용(사업 지침 개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메뉴 개설로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2020년도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온라인 축제('20.12.5)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우수사례 공유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청소년활동 위축 방지 방안 마련·추진 ○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을 시군구까지 확대 구성 운영을 통한 청소년주도성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전체 시군구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향후추진계획

○ 2021년 청소년어울림마당 126개소 지원 지속 추진
- 16개 시도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110개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 비대면, 혼합형(대면+비대면) 청소년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SNS,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연계 홍보 활동을 통한 운영 현황 공유

143 Ⅴ-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장애인체육과

과제목표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찾아가는 체육 지도 서비스 지원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장애인 체력인증 기반 확대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건립 확대추진
- 장애 유형 정도에 따른 체력평가 관리 및 기초적인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88,669	108,894	20,225	22.8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5,669	26,894	1,225	4.8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및 계속지원 –장애인형)	63,000	82,000	19,000	30.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등 지원('18년 17억원 480개 규모, '19년 32억원 720개 규모)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18년 577명, '19년 800명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장애인 체력인증 기반 확대)**
-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9년 30개소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 '18년 3개소, '19년 6개소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등 지원(38억원 규모, 780개 규모)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915명 배치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장애인 체력인증 기반 확대)**
-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신규 23개소 지원, 누적 53개소 건립 지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신규 2개소 선정, 누적 8개소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누적 77개소, 13개소 개관), 장애인 체력인증센터(8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915명), 프로그램 지원 등 통합지원을 통해 참여율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등으로 체육향유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꾸준한 체육활동을 통해 참여율 소폭 하락에 그침

〈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참여율	12.3%	14.1%	15.8%	17.7%	20.1%	23.8%	24.9%	24.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장애요인)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중단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곤란

–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평균이용인원 전년대비 97.9% 감소

* 19년 12월 5486명 → 20년 5월 114명(97.9% 감)

향후추진계획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23년까지 총 150개소 선정)

– 생활밀착형 센터(반다비 체육센터) '21년 30개소 신규 선정 · 지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20년 8개소 → '21년 10개소)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0년 915명 → '21년 1,000명)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21년 43억원) 및 도서산간 지역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스포츠 버스 운영('21년 신규 1대, 4.5억원)

○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지원('21년 특장버스 4, 승합차량 10대)

○ 장애인 체육 인식제고를 위한 다매체 홍보 추진

144 | V-5-④ |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지역정책과
과제목표	○ 문화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문화향유권 제고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를 통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주요내용	○ 노인 문화 향유권 제고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 등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 문화를 통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 어르신 문화예술동아리,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을 통해 고령층의 적극적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를 통한 사회참여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773	2,529	△244	△8.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전국 523개 문화시설·단체 활용, 고령세대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608개 운영
– (참여자) 어르신 18,667명 참여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전국 179개 문화시설·단체 활용, 고령세대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202개 운영
– (참여자) 어르신 5,865명 참여
– (비대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어르신 문화예술체험꾸러미(총 2만개)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메뉴얼 366개 단체 지원
– (만족도) 프로그램 종합 만족도 85.2점(매우 만족하는 수준) 달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동 등 지원,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 세대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 –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으로 인한 사업 시작 지연 및 일부 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규모 축소(250개→202개)

향후 추진 계획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속 운영
–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등 180개 내외 문화프로그램 운영('21년도)

145-1	Ⅴ-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교육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기반과

과제목표

○ 열악한 여건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만족도 제고 및 문화격차 완화

주요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 향유 지원 강화
○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
○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119,300	136,320	17,020	14.2
■ 문화예술 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09,624	126,094	16,470	15.0
■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개선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857	2,080	1,223	142.7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8,039	7,366	△672	△8.4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780	780	-	-
(큰글자책 보급 지원)	300	300	-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420	420	-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지원)	60	6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비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확대
* ('16년) 연 5만원 →('17년) 연 6만원 → ('18년) 연 7만원 → **('19년) 연 8만원**

○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 한글자막 · 화면해설 상영사업 통칭 브랜드 '가치봄' 런칭('19)
- 장애인 · 비장애인 동시관람 환경 구축 추진
  * 장애인 영화관람 폐쇄형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실시('18.10월~'19.3월), '청각장애인의 관람환경 개선용 시각 제공 장치' 특허 등록('19.6월), 한국형 폐쇄(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제품 개발('19.9월~)
- 가치봄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04~"20년 총 17회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기관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국악, 무용, 미술, 영화, 음악 등 6개 분야, 예술강사 · 기자재 등 교육활동 지원
  * ('18년) 전체 575개소, 1,024개 프로그램, ('19년) 전체 588개소, 1,021개 프로그램

	○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18년 157개관, '19년 155개관 지원)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지원 * '18년 다문화프로그램 공유시스템 개발 및 토론회(6월, 92명), 워크숍(12월, 120명) * '19년 다문화프로그램 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및 세미나(서울 · 경기, 전라, 경상, 9월~10월),워크숍(12월, 83명) – 큰글자책 제작 보급 지원('18년 21종 23,276권, 1,058개관 보급/'19년 14종 14,042권, 1,003개관 보급)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운영)** – 소관 국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무료관람 운영 * (운영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14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20년 이행실적 (1.1.~12.31.)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비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원 – 1인당 지원 금액 지속 인상으로 문화 향유 지원 확대 * ('16년) 연 5만원 →('17년) 연 6만원 → ('18년) 연 7만원 → ('19년) 연 8만원 → **('20년) 연 9만원** – '18~'19년 대비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상승 및 발급인원 증가

	2018	2019	2020
발급률	96.7%	101.8%	102.5%
이용률	90.7%	92.3%	91.9%
발급매수	1,591,777매	1,629,036매	1,752,875매

○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 온라인 영화관람 온라인 플랫폼 확대(5개→7개*) 등 영화 관람기회 확대
* KT, LG유플러스, 네이버, 키다리이엔티, 홈초이스, SK브로드밴드(신규), KT스카이라이프(신규)
– 장애인 · 비장애인 동시관람을 위한 관람환경 조성
* 한국형 동시관람(폐쇄형) 상영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시연('20.6~7월)
** 폐쇄형 상영시스템 현황조사 실시(4회), 차별구제청구소송 관련 시범상영관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9월) 및 운영협의체에 참여(11월~)
– 가치봄 영화 제작 및 상영, 가치봄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 가치봄 영화 제작(21편) 및 오프라인 상영 지원(전국 80개관, 125회, 4,374명 관람), 온라인 VOD 이용 건수 477,838건
* 온라인 가치봄 영화 프로모션 진행(11월) : 가치봄 영화 12작품 IPTV 3사 무료상영 실시

○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기관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국악, 무용, 미술, 영화, 음악 등 6개 분야, 예술강사 · 기자재 등 교육활동 지원(전체 620개소, 889개 프로그램)

○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년 146개관 지원)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지원
* 다문화프로그램 개선 컨설팅지원(8개관), 코로나19 관련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조사(6월, 127개관)
– 큰글자책 27종 27책, 총 18,900권 제작 / 보급(660개관, 18,900권)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운영)**
– 소관 국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무료관람 운영
* (운영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14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결과분석	**추진성과**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 금액 지속 확대로 문화 향유 지원 강화 ○ 시청각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영화관람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권 제고 ○ 온라인 서비스 확대 추진에 따른 장애인들의 영화관림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복지기관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교육 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 ○ 도서관 서비스(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체험활동, 다문화인식 개선 공연 등) 활성화를 통한 상호문화이해 증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개인적 · 지역적 여건(고령층, 도서 · 산간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으로 문화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 향유가 어려운 계층 존재 ○ 코로나19로 인한 가치봄 영화 오프라인 상영 축소 운영 –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상영을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관람 확대 추진 ○ 다문화이해 및 체험 등 도서관별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 부족
향후추진계획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지속 인상* 및 자동 재충전 시행, 모바일 앱 운영 등 이용자 편의성 강화 추진 * ('19년) 연 8만 원 → ('20년) 연 9만 원 → ('21년) 연 10만 원 ○ 가치봄 영화 활성화 확대 지원을 통한 장애인들의 영화 향유권 보장 * 한국영화 자막 ·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100여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 VOD 제공 ○ 장애인 · 비장애인 동시관람 환경 구축 추진(한국형 폐쇄 자막기 · 오디오기 도입 등) * 차별구제청구소송과 연계한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지원 등 ○ 가치봄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계속) ○ 전국 600여개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기관에 음악, 연극 등 840여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21년)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지속 지원

145-2 | Ⅴ-5-⑤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 강화			
주요내용	○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소외계층 초중고생 대상 과학체험교실 운영 – 과학문화 바우처 지급, 우수과학도서 선정보급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 프로젝트), 이동형 무한상상실 운영 등 지역격차 해소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 과학기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과학문화확산사업	15,455	17,085	1,630	10.5
■ 무한상상실 개선 · 운영사업	1,998	1,99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따라 일부사업 온라인 전환하여 추진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
–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4.5% 확대('18년 1,063개→'19년 1,111개)로 수혜인원 9.4% 증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운영 2.4% 확대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신설('19년)**
– 461개 시설 과학문화 소외계층 대상, 바우처 2.2만매 발행
※ (지원대상자) 경제 소외계층 71.5%, 사회 소외계층 12.2%, 지리 소외계층 15.7%, 특수 소외계층 0.6%

○ **우수과학도서 보급**
– 전체 보급도서 대비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보급 80.6% 달성, 도서벽지 학교 대상 보급 3.8배 증가('18년 35개소 → '19년 127개소)

○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 총 10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과학관 24회 운영(수혜자 40,451명), 도서벽지 학교 및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과학관(종일 · 1박 2일 초청교육) 신규 추진(총24회)

○ **이동형 무한상상실**
– 이동형 무한상상실 운영기관을 1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 도서벽지 수혜자 수 '18년 398명→'19년 2,539명으로 538% 증가

○ **과학문화활동지원**
– 소외지역 · 계층대상 과학문화활동 과제 총22건(540백만원) 지원하여 '18년 대비 지원과제 수 2.2배, 지원 총금액 20% 증가, 비수도권 지원과제 비중 49%로 '18년(44.9%) 대비 확대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 운영 확대**
– 코로나 대응 '방구석 과학교실' 등 영상콘텐츠 제공,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운영으로 학습공백 최소화

구분	운영지역(개) 시군구	운영지역(개) 읍면동	운영횟수(회)	나눔과학교실 운영비율(%)	수혜인원(명)	도서벽지접적 지역 수혜비율(%)
'19년 실적(A)	164	1,111	50,275	72.9	132,676	7.4
'20년 현황(B)	169	1,096	43,539	78.3	121,551	16.7
증감(B-A)	5	△15	△6,736	5.4	△11,399	9.3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소외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이용자 46,121명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과학문화 서비스 및 상품 발굴 · 확대 제공(91건→121건)으로 활용도 제고

○ **우수과학도서 소외계층 및 도서벽지 보급 확대**
- 우수과학도서 50종 선정 및 전국 1,000개소 총 17,460권 보급
- 소외계층 보급 83.3% 달성 및 도서벽지 학교 대상 보급 약 3배 증가('19년 127개소→'20년 375개소)

○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온라인 사업 전환**
- 온라인으로 '랜선과학관 나들이'

○ **이동형 무한상상실을 통한 소외계층·지역 수혜자 수 확대**
- 정규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이주여성쉼터 등 방문지 확대로 과학문화 사각지대 해소
- 이동형 무한상상실 수혜자 수 2,539명('19년) → 4,236명('20년) 전년대비 66.8% 증가

* '19년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상 소외지역 이동형 무상실 이용자 수 이며, '20년은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지표 산출근거를 고려하여 이동형 무상실 전체 이용자 수를 집계

○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 비수도권, 소외지역·계층, 장애우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프로그램 비율 확대 운영

연도	총 지원규모		소외계층 대상			
	과제수(A)	예산(B)	과제수(C)	비율(C/A)	예산(D)	비율(D/B)
2019년(a)	55	1,670	17	30.9%	638	38.2%
2020년(b)	43	1,274	22	51.2%	612	48.0%
변동(b-a)	△12	△396	5	20.3%	△26	9.8%

-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차상위계층, 도서벽지 등 다양한 유형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전년대비 113%증)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부 사업평가 결과**
- (과학문화확산사업) '20년도 복권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 달성(6년 연속 '우수')
-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2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보통(85점)' 달성

○ **코로나 선제 대응, 4월 과학의 달 '온라인 과학축제' 개최로 소외 계층 등의 학습공백 최소화**
- 온라인 과학축제를 통해 방구석 과학교실(생활과학교실), 랜선과학관 나들이(두드림 프로젝트), 사이언스책방(우수과학도서 보급)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외교부 발간 영문 정책자료에 K방역 교육분야 우수사례로 소개 및 교육·보건 기관의 대표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선정

○ **생활과학교실 온라인 운영에 대해 '과학문화 격차해소 우수사례' 공중파 방영**
- MBC 행복드림 로또, KBS 부산 뉴스, KBS 대전 뉴스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 지속 확산에 따른 대면(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제약
- 사업 전반의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지역범위는 감소하였으나 소외계층·지역대상 운영 비율을 확대하여 격차해소 노력 추진

향후추진계획

○ 과학문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과학교실 ISP 수립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수혜자 확대('20년 46,000명 → '21년 50,000명)

○ 소외계층 및 지역대상 프로그램 수혜비율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146 | V-5-⑥ | 지역문화기반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기반과
과제목표	○ 공공문화시설 건립 지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대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주요내용	○ 박물관 설립 및 육성 지원 등 ○ 도서관 확충 및 개관시간 연장 지원 ○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 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246,688	216,944	△29,744	△12.0
■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24,553	25,084	531	2.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18,358	18,895	537	2.9
(휴관없는 박물관 · 미술관 운영)	6,195	6,189	△6	△0.09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7,326	14,637	△2,689	△15.5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4,809	177,223	27,586	△13.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박물관 설립 및 육성 지원)**)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13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교부(11,962백만원)

* 서울 1개, 광주 1개, 경기 2개, 강원 2개, 충남 2개, 경북 4개, 경남 1개

○ **(도서관 설립, 육성지원)**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77개관 152,312백만원 지원
- (컨설팅 지원) 102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 (야간개방) 525개관 운영('18년 1,309명, '19년 1,313명 일자리 창출)

○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 (운영관) 8개관(국립중앙박물관(경주,광주,전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20년 이행 실적 (1.1.~12.31.)

○**(박물관 설립 및 육성 지원)**
-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등 11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교부(14,713백만원)

* 부산 1개, 충남 2개, 전북 1개, 전남 4개, 경북 2개, 경남 1개

○**(도서관 설립, 육성지원)**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90개관 204,809백만원 지원
- (컨설팅 지원) 65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 (야간개방) 534개관 운영 '21년 1,358명 일자리 창출)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 (운영관) 8개관(국립중앙박물관(경주,광주,전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기반 확대 ○ 도서관 설립·육성 지원 – 공공도서관 건립·확충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담당자 워크숍, 권역별 회의를 통한 지역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 야간개방(22시까지)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힘듬 –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 40% / 지방비 6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20.2.월~현재)

향후추진계획	○ 2021년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추진 –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등 16개 사업 14,637백만원 지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20년~'22년)

147 | V-5-⑦ |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원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 발전 및 지역의 문화적 역량강화 지원

주요내용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4) 수립('20.2.)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지역 문화시설 확충 운영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
○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87,998	98,419	10,421	11.8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77,370	77,574	204	0.2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7,326	14,637	△2,689	△15.5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60,044	62,937	2,893	4.9
■ 지역문화진흥	1,628	2,445	817	50.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528	845	317	60.0
(지역문화전문인력활용 및 배치 지원)	1,000	1,600	600	60.0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100	–	△100	–
■ 문화도시 조성 지원(지역지원)	9,000	18,400	9400	104.4
(문화도시 조성 지원)	9,000	18,000	9,000	100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	400	400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문화진흥 체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15.7.) 수립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문화시설 확충 운영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1,962백만원)
 –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3,522백만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수정2동 생활문화센터 등 50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8,609백만원)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7개 기관 지정 / (교육인원) 총 431명 수료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원) 총 86개소, 86명 배치(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배치)
○ **(문화도시 지정 추진)**
 –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18.5)
 – 제2기 문화도시심의위원 위촉('18.5, 당연직 2명 포함 총 17명) 및 위원회 개최(총 4회)
 – 제1차 문화도시 지정('19.12, 7개 지자체)
○ **(문화특화지역 조성)**
 – '18년: 총 51개소(문화도시형 26, 문화마을형 25), 국비 8,966백만원 지원(균특회계)
 – '19년: 총 50개소(문화도시형 33, 문화마을형 17), 국비 10,268백만원 지원(균특회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문화진흥 체계 구축)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4) 수립('20.2.)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기본계획 발표('20.2), ▲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도 시행계획 권역별 토론회 개최('20.10.29~11.11/호남,수도,충청,영남/150여명 참석) ○ (문화시설 확충 운영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4,713백만원) –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20년부터 국비 지원 없음(지방 이양 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152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55,916백만원)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7개 기관 지정 / (교육인원) 210명 수료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원) 52개소, 54명 배치(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배치) ○ (문화도시 지정 추진) – 제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20~'24) – 제3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및 총16곳 조성계획 승인('20.12월) – 제3기 문화도시 심의위원 위촉('20.5월) 및 위원회 개최(총4회) – 제2차 문화도시 지정('21.1, 5개 지자체) ○ (문화특화지역 조성) '20년 지방 이양

결과분석	추진성과	○ 17개 시도가 수립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권역별 발표를 통한 계획의 이행력 제고 및 정책 내실화 지원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기반 확대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공간 확대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및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통해 문화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문화다양성 기반 마련 – 지자체 관심 증대 및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2년 예산편성시 광역권 지역문화사업의 발굴 및 문화취약지역 지원방안 수립 등 추진 ○ 2021년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추진 –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등 16개 사업 14,637백만원 지원 ○ 2021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 – 우암동 복합청사 조성 등 204개 사업 62,937백만원 지원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계속 추진 ○ '문화도시' 지정 추진(지속) – 문화도시심의원회 개최 및 활성화 – 세부 사업관리 및 연차별 평가관리 방안 마련

148 Ⅴ-5-⑧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문화다양성 확산 및 이해 제고			
주요내용	○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2년 주기) –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작성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 정책 사업 추진 –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생을 중시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 문화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지원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날(5. 21.) 및 주간행사(5. 21.~5. 27.) 운영 –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3,013	3,553	540	17.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정책 추진체계 마련
–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18.9월, '19.9월)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제출('18년) 및 유네스코 2018년 글로벌리포트 한국어판 발간('18.12월)
– 정책사업 개선 위한 정책연구 추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3월)

○ 정책 사업 추진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지원(4개교),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18-2019년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유아교육 부문 우수사례집 발간
– 문화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지원
* ('18년) 전국 27개 기관 258개 프로그램 운영, ('19년) 전국 26개 기관 224개 프로그램 운영, 297,724명 참여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20.8월)
– 국민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 파악을 위한 '2020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20.7.~'21.2.)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점검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3회)
– 문화 분야 공공서비스 핵심 전달 주체인 문화 분야 공공기관 대상「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문화기관 운영 안내서」 개발('20.7.~'21.1.)
–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다양성 관련 법령 개정('20.12.10 시행)

	○ 정책 사업 추진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4개교), 교원 직무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연수 운영 – 문화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지원 * 전국 26개 기관 231개 프로그램 운영, 83,324명 참여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 '세바시' 연계 특강 5회 추진, 유튜브 조회수 36만여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소수문화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계층에게 문화적 표현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권 신장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타문화 수용도는 아직 저조한 편*으로, 더 많은 접점에서 문화 간 이해도 및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필요 * 출신 지역(2.79점), 성별(2.68점)에 대한 포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사회적 신분(2.33점), 성적 지향(1.96점)에 대한 포용성이 낮은 편('2020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향후추진계획	○ 중장기적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문화다양성 기본 계획 수립 ○ 문화다양성 주간 계기 대국민 홍보 · 캠페인 강화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문화 간 공감대 형성 ○ 문화다양성 교과서(중 · 고등) 개발 통해 교육현장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온라인 전문인력 양성(기본 · 심화) 과정 개발로 교육 접근성 제고 등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내실화 추진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 신청 준비로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반 마련 노력

149	Ⅴ-5-⑨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예술정책과
과제목표	○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기반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예술인의 지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을 통해 창작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장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가입 지원 등) 지속추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78,095	79,875	1,780	2.3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59,095 (추경 9,880포함)	55,875	△3,220	△5.4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9,000	24,000	5,000	26.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적 근거 마련)**
– '18.7.31. 고용보험위원회* 안건 보고 및 의결을 통해 도입(안) 확정
*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심의. 근로자위원(4인)·사용자위원(4인)·공익위원(4인)·정부위원(4인) 등 총 16인(위원장 : 노동부 차관)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18.11.6.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19.4~.12월), 현장 의견수렴('19.4~10월/6회), 국회 토론회(한정애 의원실·노동부, '18.7.5.) 및 예술 분야별 간담회(노동부·문체부 공동, '18.7.9~17/6회)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예술인 고용보험 실행방안 연구 등 총 7종, '18.11월~'20.5)

○ **(예술인 복지 사업 추진)**
– **직업역량 강화**
·(예술인 파견) 2,001명 예술인 선발, 기업·기관 매칭하여 예술협업활동 지원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대학로 및 마포 2개소 운영, 예술인 자녀 9,742명에게 서비스 제공
– **창작역량 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10,001명 예술인 지원
·(예술활동증명) 21,905명 예술인 증명 완료
–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보험) 신규 1,904명 가입 지원 및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등 2,230명에 보험료 지원
– **불공정관행 개선**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개인심리상담 684명 및 집단심리상담 160명 지원('19년)
·(불공정관행신고센터) 불공정행위 상담·신고·조정·소송 등 일괄지원하는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개소,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및 지원 201건('19년)
·(계약 및 저작권 교육) 현업예술인 및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 2,888명('19년)
·(성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성폭력 피해 예술인 상담 및 법률지원 위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신고·상담 접수 및 법률상담·심리상담 등 40건 실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493명('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상품개발·리스크 관리 등 세부 운영방안 설계, 1,497명 76.2억 원 지원('19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적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 및 「고용 ·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6.9/시행 '20.12.10)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 **(예술인 복지 사업 추진)**
– **직업역량 강화**
· (예술인 파견) 1,023명 예술인 선발, 208개 기업 · 기관 매칭하여 예술협업활동 지원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대학로 및 마포 2개소 운영, 예술인 자녀 3,940명에게 서비스 제공
– **창작역량 강화**
· (창작준비금 지원) 15,260명 예술인 지원
· (예술활동증명) 30,018명 예술인 증명 완료
–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산재보험) 신규가입 2,400명 가입 지원 및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등 1,504명에 보험료 지원
– **불공정관행 개선**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 지원예산 4.5억증액(4.5→9억) 및 연계 상담기관 5개소 증설(32→37개소)을 통한 1,186명의 심리상담 지원
· (불공정관행신고센터 운영) 서면계약 신고 상담창구 개설('20.5.),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및 지원 248건
* 사건종결 : 213건(시정조치, 중재 등)
· (계약 및 저작권 교육) 현업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 2,940명
· (성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예술복지법상 '성희롱'에 대한 신고 · 조사 · 시정명령을 가능케 하는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20.11.) 법률상담 · 컨설팅 등 801건 실시, 예술인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2,515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언론홍보, 융자사업 설명회, 사업안정성 확보 및 신청 편의증진을 통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전세자금 대출 3,486명 179억원 지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점 도출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적근거 마련)** –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 개정 직후부터 지속적인 예술계 현장간담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홍보 등을 추진하고, 제도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 양식을 제작 · 배포하여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가입자 1만 명 돌파('21.2.8.기준) ○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 창작준비금 등을 통한 예술인들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예술인의 직무역량 개발 및 사회적 역할 강화 –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서면계약 의무화 제도 실효성 확보 – 융자 예산확대(190→240억)로 코로나 19 특별융자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21.10월 예정)
– 신진예술인 심의 기준 완화 등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21.3월) 및 홍보 등 예술인복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추진
–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21.2월~/예술인복지 기본계획 세부 실행방안 등)
○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 (실태조사) 예술인 실태조사(법정 국가통계 조사) 추진('21.4.~12.) 및 부가조사 완료('21.5.)

150 | Ⅴ-5-⑩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영상콘텐츠사업과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도입확대를 통한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주요내용	○ **(영화)** 영화근로자 표준계약서 개정 및 기 제정된 표준계약서(4종: 근로/상영/투자/시나리오) 보완, 영화발전기금 지원신청 시 사용 의무화(근로/시나리오) ○ **(애니메이션)** 제작·투자·방송·상품유통 등 생태계 주요 구성원 간 수익배분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 **(만화)** 만화·웹툰 및 2차적 저작물 표준계약서 보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공정계약 캠페인 실시 ○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청소년연습생)의 전속계약 체결 시 적용할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관련예산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공정환경 조성사업	650	800	150	23.1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650	800	150	23.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영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및 일반화**
- 매년 상하반기 영화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실시(2013년~현재)
  * 영화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 : ('18년) 77.8% → ('19년) 77.9%
-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영화 등 영진위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속('17년~)
- 주52시간 반영을 위한 근로표준계약서 개정('19.12월)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안) 마련**
- 투자、방영권 구매、시나리오、음악제작 표준계약서(안) 마련('18.11월)
-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19.3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조정안 마련 회의(5회, ~'19.6월)
  * 애니업계 3회 방송사 1회, 시나리오작가 1회 등 총5회
-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발표('19.8.7)
-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실태조사('19.12월)

○ **(만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및 만화·웹툰작가 실태조사 실시**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도출을 위한 용역 완료('18.12월)
- 만화·웹툰작가 실태 기초조사('18.7월) 완료 및 만화·웹툰작가 실태조사 추진('18.12월~)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9.9월) 및 해설집 제작('19.12월) 완료
- 만화·웹툰작가 실태조사 완료('19.12월)

○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 전속계약서('18.11) 제정**
-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사용실태 조사('18.8월~)
-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전속 표준계약서 제정('18.11월)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19.9월)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19.3월)

※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을 명문화하여 인권보장 강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영화)** – 매년 상하반기 영화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실시(2013~ 현재) * ('20년 말 기준) 영화근로표준계약서 76.9% –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영화 등 영진위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속('17~) ○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분야 프리랜서 표준용역계약서(안) 마련('20.12월) – 애니메이션 공동출자/공동창작 표준계약서(안) 마련('20.12월) ○ **(만화)** – 만화 · 웹툰작가 실태조사 실시('20.12월) – 만화표준계약서 활성화 지역순회교육 7회 개최('20)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영화)** 콘텐츠 공정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증가 – 순제작비 10억 이상 한국영화 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사용 개선('19년 96.1% → '20년 96.6%) ○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4종) 고시 제정 및 발표('19.8.7) * 애니메이션 방영권 · 제작투자 · 시나리오개발 · 음악개발 표준계약서 ○ **(만화) 만화산업 내 공정계약 환경 조성** – 작가 및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한 만화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 – 만화 · 웹툰작가 실태조사 추진을 통한 주기적 현황 파악 및 상시교육 체계 마련 ○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 전속계약서('18.11) 제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영화)**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영진위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계속)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활용률 증진을 위한 교육 · 홍보 지속 실시 ○ **(만화)** 국고보조금 선정 사업자 표준계약서 교육 수료 의무화, 작가 대상 표준계약서 교육 실시

151	Ⅴ-5-⑪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특허청	과·팀명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기반 확대			
주요내용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법률구조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 명세서 등 출원서류 작성 지원 및 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창출 지원			

관련예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1,550	1,5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법률구조)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 지원('18년 136건 / '19년 134건)

– (서류작성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과정에 필요한 명세서, 디자인도면 및 의견보정서 등 작성 지원('18년 475건 / '19년 489건)

– (지식재산권 상담) 온라인, 전화, 내방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공익변리사의 상담 제공을 위해 대구·부산·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순회상담 실시('18년 11,605건 / '19년 11,256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법률구조)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 지원('20년 140건)

– (서류작성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과정에 필요한 명세서, 디자인도면 및 의견보정서 등 작성 지원('20년 560건)

– (지식재산권 상담) 온라인, 전화, 내방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공익변리사의 상담 제공을 위해 대구·부산·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순회상담 실시('20년 10,99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출원서류작성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창출 역량 강화 ○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판 및 소송 직접대리,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심화 – 이에, 관련 지원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관련 지원 예산 확대 예정(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수요 발굴 및 홍보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비스(화상상담, 채팅 등) 지원 – 관련 지원 예산 확대 예정(중기사업계획에 반영)

152 Ⅴ-5-⑫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저작권정책과 저작권보호과
과제목표	○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및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주요내용	○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 고도화 ○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 초중고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일반인 등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 눈높이 생활 속 저작권 홍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12,460	14,551	2,091	16.78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3,266	2,165	-1,101	-33.7
■ 저작권 문화기반조성 (저작권 교육 및 홍보)	9,194	12,386	3,192	3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침해 대응 강화
  · (접속차단) 문체부-방심위 협업, '19년 신규 침해사이트 361개, 대체사이트 2,334개 차단, 차단방식 변경 및 기간 단축(2주→4일)
  · (모니터링 강화) 재택모니터링 인력 확충('18년 290명→'19년 340명) 및 모니터링 대응조치(671,759건)

○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 고도화)**
-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신속 차단으로 국내외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
  * (요청/가결) 사이트(261/263), 게시판(316/240), 게시물(1,537/1,605)
-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강화 및 시정권고
  * 웹하드(499,349건), 포털, 커뮤니티(70,952건), 토렌트, 스트리밍사이트(1,115건)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단속을 통한 불법복제물 수거·폐기(3,329건) 및 예방 활동(2,799건)

○ **(초·중·고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18년 11,207회, 392,626명 / '19년 9,538회, 332,620명), 저작권 체험교실('18년 308개 / '19년 292개 교실) 운영 등

○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18년 5개 대학, 26개 강좌 / '19년 5개 대학, 27개 강좌), 공공기관, 대학교 등 대상 협력과정 운영을 통한 저작권 교육('18년 56개 기관, 29,063명 / '19년 71개 기관, 25,831명)

○ **(일반인 등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 교원, 산업종사자 등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18년 42개 과정, 829회, 40,726명 / '19년 47개 과정, 1,723회, 48,957명)
- 문화예술 창작자·매개자 등 교육 강화('18년 51회 / '19년 61회) 및 전략분야 컨소시엄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개발 강화('18년 518명 / '19년 471명)

	○ **(눈높이 · 생활속 저작권 홍보)** – ('18년) 반듯©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웹툰 제작 · 연재, 저작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6~11월) – ('19년) 반듯© 캠페인 홍보영상 매체 송출, 뉴미디어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4편), SNS채널 연중 운영, 저작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체계 구축)** – '인터폴 협업사업' 추진 : 인터폴 내 온라인 콘텐츠 침해대응 전담반 구성 및 194개 회원국 협력망 활용 사전정보 공유 및 국제공조 수사 추진 * '문체부–인터폴–경찰청' 수행, 5년간('21~'25년) 총 36억 원 투입 – 주요 침해사이트 기획수사 및 경찰청 합동수사 실시(웹툰, 애니메이션, 불법게임 사설서버 등) *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 '애니24'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 * 펭하, 실프, 조용한 서버 등 불법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 ○ **(온라인 상 불법 저작권 침해사이트 대응 고도화)** –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 총 57.2만 건 * (심의모니터링) 38.3만 건, (민관협력 모니터링) 5.0만 건, (일반 모니터링) 13.9만 건 –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 총 694,560건 * 경고 349,998건, 삭제/전송중단 344,322건, 계정정지 240건 – 접속차단 : 2,457개 사이트, / 광고차단 : 25개 사이트 내 289건 ○ **(오프라인 불법복제 대응)** SW불법복제 예방활동 중소기업 대상 1,520건 ○ **(초 · 중 · 고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7,620회, 368,895명), 저작권 체험교실(276개 교실) 운영 등,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핵심역량교육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학교 중심 저작권 교육 강화 ○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5개 대학, 28개 강좌), – 공공기관, 대학교 등 유관기관 대상 협력과정 운영을 통한 저작권 교육기회 확대(649개 기관, 143,564명) ○ **(일반인 등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 교원, 산업종사자 등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55개 과정, 2,074회, 179,323명) – 문화예술 창작자 · 매개자 등 교육 강화(53회) 및 전략분야 컨소시엄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개발 강화(354명) ○ **(저작권 홍보 강화)** 친근한 콘텐츠 제작 · 보급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산 – 저작권 홍보영상 매체송출(5~12월, SMR 플랫폼 · 유튜브 · 모바일 앱 등) – 저작권 홍보콘텐츠 제작(자투리 저작권 정보 영상 20편, 라디오 홍보콘텐츠 제작 1편) – 저작권 브랜드 웹툰 '몰랐지만 괜찮아' 제작(16편, 총 조회수 852만회) – 캠페인 홍보영상 매체송출(6종 매체, 8,866만회) – 저작권 유관단체 협업 공동캠페인 운영(총 13곳 기관 참여 누리소통망 홍보) –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선발 · 운영(6~11월, 40명 선발, 120편 영상제작) –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작품 1,332편 접수 및 64편 시상) – 『계간 저작권』 4회 발간 및 월간 『저작권 문화』 12회 발행 – 국민참여형 온라인 중심 캠페인 운영(4~12월, 23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작권 침해 대응 다각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추진 – '20년 불법복제 이용률 20.2% ○ 저작권 침해 대응 다각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추진('19년 불법복제 이용률 22%) ○ 저작권 교육 및 예방 활동,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저작권 인식개선 강화 및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2.2점, 0.3점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침해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 ○ **(인터폴 협업사업)** '문체부–인터폴–경찰청' 협업을 통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수사 및 수사기관 상시공조체계 구축, 인터폴 주관 법집행기관–민간기업 국제회의 개최 등 ○ 사회적 이슈 및 대상별 수요 맞춤 원격교육과정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육 제공 확대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신규 6종 등) 및 교육과정 확대(63개 과정)

153 Ⅴ-5-⑬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체육진흥과

과제목표

○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맞춤형 스포츠지도사 양성 사업 본격화('15년~)에 따른 지도 대상별 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지원
- 지역사회 기반에서 전 연령대가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1시·군·구 1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16년 37개소→'22년 229개소)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32,878	41,302	8,424	25.6
(맞춤형생활체육활동지원)	10,523	18,467	7,944	75.5
(스포츠클럽육성)	22,355	22,835	480	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유아) 유아체육프로그램 교실 운영('18년 400개소, '19년 420개소)
- (청소년) 여학생 대상 스포츠 활동 지원(14종목 788개소)
- (여성) 출산·육아, 갱년기 여성 대상 여성체육교실 운영('18년 66개소, '19년 90개소)
- (어르신) 종목별 교실운영('18년 16종목 555개소, '19년 17종목 666개소),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 교실('18년 128개소, '19년 139개소)
- (생활체육광장) 공원, 광장 등 활용 지역주민 대상 생활체육강습('18년 385개소, '19년 400개소)

○ **(체육지도자 양성)** '18년 14,686명, '19년 16,633명(전문, 생활, 유소년, 장애인, 어르신, 건강운동관리사)

○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19년 스포츠클럽 공모, 22개 클럽 선정(총 98개 운영)

'20년 이행실적 (1.1.~12.31.)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유아) 유아가족대상 홈운동꾸러미 보급(2,000가정)
- (청소년) 여학생 대상 스포츠 활동 지원(15종목 610개소)
- (여성) 온라인콘텐츠 제작보급(50개), 실시간 온라인 강좌(3회), 여학생 대상 스포츠 활동 지원(15종목 610개소)
- (어르신) 방송콘텐츠 제작·송출(17종목, 51회), 지역별 방송(9개 채널, 40회), 온라인콘텐츠 제작보급(6종목, 55편)

○ **(체육지도자 양성)** '20년 1,843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수과정 미시행으로 연수과정이 면제되는 일부 자격전형의 경우만 제한적 취득

○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20년 스포츠클럽 공모 및 공공스포츠클럽 168개소 설립·운영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맞춤형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양질의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기반 마련 ○ 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스포츠클럽 채용인원 1,456명 ○ 전문 선수반 육성으로 스포츠클럽 내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선수저변 확대 – 73개 스포츠클럽 36개 종목에서 전문 선수반 운영으로 2,338명 선수 육성(1,041명 선수등록)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체육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며, 생활체육 활동 다소 위축 * 생활체육참여율('19년 66.6% → '20년 60.1% / 전년 대비 6.5%p 감소)

향후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속 추진 ○ 2022년까지 229개소 확대하여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국정과제) – 2021년 신규 스포츠클럽 공모 57개소 선정예정

154 | Ⅴ-6-①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육사업기획과
과제목표	○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가정양육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양육수당을 가정양육 가구에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가정양육수당 지원	842,855	760,779	△82,076	△9.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0~6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10~20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특수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인원) 704천명('19.12월 기준)

– 안정적인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실적 등 모니터링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10~20만원) 지원

* (지원인원) 641천명('20.12월 기준)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

– 전국단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공문시달('20.3.3)

– 안정적인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실적 등 모니터링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보육료와의 지원격차 완화를 위한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 필요

향후추진계획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양육수당 지속 지원

○ 보육료와의 지원격차 완화를 위하여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 추진

155	Ⅴ-6-②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기획재정부	과·팀명	소득세제과
	과제목표	○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예산	○ 세금환급(조세지출)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18년) 94만 가구에 4,917억 규모의 자녀장려금 지급 ○ ('19년) 88만 가구에 7,542억 규모의 자녀장려금 지급

'20년 이행실적 (1.1.~12.31.)	
	○ 74만 가구에 6,457억 규모의 자녀장려금 지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 계획	
	○ 자녀장려금의 신청·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

156 | Ⅴ-6-③ |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육정책과

과제목표

○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3월) 위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기존 ①신축 방식 이외 ②매입, ③공동주택 리모델링·신설지원, ④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월), '19.9.25. 적용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어린이집 확충	74,832	60,881	△13,951	△18.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지자체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확충** 지원
- 기존 신축·매입 방식 외 민간 장기임차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 민관협력(하나금융 MOU) 통한 사업비 지원 선정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 공동주택 관리동 2층, 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8.2.28)

- 생활SOC 복합화사업 3개년계획('20~'22)과 연계 및 사회공헌사업(하나금융 MOU) 추진하여 지방 재정부담 경감

○ **보육취약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민간 장기임차 신청 시설에 대한 지자체 사전적격심사시 취약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산업단지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지자체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확충** 지원
- 민관협력(하나금융 MOU) 통한 사업비 지원 선정

* '18~'20년까지 90개소에 총 1,000억원 사업비 지원, '18년 24개소, '19년 22개소, '20년 18개소 지원

- 생활SOC 복합화사업 3개년계획('20~'22)과 연계 추진하여 지방 재정부담 경감

* 국고보조율 50%→60%로 10%p 인상, **'20년 26개소 旣추진 및 '21년 13개소 추진 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어린이집과 돌봄센터와의 복합화 근거 규정* 마련**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최상층부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0.9)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년말 **공공보육 이용률**은 32.0%로 전년(28.2%) 대비 2.8%p **상승** ○ **학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 상승** * ('12) 3.85 → ('15) 4.08 → ('18) 4.11 (전국보육실태조사, 5점 만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장애요인)** 신축사업의 국비지원단가 대비 건축에 소요되는 실소요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적극적 확충이 어려운 상황 ⇒ **(대응)** 신축 방식에 비하여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사업 물량 확대***, 사회공헌사업 및 **생활SOC복합화**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 ('20년) 신축 100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50개소 → ('21년) 신축 80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420개소

향후추진계획	○ 연내 국공립 550개소 확충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 유지 및 유형별 · 지역별 상시 모니터링 ○ '22.3월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생활SOC 연계 등 차질없이 추진

157-1 | V-6-④ |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육사업기획과
과제목표	○ 보육지원확대 정책 지속 추진			
주요내용	○ 보육 서비스 질 개선 정책과 영유아 수 변동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육지원 확대정책 지속 추진 * 전계층 무상보육 도입('13.3월)에 따라 이미 만 0~5세 전 계층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4,259,076	4,156,018	△103,058	△2.4
■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21	3,395,239	△20,982	△0.6
■ 가정양육수당 지원	842,855	760,779	△82,076	△9.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이행실적 (1.1.~12.31.)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만 0~5세 전체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22~93.9만원) 및 양육수당(10~20만원)을 지원*

* 지원인원('18년말 기준) : 보육료(1,395천명), 양육수당(704천명)
* 지원인원('19년말 기준) : 보육료(1,359천명), 양육수당(641천명)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집행현황 모니터링(분기별)

'20년 이행실적 (1.1.~12.31.)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만 0~5세 전체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24~970만원) 및 양육수당(10~20만원)을 지원*

* 지원인원('20년말 기준) : 보육료(1,244천명), 양육수당(658천명)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집행현황 모니터링(분기별)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부모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속 지원

157-2 | Ⅴ-6-④ |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제목표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주요내용	○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단계적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1,000	21,0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온종일 돌봄 정책('18.4월, 매년 700실 확충)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700실) 차질없이 추진 및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는 내실있는 돌봄교실 운영
※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돌봄 인력 역량 강화, 시도여건에 따른 탄력적 돌봄교실 운영 등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지역자원 활용한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 지속 추진('18~'20)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 및 지역 유휴공간(아파트, 공공시설, 활용가능교실 등) 등을 활용한 돌봄 운영 등
* (서울) 구로·노원·성동·성북, (대전) 서구, (경기) 시흥·오산, (충남) 홍성, (전남) 광양

'20년 이행실적 (1.1.~12.31.)

○ 온종일 돌봄 정책('18.4월, 매년 700실 확충)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700실) 차질없이 추진 및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는 내실있는 돌봄교실 운영

○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운영 및 학사운영 상황에 따른 돌봄 운영 방안 마련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노력

- 긴급돌봄 운영, 온라인개학에 따른 원격학습도우미 운영, 등교,원격수업에 따른 돌봄제공 유형 안내 등

○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교육부-교육청 공동대응 방안 마련하여 차질없는 돌봄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코로나19에 따른 효율적 돌봄운영 체계 구축 ※ 긴급돌봄 운영, 온라인개학에 따른 원격학습도우미 운영, 등교,원격수업에 따른 돌봄제공 유형 안내 등 ○ 초등돌봄교실의 차질없는 확충 실시(700실),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감소*하여 '20년 목표치(28.2만 명) 미달성(25.6만 명) ※ '20.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 위험에 관한 학부모의 우려, 교실 내 거리두기, 실당 인원 조정 등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 돌봄이용 인원에 영향 ○ 초등돌봄교실 수요자 만족도 제고 노력 ※ 전반적 만족도 추이 : ('18) 95.9% → ('19) 95.5%→ ('20) 94.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에 따라 발생되는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위학교별 인력 운용·공간 확보 노력 필요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및 지역 돌봄기관 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18~'22년까지 매년 700실 확충(5년 간 3,500실) 및 내실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157-3	Ⅴ-6-④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정책과, 가족문화과

과제목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 기여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가정 지원 강화(~'22년)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돌봄공간 제공, 공동육아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이돌봄지원	243,993	251,493	7,500	3.1
(아이돌봄지원)	243,993	251,493	7,500	3.1
■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83,829	92,526	8,697	10.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7,026)	9,238	2,212	31.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저소득 가정 자녀 돌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 대상 : (~'18년) 중위소득 120% 이하 → ('19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 : ('17년) 연 480시간 →('18년) 연 600시간 →('19년) 연 720시간
* 비율 : ('17년)25~75% →('18년)30~80% →('19년)55~85%, 신규 지원가구 15~20%

○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권 보장 등 처우개선 추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돌봄수당 지속 인상
* 아이돌봄 시간당 급여 : ('16,'17년) 6,500원 →('18년) 7,800원 →('19년) 8,4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지급 추진
* ('13.9월) 4대보험, 퇴직적립금 지급 → ('15년) 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 ('19년)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지급 ('19년 예산 반영)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발표 ('18.8.31.)
–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이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 진행 및 대책 발표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19.4.26.)
–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 자격제재 강화 추진, 사례 중심의 교육 강화 등 사전 방지·사후 관리 전반 내실화

○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수행기관 확대
* ('18년) 205개소 →('19년) 279개소

○ 지자체-민간기업-중앙부처 간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하여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
* 삼성생명, 국방부(롯데그룹), 국토부(LH공사), 신한금융그룹 등 설치비, 초기 운영비, 공간 발굴 등 지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특례 지원 실시('20.3~6월, 9~12월)
*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0~85% → 40~91% 확대
* 특례기간 중 08~16시에 이용한 시간은 정부지원시간 720시간에서 차감 면제

○ 장애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확대 (720시간→960시간)

○ 위반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강화, 서비스질 개선 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5.19)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기간 확대(1년→3년), 이용자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등

	○ 서비스제공기관에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할 사례관리인력 신규 배치('20년 222명) ○ 아이돌봄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말, 야간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 실시(3월) ○ 부모 및 자녀가 언제든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마을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운영 확대 * ('19년) 279개소 →('20년) 331개소 ○ 시간제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 · 야간 · 방학 등 운영을 확대하여 맞벌이 · 한부모 가구 등의 돌봄 취약 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 * '20년부터 시간제 인력 1인 추가 배치 (268명 / 월 60시간 수준) ○ 지자체-민간기업-중앙부처 간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하여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 * 국방부/롯데그룹(4개소), 신한 금융그룹(25개소), 국토부/LH공사(4개소) 리모델링, 초기운영비, 공간제공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최소화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및 사례관리인력 신규 배치('20년 222명)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 일시연계서비스 및 대기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율 제고 * ('18년) 81.1% →('19년) 84.7% →('20년) 89.5%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 '18년 205개소 → '20년 331개소(61% 증)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상승에 따른 가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필요 * 이용요금 : ('17년) 6,500원 →('21년) 10,040원 ○ 공동육아나눔터가 없는 시군구에 신규설치 및 공간 확보 지원 필요 -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공동주택 등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조 필요

향후추진계획	○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지원 확대 추진 - 정부지원비율 확대 및 저소득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가정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특례 추진 ○ 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추진 - 읍 · 면·동 주민센터, 건강가정센터,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지역의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158	Ⅴ-6-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문화과
과제목표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선도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 가족친화경영제고를 위한 인증기업 지속 확대 ○ 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직장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1,283	1,285	2	0.1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 ('18) 3,328개 → ('19) 3,833개(대기업 408, 중소기업 2,445, 공공기관 980)

○ 가족친화경영 인증 전·후 컨설팅 실시 및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구축('19.12월)
* 인증 후 컨설팅 : ('18) 150개사 → ('19) 200개사

○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 권역별 총 19회, 1,110개사 대상 실시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발굴·지원
* 인센티브 : ('18) 186개 → ('19) 211개

'20년 이행실적 (1.1.~12.31.)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 ('19) 3,83.3개 → ('20) 4,340개(대기업 408, 중소기업 2,445, 공공기관 980)

○ 가족친화경영 인증 전·후 컨설팅 실시 및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운영('20.1월~)
* 인증 후 컨설팅 : ('19) 210사 → ('20) 314개사

○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 권역별 총 9회, 375개사 대상 실시 * 코로나19등으로 인해 유튜브 설명회 병행 실시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발굴·지원
* 인센티브 : ('19) 211개 → ('20) 220개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확대 추진
* 지역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운영 확대 : ('19) 9개 → ('20) 12개기관

○ 코로나 상황 가족 내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진전 개최
* '대한민국의 아빠'사진공모전 개최(5월), 한국-스웨덴 아빠 온라인 갤러리 운영(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를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제고 – '20년 인증기업 · 기관은 4,340개사*로 전년(3,833개)에 비해 13% 증가 – 인센티브 발굴 · 지원으로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 참여 활성화 유도 ○ 중앙 · 지자체 민관협력체계 구축 · 운영으로 지역 네트워크 강화 추진 – 가족친화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구성, MOU 체결 –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개최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제고 ○ 인증기업 사후관리 · 지원 강화로 가족친화 인증제 내실화 추진 – 기업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 – 인증 후 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 및 직장문화 개선 – 인사담당자 등 가족친화 직장교육 제공으로 일 · 생활 균형 인식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추진 * 인증기업 연 500개 확대 : ('18) 3,328개 → ('19) 3,800개 → ('22) 5,300개 목표 ○ '인증 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추진, 전국설명회, 인증전 · 후 컨설팅, 직장교육 실시, 인센티브 지속 발굴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확대

159 | V-6-⑥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지원과
과제목표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아동양육비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 각종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 ○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강연 등 추진 ○ 차별경험 없이 신청 가능한 한부모 온라인 신청 추진·홍보 강화 ○ 한부모가족이 받는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 강화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4,412	306,669	52,757	20.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4,100	5,895	1,795	43.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6,602	5,495	△1,107	△16.8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888	1,026	138	1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이행실적

○ 아동양육비 단가인상 및 지원범위 확대
- 단가인상 : ('18년) 월 13만원→('19년) 월 20만원 / - 대상확대 : ('18년) 만 14세 미만→('19년) 만 18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18년: 월 18만원→ '19년: 월 35만원)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18년: 145호→ '19년: 158호(누적))
○ '한부모가족의 날(5.10.)' 계기 인식개선,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0.20.)
○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단가 인상(연 5.41만원→ 연 8. 3만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신분증 제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1.6.)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변경·시행('20. 9.)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 이하→100% 이하)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확대('19년: 158호 → '20년: 189호(누적))
○ '한부모가족의 날(5.10.)' 계기 온·오프라인 릴레이캠페인 추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및 지원 대상 확대로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 ○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확대 ○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한부모가족 편견 해소 및 차별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방안 확대 지속 추진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월 10만원) 및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추진('20. 5월~)

○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160	Ⅴ-6-⑦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입양 시 요보호·일반아동의 입양절차 일원화하고, 입양결정 등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아동 권익 보호 추진			
	주요내용	○ 이행법률안 국회통과 및 입양제도 개선을 통한 협약 비준 추진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이행방안 관련 관계부처(법원, 지자체 등) 및 관계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간 추가 논의 – 입양절차 개편에 따른 입양기관 기능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모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헤이그 국제아동입약협약* 비준으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적 책임성을 강화, 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법률안** 발의 * 국제입양의 표준적 요건·절차를 제시, 미국·중국 등 100여 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하에 원가정 보호, 공적 책임성 강화 등 주요 내용 ** 입양특례법 개정안 및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안 발의, 상임위 계류(김승희 의원안('16.10.), 남인순 의원안('18.12.), 김세연 의원안('19.7.)) – (제20대 국회)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및 「국제입양법」 제정 관련 김승희·남인순·김세연안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 폐기 * 그간 입양기관이 전담한 업무에 대한 국가·지자체 역할을 둘러싼 이견(국가·지자체 직접 수행 vs 입양기관 위탁)으로 상임위 계류되다 폐기

'20년 이행실적 (1.1.~12.31.)	
	○ 헤이그 국제아동입약협약* 비준으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적 책임성을 강화, 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법률안 재추진 – 헤이그협약에 따른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해 보호필요 아동의 입양 결정, 예비양부모 판단, 결연, 사후관리 등 그간 입양기관이 전담했던 업무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방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안 마련중 * 입양기관, 민간단체(입양가족, 입양인 등), 학계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현행 법령·제도 개선 및 입양체계 개편 지속 논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 분담 등 논의 지속 필요 –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정립 등 검토

향후추진계획	
	○ 헤이그 협약 비준 준비를 위해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 및 입양기관 업무개편 등 필요 – 협약 이행법률안 마련 및 국회 통과 추진

Ⅵ.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 여성 분야

2. 아동·청소년 분야

3. 장애인 분야

4. 노인 분야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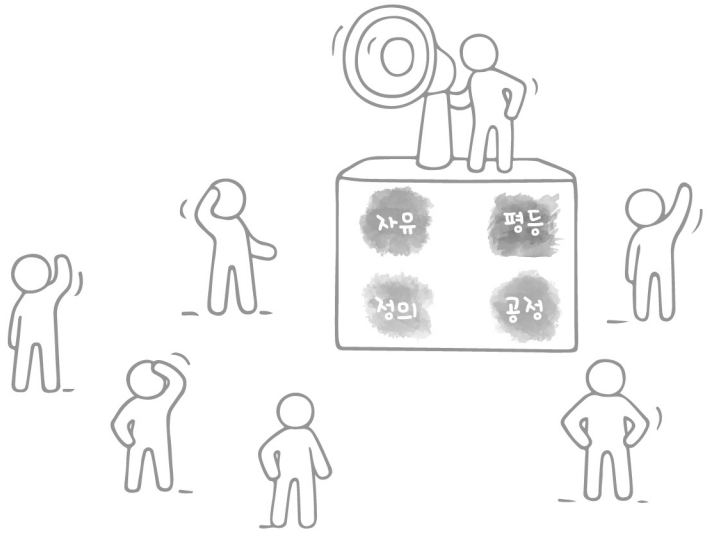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69	1	68	-	-
1. 여성 분야	8	-	8	-	-
2. 아동 · 청소년 분야	19	1	18	-	-
3. 장애인 분야	11	-	11	-	-
4. 노인 분야	7	-	7	-	-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4	-	24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여성 분야】			
162	Ⅵ-1-①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정상추진
163	Ⅵ-1-②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상추진
164	Ⅵ-1-③	학교 내 여성 폭력 방지	정상추진
165	Ⅵ-1-④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상추진
166	Ⅵ-1-⑤	여성건강 증진 강화	정상추진
167	Ⅵ-1-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정상추진
168	Ⅵ-1-⑦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정상추진
169	Ⅵ-1-⑧	모 · 부성권 강화	정상추진
【아동 · 청소년 분야】			
170	Ⅵ-2-①	학교 체벌의 금지	정상추진
171	Ⅵ-2-②	아동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정상추진
172	Ⅵ-2-③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과제완료('20)
173	Ⅵ-2-④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정상추진
174	Ⅵ-2-⑤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조성	정상추진
175	Ⅵ-2-⑥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정상추진
176	Ⅵ-2-⑦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의 인권 보호	정상추진
177	Ⅵ-2-⑧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 보호 · 지원 강화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178	Ⅵ-2-⑨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정상추진
179	Ⅵ-2-⑩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정상추진
180	Ⅵ-2-⑪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정상추진
181	Ⅵ-2-⑫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상추진
182	Ⅵ-2-⑬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정상추진
183	Ⅵ-2-⑭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정상추진
184	Ⅵ-2-⑮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 · 재활 체계 구축	정상추진
185	Ⅵ-2-⑯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정상추진
186	Ⅵ-2-⑰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정상추진
187	Ⅵ-2-⑱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정상추진
188	Ⅵ-2-⑲	아동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정상추진
【장애인 분야】			
189	Ⅵ-3-①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정상추진
190	Ⅵ-3-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정상추진
191	Ⅵ-3-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정상추진
192	Ⅵ-3-④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정상추진
193	Ⅵ-3-⑤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상추진
194	Ⅵ-3-⑥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성 보장	정상추진
195	Ⅵ-3-⑦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정상추진
196	Ⅵ-3-⑧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상추진
197	Ⅵ-3-⑨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정상추진
198	Ⅵ-3-⑩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정상추진
199	Ⅵ-3-⑪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정상추진
【노인 분야】			
200	Ⅵ-4-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정상추진
201	Ⅵ-4-②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 치유 프로그램 개발	정상추진
202	Ⅵ-4-③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정상추진
203	Ⅵ-4-④	노인 건강권 보장	정상추진
204	Ⅵ-4-⑤	단체 · 문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정상추진
205	Ⅵ-4-⑥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정상추진
206	Ⅵ-4-⑦	농지연금 활성화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07	Ⅵ-5-(1)-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 관리	정상추진
208	Ⅵ-5-(1)-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	정상추진
209	Ⅵ-5-(1)-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정상추진
210	Ⅵ-5-(1)-④	재외동포 인권 개선	정상추진
211	Ⅵ-5-(1)-⑤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정상추진
212 /222	Ⅵ-5-(1)-⑥ Ⅵ-5-(2)-⑩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정상추진 (정상추진)
213	Ⅵ-5-(2)-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평가	정상추진
214	Ⅵ-5-(2)-②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반영	정상추진
215	Ⅵ-5-(2)-③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정상추진
216	Ⅵ-5-(2)-④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정상추진
217	Ⅵ-5-(2)-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정상추진
218	Ⅵ-5-(2)-⑥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정상추진
219	Ⅵ-5-(2)-⑦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정상추진
220	Ⅵ-5-(2)-⑧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정상추진
221	Ⅵ-5-(2)-⑨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정상추진
223	Ⅵ-5-(2)-⑪	외국인 입국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정상추진
224	Ⅵ-5-(3)-①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정상추진
225	Ⅵ-5-(3)-②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정상추진
226	Ⅵ-5-(4)-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개선	정상추진
227	Ⅵ-5-(4)-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정상추진
228	Ⅵ-5-(4)-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정상추진
229	Ⅵ-5-(4)-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정상추진
230	Ⅵ-5-(4)-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정상추진

과제별 이행상황

162-1	Ⅵ-1-①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 여성폭력 인식개선 활동 확대, 중장기 여성폭력근절정책 추진기반 마련			
주요내용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이행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신종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과 전문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예방환경 조성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여성폭력근절 캠페인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329	329	-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592	1,865	1,273	215.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9,892	14,574	3,905	3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8, 2019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홍보
- 가정폭력·성폭력 추방 주간(11.25~12.1) 기념식 개최 * 유공자 포상 및 심포지엄 개최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신고 집중 홍보기간(11.25~12.6) 운영(현수막 게시, 서비스 집중 지원 등)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예방교육 실시율 ('19년) 99.9%, 고위직 참여율 ('19년) 84.2%, 종사자 참여율 ('19년) 88.6%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및 관리·감독 내실화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18년 166명 → '19년 416명)
- 모니터링 다각화(전문가 현장·영상 모니터링, 동료 모니터링) 등 전문강사 관리·감독 사업 추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월)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전환('19.12.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수사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 지원

* 운영실적('18.4.30~'19.12.31) : 총135,299건 지원(상담지원 10,522건, 삭제지원 123,962건, 수사·법률지원 703건, 의료지원 112건)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가별 삭제지원 방법 등 정보 교류 및 피해지원 실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

'20년 이행실적 (1.1.~12.31.)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최초의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월) 및 기관별 '20년 시행계획 수립('20.5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20.2월~), 여성폭력 통계체계 구축 추진 등 정책 기반 강화

○ 일반국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및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

* ('19) 5,150회 목표, 5,489회 실시 → ('20) 5,150회 목표, 5,238회 실시

** ('2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특화교육(2,407회) 실시 : 체육인(410회), 대학(원)신입생(11회), 사회초년생(30회)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1,956회)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 · 감독 내실화
–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규 · 전환과정(107회, 1,742명), 재위촉 보수과정(12회, 614명), 학관연계 등 과정(9회, 74명) 운영, 전문강사 모니터링(254회) 및 이슈포럼(1회) 등 관리사업 추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8.4월~)」의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을 통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20.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18.4.30~'20.11.30)〉

(단위 : 건)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289,530	20,716	267,547	1,119	148

○ '제1회 여성폭력 추방 주간(11.25~12.1)' 운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에 따라 기존 성폭력 ·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과 통합하여 기념식 등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포함 모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 지원근거, 관련 정책의 종합적 · 체계적 추진체계 등을 담은 기본법 입법을 통하여 젠더폭력피해 보호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젠더폭력피해관련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행 기대
○ 가정폭력 ·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홍보영상 송출(공익광고, KTX, 유튜브 등), 카드뉴스, 토론회 · 사례 발표회 개최, 경찰청과 가정폭력 등 상담 · 신고 집중 홍보기간(11.25~12.6) 운영, 민간기업과 가정폭력 예방 홍보 협업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 도모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고위직 참여율이 제고되는 등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 · 감독 내실화
– 폭력예방 통합교육 신규과정 및 전환과정, 재위촉 보수과정 등 운영을 통한 젠더기반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수행인력 양성 확대
– 전문강사 모니터링 등 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강사 역량 및 폭력예방교육 품질 제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 ·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 · 수사지원, 법률 ·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 지원
○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 경각심 제고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인식개선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해 대중의 관심 환기
○ 경찰청,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과 협력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상담 · 신고 집중 홍보기간(11.26.~12.6.) 운영
*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신고안내, 쉼터 연계 등 서비스 집중지원,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이행점검
○ 여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홍보 사업 추진 예정
– 추방주간(11.25~12.1) 기념행사, 정책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여성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등
–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정보(실시율, 참여율 등) 공개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전환완료를 통한 강사풀 확대 및 강사 수준별 관리방안 다각화(영상 · 현장 · 동료 모니터링 등)
○ 고위직 대상 별도 예방교육 제공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속 운영

162-2 | Ⅵ-1-① |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여성대상범죄 근절 등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 강화			
주요내용	○ 사이버성폭력·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청수사팀 역량강화 지원	2,741	3,217	476	17.4
■ 여성대상범죄 선제적 대응 (舊 여성대상범죄 대응능력 강화)	225	240	15	6.7
■ 사이버수사 인프라 구축	420	42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여성단체 소통 강화' 및 가정폭력 「다기관 협업체계」 등 民官 치안거버넌스 구축**

- **(여성계 소통)** 정책 수립·이행과정에서 여성단체 등과 수시 소통, 여성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반영
- **(치안거버넌스 모델 구축)** △성폭력 전문가 사례회의(경찰서) 및 정례회의(지방청) △가정폭력 「다기관 협업체계」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한 치안거버넌스 모델 운영,
  ➡ 경찰-전문기관-지자체 間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입체적인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시행 등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실효성 제고**

- 초동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 대응방안을 담은 「단계별 대응모델」 시행, 개선 「위험성 조사표」를 토대로 구체적·객관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대응

○ **'약물이용성범죄'·'불법촬영' 대응 강화 및 「2차피해」 방지 활동 강화**

- △약물이용·신학기(3·9월)·피서철(7~8월) 등 시기별·테마별 성폭력 예방 활동 전개 △지자체 등과 불법촬영 근절 MOU 체결 등 협업을 통한 예방점검 내실화
- 성폭력 범죄 대응과정상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관서별 「성폭력 총괄 모니터링」 및 「2차피해 점검체계」 구축,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교육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여성안전기획관」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젠터폭력' 근절 추진체계 구축**

-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TF)('18. 7월) 및 對여성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할 구심점으로서 '여성안전기획관'(고공단 나급)을 신설('19. 5월)
- 관련 부처·여성계 등과 교류협업을 강화하는 등 여성안전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 강화
  ※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안전기획관'을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으로 확대 개편('21. 1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및 여성폭력에 대한 세심한 대응을 위해 「2차 피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현장 인식 제고 및 예방활동 추진**

※ (기반 조성) △'2차 피해 책임관' 지정 △기능 합동점검단 편성·대응 △규칙 개정 추진
(교육 강화) △사례형 교육자료·체크리스트 활용 △全 경찰관 직장교육 등 교육 강화

	– 「여성대상범죄 신속·민감 대응 강화 계획」 시행, 피해자 관점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의 체감안전도 제고 도모 ※ (신속 대응) △팀간 업무 인수인계 확행 △사건접수 당일 대응체계 확립(CCTV · 진술확보) (민감 대응) △사건 모니터링 강화 △사건 진행사항 안내 철저 **ㅇ 더욱 가시적인 여성안전 활동을 위해 인력 · 예산 등 인프라 확대** – 여성청소년수사(신상등록대상 관리)* 및 학대예방경찰관** 증원 * '19년 3,127명 → '20년 3,527명 ** '19년 603명 → '20년 669명 – 여성대상범죄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18.5억원) ※ (주요 증액사업)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18.2억원) △성폭력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참여(10.1억원) △AI 음성인식 조서작성(4.1억원) △정책연구(2.3억원) – 공공장소 불법촬영 탐지를 위한 신규 장비* 제작·현장에 배부 * (적외선 탐지기) 적외선 광원을 방사하여 외부 코팅된 렌즈 투시 가능 **ㅇ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여성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단 및 피해자보호단을 운영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내실있는 피해자보호 전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ㅇ젠더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범죄 기회 사전 차단 * 전년 동기간 대비 불법촬영 16.1% 감소(4,872→4,088건), 강간 · 강제추행 8.5% 감소(19,430→17,780건) ㅇ여성들의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집중수사·단속 및 피해자 보호·지원활동 강화 * 대응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15.8%p↑(32.4% → 48.2%) 가정폭력사건 대응률 5.9%↑(50.6% →56.5%)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ㅇ범죄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개선 필요 –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대면하는 국가기관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금의 1.6%만 편성되어 신속한 지원에 한계(법무부·검찰청 40.5%, 여가부 30.9%, 복지부 27.0%) *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거이전비(1.6억원), 긴급생계비·치료비 등(50억원) 경찰이관 필요
향후추진계획		**ㅇ 내·외부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여성안전정책 추진** – 정책 입안·검토·시행·환류 全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체계 활용, 정책에 대한 협업 강화 및 내·외부 지지와 공감대 형성 유도 ※ △〈내부〉 범죄예방·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협의체(月1회), 여청기능 현장 간담회 △ 〈외부〉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 회의(분기별 1회), 여성단체·전문가와 간담회,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추진 **ㅇ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 △(피해자 보호 강화) 보호조치 가능 요건을 '범죄 재발 우려'에서 '발생할 우려'로 완화 △ (보호조치 직접 청구) 검사 배제, 경찰이 직접 보호조치 청구 △ (행위자 엄정 대응) 긴급보호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실효성 강화 – 우리청 입장 반영 법안이 도출·통과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대응 ※ 법사위 의원 및 전문위원 상대, 경찰입장 설명 등 적극 대처 – 법 제정 이후, 제도·실무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가이드라인 정비 △현장교육 추진 등 새로운 법률의 현장정착 적극 지원 **ㅇ 2차 피해 예방 종합 추진체계 점검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 그간의 2차 피해 예방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 환류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보완을 통해 완성도 제고 – 세심한 현장대응을 위한 2차 피해 예방 교육 상시화 등 인프라 강화

163 Ⅵ-1-②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주요내용

○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추진
○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홍보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 ·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9	209	-	-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329	329	-	-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1,508	33,145	1,637	5.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1,382	32,366	984	3.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성폭력 피해 대상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개 신설('18.12월, '19.11월 개소)
- 상담소(104명) 및 보호시설(30명), 해바라기센터(39명) 인력 증원으로 피해자 지원(법률·의료·심리 등) 서비스 강화 및 관련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등 적극적 피해구제 추진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상담지원(성폭력상담소)	241,343건	269,595건	28,252건(11.7%↑)
심리 · 법률 · 의료 지원 등(보호시설)	120,675건	141,719건	21,044건(17.4%↑)
상담, 의료, 수사 · 법률 심리지원 등(해바라기센터)	398,690건	413,177건	14,487건(3.6%↑)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25개소) 및 상담소 · 보호시설 상담원** 인력(194명) 증원

*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 : ('18) 103개소 → ('19) 128개소 (↑25개소)

** 상담원 인력 증원 : 194명(국비지원 128개 상담소에 각 1명, 66개 보호시설에 각 1명)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19.1월 시행)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임대주택) 확대 : ('18) 314호 → ('19) 334호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하고 성폭력예방 * 성인권교육 : 18,224명(목표 대비 106.6%) * '19년도 목표 실인원 17,100명 * 학교 성인권 교육(15,365명) /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2,859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확충하여 촘촘한 피해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1개소)* 확대로 피해자 대상 보호 및 숙식 등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일반보호시설 : ('19) 16개소 → ('20) 17개소, 자립지원시설 : ('19) 2개소 → ('20) 3개소 ○ 해바라기센터(1개소) 확대로 성폭력 피해자의 통합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편의 증진 ※ 해바라기센터 : ('19) 39개소 → ('20) 40개소 ○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20년도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관련 예산 169백만원 증액 편성(2,941백만원 → 3,110백만원) ○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 해바라기센터 내 진술조력인*·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법무부 협업), 여경***(경찰청 협업)을 배치·운영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지원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 여성경찰관이 해바라기센터에 24시간 상주, 성범죄 특성상 사건 접수를 꺼리는 피해자를 안정시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토록 함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보호, 주거, 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 ▸ 1366센터 연계건수 : ('19.) 381,476건 → ('20, 잠정) 354,089건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 : ('19) 421,916건 → ('20.6월) 181,066건 ▸ 주거지원(임대주택) : ('19) 335호, 794명 → ('20.6월) 345호, 783명 ▸ 상담원 인력 증원 : 43명(상담소 43개소 각 1명)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 ('19) 159명 → ('20.10월) 153명 ▸ 자립역량강화 시범사업 : 2개소(서울, 광주) ▸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입소 지원 : ('19) 8,670명 → ('20, 잠정) 5,880명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19) 4,326명 → ('20.6월) 1,324명 ▸ 피해자 의료비 지원 : ('19) 11,706명 → ('20.6월) 4,140명 ▸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훈련비 지원 : ('19) 413명 → ('20.6월) 140명 ○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4개 사업수행기관) –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 소송지원, 법률상담, 법률 계몽사업 등 ▸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19) 10,110건 → ('20.6월) 5,175건 ○ 선수촌·학교 소속 운동선수, 창작·실연 등 분야 현업 신진예술인, 대학신입생 등 신규 교육대상 발굴을 통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추진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도모 * ('19) 5,150회 목표, 5,489회 실시 → ('20) 5,150회 목표, 5,238회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력 확충*, 관련 예산 증액 편성** 등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여성·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수 : '18년 31개→'19년 32개→'20년 34개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 '18년 27,018백만원→'19년 31,345백만원→'20년 31,382백만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결과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만족도 : '18년 90.1점→'19년 90.4점→'20년 91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효과 증대 도모 –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25개소 증, 통합상담소는 10개소 증),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임대주택 20호 증) 등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예방교육 실시율 ('17년) 99.5% → ('19년) 99.9%, 고위직 참여율 ('17년) 70.1% → ('19년) 84.2%, 종사자 참여율 ('17년) 88.2% → ('19년) 88.6% ○ 대상별, 생애주기별, 직급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분야별 전문강사풀 확대 및 양성과정 접근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추진(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연계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전문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 서비스 내실화(1366센터, 의료비 및 무료법률지원, 컨설팅 실시 등) ○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콘텐츠 등 개발 추진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정보(실시율, 참여율 등) 공개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언론공표 지속 추진 ○ 협력기관 운영,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및 특수·전문직군 대상 특화교육 운영 등 강사 양성과정 다양화

164 Ⅵ-1-③ 학교 내 여성 폭력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 117신고전화 상담 시 상담 결과에 따른 관계기관 연결 체계화
–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지원 및 폭력예방 활동 활성화

관련예산

(특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117학교폭력 신고 상담 지원	50	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으로 보고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및 상담사 역량 강화

구 분	계	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 연계	전담경찰 연계	상담
2018	61,887(건)	609	1,555	199	9,147	50,377
	100%	1.0%	2.5%	0.3%	14.9%	81.2%
2019	61,302(건)	647	1,356	256	9,733	49,313
	100(%)	6.2	2.2	28.6	15.9	80.4

* 전문기관 : 위(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 117 상담사 전원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 실시('18.8.28~8.31, '19.8.27~8.30)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상담·치유 지원 활성화
– 시·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확대*설치

* 위(Wee)클래스: ('18) 215교 → ('19) 218교/ 위(Wee)클래스 상담서비스 만족도: ('18) 4.56 → ('19) 4.62
위(Wee)센터: ('18) 215개소 → ('19) 218개소/ 위(Wee)센터 상담서비스 만족도: ('18) 4.60 → ('19) 4.62

○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을 통한 폭력예방 활동 활성화
– SPO 여경 비율을 확대('18.11월 기준 46.3%)하고 여학교에는 여성 SPO 우선 배치
– SPO 팀장제를 도입하여 현장대응·대내외협력 역량 제고

'20년 이행실적 (1.1.~12.31.)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화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및 상담사 역량 강화

구 분	계	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 연계	전담경찰 연계	상담
2020	28,239(건)	500	941	106	5,824	20,868
	100(%)	1.8	3.3	0.4	20.6	73.9

* 전문기관 : 위(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 117 상담사 전원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 실시('20.8.1~31.)

○ 117상담사의 연속 근무

– 총 180명 3교대 24시간 근무 * 교육부 90명, 경찰청 56명, 여가부 34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폭력 상담 · 치유 지원 활성화

– 시 · 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 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확대*설치

* 위(Wee)클래스: ('19) 7,230교 → ('20) 7,631교/ 위(Wee)클래스 상담서비스 만족도: ('19) 4.62 → ('20) 4.61
위(Wee)센터: ('19) 218개소 → ('20) 233개소/ 위(Wee)센터 상담서비스 만족도: ('19) 4.62 → ('20) 4.71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 운영

– 학교별 온라인 학급방 및 기관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예방 교육 · 홍보 전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사안 대처 가능 ○ 117 신고 · 상담센터(상담사 180명) 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신속한 사안 대응, 사후 모니터링, 피해학생 지원기관 안내 등을 강화 ○ 시 · 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 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설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 치유 지원 및 폭력 예방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 운영으로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 대응 활동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117상담사의 상담기법과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실시('21.8월)

○ 시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 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설치

○ 신학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관 지속 운영

165	Ⅵ-1-④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 ·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 성매매피해자 지원(130,000건), 성매매피해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90.84점)

주요내용
○ 성매매 예방 국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245	15,702	457	3.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성매매 추방주간(9.19~9.25) 계기 문화행사, 인식개선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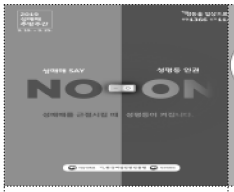

△포스터

△웹툰

△문화행사(9.20)

△정책토론회(9.25)

△온라인이벤트

○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보호 및 자립 · 자활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 법률, 직업훈련 · 진학교육 및 자립 · 자활 등 지원
* 피해자 지원실적 : ('18) 6,887명 ('19) 6,924명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를 위한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20년 이행실적 (1.1.~12.31.)

○ **(대국민인식개선)** 성매매 추방주간(9.19~9.25) 계기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피해자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지상파 공익광고 등 홍보*와 애인대행 서비스 등 온 · 오프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점검 · 관리**
* 실적 : 온라인 토론회(9.23) 등 추방주간 캠페인(9~10월), 공익광고 제작 · 홍보(9월) 등,
** 애인대행 서비스 등 온라인 100여개(8월), 전국 유흥주점 등 오프라인 2만여개(12월~'21년 상반기)
– 민 · 관 협업체계를 통한 점검 · 단속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는 감소(19 → 15개소)하고, 성매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정책 성과 확인(6월)

○ **(성매매피해자 보호 ·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및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6개소*)에서 상담 · 구조 · 보호 · 자활 全 단계 지원체계 구축 · 운영을 통해 탈성매매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상담소(30), 지원시설(일반 · 청소년 · 외국인)(40), 자활센터(12), 그룹홈(12) 등

** 지원 인원 · 건수 : ('19) 6,924명, 127,553건 → ('20) 7,200여명, 130,000여건(추정)

– 성매매 관련 시설 입소 ·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지원서비스 조사 결과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지속 상향

* 만족도 조사 : ('19) 90.20점 → ('20) 90.84점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활성화하고, 종사자 보수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원서비스 질 제고

* 종사자 역량강화: (양성) 3회 88명, (보수) 66회 429명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매매가 여성폭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아동 ·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는 등 성매매 유입된 여성에 대한 편견 개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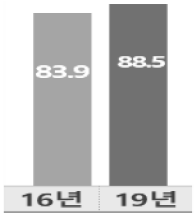

▲성매매처벌법 인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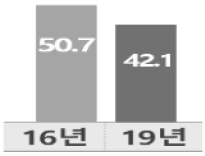

▲성인남성 평생 성구매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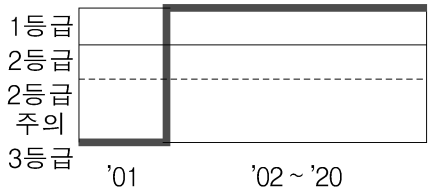

▲인신매매보고서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보호, 자립, 자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담소 등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 향상

(단위: 점, 명)

구분 / 년도	만족도 (5점/100점)	응답자수 (명)
2020	4.54 / 90.84	1,426
2019	4.51 / 90.20	1,378
2018	4.50 / 90.10	1,549
2017	4.48 / 89.6	1,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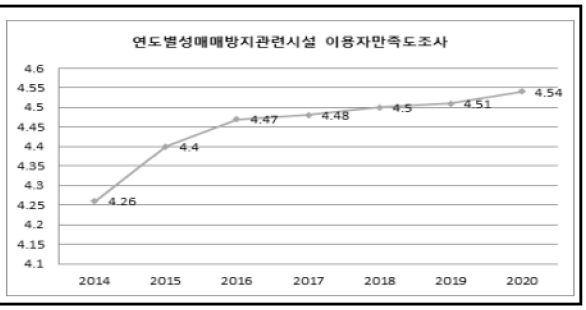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체계 활용 및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매 방지 활동 지속 추진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치료회복, 자립 · 자활, 전문멘토 등을 종합적 지원

166	Ⅵ-1-⑤	여성 건강 증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질병관리청	과·팀명	예방접종관리과
과제목표	○ 만 12세 여아에 대한 건강 상담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여성건강증진의 토대 마련			
주요내용	○ (HPV 예방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백신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을 예방 ○ (건강상담) 만 12세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초경, 성장발달 관련 교육·상담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전문의를 통한 전문교육 및 상담으로 여성건강 증진 토대마련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34,973	35,073	100	0.3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미접종자 관리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추가) 사업내용 적극 홍보를 통한 사업인지 제고 효과와 미접종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기능 강화
- (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시행) '18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으로 시행 전 보호자 및 교사 대상 안내자료 제공을 통해 접종 독려
- 접종 대상자 필수예방접종 사전안내문자 발송('18년 총 5회 약 161천건, '19년: 총 3회, 약 81천건), 접종 안내 우편물 발송('18년 총 3회 약 104천부, '19년 총 2회 약 251천건)
- 방학 전 접종독려 보도참고자료 배포('18년 1회, '19년 2회)

○ 사업홍보 및 안전성 이슈 대응
- HPV 백신 안전성 문제 등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배포('18년 2회, '19년 1회)
- HPV 예방접종 관련 이슈 해소 및 사업 내용 안내 유투버 협력 콘텐츠 제작·게시('18. 9월)
- 예방접종 정보 제공 및 여성 건강 상식 전달 등 HPV 예방접종 독려 목적의 미디어채널 쉐어하우스 협업 영상콘텐츠 제작·게시('18. 9월, 12월)

  * (9월) 하반기에 챙겨야 할 예방접종, (12월) 초경을 앞둔 딸에게, HPV 백신 효과 있을까
- '05~'07년생 여성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HPV 예방접종 주제 토크콘서트 진행('18. 12월)
- 초·중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담 전문가 성교육 프로그램 연계 홍보('19. 11~12월, 4회)
- HPV 예방접종 안내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19. 12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년) 사업 현황 모니터링 및 사업 홍보, 접종 독려 지속 강화
- 사업대상자 HPV 1차 접종 현황: 72.2%(337,409건) 접종('07년생 89.4%, '08년생 53.8%)
- 전년 대비 HPV 1차 접종률이 약 1%p 감소하였으나, '07년생의 1차 접종률은 약 1%p 증가함

〈 연도별 1차 접종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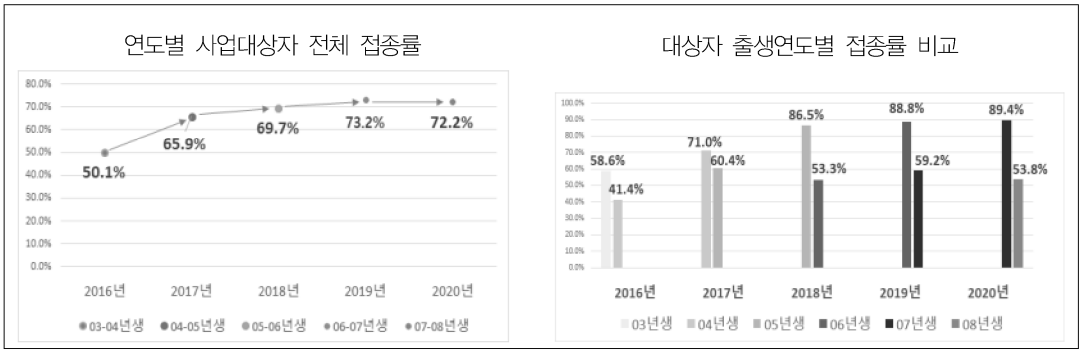

○ 미접종자 관리 강화
- 2020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문자 발송(5월, 11월 총 2회 약 22천건)
- 1차·2차 접종 대상자 접종독려 안내문자 발송(12월, 약 54천건), 접종 안내 우편물 제작 및 개별 발송(11월, 약 84천건)
- 접종독려 보도참고자료 배포(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HPV 예방접종률(2020년 기준)
- '07년생 1차 접종률 89.4%, '08년생 1차 접종률 53.8%
  * 사업대상자 중 HPV 1차 접종자/사업 대상자('07.1.1.~'08.12.31. 출생한 여성청소년)
- 건강상담 시행률 1차 96.4%, 2차 96.0%
  * 건강상담 시행자/사업대상자 중 HPV 백신 1차, 2차 접종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사업시행 초기 부정확한 정보, 루머 등으로 안전성 우려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백신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상반응 신고 현황 공개 등으로 접종률 상승 추세임

향후추진계획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 무료접종 지원(연중)
○ 접종대상자 사전안내문자 발송(연중)
○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을 통한 HPV 예방접종 독려, 완료여부 확인
  *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안내문 배포, 방학 전·방학 중 집중 접종 독려
○ HPV 예방접종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속 및 접종현황 모니터링

167-1 Ⅵ-1-⑥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권익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및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내실화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및 농협의 여성임원·조합원 확대 ○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주말 돌봄방 등 농촌 특화형 보육서비스 확대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촌보육여건개선	1,618	2,357	739	45.7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100	100	–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100	300	200	20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18)
–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출산급여 지원대상을 경영주에서 공동경영주까지 확대('19)
○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 지원개소: ('18) 51개소 → ('19) 57개소
○ 복지부와 협업하여 농촌특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 아동수가 줄어들어 영아와 유아의 별도반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혼합반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18.1)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교육도우미 지원조건 완화(3일 이상 교육 → 1일)로 수혜대상자 확대, 도우미 지원단가 인상(6만원/일 → 7)('18)
○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로 정책추진 기반 마련('19)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 직업적 지위 향상
*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 중 여성비율 확대: ('19) 28.9% → ('20) 29.9%(1.0%↑)
* 농협 조합원 중 여성비율 확대: ('19) 32.6% → ('20) 33.0%(0.4%↑)
○ 여성농업인 교육확대 및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 강화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여성농업인 정책과정 운영 및 마을로 찾아가는 농작업 편이장비 교육 실시(26백명)
* 농촌 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21명) 및 양성평등 교육확대('19: 25백명 → '20: 36백명)

	○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 지원개소: ('19) 57개소 → ('20) 84개소 * 제도개선: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대상(국공립→+사회복지법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확대(4개월→4~6) ○ 현장과 소통 및 정책홍보 강화 * 여성농업인 등과 정책협의(16회),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발간(25천부), 세계여성농업인의 날(10.15.) 행사, 농사비법 경진대회, 농식품부 내 성평등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5건시상)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의사소통 활성화, 정책홍보 강화 ○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확대 기반마련 ○ 보육 등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확대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여건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정책추진체계 확립 필요 – 경영주 중 여성비율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 – 명목상 지위에 머무르는 공동경영주 제도 등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 필요 ○ 지역까지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전담부서 실치 활성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지자체 · 여성농업인단체와 정례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대상과 소통강화로 정책 체감도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경영역량 강화, 노동여건 개선으로 경영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개선, 맞춤형 교육 확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등 ○ 농업 · 농촌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교육 확대, 정책 담당자의 성평등 이해도 제고로 농촌주민 인식개선과 정책추진 실효성 확보 ○ 보육 · 교육 · 보건 · 문화여건 개선으로 농업 · 농촌에서 여성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일 · 가정양립을 지원하여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 농촌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추진

167-2 Ⅵ-1-⑥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권익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소득복지과
과제목표	○ 여성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 실질적 지원 추진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향상 추진			
주요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안 마련 – 어작업으로 기인한 질병 등에 대해 국가에서 특화건강검진비용 지원 * 여성의 경우 유병률이 남성어업인보다 높으며, 건강검진 수검률도 상대적으로 낮음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735	3,800	1,065	38.9
(어업활동 지원)	225	200	△25	△11.1
(어촌생활돌봄 지원)	70	7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개정('19)

○ 여성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및 특화 건강검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추진('19)

○ 어업활동, 어촌생활돌봄 지원사업 홍보 및 개편을 통한 수혜자 확대('18. 1,627명 → '19. 5,199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어촌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출산, 다문화가정,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 어촌 취약가구에 대해 어촌생활돌봄 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19. 12천원 → '20. 15천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20.3.)
– 법령 개정으로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위원 구성 시 정책 실수요 대상자인 여성어업인을 위원에 추가하여 정책 참여기회 확대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 도입 추진('20)
– 남성어업인보다 질병 취약성이 높은 여성어업인의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제도 도입 초석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어촌생활돌봄 사업을 개선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과 가사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어업 참여 적극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항목, 검진 기관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신규) 추진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168	Ⅵ-1-⑦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술정책과

과제목표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

주요내용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여성문화예술인의 경력단절 해소 및 가사·육아 부담경감 방안 연구
○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지속 운영 및 추가개소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1,026	1,026	-	-
■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520	520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자녀시간제 돌봄)	506	50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개최('18년 4회, '19년 3회), 성평등문화정책 실무위원회('19년 2회) 개최
-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18.10월, '19.10월) 개최 및 양성평등 주간 문화프로그램 행사
-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추진('19년 영상·디자인·문예 3개 부문 37점 선정)

○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지속 운영 및 추가개소 추진)**
- 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에도 운영하는 예술인 자녀보육지원센터 2개소 운영 (대학로, 마포/ 9,742명 이용)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개최(5회), 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5회) 개최
-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 개최(6개 분야 13점 시상)
-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일반국민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2020 벡델데이 행사 개최
-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관계자 대상 포럼(11회)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지속 운영)**
- 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에도 운영하는 예술인 자녀보육지원센터 2개소 운영 (대학로, 마포/3,940명 이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양성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 예술인에게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창작활동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 계획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및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반디돌봄센터(서울 대학로) 및 예술인자녀돌봄센터(서울 마포) 지속 운영

169-1	Ⅵ-1-⑧	모 · 부성권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문화과

과제목표

○ 가족친화제도(출산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유연 ·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제도 등) 활용이 우수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 출산 ·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기업 지속 확대
○ 일 · 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 기업 내 일 · 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일 · 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1,283	1,285	2	0.1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 ('18) 3,328개 → ('19) 3,833개(대기업 408, 중소기업 2,445, 공공기관 980)
○ 가족친화경영 인증 전 · 후 컨설팅 실시 및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구축('19.12월)
* 인증 후 컨설팅 : ('18) 150개사 → ('19) 200개사
○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 권역별 총 19회, 1,110개사 대상 실시
○ 정부 ·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 ·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발굴 · 지원
* 인센티브 : ('18) 186개 → ('19) 211개
○ 가족친화 포럼 개최(4회)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
* 지역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운영 확대 : ('18) 5개 → ('19) 8개기관

'20년 이행실적 (1.1.~12.31.)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 ('19) 3,83.3개 → ('20) 4,340개(대기업 408, 중소기업 2,445, 공공기관 980)
○ 가족친화경영 인증 전 · 후 컨설팅 실시 및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운영('20.1월~)
* 인증 후 컨설팅 : ('19) 210사 → ('20) 314개사
○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 권역별 총 9회, 375개사 대상 실시 * 코로나19등으로 인해 유튜브 설명회 병행 실시
○ 정부 ·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 ·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발굴 · 지원
* 인센티브 : ('19) 211개 → ('20) 220개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확대 추진
* 지역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운영 확대 : ('19) 9개 → ('20) 12개기관
○ 코로나 상황 가족 내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진전 개최
* '대한민국의 아빠'사진공모전 개최(5월), 한국-스웨덴 아빠 온라인 갤러리 운영(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를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제고 – '18년 인증기업 · 기관은 3,328개사*로 전년(2,802개)에 비해 18% 증가 – 인센티브 발굴 · 지원으로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 참여 활성화 유도 ○ 중앙 · 지자체 민관협력체계 구축 · 운영으로 지역 네트워크 강화 추진 – 가족친화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구성, MOU 체결 –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개최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제고 ○ 인증기업 사후관리 · 지원 강화로 가족친화 인증제 내실화 추진 – 기업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 – 인증 후 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 및 직장문화 개선 – 인사담당자 등 가족친화 직장교육 제공으로 일 · 생활 균형 인식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추진 * 인증기업 연 500개 확대 : ('18) 3,328개 → ('19) 3,800개 → ('22) 5,300개 목표 ○ '인증 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추진, 전국설명회, 인증전 · 후 컨설팅, 직장교육 실시, 인센티브 지속 발굴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확대

169-2	Ⅵ-1-⑧	모 · 부성권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출산 및 육아제도 활용 기업문화 개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제도 활용 및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및 모 · 부성권 강화

주요내용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계획)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모성보호육아지원	1,543,248	1,591,537	48,289	3.1
(육아휴직급여)	1,194,854	1,248,854	53,767	4.5
■ 고용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93,642	86,381	△7261	△7.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 인상('19.1월)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 완화
* (기간) 인수인계 지원기간 확대(2주→2월), (지원) 인수인계기간 중소기업 지원금 상향(월 60→120만원)
–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지원금(월 20→30만원) 인상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위한 근속요건 완화(1년→6개월)
○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 '19년 10개 지역 선정(광주, 화성, 전주, 서울 마포, 서울 강서(2개소), 경북 영주, 울산, 전북, 인천)하여 공사중이며, '21.3월 9개소, '22.3월 1개소 개원 목표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 정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지원 강화(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 → 200만 →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3→10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중소기업 5일분) 신설('19.10월)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완화하도록 급여 인상 등 제도개선
*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상한액 100→120만원, 하한액 50→70만원)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강화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확대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 완화('20.1월)
* (지원요건)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인상 (월 60만원 → 월 8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금의 일부(50%)를 육아휴직 등 기간에 지급하도록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20.3월)
* (기존) 원 근로자(육아휴직 등 사용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요건 충족 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기간에 50%, 원 근로자 복귀 후 나머지 지원금 지급

	○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 – '19년 선정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10개소 개원 추진 * '21.3월 3개소, 4월 4개소, 5월 1개소, 10월 1개소, '22.3월 1개소 개원 예정 – 대기업이 주도하여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1개소 신규 발굴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근로감독 강화('20년 400개소 완료) ○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보장 추진 – '20.1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기간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 만료시 남은 휴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21.7월 시행)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정('20.3월) – 한부모 근로자의 돌봄부담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존)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 (개선)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확대하여 유연한 사용 지원('20.12월) * (기존) 육아휴직 1회 분할 → 2회 분할로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맞돌봄 문화 조성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동시 지급('20.2월) – "아빠넷"을 통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분위기 확산 * (누리집) www.papanet4you.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panet4you, (네이버포스트) www.post.naver.com/papanet4you.kr – 남성육아휴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강화('20.1.23., 8.14)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인원 증가 – 육아휴직 112,040명(전년대비 6,875명, 6.5%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698명(전년대비 9,038명, 159.7% 증가) ○ 남성 육아휴직 큰 폭 증가 – 남성 육아휴직자는 27,423명으로 전년(22,297명) 대비 5,126명,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 대비 24.5% 차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 기업문화 개선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 도입 촉진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감독 지속('21년 900개소) – 임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보호 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지속 실시

170	Ⅵ-2-①	학교 체벌의 금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체벌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체벌 금지 추진현황 점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 정책연구* 추진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 인권보장 관련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발의안을 분석하여, 학생인권 관련 법률 제정안(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 인권보장 법제화 방안 제시

* 연구기간 : '18.7.2. ~ 12.21. / 연구책임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체벌을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체벌을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171	Ⅵ-2-②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			
주요내용	○ 청소년주도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활동 지원	3,924	4,124	200	5.1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1,250	1,2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 2,500개 선정 지원
- 민주시민, 사회정서, 창의융합, 진로·직업 등 중점 육성 동아리 발굴 권장

○ '지역 청소년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동아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2019년도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온라인 축제('19.11.30)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우수사례 공유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 2,500개 선정 지원
- 민주시민, 사회정서, 창의융합, 진로·직업 등 중점 육성 동아리 발굴 권장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의 비대면 방식 허용(사업 지침 개정)

○ '지역 청소년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동아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2020년도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온라인 축제('20.12.5)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우수사례 공유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청소년활동 위축 방지 방안 마련·추진 ○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그 분야와 활동이 다양한데다 청소년이 스스로 조직·운영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역량 및 인성함양을 위한 종합적 청소년활동으로 그 활동을 확산하는 것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전체 시·군·구에 청소년동아리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동아리 지속 지원('21년 2,500개)

○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
- 우수 청소년동아리 운영 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

○ 청소년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자기주도적 재능나눔 봉사활동'개발·확대

172	Ⅵ-2-③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민주시민교육과
	과제목표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방안 마련 및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보급			
	주요내용	○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내실화 방안 마련 ○ 시·도별 학생자치활동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선정·보급을 통하여 다양한 자치활동 모델 발굴 및 확산			
	관련예산	○ 해당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시·도교육청 자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 – 학생자치회실 환경 구축, 학생 주관·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19년 2,432백만원)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집 개발·보급('18. 12월) – 전국 학생자치 컨퍼런스('19. 8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는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 학생자치회실 환경 구축, 학생 주관·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 민주시민교육 포럼 및 민주학교 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20. 10월~12월, 8회) ○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20. 10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학생의 참여 역량 확대 ○ 자료집 개발,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되었으며('20.), 교육청별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추진

173 Ⅵ-2-④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방과후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

주요내용

○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 · 복지 · 보호 ·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관련예산

(청육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22,641	28,240	5,599	24.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22,171	27,771	5,600	25.3

*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당초 25,106백만원 → 수정 22,641백만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해 돌봄취약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돌봄) 참여 불균형 해소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혜청소년 확대 : ('18) 260개소, 10,742명 → ('19) 280개소, 11,584명

○ 보편적 돌봄 제공을 위해 우선순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및 '2자녀 이상 가정' 확대 추진

* 우선순위 지원대상 : ('18) 소득기준 100%이하, 3자녀 이상 가정 → ('19) 소득기준 150%이하, 2자녀 이상 가정

○ 청소년 주도 창의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 및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9개 기관)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해 돌봄취약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돌봄) 참여 불균형 해소

* 운영기관 및 청소년 참여 확대 : ('18) 260개소, 10,742명 → ('19) 280개소, 11,584명→ ('20) 304개소, 12,341명

○ 보편적 돌봄 제공을 위해 우선순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적용 폐지

* 우선순위 지원대상 : ('19) 소득기준 150%이하 → ('20) 소득기준 적용 폐지

○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확대 실시

*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19) 9개소, 232명 → ('20) 288개소, 10,166명

<table>
<tr><td rowspan="2">결
과
분
석</td><td>추진성과</td><td>
○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방과후 아카데미 기관 및 참여 청소년 수〉
<table>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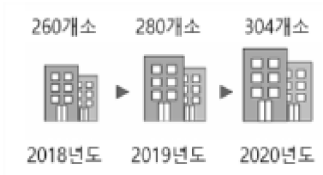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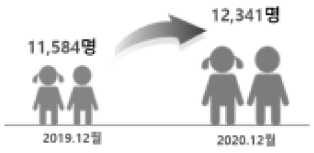
</td><td> </td></tr>
<tr><td>〈 운영 기관 수 〉
* 전년대비 24개소 증가</td><td>〈 참여 청소년 수 〉
* 전년대비 6.5% 증가</td><td>〈 취약계층 청소년 수혜인원 〉
* 전년대비 10.6% 증가</td></tr>
</table>
* 참여 청소년 효과성('20) : (사전) 2.71 → (사후) 3.21(18.4% 증)
‣ 참여 청소년의 역량증진 효과(청소년 1,174명 설문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참여후 생활만족도,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사고력, 자기주도성 등 全 역량개발 분야에서 유효성 입증
* 참여 청소년·학부모 만족도 : 82.8점 (청소년 81.8점, 학부모 83.8점)
‣ 참여 청소년의 학부모 체감효과(학부모 528명 설문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참여 청소년의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85.2점, 자녀의 방과후 생활에 안심(86.8점), 일 · 가정양립에 도움이 되었다(83.0점)
*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한 양육 부담 및 돌봄 공백 발생에 대응하여 돌봄 취약 계층 대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 방과후아카데미 긴급 돌봄 지원 인원(연인원) : 953,637명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간 연장 : 기존 방과후 ~ 21:00 → 변경 9:00~21:00
‣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위한 물품 지원 : K-방역세트(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등
</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 가용예산 한계로 인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한계
※ 18년 이후 청소년 1인당 연간 프로그램 예산(843천원) 증액이 반영되지 않음
○ 성장기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식단 제공을 위한 급 · 간식비 현실화 지속 요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단가('19년) 4천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단가 ('16년) 6천원
</td></tr>
</table>

<table>
<tr><td>향후추진계획</td><td>
○ (인프라 확충) 방과후 활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속 확충
* ('21년) 349개소 ('22년) 360개소
○ 지역의 참여활동 수요 반영과 청소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운영모형의 다각화 및 프로그램 자율선택을 통한 운영기관의 주제 중심 운영 강화
* 주말형 운영 모형 운영 7개소 / 프로그램 선택운영(기본지원활동, 체험· 역량강화활동, 학습지원활동)
</td></tr>
</table>

174 Ⅵ-2-⑤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수학습평가과
과제목표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풍토 조성			
주요내용	○ 개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중심 평가 확대 ○ 학생 평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구성원 역량 강화 ○ 지식위주의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 존중 교육풍토 조성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학생평가 내실화	5,407	6,070	663	1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활성화 등 기반 마련('18.1)
– 수업-평가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중학교 자유학기 교사별평가 근거 마련 등('19.12.)
○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학생평가 관리 강화(시험지 보안시스템 및 관련자 징계 강화, 성적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평가 공정성 제고, 교사 평가 전문성 강화 및 관련 지침 정비)('18.12.)
○ 과정중심 학생평가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 구성·운영('19.3.~12.)
※ 연구학교 35개교(초17, 중18) 및 수업연구회 38개팀(초15, 중23) 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도구 개발·보급
※ 초등 5-6학년군 7종('18.), 중등 7종('19)
○ 과정중심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의 이해 제고를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18.~'19.)
* 과정중심평가 2종(초등 1종, 중등 10종) / 서·논술형 평가 2종(초·중등 각 1종)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도구 개발·보급
※ 초등 5-6학년군 7종('18.), 중등 7종('19)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20.1.)
– 중학교 표준편차 삭제, 고교 교과세특 기재 단계적 확대, 과제형 평가 금지
○ 「2017~2019학년도 성취평가 결과 자료 분석」(정책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 학생평가 운영 내실화 및 성취평가제 현장 정착을 위한 온라인 컨설팅 실시('20.10~11월, 36회)
○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체 초·중 교원 대상 실습·사례 중심 학생평가 연수 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및 평가 설계, 평가 실행, 피드백 및 기록 등 단계별 역량 강화 지원
※ 매년 초·중학교 전체교원의 20%를 대상으로 실습중심 연수 추진('18.~'22.)
○ 서·논술형 평가의 이해 제고를 위한 서논술형 평가 자료집 및 가이드북 개발·보급
※ 중등 5개 교과(국,수,사,과,영) 50건(165문항) 및 가이드북 10종 개발
○ 학생평가지원포털을 통한 학교급별 평가도구 지원 및 평가 결과 활용 제고(연중)
– 학생평가지원포털 기능 개선*을 통해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현장적합도 높은 자료 제공
*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검색 메뉴 보완, 성취기준 상세 설명 추가, 연수 및 연구공간 메뉴 추가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학생평가 담당자 정책협의 정례화(연중, 총11회 개최)
○ 과정중심평가 및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연중)
※ 초·중·고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앙지원단 52명, 지역지원단 569명)
○ 교원·학부모 등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 강화

	※ (홍보자료) 리플릿 2종(과정중심평가, 학생평가지원포털 홍보), PPT 3종(초·중·고 교사용 각 1종), 홍보동영상 4종(대국민 인식개선용 1종, 초중고 교원 각1종) *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검색 메뉴 보완, 성취기준 상세 설명 추가, 연수 및 연구공간 메뉴 추가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학생평가 담당자 정책협의 정례화(연중, 총9회 개최) ○ 교원·학부모 등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 강화 ※ (홍보자료) 리플릿 1종(고등학교 학부모용), PPT 3종(초·중·고 교사용 각 1종), 홍보동영상 3종(학부모 안내용 1부, 대국민 인식개선용 1종, 전광판 송출용 1종), ※ (현장소통)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6회),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9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생평가지원포털 기능 개선을 통한 현장교원의 만족도 제고(목표치 72, 만족도 72.7) ○ 과정중심평가 및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 초·중·고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앙지원단 52명, 지역지원단 569명) ○ 교원·학부모 등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 강화 ※ (홍보자료) 리플릿 2종(과정중심평가, 학생평가지원포털 홍보), PPT 3종(초·중·고 교사용 각 1종), 홍보동영상 4종(대국민 인식개선용 1종, 초중고 교원 각1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계속) ○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계속) ○ 현장적합성 높은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도구 발굴 및 확산 ○ 학생평가 정책을 반영한 학생평가 관련 안내 자료 개발 및 보급

175	Ⅵ-2-⑥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위기아동 지원을 위해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교사 지속 확충

주요내용

○ 학교단위 위(Wee)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내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속 확충
○ 위(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지정을 통한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우수운영 모델 구축·운영으로 학생상담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구현 및 사업 고도화
○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위(Wee)프로젝트 설치·운영 근거 및 행정·재정적 지원 명시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위(Wee)프로젝트 운영지원	1,200	1,172	△28	△2.3
■ 위(Wee)센터 자문의, 위(Wee)닥터	1,640	1,100	△540	△3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학교 단위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내 전문상담(순회)교사 지속 확충
– (교사 증원) 전문상담(순회)교사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 공립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현황: ('18) 2,231명 → ('19) 2,715명
– (연수) 상담실무 및 위기학생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연수 실시
※ 연수 내용: 공감 상담, 감정조절, 갈등해결 등
– (우수사례 발굴) 위(Wee) 희망대상 시상을 통해 위기학생 극복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보급('19.2.)
○ 위(Wee) 센터 정신과 자문의 운영 및 원격화상자문서비스 추진을 통한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
– (정신과 자문의 자문)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의 심리치료 및 학부모 자문, 원격화상자문시스템 구축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강화
– (원격화상자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면 자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화상으로 자문 서비스 제공
※ 위(Wee) 센터 중심의 사업에서 학교 단위 위(Wee) 클래스까지 사업 확장하여 고위기 학생에 대한 자문 실시
– 병원치료 병행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형 위(Wee) 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완료('19.1)
○ 법령 제·개정을 통해 위(Wee) 프로젝트 설치·운영 근거 및 행정·재정적 지원 명시
– 위(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 연구 완료('19.1.)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지속 확충 및 내실화
– (기관 및 교사 확충) 위기학생 상담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확대
※ 위(Wee) 클래스: ('19) 7,230교 → ('20) 7,631교 / 위(Wee) 센터: ('19) 218개소 → ('20) 233개소 / 공립 전문상담(순회)교사: ('19) 2,715명→ ('20) 3,336명
– (연수) 학생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연수 실시

	※ 고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온라인연수(총 24차시),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 온라인 연수(총 2개 연수, 48개 과정) 등 – (우수사례 발굴) 위(Wee) 희망대상 시상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 보급('20.2.) ○ 위(Wee) 센터 정신과 자문의 지정 운영 및 원격화상자문서비스 실시를 통한 고위기 학생 지원강화 – (정신과 자문의 자문) 학교폭력 피해 및 우울, 학교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자문 및 병원연계를 통한 치유 지원 – (원격화상자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면 자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화상으로 자문 서비스 제공 ※ 위(Wee) 센터 중심의 사업에서 학교 단위 위(Wee) 클래스까지 사업 확장하여 고위기 학생에 대한 자문 실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 운영 모델 구축 – 시 · 도교육청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확대('19. 49개 → '20. 139개) 및 지역 내 상담 · 교육기관 연계 강화 ※ 상담 및 치유 외 교육, 치료,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Wee) 프로젝트 기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 '20년 상담현황: 위(Wee) 클래스 230만건 / 위(Wee) 센터 54만건 ※ '20년 이용 전후 학교생활만족도: 위(Wee) 클래스 (이용 전) 5.13 → (이용 후) 8.33 / 위(Wee) 센터 (이용 전) 5.10 → (이용 후) 8.26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및 민간 협력 사업 확대 ○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지속 확충 ○ 위(Wee) 프로젝트 설치 ·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 · 개정 추진(~'21)

176 Ⅵ-2-⑦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또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여성가족부 협업) ○ 다양한 학생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117 학교폭력 신고체제 정비 및 피해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청소년의 인권보호			
주요내용	○ 건전한 관계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강화 ○ 학생 보호인력 확대 배치 및 안전 서비스 이용 확대 ○ 117 학교폭력 신고체제 정비로 24시간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 117 학교폭력 신고 접수 사안을 위(Wee)센터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청소년의 인권보호			

관련예산

(국고/특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1,700	1,700	-	-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100	100	-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학교안전강화사업)	100	100	-	-
■ 117상담사 역량강화 위크숍	50	50	-	-
■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 및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1,450	1,4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및 상담사 역량 강화

구 분	계	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 연계	전담경찰 연계	상담
2018	61,887(건)	609	1,555	199	9,147	50,377
	100%	1.0%	2.5%	0.3%	14.9%	81.2%
2019	61,302(건)	647	1,356	256	9,733	49,313
	100(%)	6.2	2.2	28.6	15.9	80.4

* 전문기관 :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 117 상담사 전원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 실시('18.8.28~8.31, '19.8.27~8.30)

○ 117상담사의 연속 근무

- 총 180명 3교대 24시간 근무 * 교육부 90명, 경찰청 56명, 여가부 34명

○ 희망학교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또래상담 컨설팅' 실시(360개교)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2회)

○ 학생 안전을 위한 초중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99.4%)

○ 또래상담 컨설팅단 구축운영(총 237명)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127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 110명

○ 또래상담 운영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총 761개교, 만족도 95.3점)

* 또래상담운영학교 : ('18) 8,205교 → ('19) 9,012교

○ 또래상담 컨설팅단 역량강화교육 실시(총 2회) 및 또래상담 성과보고회(1회)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CCTV 설치(99.7%) 및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비율 제고

※ 학교CCTV(고화소 비율) : ('19) 255,638대(92.7%)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의 상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18) 힐링캠프 4회(279명), 위로상담 426회(426명), 대학생 멘토링 2,422회(2,522명)/ 입소인원: 43명

※ ('19) 힐링캠프 5회(179명), 위로상담 770회(770명), 대학생 멘토링 3,972회(3,972명)/ 입소인원: 33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및 상담사 역량 강화

구 분	계	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 연계	전담경찰 연계	상담
2020	28,239(건)	500	941	106	5,824	20,868
	100(%)	1.8	3.3	0.4	20.6	73.9

* 전문기관 :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 117 상담사 전원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 실시('20.8.1~ 8.31.)

○ 117상담사의 연속 근무

– 총 180명 3교대 24시간 근무 * 교육부 90명, 경찰청 56명, 여가부 34명

○ 또래상담 지도교사(3,041명) 및 또래상담자 양성(301,359명)

○ 또래상담 운영학교(7,117교)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총 664교)

○ 또래상담 컨설팅단 역량강화교육 실시(총 2회) 및 또래상담 성과보고회(1회)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CCTV 설치(99.85%) 및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비율 제고

※ 학교CCTV(고화소 비율) : ('20) 264,027대(96.2%)

○ 국립학교 CCTV 설치·교체 및 관제정비 확충 지원(19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프로그램,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20) 힐링캠프 6회(104명), 위로상담 821회(1,617명), 대학생 멘토링 6,241회(8,001) / 입소인원: 36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117 신고·상담센터(상담사 180명) 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신속한 사안 대응, 사후 모니터링, 피해학생 지원기관 안내 등을 강화 ○ 또래상담 운영학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또래상담 운영 전문성 강화 ○ 국립부설학교 200만 이상 고화소 CCTV 확대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의 상처 치유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117상담사의 상담기법과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실시('21.8월)

○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여성가족부 협업)

○ 국립 부설학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및 지능형 CCTV 시범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177 | Ⅵ-2-⑧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학대대응과
과제목표	○ 아동학대 근절을 통한 아동행복 보장 – 내실 있고 선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 아동학대 인식 개선 노력 및 예방교육 강화 ○ 위기 아동 발굴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역량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범죄피해자보호기금·복권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29,679	41,601	11,923	40.2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168	4,210	3,042	360.4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22,578	28,736	6,158	27.3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복권기금)	5,933	8,655	2,723	45.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조사 공공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추진**
* '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290명 반영
– 경찰·아보전·지자체·법조인·의료인이 포함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종합적 사후보호 플랜** 마련('18.4월)

○ **(범부처 대응 강화) 교육부·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과 함께 범부처 대응 진행**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8.)' 발표**를 통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사후관리 등 **대응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 보완대책 마련
–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23.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핵심과제로 선정**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신고의무 교육 실시

○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마련)**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위기아동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개통**
– 지역별 아동분포·접근성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17년 60개소 → '18년 62개소 → '19년 68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7년 57개소 → '18년 65개소 → '19년 73개소
–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위기아동을 조기발견·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개통**('18.3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조사 공공화**) '20년부터 **공공화 선도지역(118개 시군구)**을 **시작**으로 **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전국 확산**('20년~'22년) 위한 **법률적 · 제도적 기반 마련** – (**인력반영**) 기본 실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 인력채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118개 시군구, 290명) – (**법률개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근거 마련, 즉각 분리제도 도입, 사례관리 의무화 등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20.4월, '20.12월) ○ (**범부처 대응 강화**) 관계부처 합동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29.)」 발표 ※ 복지부 주도의 범정부TF(교육부 · 법무부 · 여가부 · 경찰청 등 참여) 구성 ○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마련**)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호보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위기아동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조사** 진행 – '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10개소) · 쉼터(+15개소) 확충예산 확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19년 68개소 → '20년 71개소 → '21년 81개소(예정) (학대피해아동쉼터) '19년 73개소 → '20년 76개소 → '21년 91개소(예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20.1~9월, **1차수 · 3차수 점검** 추진(2차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을 통해 **위기 아동 선제적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분기별 1회) – **총 25,396명 아동가정**을 **방문**하여 △367명 **서비스연계** △25**명 아동학대 신고**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유치원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 중인 국내 만3세 아동 약 34,819명 방문점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20.10~'21.1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아동학대 대응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부의 면밀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 아동학대 중대사건 발생으로 인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외부 지적 발생** – 마련된 대책의 충실한 이행 및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 필요

향후추진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 (**초기대응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제공하도록 대응 인력 충원 및 교육, 협업 강화 – (교육) 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교육 2배 확대(80→160시간)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전문가 상시 컨설팅 제공, 역량 강화 지원 – (충원) 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20년 290명→ '21년 664명(+374명))하여 촘촘한 보호망 구축 – (협업강화) 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응인력 간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협업 방안 구체화(지침개정, '21.3) ○ (**보호 · 치료 내실화**) 즉각 분리제도* 도입 대비 보호시설 확충, 아동 심리치료 지원 강화 * 연 2회 이상 신고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 즉시 분리(3.30 시행) – 학대피해아동쉼터('20년 76→ '21년 105개소) 확충 – 중앙–시 · 도–시 · 군 · 구의 상황 대응 체계 구축하여 시설별 보호 현황을 주기적 점검, 보호 수요 초과 발생 시 신속한 조정 지원 – 거점 아보전에 심리치료센터 신설(17개 시도) 등 아동 일상 회복 지원

178	Ⅵ-2-⑨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과제목표	○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 증진			
주요내용	○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부모 대상 양질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스포츠 인권 교육 확대 ○ 스포츠윤리센터 및 운영·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 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 및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및 관련정보 제공 ○ 선수(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스포츠인권향상지원)	418	972	554	132.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 국가대표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제 진행('18년 1,211명, '19년 1,662명 교육)
– 전체 등록선수 대상, 온라인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제 시행('18년 155,602명, '19년 147,140명 교육)
–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18년 44,463명, '19년 41,411명)

○ **(스포츠 인권센터 운영·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 및 상담,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18년 30여개 단체, '19년 1,821명 교육)
* 심리검사를 통해 명쾌하게 나를 알아간다'는 의미의 (성)폭력 사전예방 프로그램

○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주관 '18년 실태조사 실시('18.6~12월)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18년 1,302명, '19년 1,181명 인권교육 진행
– 기본교육 : 스포츠인권(1시간, 5회), 학교 체육 변화와 발전(인권교육 포함)(2시간, 5회) 등
– 보수교육 : 학교 체육 변화와 발전(인권교육 포함)(2시간, 8회) 등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스포츠윤리센터 개소 및 운영)**
– 선수 성희롱·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개소·운영

○ **(스포츠인권 시범교육 실시)**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후('20.9월) 총5회 시범교육 실시 140명 수료

○ **(스포츠 비리·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 실태조사 관련 대표 3개 기관 자료 리스트 업(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자문위원회 구성 및 3차례 회의 개최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1,082명 인권교육 진행
– 기본교육 : 학교운동부의 이해(7시간), 지도자 자질 역량교육(인권교육 포함)(23시간)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스포츠인권 시범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스포츠윤리센터가 추진해야 할 실태조사의 주제 및 대상 등의 방향 설정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성 함양,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주기적인 재교육 과정의 안정적 정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1년도 교육 사업 계획 및 용역 과제 추진 ○ '21년도 실태조사 사업 계획 및 용역 과제 추진 (2건) ○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온라인 직무교육 지속 추진

179	Ⅵ-2-⑩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 대중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한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보호 강화

주요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장(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 조치 강화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18.12 제정 예정) 內 인권에 대한 세부 조항(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을 규정 및 명문화하여 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법정교육 시 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운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성윤리의식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K-Pop의 위상 제고와 본인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의식 고양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시간 허용 기준 마련(연령별 용역 제공시간 및 허용조건 등)
- '18년 12월 제정 예정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 반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운영)	1,493	1,334	△159	△10.6

* 내역사업 내 인건비를 타 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예산 감액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이행 완료〉**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2019. 09. 29. 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2019. 03. 04. 제정)

※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을 명문화하여 인권보장 강화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정기교육 실시

* 2018년 총 17회(1,903개 업체 참여) 교육 실시/ 2019년 총 16회(1,876개 업체 참여) 교육 실시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소양교육 : '18년 155회(총 1,272명), '19년 151회(총 1,361명),
- 심리상담 : '18년 146회(73명 참여), '19년 329회(총 111명) 실시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시간 허용 기준 마련)**
- **〈이행 완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2조, 제23조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2019.03.04.) 제8조에 의하여 용역 제공시간 제한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주당 제공시간 제한	일일 제공시간 제한/예외사유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20년 이행실적 (1.1.~12.31.)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교육 실시
  * 2020년 총 8회(온라인 병행 / 1,950개 업체 참여) 교육 실시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소양교육 : '20년 143회(총 1,429명)
- 심리상담 : '20년 699회(146명 참여)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을 통해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제고 - 만족도조사 결과 소양교육 4.65점, 심리상담 4.59점(5점 만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집합교육의 어려움 -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 병행 추진

향후추진계획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교육 시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 포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21년 소양교육 140회, 심리상담 840회 예정

180	Ⅵ-2-⑪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목표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과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로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			
주요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교육기관 권역별 지정·운영 – 성매매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회적응력 훈련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관계기관에 신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사업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운영)	1,036	–	△1,036	△100.0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1,099	1,099	100.0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953	2,013	60	3.0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180	185	5	2.8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68	–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276	276	–	–
(청소년사이버성매매예방활동)	261	261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15	1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15개) 운영 실적
– (지원실적) 의료 3,777건, 법률 984건, 기술교육·직업훈련 5,783회, 진학교육 1,177개월, 치료회복프로그램 4,471회
– (지원성과) 취업 66명, 진학 109명
○ 대안교육위탁기관(2개소) 운영
– (지원실적) 대안교육프로그램 91개, 심리치료프로그램 497회, 자활교육프로그램 673 회
– (지원성과) 진학 31명, 취업 9명, 자격증취득 3명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교육 지원) 319명, (사례관리 지원) 1,688명
○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 실적 ('19년 상담 4,248명, 지원연계 5,699명, 방심위 신고 971건 등)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 ('19년 6건, 420만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15개) 운영 실적 (20.6월기준) – (지원실적) 의료 1,864, 법률 825건, 기술교육·직업훈련 1,375회, 진학교육 571개월, 치료회복프로그램 2,030회 – (지원성과) 취업 29명, 진학 62명 ○ 대안교육위탁기관(2개소) 운영 (20.6월기준) – (지원실적) 대안교육프로그램 56 개, 심리치료프로그램 172회, 자활교육프로그램 184 회 – (지원성과) 진학 24명, 자격증취득 1명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교육지원) 155명, 심리진단, 성주체성향상, 성착취 예방교육 등 – (상담·사례관리 지원) 1,962명, 진학·학업 지원, 법률·의료지원, 청소년시설 연계 등 ○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 실적 (상담 3,611명, 지원연계 4,751명, 방심위 신고 954건 등)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활동 미 실시로 상담인원 감소(4,284명('19)→3,611명('20))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 (10건, 620만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으로 상담, 의료·법률·진학교육 지원,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감소와 성주체성, 자존감 등 함양 도모 – 재발방지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사회복귀율('11년 이후) 평균 93.3%로 성매매로의 재유입 예방 효과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5.19, 시행 '20.11.20)으로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랜덤채팅앱 등 다양화되는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 지속적으로 발생

향후추진계획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긴급 구조, 상담·치료회복, 사례관리, 자립·자활, 전문멘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구축·운영(중앙, 지역 17개소)

181	Ⅵ-2-⑫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주요내용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청소년상담전화 1388, 온라인상담, 문자상담 등의 상담채널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63,229	63,687	458	0.7
■ 청소년 안전망 운영	27,419	27,785	366	1.3
■ 청소년 상담채널 운영	2,353	2,330	△23	△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이행실적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1개소) 운영 지원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시범사업 실시(5개소)

○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 문자, 온라인) 상시 운영(1,780,231건)
○ 1388 청소년상담채널 통합홍보 실시(연중)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6개소) 운영 지원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실시(9개소)

○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 문자, 온라인) 상시 운영(936,037건)
○ 1388 청소년상담채널 통합홍보 실시(연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년 신규 청소년안전망 5개소 확대 구축 -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 : ('20년) 236개소 ○ 연 1회 지자체를 통해 센터 현장점검 실시(대상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실시 - '17년 이전 개소한 222개 센터에 대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센터 운영성과, 운영사례 등을 평가하여 위기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환류 강화 ○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청소년상담채널1388 운영 - 청소년상담 1388 실적 : ('20년) 94만건 ○ 청소년 안전망 운영 강화 및 찾아가는 사례관리 확대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서비스 실적 : ('20년) 271만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역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 다양한 상담채널(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상시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지원 강화
-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청소년동반자 확충을 통해 고위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심층 상담 지원 강화
- 자살 및 우울 경험, 가출, 학업 중단 등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특화된 상담 서비스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 실시
- '20년 종합평가 결과 미흡/부진센터(12개소) 및 '20~'21년 신규개소 센터(4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예정

182 Ⅵ-2-⑬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 · 권리교육 실시를 통한 가출청소년 인권 보호			
주요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 · 권리교육 실시 * 대상시설 현황 : 청소년쉼터 133개소('20년 기준)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22,963	22,447	△516	△2.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거리상담 기능강화
- 청소년쉼터 4개소 확대 : ('18) 130개소 → ('19) 134개소
-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 확대 : ('18) 4개소 → ('19) 6개소
- 거리상담 전문요원 확충 : ('18) 60명 → ('19) 90명

○ 쉼터퇴소청소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에 포함('19.7월)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우수사례집 제작 · 배포
○ '19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117개소, 3년주기 법정평가)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
- (교육실적) ('18년) 73개 쉼터, 청소년 3,562명 대상 ('19년) 80개 쉼터, 청소년 3,829명 대상
- (교육내용) 학교폭력, 근로권익(최저임금 · 청소년근로권 등), 국제인권(세계인권선언문 · 유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인권, 양성평등,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위기청소년 보호 ·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 ('19) 6개소 → ('20) 9개소
- 찾아가는 거리상담전문요원 확대 : ('19) 90명 → ('20) 108명
- 노후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 문화 · 체험공간 조성 지원(95개소, 신규)

○ 쉼터퇴소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68명 추천, 48명 계약)
○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시설 현장컨설팅(51개소),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19회/968명)

○ 청소년밀집지역 중심의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여름방학, 수능일 계기)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
- (교육실적) 118개 쉼터, 청소년 4,976명 대상
- (교육내용) 학교폭력, 근로권익(최저임금 · 청소년근로권 등), 국제인권(세계인권선언문 · 유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인권, 양성평등,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출청소년 보호·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통해 가출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계속)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183	Ⅵ-2-⑭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범죄예방기획과 (소년범죄예방팀)
과제목표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 및 비행예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주요내용	○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 특별교육, 법교육, 법체험 등 운영 활성화 ○ 비행예방교육 역량 강화 – 유형별 비행예방 전문프로그램 개발, 직원 전문성 및 교수역량 강화, 교육시설 조성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청소년비행예방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비행예방	6,060	5,611	▽449	▽7.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보호자 등 비행예방교육 : 2018년(313,430명), 2019년(335,772명)
○ **폭력가해 청소년, 보호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2018,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2018,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손진희)
* 법무부·교육부·여가부 소속 청소년기관 직원 대상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연수 운영(총4회, 152명)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발표회 실시**(총 2회)
* 주제 : 2018년(역할극, 진로체험, 모의법정, 가족교실), 2019년(폭력예방, 보호자교육)
○ **노후시설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사 신축(공사 기간 : '18. 1.~19.12.)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 지속 운영**
–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보호자 등 비행예방교육 : 121,730명
○ **비행예방교육 기반 조성으로 지역 간 비행예방교육 편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
– 천안·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20.9. 업무 개시)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청소년 절도예방 통합프로그램(2020, 건양대학교 교수 송원영), 법교육 프로그램(한국법교육센터)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설치로 적기의 비행예방교육 실시 등이 곤란했던 **충남(천안) 및 경기북부(의정부) 지역에 2개 기관 신설 완료, 비행예방교육의 균형 운영 및 적기의 교육적 개입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검찰·법원 등 **유관기관 교육의뢰 감소 등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부진** * 찾아가는 법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비행예방교육 적극 운영 추진 예정

향후추진계획

○ **체험형 및 인문학적 비행예방교육 운영**
– **역할극·예술활동·사회기술훈련 등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위기·비행청소년의 민주적·상호협력적 관계형성 능력 제고 및 비행예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설치 광역시도 지역에 기관 신설 추진**
* 기관 신설추진 지역 : 경북(안동), 강원(강릉), 전남(목포)

184	Ⅵ-2-⑮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1388), 1:1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1388)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험단계별 예방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가족치유캠프, 인터넷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등 집중 치유프로그램 운영 – 공존질환 보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청소년 대상 병원치료비 지원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2,029	1,961	△68	△3.4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3,540	3,560	20	0.6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2,601	2,613	12	0.5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939	947	8	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매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3~4월)를 통한 과의존 청소년 발굴
※ ('18) 인터넷 위험군 14만여 명, 스마트폰 위험군 13만여 명, ('19) 인터넷 위험군 15만여 명, 스마트폰 위험군 12만여 명 발굴
○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5~10월)
○ 과의존 청소년 부모 대상 올바른 이용습관 지도교육 및 전담상담사 전국 배치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매년 22회 운영)
○ 저연령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14회, 112명)
○ 사회적 돌봄 대상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다문화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1회, 21가족)
– 다문화 보호자 대상 쉬운말 부모교육 시범운영(12회, 298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매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6~7월)를 통한 과의존 청소년 발굴
※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22만 8,120명(위험군 2만 8,671명, 주의군 28만 3,363명)
○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7~12월)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7회 104명, (가족치유캠프) 8회 100가족
○ 부모교육(4,159명) 및 과의존 전문상담 양성교육(1,488명) 실시
○ 과의존 전담상담사 전국 배치(54명)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14회 312명)
○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개입 매뉴얼 및 다문화가정 쉬운말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진단 · 발굴)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 중1 · 고1) 대상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를 통한 과의존 청소년 발굴 ○ (사후지원) 과의존 위험수준별 청소년상담,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위험사용자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개인상담 지원 - 주의사용자군 : 학교별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지원 - 공존질환보유군 : 종합심리검사 지원,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 지원 ※ 치료지원 : 일반계층 최대 30만원, 저소득 계층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치유캠프) 기숙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치유캠프 : 중고생 대상 7박 8일의 기숙형 치유캠프 - 가족치유캠프 : 초등생 및 부모 대상 2박 3일의 가족캠프 ○ (인력양성) 상담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확대* * ('19년) 시 · 도 31명 → ('20년) 시 · 도 및 시 · 군 · 구 54명 ○ (시설운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 · 운영('14.8월~) ※ ('20) 1~4주 과정 22회 운영, 576명 수료 ○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대응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과의존 저연령화 및 다양한 매체등장에 대응 필요 ○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저연령 청소년 과의존 대응 및 온라인 도박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제공 ○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및 다문화 가족 치유캠프 운영, 치유캠프 ICT 진로교육 실시 ○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상담 시스템 마련

185	Ⅵ-2-⑯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예방문화 조성

○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 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비폭력 학교문화 정착

주요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사이버어울림) 운영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지원

○ 학교,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관련예산

(특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6,000	2,900	△3,100	△52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원	1,700	1,700	-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체계 구축	3,300	-	△3,300	△100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1,000	1,200	200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8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선정('18.2월)

※ ('15) 536개교 → ('16) 1,011개교 → ('17) 1,505개교 → ('18) 3,785개교

○ 어울림프로그램 개정 및 적용(총 45종)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개발(총 28종)

○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콘텐츠 개발 운영(총 8종) ※ 기본 2종, 교과 5종, 학부모 1종

○ 2019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선정

※ ('15) 536개교 → ('16) 1,011개교 → ('17) 1,505개교 → ('18) 3,785개교 → ('19) 4,506개교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컨설팅단 340명)

※ 2019년 상반기 실적 : 3,153교 3,282회 실시, 하반기 실적 : 2,045교 2,050회 실시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43편)

○ 교원의 학교폭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 제공

※ 관리자 연수(5,665명) / 교원(7,763명) / 핵심강사(100명)

○ 어울림프로그램 개정 및 적용(총 35종) ※ 어울림 기본: 30종, 자유학기 연계 5종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개발(총 14종) ※ 초등 8종, 중등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6종

○ 사이버 어울림 원격콘텐츠 개발(4종) 운영

○ 학교폭력예방 관련 동아리 운영 지원(총 252개) 및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뮤지컬 공연(총 18회)

※ 뮤지컬(132개) · 영상 콘텐츠(60개) · 푸른가족 캠페인(60개)

○ 학교폭력 예방활동(뮤지컬 동아리) 연습 공간 조성(8개, KB국민은행, 열린의사회 후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1,188교)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컨설팅단 511명) ※ 총 4,549회(상반기 실적 : 2,713회 실시, 하반기 실적 : 1,836회 실시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54편) ○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주간 운영('19. 6월 3주) ○ 언어문화개선 교육 집중 주간 운영('19. 9월 4주~10월 2주) ○ 교원의 학교폭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 제공 ※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417명) / 나눔학교 교원(697명) / 핵심강사(128명) ○ 교과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추가 개발(총 12종) ※ 어울림 6종 / 사이버어울림 6종 ○ 교원용 학교폭력 예방 원격교육 콘텐츠(어울림, 사이버어울림) 추가 개발(12종)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총 120교) 및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뮤지컬 공연(총 14회) ※ 뮤지컬(60개) · 영상 콘텐츠(40개) · 푸른가족 캠페인(40개) ○ 학교폭력 예방활동(뮤지컬 동아리) 연습 공간 조성(8개, KB국민은행, 열린의사회 후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운영 기반 마련 ○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 운영을 통해 학생의 사회 · 정서적 역량 역량(공감, 배려,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 등)과 학교폭력 대응 역량 향상 ○ 학생 참여중심의 활동 ·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함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사이버어울림) 운영 지속 지원 ○ 단위학교 대상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186	Ⅵ-2-⑰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주요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치료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	1182	1215	33	2.8
■ 학생건강관리 내실화	2,050	2,050	–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	250	250	–	–
(학생위기문자상담망 운영)	1,800	1,8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9년 주요 이행실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운영
– 20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19.4월~6월, 초1·초4·중1·고1 1,783,826명 조사 참여)
– 2019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87,302명 중 61,789명(75.4%) 학교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실시
* (전문기관 연계·치료율) 관심군: ('18) 76.3% → ('19) 75.4% / 자살위험군: ('18) 82.2% → ('19) 80.4%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2019년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3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연중)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 학생자살예방 교육주간 운영 및 공모전·캠페인 운영(9월~11월)
– 학생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자해 등에 대한 대처 지원(연중)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운영
– 2020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20.4월~9월, 초1·초4·중1·고1 1,801,993명 조사 참여)
– 2020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84,379명 중 56,954명 학교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실시
* (전문기관 연계·치료율) 관심군: ('19) 75.4%→('20) 71.6% / 자살위험군: ('19) 80.4%→('20)78.1%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2020년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연중)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 학생자살예방 교육주간 운영 및 공모전·캠페인 운영(9월~12월)
– 학생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자해 등에 대한 대처 지원(연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운영 – 2020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84,379명 중 56,954명 학교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실시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교육부 지정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교직원 및 관리자 연수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20년 총67,510건) ○ 학생 자살·자해예방에 대한 현장 대응력강화 지원 – 학생자살예방 우수교육자료 공모전·캠페인('20. 9월~12월) – 학생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자해 등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대처를 돕기 위한 교사용 뉴스레터 발행(10회) – 자살·자해 조장 음원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요청*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고시(신규지정 10개곡)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로 정신건강지원 필요한 학생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뉴스레터 발행

187-1	Ⅵ-2-⑱	아동유기, 불법입양대책 강화(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계청	과·팀명	인구동향과
	과제목표	○ 아동 출생 · 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주요내용	○ 출생 통계, 사망 통계의 정확한 구축 및 서비스			
	관련예산	○ 해당사항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월 · 분기별 인구동향(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통계 작성 및 서비스 ○ 연간(2017년, 2018년 기준)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 이혼) 통계 작성 및 서비스 – 2월 : 출생 · 사망 잠정결과 – 3월 : 혼인 · 이혼 통계 – 5월 : 영아 · 모성 사망 보완조사 실시 – 8월 : 출생통계 확정결과 – 9월 : 사망원인통계 확정 결과 – 11월 : 다문화 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통계 – 12월 : 생명표 통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월 · 분기별 인구동향(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통계 작성 및 서비스 ○ 연간(2019년 기준)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 이혼) 통계 작성 및 서비스 – 2월 : 출생 · 사망 잠정결과 – 3월 : 혼인 · 이혼 통계 – 5월 : 영아 · 모성 사망 보완조사 실시 – 8월 : 출생통계 확정결과 – 9월 : 사망원인통계 확정 결과 – 11월 : 다문화 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통계 – 12월 : 생명표 통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확한 인구동향(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통계 작성 및 서비스 – 영아 및 모성 사망 발생 병원 대상 사망원인 보완조사 추진으로 사망통계 정확성 제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5개 기관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통계 정확성 제고 – 화장장 행정자료 활용으로 누락된 출생 신고 자료 보완 등 출생통계 정확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출생신고 체계 변경 등을 위해서는 기관간 사전 협의 추진 필요

향후추진계획
○ 가족관계 등록과 함께 계속하여 정확한 인구동향(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통계 작성 및 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187-2	Ⅵ-2-⑱	아동유기, 불법입양대책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호			
	주요내용	○ 출생신고제도 관련법(가칭「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련예산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아동 관련 민간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가 참여한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18. 11.) ○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8명) 구성('18. 12.) – 출생등록제 도입의 목적, 규율대상, 도입방식 등 논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 초안 마련('19. 8.)
'20년 이행실적 (1.1.~12.31.)	○ 법원행정처 업무 협의 및 의견조회('20. 2.) –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출생등록번호 부여 자체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아동에 대한 체류, 국적, 복지를 담당할 기관에서 하여야 하므로 출생등록번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출생등록번호 부여 등 일부 사무에 대한 소관부처 재검토 필요 ○ 연구용역을 통한 태국·베트남 해외사례 수집('20. 6.~8.) – 선진국 사례수집을 위한 국외출장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어 대안으로 검사 국외출장 과제로 제안하였으며, 별도 연구용역 발주 검토 중 ○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일반세션1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참석하여 전향적 검토 중임을 발표('20.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출생등록 번호 부여 소관부처 관련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의 중 ○ 정책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해외사례 수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출생등록번호 부여 등 제정안 초안 보완 후 관계부처 및 부내 협의 필요

향후추진계획	○ 출생등록제 관련 해외 사례 수집 ○ 관계부처(법원행정처 등) 및 부내 협의를 통해 법안 확정 후 법안 발의 진행

188	Ⅵ-2-⑲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 학대, 유기, 입양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초기개입 및 상담, 보호조치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134,245	145,938	11,693	8.7
(아동보호전담요원)	3,977	10,881	6,904	173.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23.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

– 아동 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중심의 4개분야 16개 과제(40개 소과제) 발표

– 특히,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아동에 대해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下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

○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16)**

– 8개 사업 중 4개 사업(입양, 드림스타트, 아동자립, 실종아동)을 우선 통합하여 서비스를 아동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아동보호전담요원 '20년 신규예산 반영('19.12)**

– 시군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하여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 운영

'20년 이행실적 (1.1.~12.31.)

○ **아동보호를 공적으로 수행할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보호 결정부터 보호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에 따른 **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정** 및 **교육 방안 마련** 완료('20.8)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조사, 보호계획,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지자체 전산시스템 기능 오픈**('20.10)

○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위한 현장 소통 및 홍보 등 실시**

–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신고 또는 의뢰 창구**에 대한 **전국민 안내('20.10)**

– '20년 전담요원 배치 지역 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포상** 실시('20.12)

	○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적시에 아동의 보호조치를 심의하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선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완료('20.10)** –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해 **지자체 내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12.2 본회의 의결) ○ **아동보호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20.12)** – '20년 제4차 추경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요원 배치**하도록 **53명 인력 추가 확보** – '21년 예산으로 **아동의 건강검진 · 심리검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사례관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시군구당 15백만원) **신규 확보**

결과분석	추진성과	○ 1950년대 민간 위주의 아동복지정책 이후 **'20. 10월 최초로 모든 아동이 공적 책임 하에 보호할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방이양인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 및 인력 확보, 민간 위주로 고착되어온 아동보호절차 개선 및 각 주체별 역할 정립** 등 인프라 · 인식 · 행동의 복합적인 개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확대**('21년, +190명)를 통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지자체 컨설팅**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안착 및 내실화

189	Ⅵ-3-①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의 활성화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 시설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시설장애인의 학대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조사 실시
– '17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1차 인권실태조사를 마치고, '18년~20년까지 2차 인권실태조사 추진 예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단체지원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지원)	100	100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00	1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시설장과 사무국장 대상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 이수(필수)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지침 개정으로 감시체계 강화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완료
–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에 의해 사립특수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실시(33개소, 240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및 적극적 예방활동 강화로 상·하반기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8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자립생활 욕구 및 인권실태 파악(628개소, 24,980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종사자 인권교육 온라인 교육 인정 등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실시로 자립생활 욕구 및 인권실태 파악으로 이용자 인권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상·하반기 지자체 점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이행여부,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 점검

190 Ⅵ-3-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모성권 · 건강권 보호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장애인지원	2,731	2,744	△13	0.5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772	1,785	13	0.7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959	959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 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 ('18년) 신청자 1,219명 전원 지급
- ('19년) 신청자 1,235명 전원 지급
- 행복e음 장애인복지 누락서비스 조회 기능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 가능('19.11월)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확대('19.11월)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역량강화교육, 상담 ·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 ('18년) 전국 42개소 107,000명 지원
- ('19년) 전국 42개소 107,000명 지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 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 ('20년) 신청자 1,104명 전원 지급(잠정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홍보물 지자체 배포('20. 1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등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역량강화교육, 상담 ·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 ('20년) 전국 42개소 76,000명 지원(잠정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권 보호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노력

191 Ⅵ-3-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주요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정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 보조기구 · 발달재활서비스 · 보육(보육료,양육수당) · 가족(가족상담 · 교육)돌봄 및 일시적 휴식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 취약가정에 대한 복지지원 우선적 제공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 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 지역) 설치 운영 확대 – 발달장애인 부모 · 가족 지원사업 추진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 지원사업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아동가족지원	110,668	117,326	6,658	6.0
(발달재활서비스)	88,999	94,968	5,969	6.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873	21,562	689	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 중앙 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곳,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 운영 중 (중앙: '15년~, 지역: '17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신규 실시**('19.6)
– 발달장애인 부모 ·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 및 부모상담지원사업 실시 중 ('15년~)
* 가족휴식지원 ('18) 9,030명, 1,210백만원 → ('19) 11,030명, 1,478백만원 → ('20) 상동
* 부모상담지원 ('18) 467명, 601백만원 →('19) 567명, 730백만원 → ('20) 상동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20년 이용 대상자 확대, 이를 위한 예산 확보
* ('19) 57,094명, 82,970백만원 → ('20) 61,094명, 88,999백만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0년 이용 대상자 확대, 이를 위한 예산 확보
* ('19) 4,005명, 17,186백만원 → ('20) 4,285명, 20,873백만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 중앙 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곳,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 운영 중 (중앙: '15년~, 지역: '17년~)
– 발달장애인 부모 ·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 및 부모상담지원사업 실시 중 ('15년~)
* 가족휴식지원 ('20) 11,030명, 1,478백만원 → ('21) 상동
* 부모상담지원 ('20) 567명, 730백만원 → ('21) 상동

○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및 양육지원사업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20) 61,094명, 88,999백만원 → ('21) 65,094명, 94,968백만원(지원대상 4,000명 증)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1년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20) 20,873백만원 → ('21) 21,562백만원(돌보미 수당 시간당 10,000원→10,130원으로 인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 경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및 부모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 지속 확대 추진 ('22년)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양육지원 지속 확대 추진 ('22년)

192	Ⅵ-3-④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특성 · 서비스요구 · 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대상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활동지원	1,106,083	1,305,672	201,302	15.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년 이행실적 (1.1.~12.31.)

〈활동지원 제도 내실화〉

○ 활동지원사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추진, 등급제 개편 이후 이용자 증감 등을 고려한 추가 예산 확보, 부정수급 예방활동 강화 및 평가지표 개선

–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서비스 단가 인상 반영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 지원을 통해 활동지원사 급여 수준 개선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30원) 〈 2021년 단가 인상률 3.9%(+520원)

○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여 유형*에 대한 점검

* 추가급여 관련 시설을 같이 운영하며, 시설이용자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만 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를 하는지 여부 등

○ 장애등급제 개편 등 제도환경 변화가 반영된 평가지표 개선방안 마련 및 고시 개정 완료(4.1.)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평가 실시

〈코로나19 대응 장애인 긴급활동 지원〉

○ 자가격리된 수급자에게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비수급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복지관 휴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지원, 온라인개학 · 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 등 돌봄공백 없도록 조치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 65세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예산('21년 71억 원) 확보

〈활동지원사 비대면 교육〉

○ 코로나19의 유행에 대응하여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 준수사항 배포, 활동지원사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여 활동지원사 양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활동 지원 등 적극행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 장애인의 권익 지원 및 보호에 기여 ○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 전환자 대상으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급격한 급여량 감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193	Ⅵ-3-⑤	장애인 교육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전문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교원의 특수(통합)교육 관련 역량강화			
	주요내용	○ 특수교육교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과정 개발 운영 ○ 일반학교 교직원(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특수교육교원 대상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특수교육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집합연수) 유·초·중등 특수교육 수업선도 교사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등
  ※ ('18) 12개 과정, 547명 이수 → ('19) 15개 과정, 985명 이수
  (원격연수)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특수교육대상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등
  ※ ('18) 11개 과정, 4,972명 이수 → ('19) 16개 과정, 6,604명 이수
-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집합연수) 시·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 강화 등
  ※ ('18) 7개 과정, 403명 이수 → ('19) 10개 과정, 782명 이수
  (원격연수) 수화언어 기초과정, 시각장애학생 보행훈련 4개 과정, 3,704명 이수
  ※ ('18) 4개 과정, 3,704명 이수 → ('19) 7개 과정, 3,504명 이수

○ 일반학교 교직원(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장애인식 개선교육, 통합학급 장학 및 지원 연수 등) 관련 연수
  ※ ('18) 45,102명 이수 → ('19) 45,422명 이수
- 통합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장애인식 개선교육, 통합학급 장학 및 지원 연수 등) 관련 집합 연수
  ※ ('18) 9,388명 이수 → ('19) 9,705명 이수

'20년 이행 실적 (1.1.~12.31.)

○ 특수교육교원 대상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집합 및 온라인*연수)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실행 역량 강화, 정보화교육 및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등 15개 과정, 2,982명 이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연수를 온라인연수로 대체 추진
  (원격연수)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교과 교수학습지도 및 수업 전문성 향상 등 27개 과정, 6,519명 이수
-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집합 및 온라인*연수)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및 장애학생 인권교육 등 13개 과정, 2,519명 이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연수를 온라인연수로 대체 추진
  (원격연수) 한국수어 기초과정, 시각장애학생 보행훈련, 긍정적 행동지원 등 11개 과정, 5,606명 이수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일반학교 교직원(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장애인식 개선교육, 통합학급 장학 및 지원 연수 등) 관련 연수 이수 결과: 총 52,746명 연수 이수 – 통합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장애인식 개선교육, 통합학급 장학 및 지원 연수 등) 관련 집합 연수 이수 결과: 총 10,052명 연수 이수

결과분석		
	추진성과	○ 특수교육교원 대상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도 역량 제고 – 학교급별, 장애영역별 연수 요구가 다양한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개설·운영을 통하여 장애학생 지도역량 향상 기여 ○ 유치원 및 일반학교 관리자(원장, 교장)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통합교육 성과 제고 ※ 관리자 연수 과정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과목 포함 권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특수교육교원 대상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 직무연수 연중 실시('21.1~) ○ 일반학교 교직원(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매년 지속 추진

194-1	Ⅵ-3-⑥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보장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전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약 2,000개소)의 편의시설 설치·유지 모니터링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정상 설치·유지되도록 조치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확대 방안 강구 – 생활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화 – 국제교류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국내적용 방안 모색 및 UD환경 구축을 위한 산·학·민·관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로 민간시설 BF 인증유도, BF 인증 사후관리 강화, 인증 운영기관 지정·운영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2018년도 인증실적 1,654건(예비인증 1,041건, 본인증 613건) ○ 2019 편의시설 표본 실태조사 모니터링 – 대 상 : 전국 주민자치센터 및 파출소 4,368개소 – 방 법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현장방문 조사 – 기 간 : 2019.11.11. ~ 2019.12.11.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확대 방안 강구 – 전국 2,058개소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 2019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2019년도 인증실적 1,755건(예비인증 1,015건, 본인증 740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확대 방안 강구 – 당사자 중심의 UD환경 관련 연구(2건) – 유니버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4개부문 96건 – 유니버셜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2020년도 인증실적 2,285건(예비인증 1,302건, 본인증 956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등 법령 개정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194-2 | Ⅵ-3-⑥ |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형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력인을 지원,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진술권을 보장
○ 형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 형사사법절차상 참여권을 보장

주요내용

○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을 지원, 의사소통을 보조·중개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
○ 장애인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029	1,106	77	7.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474	6,869	395	6.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18. 2명, '19년 3명 증원'), 비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자격 부여('18. 13명, '19년 15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가 포함)
– 장애인 피해자 지원 실적('18년 888건, '19년 1,064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19. 4명 증원), 전국 권역별 전문화교육 실시(6회, 368명)
– '19년 장애인 피해자 지원 실적 : 1,094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20. 1명 증원), 비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자격 부여('20. 14명 양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가 포함)

* 진술조력인 제도

구 분	해 당 임 무	겸직 여부	인원(명) ('20.누계)
상 근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중개·보조	불가	14
비 상 근		가능	122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20. 11., 2회)
– 진술조력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회의 실시(매월)
– '20년 장애인 피해자 지원 실적 : 1,133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20. 2명 증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구 분	해 당 임 무	겸직 여부	인원(명) ('20.누계)
전 담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의 법률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 보호	불가	23
비 전 담		가능	59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특례규정 신설) 공감의견 적극 개진 등 입법 지원
– '20년 장애인 피해자 지원 실적 : 995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향상 및 권익 증진 –「장애인복지법」 개정('20. 12. 29.)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장애인 등에게도 진술조력인을 지원할 필요 있음

향후추진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관기관 홍보 및 원활한 지원방안 모색 –「장애인복지법」 개정 · 시행으로 '21. 6. 30.부터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대상 포함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 피해자지원 유관기관에 대하여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 배포하여 적극 홍보 –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강의 신설, 교육을 통하여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제고 ○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 제 · 개정안의 입법 지원

195	Ⅵ-3-⑦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주요내용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390	689	299	76.7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교육)	601	651	50	7.6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90	9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의 우수강의안 동영상 제작(~'18. 8.)·보급
– 2017년 유아대상 우수 강의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작, 우수작 2편 동영상 제작('18)
–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공무원 등 성인교육용) 실시('18.10월)
– 성인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교육용 동영상 제작('18)
– 유아 대상 애니메이션 및 활용가이드, 관광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매뉴얼 제작('19)
○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시범사업 운영('19)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서비스 개발 연구용역 실시('19.9.)
– 연구내용

①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서비스 욕구 분석
② 기존 특성화 서비스 조사 및 신규 서비스 발굴
③ 신규서비스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제시
④ 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와 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⑤ 탈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정착을 위한 서비스체계
⑥ 기존 시설의 변환 방안
⑦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 장애인 가족(부모)욕구 조사 연구용역 실시('19.11)
– 연구내용

① 시설 거주 장애인 부모집단 욕구조사
② 지역사회자립(자립생활주택 or 지원주택 이용) 장애인 부모집단 욕구조사
③ 원가정 보호 부모집단 욕구조사
④ 시설입소대기 장애인 부모집단 욕구조사

○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유아 대상 애니메이션 및 활용가이드, 관광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매뉴얼 제작('19)
○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시범사업 운영('19)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e-learning) 사이트 구축('19)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 지원 시스템 체계화) 강사양성체계 구축 ·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 (교육 및 홍보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 · 홍보 내실화
  * ('20년도 사업) 장애공감주간 운영(12.1.~10.), 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강연 제작, 카카오채널 플랫폼 활용 인식개선 이모티콘 제작 · 홍보 등

○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시범사업(2차) 운영(10월~11월)
- 표준화된 강사양성 과정 · 교육교재 등 세부 운영 방향 마련, 전문강사 양성 및 위촉(25명)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련 모델정립 연구용역 실시('20.5.~12.)

① 커뮤니티케어 장애인 시범사업지역(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현황 분석
②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진단방식 제시
③ 모니터링 지표(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지표) 분석
④ 현황 및 지표 분석을 통한 선도사업 모델제시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 및 복지서비스 필요 욕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기간)'20년 9월~12월말, (시설개소수628개소, 입소장애인24,980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 기초단위에서 자립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확대(71개소→75개소)
  * (역할)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주체가 되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기술 훈련, 동료상담 등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

○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신규 1개소 설치
- 장애인 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할 중앙관리기관 설치 · 운영을 통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신규 중앙센터 1개소*설치
  * '21년 정부예산(269백만원, 신규1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공감주간 운영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강사양성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 · 관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개정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장애인복지법*」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 시행규칙) 마련
  * ('19.12 공포, '21.6 시행) 교육 실시결과 매년 점검, 관리자 특별교육, 결과 공표, 기관 평가 반영, 전문강사 양성,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등

196	Ⅵ-3-⑧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정책과
과제목표	○ 장애인 건강권법의 제도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장애인과 재활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격차 해소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내용	○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 마련하고 운영비용 등 지원방안 검토 ○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4,817	8,946	4,129	85.7%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3,708	5,772	2,064	55.7%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629	1,140	511	81.2%
(장애인 건강관리 등)	480	484	4	0.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하위법령에 따른 사업지침 재개정)**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 등 신규 사업의 지침을 제정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운영관리 체계, 인력 기준·교육, 운영사업과 성과관리 등 기준 마련

○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 연계강화)** 사업 간 지원체계 및 중장기 예산 마련
– 일자리사업으로 '22년까지 필요한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인력 총 387명 예산 확보 추진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지정('18.3~4, 중앙 1, 지역 3)과 사업지침 제정('18.8), 보건소 사업지침 개정('18.12)
–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간 지역별 간담회 개최 및 교육('18.8~10)
– 보건소장 정기교육('18.10~11, 254명), 장애인 단체장 정기연수('18.11, 전국 21개 단체)를 통한 정책방향 공유
– (통합지침 제정) 개별 사업담당자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총체적 모형과 추진방향 공유 목적
– (조직 확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추가 지정·운영, 보건소 전담인력 60명 충원
– (보건의료·복지 협업)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복지과의 간담회 개최, 종사자 정기교육 등
–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위한 매뉴얼 발간·배포) △척수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건 길라잡이 책자 △발달장애인 의료환경(응급, 일반, 치과, 건강검진) 의사소통 매뉴얼 △수어통역사 의료용어 개발(1차)
– (기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ISP개발, 장애인건강평가도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를 통한 16개소 지정, 탈의실 기준 제정, 컨텐츠 개발·보급
– 물리적 접근성 제고 :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특화검진장비, 사전필요사항에 대한 온라인 요청 운영
– 심리적 접근성 제고 :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책자와 의료기관별 워크북 제작·배포, 검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18.10월,장애 이해, 장애체험, 검진장비 유의점 등)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지원)** 4개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포럼 개최('18.7), 지역별 모성보건협의회 구성('18.10~11),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공동설문조사('18.10)
–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 출산 매뉴얼 발간·배포(40주의 우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및 평가전문위원회(8회, '18.3월~)
– 사업수행 기관 간 실무회의 (7회, '18.3월~4월)
– 건강주치의 · 방문간호사 교육(의사대상 6회, 406명 및 방문간호사 교육 2회, 92명)
– 온·오프라인 홍보 : 리플렛 배포(총 472개소), 웹툰, 간행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
– 지역주민 대상 '마음이음축제' 홍보부스 운영('18.6월), 장애인(7만명),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79기관 139명 참석), 장애인단체 대상 설명회(183명 참석)
–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11회, '19.5월~12월)
– 건강주치의 · 방문간호사 교육(의사대상 5회, 304명 및 방문간호사 교육 6회, 50명)
–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18.9월~'19.7월)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방안 마련 후 2단계 시범사업안 보고('19.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하위법령에 따른 사업지침 재개정)** 폐암 검진 시행을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20.6)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 연계강화)** –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 추진 * 시·도별 설치, ('19년) 6개소 → ('20년) 10개소 ('20년 설치 목표 100% 달성) – (인력 충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종사자 확충(88명) – (사업 고도화) 재활병원 퇴원환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및 보건소 멘토링 제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자료 개발·보급, 전산시스템 개발 위한 예산 확보('21년 15억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 (검진 항목 확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20.6)을 통한 장애인검진기관 폐암검진 시행('20.7~) – (검진 정보 편의증진) 장애유형별 장애친화 건강검진 안내서 제작('20.4), 건강iN(건보공단 시스템)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점자문서로 변환·배포('20.3~)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지원)** – 지역별 여성장애인 모성보건협의회를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 실시 및 의료인용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번역 출간 –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원 예산 15.5억원 신규 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시행) 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18.5~'20.5.)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시행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신설)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예방·관리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 제공 위해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구강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수가 신설 – (서비스 제공 확대) 케어플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연 1회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1년 단위의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에 따라 건강관리 교육·상담을 제공받음 – (비대면 환자 관리 강화) 전화상담료를 폐지하고 환자관리료*로 전환 * 주치의가 비대면 전화상담·문자 송·수신 통해 환자상태, 약물복용 여부 확인 등 장애인 환자의 건강상태 주기적 관리 진행 – (서비스 제공 확대) 케어플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연 1회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 연계강화 –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로서 지역센터 4개소 지정 * [부산] 동아대학병원, [인천] 인하대학병원, [경기] 분당서울대학병원, [제주] 제주대학병원 ○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등록 주치의 539명, 장애인 이용 신청 1,523명, 방문서비스 105건 – 포괄평가 및 계획서비스 제공 1,579건, 교육상담 5,097건, 전화상담 1,484건, 환자관리료 481건, 방문진료 2,587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총 19개소 지정 ('18~'19) 6 → ('20) 10 → ('21) 14 → ('22) 19개소 – 전달체계 전담인력 총 387명 인력확충 ('18~'19) 102명 → ('20) 190명 → ('21) 278명 → ('22) 387명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지정 총 100여개 지정 ('18~'19) 16 → ('20) 17 → ('21) 37 → ('22) 57개소 → ('23) 77 → ('24) 100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확대 모형개발 및 2차년 시범사업 평가('20.1~11월)

197	Ⅵ-3-⑨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제목표	○ 장애인연금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18.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강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22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연금	786,181	829,084	42,903	5.5
(장애인연금 급여)	785,801	828,704	42,903	5.5
(제도운영비)	380	38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25만원('18.9.), 30만원('19.4.)으로 인상**
– 30만원 인상의 경우 당초 '21년 예정이었던 계획을 단계적으로 조기 추진
* (기존) 월 20만원 → ('18.9.) 월 25만원 → ('19.4.) 월 30만원(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20.1.) 월 30만원(차상위계층) → ('21.1.) 월 30만원(전체수급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18.3., '18.12.) 등 제도 개선**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 · 시행('19.3., '19.12.)
– 사업안내(지침) 개정(1월), 행복e음시스템 기능개선(2~3월), 기초급여액 유지대상자 지정 · 관리, 장애인 및 일반국민 대상 집중홍보(3~6월) 등 추진
–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각 연도별 예산 확보

○ 장애인연금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등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3~8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수급가능 여부 조사 · 안내(2월), 선정기준액 인상(1월) 등 **대상자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연금 법정 수급률(70%) 유지(12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1월)
– 차상위초과자(8만명)의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정(1월) 및 '21년 예산* 반영(12월)
* ('19년) 7,862억원 → ('20년) 8,291억원(429억원, 5.5% 증가)

○ 미수급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연중), 미수급 권리구제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일제정비*(3~9월)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만족도 제고
* 미수급자 53,596명, 연령도래자 2,954명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독려

○ 장애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급기준 및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모색**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시행(한국장애인개발원)

<table>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중증장애인(52만명) 중 37.6만명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아 법정수급률(70%)을 상회하는 72.2% 수급률 달성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가구 소득개선 효과〉
■ 장애인가구 소득 5분위 비율: ('18)11.9배 → ('19)11.9배 → ('20)11.2배
⇒ 장애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완화
■ 소득이 천만원 미만인 장애인가구의 비율: ('18)16.5% → ('19)15.6% → ('20)12.5%
⇒ 소득 최하위 장애인가구의 빈곤 완화
■ 장애인가구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18)15.9% → ('19)17.4% → ('20)20.0%
⇒ 장애인연금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장애인가구의 소득개선에 기여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 인상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장애계 및 전문가, 재정당국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td></tr>
<tr><td>향후추진계획</td><td colspan="2">○ 기초급여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에게 월 30만원 인상 지급 시행('21.1.~)

○ 장애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급기준 및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td></tr>
</table>

198	Ⅵ-3-⑩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숙박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 전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18년 실시 후 매 5년마다 실시) ○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된 편의시설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숙박시설 설계 마련 및 관련법규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숙박시설 접근·이용 활성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지자체 등 협조기관 처리 지연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후조치 – 대 상 :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중 집중관리대상시설 – 방 법 : 17개 시도 지자체 시정조치 및 소관 중앙부처 이행계획 수립요청 – 기 간 : 2018.4. ~ 2019.1. – 사후조치: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물 사후조치(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 ○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지속실시 ○ 유니버설디자인(UD) 환경 관련 교육실시 –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총 3회 41명 수료) – 건축사 실무교육(총 2회 151명 수료) – 편의증진 민간교육(온라인강의 2편 제작) ○ 홈페이지 관리 및 지자체 기술지원 상담 : 137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사후조치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UD가 적용된 숙박시설 설계 등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 ○ 협조기관 간 업무 소통지연

향후추진계획	○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후조치(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조치 모니터링 진행)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응 시행령 개정 추진 ○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개최

199	Ⅵ-3-⑪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교육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사후관리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136	2,752	△384	-13.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 설치·운영
- 중앙기관 1개소, 지역기관(시·도) 17개소 설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지침 작성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사례워크숍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29 공포)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피해장애인 변호사 선임 특례, 학대범죄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피해장애인 보호 강화

○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2019.1.1.~2019.12.3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황, 장애인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등에 관한 세부 내용 분석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대사례 발생 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통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 ○ 장애인 학대 예방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개발 및 배포를 통한 대국민 홍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문자신고시스템* 개통
* 카카오톡 채널, 문자발송(1644-8299)을 통한 학대 신고

○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200	Ⅵ-4-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장기요양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418,462	1,710,700	292,238	2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지역 간 인프라의 균형적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추진('18년~) '18년 34개소, '19년 43개소 확충

–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재가급여 중심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19.5월~) 및 통합재가 서비스 예비사업 실시('19.7월~)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직무교육 강화 방안 등 마련

•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치매전문교육 교육인원 확대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18년 30천명 → '19년 41천명

○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 부적정 기관의 진입·퇴출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지역 간 인프라의 균형적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추진('18년~) '20년 28개소 확충(누적 105개소 확충)

–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실화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1차 시범사업 결과 분석, 관련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 모형 보완 및 2차 시범사업 실시('20.5~12)

• (수시방문형 서비스)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신규 재가서비스 모델개발 위한 연구용역* 실시('20.2~9)

* 「수시 방문 및 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운영모델 개발 연구」(백석대, 서동민 교수)

• (이동지원 서비스) 1차 시범사업(서울시, '19.5~12) 보완 모델 마련 및 참여 지차체 협의 등을 통하여 2차 시범사업 실시('20.5~12)

	• (통합재가)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요양-목욕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모형 일부 개선 및 실시('21.1월~)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 요양보호사의 치매전문성 향상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도입('20. 12월) - "장기요양종사자 직무교육 운영성과와 고도화 방안"연구용역 실시 ○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 부적정 기관의 진입·퇴출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청구 시 벌칙규정 신설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지자체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을 설치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립요양시설 마련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수시방문형 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통합재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지원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 실시에 제약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시범사업 등은 노인들의 외부활동을 기초로 하는 사업임 - 그러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고, 특히 장기요양수급자들의 경우 더 취약한 계층임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을 이용하려는 수급자들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향후추진계획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공립요양시설 미설치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형장방문하여 확충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검토 - 수시방문형 서비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 지속실시 및 모형 개선 - 교육대상자 확대, 교육의무화 등을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 체계 개편

201 Ⅵ-4-②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노인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학대예방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 대상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학대유발요인 감소 도모

주요내용

○ 노인학대예방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홍보)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기점 집중 홍보 추진, 노인학대예방 홍보영상 제작·송출
- 근거 마련('16년)에 따른 노인학대인식개선 홍보사업 실시
- (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실시
- (인권실태조사)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용자의 인권 의식조사 및 인권침해사례 발굴 및 정책제안 등
- (인프라확충)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지역범위 및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추진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노인학대 발생원인은 주로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등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가족 내·외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적절한 상담서비스 개발 및 제공
  · (학대피해노인)학대피해노인의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학대행위자 교육 및 심리치료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인보호전문기관	9,444	10,366	921	9.8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199	1,210	10	0.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645	7,400	755	11.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1,600	1,756	156	9.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홍보)** 제2~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6.15),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 런칭 및 공익캠페인 개최(19.6.8) 등
○ **(교육)** 노인인권교육 86,702명 수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27,206명 수료(온라인 교육 포함) (19년 기준)
○ **(실태조사)**
- (2018)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517개소)
- (2019)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방문요양 371개소, 방문목욕 129개소)

○ **(인프라)**
- (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증설(서울서부, 경기도)
- (2019)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증설(인천서부, 서귀포)

'20년 이행실적 (1.1.~12.31.)

○ 노인학대예방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노인인식개선 홍보사업 추진

·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 100일간의 대국민 참여 SNS캠페인 실시(캠페인 참여 약 1,045,770회), 노인학대예방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SBS라디오 3회, BTN라디오 60회), 경찰청 노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 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콘텐츠 배포(경찰서 255개소, 지구대 589개소, 파출소 1,436개소), 보도자료 배포(6.15) 등

–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인권교육) 노인인권교육 실시(5,875명), 노인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재가장기요양기관 2종), 노인인권강사양성 및 관리(신규양성 79명) 등

〈표1. 2020년 노인인권교육 실적〉

대상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 (치매안심센터 등)	총계
집합교육	3,478명	1,873명	12명	5,320명
방문교육	423명	132명	0명	555명

· (신고의무자교육) 기개발한 신고의무자 온라인 콘텐츠 3종 포팅용, 배포용으로 변환(2회), 시설편('17년 제작) 리뉴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도메인 개발(15771389.or.kr) 등

〈표2. 2020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예방교육) 실적〉

구분		횟수(회)	인원 수(명)
오프라인(잠정치)		1,082	29,296
온라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발 콘텐츠 운영)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5,337	10,795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	3,326	3,326
총계		19,745	43,417

– 양로시설 전수조사 실시

·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양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안전사고(IOT수용성), 방역관리 등의 방지를 위해 시설 및 종사자, 입소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전국 양로시설 총 205개소, 입소자 4,606명(60.5%), 종사자 1,978명(99.8%) 조사)

–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서울, 경기, 경북), 쉼터 1개소(경북) 추가 예산 확보(21년 초 증설예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학대피해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학대피해노인 가정 및 상담기관 등에서 정서안정 프로그램**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거부·방해 금지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2.29)

** 정서안정 프로그램: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안정, 스트레스 감소 및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부정적 감정 해소를 위한 개별 및 집단 상담 (12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08case 대상 3,044건 실시, 2020년 기준)

– 노인학대 개입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위기상황(신변안전) 대처방안,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치료 권고 방안을 담은 대응가이드(매뉴얼) 개발 1회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강제 법률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치료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절차 마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제61조의2(과태료)('20.12.29)

– '16년 개발된 학대피해노인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전국 17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건수 7,134건(2019년 기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지속적 증가** – '16년 12,009건 → '17년 13,309건 → '18년 15,482건 → '19년 16,071건 ○ **노인학대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 지속적 증가** – '18년 127,965회 → '19년 140,354회 (전년대비 9.7% 증가) * 2020년 통계는 추계 중으로 2021.6월 공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노인인구 및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기관당 약 25만명의 노인인구 관할, 평균 6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꾸준한 확충 필요**

향후추진계획	○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나비새김'의 확대 실시 및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유관기관(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 경찰청 등)과의 집중 홍보 추진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활성화 및 신고인식 제고 ○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시설종사자, 신고의무자 직군 대상 노인학대 인식 제고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속적인 증설을 통한 노인보호사업 인프라 확충 등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위기개입기술 개발, 재학대 감소를 위한 학대행위자 조치 매뉴얼 개발

202	Ⅵ-4-③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시설 학대피해 노인보호 대책 마련 ○ 인권보호교육 등 인권보호 제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인권교육 의무화 – 노인복지법('18.4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18.9월)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를 위한 인권 교육과정 운영('19.~)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과정: 노인생활시설, 이용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이수자: 224,383명 수료

'20년 이행실적 (1.1.~12.31.)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를 위한 인권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이수자: 495,809명 * '20년부터 국비 신규반영 및 교육 지원(94백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로 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교육 지속 시행 및 지원

203	Ⅵ-4-④	노인 건강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건강정책과, 치매정책과

과제목표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개발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기반 마련
-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

주요내용

○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1,141	848	△293	△25.7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360	-	△360	△100
(일차의료 정책지원)	681	848	167	124.5
(만성질환 네트워크 지원)	100	-	△100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국정과제45-1)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시 ('19.1~.)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질환 점진적 확대('19.5.)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맞춤형 검진바우처 개선('19.12.)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 17만명 ('19.12.기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확대질환 사업준비단 구성·운영 ('20~)

○ 저소득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18년 1,087명(1,659건)/ '19년 1,722명(2,549건)
- 노인개안수술비 지원 : '18년 4,889명(7,718안)/'19년 5,429명(8,321안)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저소득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20년 1,707명(2,469건)
- 노인개안수술비 지원 :'20년 5,458명(8,334안)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 75개지역 22.4만명('20.12.기준)
- 일차의료 만성질관관리 확대질환 모형논의 (성인 천식·COPD, 아동 천식·아토피)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개선안 논의('20.8.~)
- 코로나19 대응관련 '특별재난 지역 선포(3.15. 대구·경북)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혈압·혈당계 지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지하철 2·9호선 광고송출을 통한 홍보 및 공중파 방송과 리플릿 제공 등 ('20~)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로 75개지역 22.4만여명 참여 – 맞춤형 검진바우처 개선 (40세 이상→연령제한 폐지 및 검진항목 확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지속적 논의 및 개선안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유관기관 및 의료계와 협의 지연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안 논의 부진 – 20년도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5차공모 미실시 (21년도 1월 시행)

향후추진계획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확대 추진, 및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개선안 마련과, 유관사업과*의의 연계·통합을 위한 지속적 논의 등 *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04	Ⅵ-4-⑤	단체 · 문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노인지원과
과제목표	○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 문화 등 노인복지 증진			
주요내용	○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 · 대상자 ·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 ·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확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수 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비 50%	2,304	2,316	12	0.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전문예술강사 파견, 교육지원금 및 기자재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8년) 235개 노인복지관, 316개 반, 159명 예술강사, 6,276명 참여노인
** ('19년) 252개 노인복지관, 314개 프로그램, 6,199명 참여노인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여가 · 건강관리 ·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기존보다 프로그램 확대 시행한 경로당 수('18년–6,073개소, '19년– 6,030개소)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대회(우수기관 수상 및 사례공유, 12.12~13, 무주교육원)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전문예술강사 파견, 교육지원금 및 기자재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45개 노인복지관, 274개 프로그램, 5,200명 참여노인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여가 · 건강관리 ·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기존보다 프로그램 확대 시행한 경로당 수(연간 총 6,467개소)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우수기관 수상 및 사례공유(문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 · 대상자 ·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여노인 만족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노인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기회 창출 모색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확대('21년 6,300여개소), 우수사례 공유 및 신노년세대 맞는 경로당 명칭변경 검토
– 노인복지관 6대 프로그램분야 가이드라인 보급(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문화 ·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노인복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

205-1	Ⅵ-4-⑥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정책과
	과제목표	○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 ○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세대 노인 빈곤완화에 기여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기초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 안내 및 홍보 강화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			
	관련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을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 ('16) 20만4,010원→('17) 20만6,050원→('18.4) 20만9,960원→('18.9) 25만원→('19.4) 30만원

○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 안내

–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시행) 복지제도 최초로 도입('16.1.1)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토대로 이력조사 및 안내 실시

– (사각지대 발굴 노력)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발굴하여 신청안내 강화

* 특히, 거주불명등록자 등 취약계층은 실태조사를 통해 밀착 지원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실시('19.2~7월)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최대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예산 확대

* 최대 지원금액 : ('17) 40,950원 → ('18) 40,950원 → ('19) 43,650원

** 예산 : ('17) 1,759억 원 → ('18) 1,777억 원 → ('19) 2,020억 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 연장*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및 지원기준 내실화**

* 일몰기한 5년 연장 합의(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 지원기준 내실화를 위한 연구 실시(국민연금연구원, '19.3~6월)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9.12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법 개정) 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 확대*(1월,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1월, 고시 개정)

* (월 최대 30만원(기준연금액) 수급 대상자) 소득 하위 20% ('19.4.~) → 소득 하위 40% ('20.1.~) → 소득 하위 70% ('21. 예정)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

* ('18) 131만원(209.6만원) → ('19) 137만원(219.2만원) → ('20) 148만원(236.8만원)

– (급여인상)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32만명에 급여액을 인상(월 최대 30만원)하여 지급

○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 안내**

– (65세 도래자 안내) 적기*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65세 도래 2개월 전부터 안내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 가능

–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시행)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토대로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실시('20.1월), 수급가능예상자 7.2만명에게 안내, 4.8만명 신청

*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정부가 소득·재산 이력을 관리(5년)하여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선제적으로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사각지대 발굴 노력)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발굴하여 신청안내 강화. 특히, 거주불명등록자 등 취약계층은 실태조사를 통해 밀착 지원

– (홍보 강화) 설(1월)·추석(10월) 및 '21년 1월 기초연금 인상을 앞둔 연말(12월)에 기초연금 CM송 청취율 높은 'MBC 정오의 희망곡', '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등 라디오 광고 실시(141회), 버스, 지하철, 옥외 광고판 등 기초연금 영상 송출(754만회) 등 대국민 집중 홍보 실시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민연금법 개정, '20.1.21.) 및 보험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20.7~)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연장('19년→'24년)(국민연금법 개정, '20.1.2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 최대 지원금액 : ('19) 43,650원 → ('20) 45,000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급기준 완화 및 사각지대 발굴노력 등으로 수급자 수 증가**

– '20.12월 562.6만명의 어르신이 매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

* (기초연금 수급자수) 534.6만명('19.12월) → 562.6만명('20.12월, 5.2%↑)

◆매월 65세 도래 어르신에게 '사전 신청안내문' 발송(1~12월, 629,840명)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1~12월, 1,373건)
◆탈락자 중 사업소득 단절자(휴·폐업) 발굴 및 안내문 발송(2월·7월, 1,319명)
◆단전·단수·단가스 등 취약가구 발굴 및 안내문 발송(6월·11월, 8,765명)
◆건강보험 저보험료 납부자 대상 안내문 발송(9월, 85,816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자 발굴 및 안내문 발송(10월, 58,731명)
◆지자체-국민연금공단 합동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9~12월)

○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후생활의 안정 및 변화 등에 기여**

– (생활 안정) 기초연금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의 91%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설문조사(국민연금연구원('20년))

– (생활 변화) 수급 후 변화에 대한 질문에도 "병원가는 부담 감소"(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51.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4.9%)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

– (주 사용처) 식비(78.9%), 보건의료비(12.4%) 주거비(7.3%),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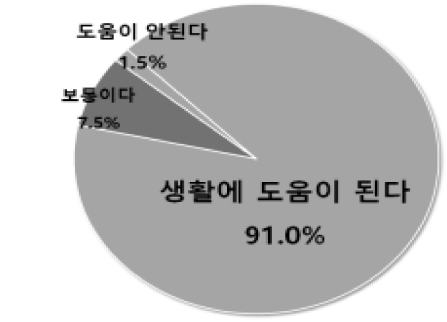

기초연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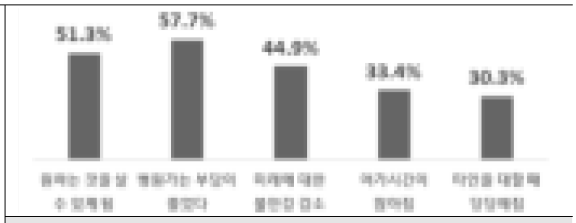

기초연금 수령 후 변화

주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20.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및 지원 기간 연장('19년까지 → '24년까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필요

- 선정기준액의 꾸준한 인상, 다각적인 기초연금 홍보 노력에도 불구, 수급률은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 특히, '20년도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 '찾아뵙는 서비스',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현장 홍보가 어려워 대면 안내와 홍보가 제한적

향후추진계획

○ 노인의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제도 내실화 추진

- 매월 수급률 및 신청안내 등 현황 지속 모니터링하고 '22년에도 적정한 선정기준액 설정 검토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찾아뵙는 서비스, 코로나 등 고려 언택트 홍보 추진 등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 추진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22년도 예산 반영 추진(~'21.12월)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개정 추진(~'21.12월)

205-2	Ⅵ-4-⑥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제목표	○ 노인 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21.1.1.~)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저소득층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월50만원×6개월)			

관련예산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277,128*	828,647	551,519	199.0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회계)	330,563	327,231	△3,332	△1.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범위 확대(64세→69세, '17년부터 시행)* 및 개인별 특성·욕구를 고려한 프로세스 개선

* '18년 60세 이상 장년층 참여자 수: 10,904명

– (조기취업) 취업역량평가 결과가 높은 경우(C등급 이상), 1단계 상담기간을 단축(최소 3주→1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희망 직종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 조기에 취업을 지원

– (역량개발)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재교육, 신기술 습득 등 지속적인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

* (예)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50대 이상 구직자 대상 기계, 설비, 자동차, 헬스케어 등 맞춤 기술 교육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범위 확대 및 중장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모집 인프라 강화 → 전년 대비 장년층 참여자 수 증가(5,339명↑)*

* '19년 60세 이상 장년층 참여자 수: 16,243명

– (모집 인프라 강화) 중장년층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 자체모집 허용('19.8월~) 및 모집 시 인센티브(선정, 평가 시 우대) 부여

○ 15~1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일자리위원회 발표('19.6.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장년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범위를 II유형 중장년층까지 확대

* '20년 60세 이상 장년층 참여자 수: 13,231명

○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20.5.20.) → '21.1.1. 시행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하여 지원 인원 59만명으로 확대

* 소득 요건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도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취업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장년층 취업기회 보장 – 65~69세 장년층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취업상담 · 직업능력 향상 · 취업알선 등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년층에게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촉진장려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년층 취업경쟁력 확보

206	Ⅵ-4-⑦	농지연금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지과

과제목표

○ 농지연금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 저소득층 및 우수농업인 우대상품 개발
-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해지율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및 중도상환제도 도입
- 기존 상품 지급방식 개선

○ 가입를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타겟 홍보
-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 온라인 홍보 추진 (네이버, 유튜브, 카드뉴스 등)

관련예산

(농지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지연금(융자)	147,877	180,869	32,992	2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18)
- 6억원 이하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18년 말→'21년 말)

○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연금모형 재설계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관 및 기간 : 한국정책능력진흥원('18. 2.19. ~ 6.1.)

○ 감정평가 반영률 상향 및 기초변수 조정으로 지급액 최대 20.6% 인상('19)
-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 상향(80%→90%) : 월지급액 최대 12.5% 인상 효과
- 기대이율 하향(4%→3.65%) : 월지급액 최대 6.1% 인상 효과
- 완전생명표 갱신('14년→'16년) : 월지급액 최대 2% 인상 효과

○ 담보농지 제한 강화('19)
- 불량농지를 경·공매를 통해 취득하여 농지연금 담보농지로 제공하는 제도악용 사례 방지

* '20.1.1.(경·공매농지는 '18.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보유기간(2년) 및 통작거리(농지소재지와 연접 시군구 또는 30km 이내 거주) 제한

'20년 이행실적 (1.1.~12.31.)	○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제도 도입('20.7.) – 농지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6 내지 제24조의7 신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한도 내 보호 – 수급전용계좌인 '농지연금지킴이통장' 개설 및 시스템 연계 구축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사업홍보 – 신문, 방송, SNS(네이버,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 – 유관기관을 활용한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및 리플렛 발송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월지급액 상향 및 가입률 제고 – 신규가입자 월지급액: ('18년) 820천원 → ('19년) 901천원 → ('20년) 1,078천원 – 가입률: ('18년) 2.35% → ('19년) 3.03% → ('20년) 3.58% ○ 제도 악용 방지 – 경·공매를 통해 저가로 매입하거나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취득한 불량농지의 담보 제공 차단으로 선량한 사업 관리를 도모하고 정책대상인 고령농업인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선 ○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연금 수급권 보장 – '20.12.31.기준 147명 수급전용계좌 개설·등록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가입률 확대 및 해지율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존 지급방식 개선 및 우대형 상품 개발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운영절차 마련 – 농업인 채무부담 감소를 상품변경 허용 및 중도상환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및 운영절차 마련 – 재산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 신규가입자의 확대를 위해 고령농업인과 자녀대상의 타겟홍보 추진

207	Ⅵ-5-(1)-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 관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관련 절차 준수			
	주요내용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근로 개시 신고안내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불법고용이나 고용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 점검 강화			
	관련예산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방문취업동포는 잦은 입출국으로 인해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총 체류규모를 303천명으로 유지('17년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8년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건설업 적정 동포 규모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통해 55천명('18년) → 60천명('19년)

○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지도 · 점검('18년上, 하반기)
– ('18년) 불법체류 5건, 근로개신 미신고 14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24건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시정 3건, 과태료 22건, 고용제한 9건, 법무부 통보 9건)
– ('19년) 불법체류 7건, 근로개신 미신고 12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60건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시정 3건, 과태료 17건, 고용제한 28건, 법무부 통보 10건)

○ 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추가(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19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인력부족이 심각한 산지농산물유통센터, 식육운송업을 추가 결정

'20년 이행실적 (1.1.~12.31.)

○ 방문취업동포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총 체류규모를 303천명으로 유지('20.12.23.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추가
– 인력부족이 심각한 광업을 허용업종으로 추가 결정

○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지도 · 점검('20년)
– 고용절차 미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
* 불법체류 2건, 근로개신 미신고 3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4건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과태료 5건, 고용제한 2건, 법무부 통보 2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동포의 총 체류규모 유지정책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H-2)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 규모를 303천명 이내로 유지하여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 * 외국국적 동포(H-2) 체류현황: '18년 250,381명 → '19년 226,322명 → '20년 174,570명 ○ 방문취업동포의 고용절차 준수 의식 제고 - 내실있는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개시 신고 등 고용절차 준수 인식 제고 ○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 고용 또는 고용절차 미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동포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방문취업동포의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불법고용 방지 및 고용절차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지속

208	Ⅵ-5-(1)-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체류관리과
	과제목표	○ 동포간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 지원 및 자긍심 고취 ○ 소외받는 동포의 법적지위 향상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켜 동포사회와의 동반성장 도모			
	주요내용	○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관련예산	○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9년 주요 이행실적	○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연장(6. 17.) –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개정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 한정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7. 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한민족 의식고양을 위해 한국어능력입증서류 제출(9. 2.) –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개정
'20년 이행실적 (1.1.~12.31.)	○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기간 단축(4. 22.) – 60세 이하 중국동포가 방문취업(H-2)자격 만기출국 시 재입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에 '건설 분야 29개 자격증 취득자' 추가(4. 22.) ○ 동포입증서류 제출 개선(4. 22.) – 사할린동포가 외교부 발급 '영주귀국자명단'을 제출하면 동포입증서류로 인정(4. 22.) – 국적상실(이탈)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으로 확인 가능한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기본증명서 제출 면제 ○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12. 21.) –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가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체류하려는 경우 계속체류허가(1회, 1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안정적인 체류를 함에 따라 모국에 대한 자부심 고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동포의 증가로 국민일자리가 잠식되고 범죄가 증가한다고 보는 일부 시각 존재

향후추진계획	○ 중국 · 구소련 지역 동포가 재외동포(F-4)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입국초기동포 대상 기초법질서교육 강화 및 지자체-동포단체와 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협업 실시

209	Ⅵ-5-(1)-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 지원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국적을 위한 사회통합기반 마련
  ※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교육 체계 구축
-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

주요내용

○ 귀화·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체계로 일원화
-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의 한국사회 기본소양 교육 등 체계 구축
-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기본소양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한국사회 이해 등 교육과정 운영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조기적응 교육과정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9,590	11,193		16.7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1,241	1,119	△감	9.8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8,349	10,074		20.7

* '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예산은 제3차 추경 관련 9,489백만원에서 8,349백만원으로 감액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귀화·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체계로 일원화
-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개정「국적법 시행령」시행('18. 3. 1.)
-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개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시행('18. 9. 21.)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0~5단계, 최대 475시간)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외국국적동포용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19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멘토강사 활용 특강 개설·운영
- 외국국적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자 급증에 따른 대규모 교육장 운영, 기술교육 수료자 이수면제 등 적체해소방안 시행('18. 2)

'20년 이행실적 (1.1.~12.31.)	○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 '20.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멘토단에 중국동포가 포함되어 멘토특강, 외국인정책 관련 자문 등 적극 활동 ○ 외국국적동포 등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20년도 연구용역 과제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특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추진, 사회통합정책이 절실한 동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과정 연구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재한동포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 입국 초기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한국사회 장기체류에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등 이동제한에 따른 교육 제한 – 기본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사회통합교육이 '20년 1분기 전면중단 등 교육에 제약 발생, 교육운영방식 다양화 등으로 대응

향후추진계획	○ 외국국적동포 전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속 ○ 외국국적동포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속

210	Ⅵ-5-(1)-④	재외동포 인권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 등 재한외국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5. 20.), 한마음 걷기축제 등 문화행사 주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식)	314	31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5. 18.) 개최
– 일시, 장소 : 5. 18.(금) 14:00,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참석 : 법무부차관, 재한외국공관원, 국민 및 재한외국인 등 1,200여명
– 내용 :「올해의 이민자 상」등 정부포상자 시상, 문화공연, 야외행사 등
○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10. 28.) 개최
– 일시, 장소 : 10. 28.(일) 09:00,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 참석 : 내 · 외국인 3,000여명
– 내용 : 걷기행사, 고충상담, 건강캠프, 문화행사 등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5. 20.) 개최
– 일시, 장소 : 5. 20.(수) 14:00, 더케이아트홀
– 참석 : 법무부장관, 재한외국공관원, 국민 및 재한외국인 등 900여명
– 내용 :「올해의 이민자 상」등 정부포상자 시상, 문화공연, 야외행사 등
○ 제9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10. 28.) 개최
– 일시, 장소 : 10. 27.(일) 09:00,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 참석 : 내 · 외국인 3,000여명
– 내용 : 걷기행사, 고충상담, 건강캠프, 문화행사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식 개최
– 일시, 장소 : 5. 20.(수) 14:3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법무부장관, 국민 및 재한외국인 등 39명
– 내용 :「올해의 이민자 상」등 정부포상자 시상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기념식 규모를 축소하여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고,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미담사례를 책자로 발간, 내 · 외국인 상호소통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계인의 날 취지를 전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 상호 이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 장소 : 5. 20.(목) 14:30 과천정부청사 대강당 – 참석 : 법무부장관, 국민 및 재한외국인 등 36명 – 내용 : 「올해의 이민자 상」 등 정부포상자 시상, 세계인의 날 주제영상, 미담사례집 발간 및 사례발표 등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는 축소하되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세계인의 날'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공자 포상, 세계인의 날 주제영상 제작, 미담사례집 발간 등 예정

211	Ⅵ-5-(1)-⑤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입양인 뿌리찾기 등 사후서비스 지원을 통해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지원			
주요내용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 국외입양인 입양 기록 전산화 추진 계속 – 입양정보 공개 청구제도(뿌리찾기) 시행 지속 * 공개 청구대상 정보: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입양 배경(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 사유 등), 입양인의 입양 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중앙입양원 운영 · 지원-DB구축 및 뿌리찾기)	402	470	68	16.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입양기록 전산화
– 입양기관 보유 입양기록 59천여 건 전산화 완료
*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50년대~'12.8.4.)까지의 입양기록(230천여 건) 100% 전산화 완료('13~'18)
– '18년 입양기관 외(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 등) 입양기록 18천여 건 전산화 완료
– '19년 입양기관 외(아동복지시설, 국가기록원 등) 입양기록 23천여 건 전산화 완료

○ 입양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족찾기 지원
– '19년 외교부-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해외입양인(무연고 아동) 유전자 채취 · 등록 절차 마련
– '19년 언론매체 및 방송연계 등을 통한 입양인 가족찾기 사연 전파

○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시행 지속
– '18년 입양정보공개청구 건수 : 1,607건
– '19년 입양정보공개청구 건수 : 2,175건

'20년 이행실적 (1.1.~12.31.)

○ 입양기록 전산화 및 인프라 유지관리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
* 입양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 민원인 확인 기능 구현 등
– '20년 입양기관 외(지자체, 아동복지시설, 국가기록원, 보장원 등) 입양기록 54천8백여 건 전산화 완료

○ 입양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족찾기 지원
– 경찰청 · 재외공관 협력체계 구축 및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등록 지원 88건
– 언론홍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한 입양인 가족찾기 대응
* 정보공개청구 홍보 영상 등 22건 송출, 홍보물 4,400부 배포,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114명

○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시행 지속
– '20년 입양정보공개청구 건수 : 1,450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차원에서 입양관련 정보 보존, 가족찾기 협력체계 구축하여 무연고 입양인 가족찾기 대응강화 및 입양인의 알 권리보장 및 뿌리찾기 효율화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입양기록 지속 발굴 및 가족찾기 협력체계 지속 구축 필요

향후추진계획	○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입양기록 전산화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시행 지속

212/222	Ⅵ-5-(1)-⑥ Ⅵ-5-(2)-⑩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육기회보장과

과제목표

○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 이민배경아동이 공교육에 진입하여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주요내용

○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 지원
- 제도 개선 및 공교육 진입 안내를 통한 공교육 진입 확대

○ 입국 초기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 입국 초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예비학교) 설치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7,696	8,077	381	4.9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이민배경아동 대상 국내학교 입학 및 편입학 안내 실시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만6세~만17세의 중도입국 및 난민 자녀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 발송('18년 3,404명, '19년 3,225명)
-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의 방문이 잦은 유관기관에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개 언어) 배포

* ('18.) 359기관, 25,050부 → ('19.) 367기관, 37,540부

○ 입국 초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설치

* ('18.) 197교, 223학급 → ('19.) 217교, 326학급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이민배경아동 대상 국내학교 입학 및 편입학 안내 실시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만6세~만17세의 중도입국 및 난민 자녀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 발송(총 4,377건)
-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의 방문이 잦은 유관기관에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 및 리플릿(13개 언어) 배포(총 366기관, 39,271부)

○ 입국 초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설치('20년 245교, 372학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부처협업을 통한 공교육 진입 안내로 이민배경아동의 교육 접근성 제고 – 직접 및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를 실시하여 교육사각 지대 해소 ○ 한국어학급을 통한 입국 초기 이민배경아동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 ※ '18년 223학급 → '19년 326학급 → '20년 372학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법무부 연계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연2회) 실시 ○ 입국 초기 한국어 ·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213	Ⅵ-5-(2)-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외국인정책과
	과제목표	○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 평가			
	주요내용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 사례 확산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9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총 178개, 지방자치단체 총 1,003개 – 전체 추진과제 1,181개 중 971개 목표 달성(목표달성률 82.2%) – 전체 예산 4,910.54억원 중 4,781.11억원 집행(예산집행률 97.5%) – (주요 우수과제)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장연장 제한(법무부, 보건복지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온라인 입학신청 결재 시스템 도입(교육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농림축산식품부), 열린토크쇼&토크콘서트 개최(서울특별시), 119 제3자통역 시스템 도입 시행(광주광역시)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년)』확정('18. 2. 12.) ○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20. 1월) – 중앙행정기관 : 19개 기관, 170개 과제 (예산 3,061억원) – 지방자치단체 : 17개 기관, 1,045개 과제 (예산 2,458억원) ○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정책목표별 주요 과제 – (개방)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성장동력 확보을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등 – (통합)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자의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 (안전)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체계 구축, 체류외국인 관리 선진화 등 – (인권)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확대 등 – (협력)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년)』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과제 반영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환류 철저 – '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21년 외국인정책 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미흡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214 Ⅵ-5-(2)-②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반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외국인정책과
과제목표	○ 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병행 실시 ○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주요내용	○ 이민자 실태조사 시 욕구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이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에 반영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 내용, 콘텐츠 등 개선 시 적극 반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158	15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년~'19년 주요 이행실적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18.12. 및 '19.12. 보도자료 배포
○ 이민자의 고용, 보건, 한국생활 만족도, 직업, 소득, 주거환경, 한국어실력, 한국생활에 어려운 점 등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정책 등 이민정책개선의 토대 마련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5.19. ~ 6.2.
- 조사지역 : 전국 시·군·구
- 외국인 2만명, 귀화허가자 5천명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공통조사표 : 이민자 대상 6개 부문(기본 항목, 고용,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체류사항) 130개 조사항목
  · 부가조사표 : 비전문취업 16개 조사항목 및 유학생 21개 조사항목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20.12. 보도자료 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민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1.5~6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21. 연중, 이민자 실태조사 설문지에 이민자 욕구조사 항목 추가를 위한 통계청과의 협업 강화
○ 이민자 체류실태 결과가 반영된 이민정책개발 추진

215 | Ⅵ-5-(2)-③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활성화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외국인에 대한 외국어서비스 등 제공

주요내용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대상 확대, 귀화·영주 신청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강화 등
○ 재정착난민 특성 고려 지원 제공
○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사회통합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1,241	1,119	△감	9.8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	4,076	4,374		7.3
(난민교육비)	126	126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8,349	10,074		20.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연중 운영함으로써 입국초기 외국인에 대한 한국생활 정보 효율적 제공
– 「국적법 시행령」 개정('18. 3. 1.)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 9. 21.) 시행으로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체계적인 학습기회와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0~5단계, 최대 475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주말반 확대개설('18. 10.)을 통한 교육접근성 제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소비자, 금융경제, 범죄예방, 생활법질서 등)을 학기별 운영하여 실생활 필요 정보를 이민자에 제공

○ 재정착난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 제공(연중)
– 신속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 가족별 멘토제를 통한 사회통합 촉진 및 맞춤형 정착지원 제공
* '18년 미얀마 26명(8가족) 수용, '19년 미얀마 등 37명(15가족)

○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
– 20개국 언어로 출입국 업무상담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
※ '19년 약 253만 건의 상담서비스 제공, '19. 4월에는 외국인이 범죄피해 지원 전화 또는 검찰청 내방하여 범죄 피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역 지원을 위해 통화시스템 연계 구축·시행
– 법률사각지대에 처한 이민자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18년 총 1,030건의 상담 제공)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상운영을 위해 전면 화상교육 방식을 도입, '20. 2분기부터 운영을 재개 –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구성하여 이민자 멘토교육,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등 자문, 내 · 외국인 상호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적극 참여 – 언어, 문화 등으로 인한 재한외국인 안전취약 예방을 위해 소방청과 협업, '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운영 ○ 재정착난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사회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화상교육 방식으로 실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 '20년 총 289만건의 외국인 관련 민원상담 실시, 질병관리본부(1339) 등 19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대상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3자통역 지원 ※ 법률사각지대에 처한 이민자 대상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통역지원 제공('20년 총 765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의 입국초기 한국사회 적응과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과 맞춤형 지원, 모국어(외국어)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지속 운영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체류단계별 사회통합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 – 시민교육, 지자체 연계교육 등 사회 참여형 교육 확대로 교육 구성 다양화 ○ 재정착난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강화 – 자립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정규과정 외 보충 학습실시 계획 – 지역사회 정착시 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법 질서, 금융경제 특강 등 필수 특강 실시

216	Ⅵ-5-(2)-④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외국인근로자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장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5,273	4,714	△559	△10.6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8,724	7,045	△1,679	△19.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18년) 사업장변경 고시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업장변경 허용범위 확대, 비닐하우스를 제공한 경우, 숙소유형이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마련) 비주거용 숙소 제공시 신규 외국인력 배정 중단, 외국인숙소 기준 마련 및 우수시설 점수제 반영, 숙소 정보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 등
– ('19년) ①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 ②숙소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허용, ③사업장 변경기준 완화, ④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⑤기숙사 시설기준 미제공 및 허위 제공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사업장변경 허용(고시 개정)
* (기숙사 정보제공 기준 마련)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위임된 기숙사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정
○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인권보장
– ('18년) 농축산업 1092개소, 어업 356개소, 건설업 226개소
– ('19년) 농축산업 1,041개소, 어업 298개소, 건설업 149개소
–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노동관계법 등을 교육
* '18년 5,782명 → '19년 5,091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임금체불, 성희롱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처분 강화 지침 마련('20.11.26.)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지원
– 감염병으로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장변경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연장조치 (11,993명)

–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취업활동 기간만료자를 위해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26,617명)

○ (농식품부 · 해수부 공동) 농어업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실태조사

– (기간 및 대상) '20.9.21.–11.10., 사업장 3,500개소, 외국인근로자(E-9) 8,616명

– (조사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현황

– (개선 방안)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등을 숙소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등

○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 · 점검을 통한 인권보장

– 1,502개소(제조업: 668개소, 농축산업: 501개소, 어업: 178개소, 건설업: 56개소, 서비스업: 99개소)

* 적발 1,597건(시정지시: 1,443건, 사법처리 17건, 과태료 78건, 고용제한 등 37건, 관계기관 통보 22건)

–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노동관계법 등을 교육

* '18년 5,782개소 → '19년 5,091개소 → '20년 2,248개소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언어 및 상담지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구분	합계 (서비스이용)	상담	교육	무료진료, 시설이용 등
건수	428,640	290,449	87,162	51,029

– 외국인력상담센터

구분	합계 (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3자통화	번역상담 등
건수	349,901	298,343	15,015	35,369	1,174

○ 송출국 현지 EPS센터를 통한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추진

– 총 2,110건, 44억원(출국만기보험 1,092건, 39억원/귀국비용보험 1,018건, 5억원) 지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업장변경 제도개선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취업생활 적응 지원

○ 현지 송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증가

* ('15년) 10억 → ('16년) 18억 → ('17년) 26억 → ('18년) 29억 → ('19년) 29억 → ('20년) 44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 지도 · 점검시 사업주 교육 지속 추진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 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안 예산반영 노력 지속

– 상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담원 역량교육 내실화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지속적 제고

○ 현지 송출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추진

217	Ⅵ-5-(2)-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다누리콜 센터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86,199	92,526	6,327	7.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 포털다누리(www.liveinkorea.kr), 한국생활가이드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13개 언어)로 제공

– 민간단체·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사이트 운영, 지역특화교육기관 운영 확대 등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인원 : ('17년) 10만명 → ('18년) 12만명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개인·가족 상담, 1:1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07년) 38개소 → ('14년) 214개소 → ('15년~'17년) 217개소 → ('18년~) 218개소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강화, 찾아가는 자녀생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자녀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프로그램 이용자 : ('17년) 57,938명 → ('18년) 96,321명

* 찾아가는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대상 : (이전) 만12세 이하 아동→(개선) 초등학교 재학 중 아동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정착 안정화)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경제·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 안정화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결혼이민자 대상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립 및 취업 지원

* 자립지원 20,443건('20.10월, 연인원),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 : 3,567명('20.10월)

– 자녀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적응·정서지원 및 이중언어 인재 발굴·지원을 위한 이중언어 인재DB 확대

* 자녀성장 73,173건('20.10월, 연인원) , 이중언어인재 DB : ('19) 1,000명 → ('20) 1,211명

– 방문교육지도사 원격학습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및 돌봄 공백 지원

* 방문교육지도사 이용자수 : 406,481명('20.10월, 연인원)

* 다문화 가정 자녀 94% "한국에 살아서 자랑스럽다"···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20.8.14, EBS)

	○ (위기문제 해소) 결혼이민자 대상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체류불안 등 복합적 위기 해소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복합적 가정 내 문제, 코로나19 관련 상담 진행 * 상담건수 '19년 134,849건→'20년 141,487건, 3자통화 4,790건→29,801건 ○ (인권보호) 결혼이민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귀환여성과 한국국적 자녀의 방문상담, 한국어교육 및 학업을 지원하고,한국 국적 자녀의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추진(법무부 · 외교부) –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성차별적 광고행위 규제 및 중개업자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광고 일제점검을 신규 추진하여 피해 예방 강화 *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결혼중개업 사업장 표시 · 광고 시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게재 금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정보소외와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19 안내문 번역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포함 요청,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마스크 반출 지원, 방문교육지도사의 원격학습 지원 등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으로 총괄기능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 이주민 강사 양성('20년 신규), 다이음사업('20년 신규)*, 다문화가족 교류 · 소통공간 운영(80개소)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친화활동가로 양성하여 학교 등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누리콜센터 · 경찰 간 핫라인 구축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정착단계별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운영 등으로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추진 ○ 불법 결혼중개 · 인권침해 실태 감시와 예방 강화를 위한 국외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강화 및 국내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218	Ⅵ-5-(2)-⑥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

주요내용

○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농촌문화 및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우리 농업·농촌 및 가족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교육 실시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1,666	1,333	△333	△2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 운영
-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정착 지원 및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 (교육인원) ('18) 1,059명 → ('19) 1,569명
- 교육생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실시
- 사업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1박2일)
- 연말 지역별로 교육생-교육기관-가족 참여 간담회를 통해 교육성과보고 및 교육소감 공유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 다문화가족의 가족 간 이해도 증진 및 역량강화, 농촌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실시

* (교육인원) ('18) 1,008명 → ('19) 1,003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사업 운영(1,798명)
- 정착단계 및 영농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운영('19)

* ('19) 기초농업교육 단일과정 → ('20) 단계별(기초-심화)로 구분하여 운영
- 필수교육과정으로 농업정책, 성평등교육, SNS활용 교육을 지정하여 운영
-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실시('20.10.)를 통해 우수 결혼이민여성 발굴 및 시상

* 3개부문(우수농업, 사회활동, SNS활용)으로 구분하여 총 9명 시상
- 교육기관별 소규모 연말간담회를 통해 교육성과 공유 및 마을주민간 소통확대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 13회 교육실시, 1,277명 수료(계획 980명) – 청소년과정을 확대하여 운영, 농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교육 실시 * ('19) 청소년 과정 1기 → ('20) 청소년 과정 2기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현장에서 소규모 집합교육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기존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 정착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지원 –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실시를 통해 우수 교육생 선발 및 시상 – 교육멘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 멘토교육 및 멘토-멘티 간담회 실시 – 교육성과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 (현장과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 집합교육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하여 상담 및 가족역량강화 교육운영 – (청소년캠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차세대 미래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캠프 확대 운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농업교육에 차질, 비대면 교육컨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 – 교육생 수준 및 교육내용에 맞는 교육교재 개발 필요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2박3일 장기간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교육운영에 대한 사전준비 및 컨텐츠 개발 필요

향후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별 과정의 교육내용 조정 ○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및 배포를 통해 비대면 교육지원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요구를 반영하여 단계별 농업교육 교재 개편 추진 ○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및 연말 워크숍을 통해 우수 교육생의 교류기회 확대

219	Ⅵ-5-(2)-⑦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주요내용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귀국지원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141	146	5	3.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외국인 지원시설(1개소) 운영을 통한 긴급보호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19년 지원실적) 의료 102건, 법률 155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24건, 귀국지원 37건
- ('19년 지원성과) 취업 31명

'20년 이행실적 (1.1.~12.31.)

○ 외국인 지원시설(1개소) 운영을 통한 긴급보호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지원실적) 의료89건, 법률211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66건, 귀국지원 7건
- (지원성과) 취업 29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특성에 맞는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수요에 맞는 입소정원 및 종사자 증원 필요

향후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외국인지원시설 지속 운영 및 내실화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숙식 제공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법률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여성 자활참여자지원사업(공동작업장, 인턴십프로그램) 지원

220	Ⅵ-5-(2)-⑧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권익보호과

과제목표

○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기여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주요내용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상담,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
○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86,199	92,526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4,994	5,053	59	1.2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6,200	6,410	210	3.4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운영지원)	4,370	4,553	183	4.2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비)	1,266	1,291	25	2.0
(북한이탈여성지원)	117	117	-	-
(이주여성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홍보)	35	35	-	-
(폭력피해이주여성 종사자 교육)	76	76	-	-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운영)	336	338	2	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2018년〉
○ 이주여성쉼터(2개소) 신설
○ 전국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교육(56명, 1박2일)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94.7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77천건)

<2019년>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 인천, 충북, 제주, 전남, 대구)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설(1인당 500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보수교육 실시(96명, 1박2일)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93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상담 10천건, 보호지원 75천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7개소 운영(중앙1개소, 지역6개소)
- 365일, 24시간(중앙) 13개 언어로 긴급 및 위기지원 상담, 한국생활정보 제공, 갈등해결 상담 및 통역, 3자 통화 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제공 및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 및 의료, 법률, 검찰, 경찰 등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활동

'20년 이행실적 (1.1.~12.3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4개소 – 충남, 전북, 서울, 강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보수교육 실시(148명, 1일) – 종사자 및 시설장의 윤리와 자세,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 교육, 이주민 인권 보호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 조사 실시(94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상담 17천건, 보호지원 80천건)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복합적 가정 내 문제, 코로나19 관련 상담 진행 * 상담건수 '19년 134,849건→'20년 141,487건, 3자통화 4,790건→29,80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 시설 인프라 확대 ○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회복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기여 ○ 다누리콜센터-경찰서 간 협조체계 구축, 전담 경찰관에 연락하여 폭력 관련 상황 공조 및 수사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관계기관 실무자 인권감수성 향상 및 촘촘한 지원망 연계 기반 강화 ○ 다누리콜센터 운영을 통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서비스 지원 강화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221	Ⅵ-5-(2)-⑨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다양한 문화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및 문화다양성 확산			
주요내용	○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지역주민 간 교류지원,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 이주민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발굴·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강화 ○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공모를 통한 지역 문화재단 선정 및 지원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기관 – 추진절차: 지역문화기관 대상 공모·선정 → 사업 수행 → 종합평가 – 지역문화기관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등 교류 네트워크 구축, 주요활동 축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3,013	3,553	540	17.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 **('18년 성과)** △전국 27개 기관 참여, 258개 프로그램 운영, 249,918명 참여 △참여자 만족도 85.4점,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14.8% 상승(참여 전 68.9점 → 참여 후 79.0점)
– **('19년 성과)** △전국 26개 기관 참여, 224개 프로그램 운영, 297,724명 참여 △참여자 만족도 84.9점,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15.2% 상승(참여 전 68.3점 → 참여 후 78.7점)

'20년 이행 실적 (1.1.~12.31.)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 **('20년 성과)** △전국 26개 기관 참여, 231개 프로그램 운영, 83,324명 참여 △참여자 만족도 82.4점,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13.1% 상승(참여 전 67.4점 → 참여 후 76.2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문화기관의 안정적인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사업 3년 연속 지원으로 개선함에 따라 각 지역문화기관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문화주체 특성에 맞는 문화다양성 사업 기획·운영하여 지역민 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전국 26개 내외 지역에서만 사업 추진 중으로 향후 전국적 확대 통해 사회 저변에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도모 필요

향후 추진 계획

○ 사업지원체계 개선(3년 다년도 지원) 및 컨설팅·평가 강화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추진지역 확대로 문화다양성 인식의 지역사회 내 확산 가속화 도모

223	Ⅵ-5-(2)-⑪	외국인 입국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출입국심사과
	과제목표	○ 외국인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요내용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금지 특별해제 기준 완화 방안 마련 – 중요 법익 침해 사범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년 ~ '19년 주요 이행 실적

○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 마련 및 입국규제 유예·해제 사유 확대
–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 1년 부과
– 위명여권 사용 종료시점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입국금지 면제
– 신원불일치자 규제자 중 만 65세 이상, 입국금지 기간 3년 경과된 자 등에 대해 입국금지 해제
– 현재 "국내에 국민인 직계가족"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금지 특별해제를 직계가족이 없더라도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특별해제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
○ 중요 법익 침해 사범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제
– 현재 성범죄, 마약사범 등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있으면 영구 입국금지
– 처분 및 판결의 경중에 따라 차등 입국규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3년), 벌금형(5년), 금고 이상의 형(영구)

'20년 이행 실적

○ 외국국적동포 신원불일치자, 장기(규제기간 5년이상) 입국규제자 대상 규제 완화 정책 적극 실시
– 재외공관 자진신고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공문 실시
– 입국 단계에서 적발되던 신원불일치자가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조사·처리 완료 후 입국함으로써 입국 심사 시간 단축, 편의성 증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국적동포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규제 면제 정책 및 일정규제기간 경과에 따른 특별해제 적극 검토를 통한 동포 입국기회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국적동포 신원불일치자, 장기(규제기간 5년 이상) 입국규제자 대상 규제 완화 정책 지속 운영 및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24 Ⅵ-5-(3)-①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과제목표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국가정황 자문조직 운영			
주요내용	○ 난민심사 인력 및 조직 확충,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보 및 국가별 박해정황 조사 · 연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난민심사 역량 강화	55.6	55.6	-	-
(난민심사관 교육)	9	9	-	-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	6.6	-	-
(난민통역 평가)	40	40	-	-
■ 난민통역인증제 등 위탁	-	158	-	-
(난민통역 인증제)	-	79.6	-	-
(난민통역인 교육)	-	78.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년 난민전담 인력 8명 증원 및 '19년 36명(일반직 16, 전문임기제 20) 증원 확정
○ 국가정황정보팀 구성(시범운영, '18.1.) 및 국가정황 이슈페이퍼 발간('18. 9.)
○ UNHCR과 공동 교육프로그램(면접기법, 해외사례 및 국가정황 등) 개발 및 난민담당자 주제별 심화 교육 실시('18년 6회, '19년 7회)
○ 23개 언어 173명 난민전문통역인 재(신규)위촉('18. 3.)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기간(3년) 중 보수교육 1회 이상 의무화('18. 1.)
○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방안 연구」 용역 실시('19. 9)
※ 난민전문통역인 및 난민통역인 통역능력 평가시험 실시('19.7., '19.8.) 후 집합 보수교육 실시('19.12)

'20년 이행실적 (1.1.~12.31.)

○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 UNHCR,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난민심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20년 5회, 155명)
- 「난민소송 주요 판례집」('20. 6.), 신규 난민전담공무원용 난민심사 교육자료('20. 12.) 발간

○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정비
- '20. 상반기 21명(16개 언어), 하반기 11명(7개 언어) 난민전문통역인 추가 위촉
- 난민(전문)통역인 65명 대상으로 2회 보수교육 실시('20. 7., '20. 11.)

○ 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20. 2.)
- 분과위원회(3개→4개)를 확대하고, 아시아분과에 속해 있는 파키스탄을 중동분과로 조정함으로써 분과별 업무 불균형 해소

	– 4개 분과위원장 전원을 위촉직(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위원 역할 및 독립성 강화 ○ 대학교수, 연구원 등 난민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축 및 운영('20. 6.) ○ 이의신청 절차 비대면 운영을 위한 규정(난민법 시행령 및 훈령) 정비('20. 12.) – 영상회의 방식의 난민위원회 개최 근거 규정 신설 – 영상회의를 통한 이의신청인 의견 진술 근거 규정 신설

결과분석	**추진성과**	○ 난민법령 등 제도 개선, 난민소송 주요 판례집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용 자료 · 국가정황 이슈페이퍼 발간 등을 통해 난민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면접 기법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신뢰성 보장 – 신규 난민전문통역인 선발, 통역인 보수교육 등을 통해 난민전문통역의 대외 신뢰도 제고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난민신청자의 국적 및 언어 지원 수요가 점차 다양해져 소수언어 등 유능한 통역인 인재풀 확보 및 난민통역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향후추진계획	○ 현행 난민심사 제도의 공정성 · 합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지속 추진 ○ 난민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한 이의심사 기회 보장으로 난민 불복절차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기능 강화

225 Ⅵ-5-(3)-②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난민정책과
과제목표	○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인식 개선			
주요내용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소 계)	475	533	58	12.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	57	57	–	–
(난민교육비)	174	232	58	33.3
(난민신청자 구호 및 교정비)	244	24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허가 기준 정비('18. 9.)
– 안정적 국내정착 유도를 위한 기본소양* 요건 및 소득** 요건 정비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등 기본소양 평가
**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 합산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
–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영주 자격 신청 서류 목록 정비
○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을 통해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 지속(연중)
– UNHCR과 난민의 날 기념 포럼 개최('18. 6.)
–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범실시('18. 5. ~ 11.)
–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과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19. 6.)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한국어 수업 등 정착 지원(연중)
※ 지원센터 일평균 입주 인원 : '18년 66명, '19년 37명
○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 난민인정자를 위한 한국생활 안내책자 발간('19. 7.)
– 지역사회에 정착한 재정착난민에 대한 정기 멘토링 실시(연중)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특별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총 43명)이 재정착난민 34가족(132명)을 직접 방문

'20년 이행실적 (1.1.~12.31.)	○ 난민 등의 처우 개선 정책 실시 – 임산부, 영유아 양육자, 고령자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난민 등에 대한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지시('20. 4.) –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연구'('20. 7.)를 통해 현행 인도적 체류자 처우 정책 개선방향 설정 ○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 –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및 시·군·구 외국인복지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현행 난민제도 이해도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난민정책 설명회' 개최('20. 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자체 등 국내외 관련 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통한 난민지원 체계 구축 및 난민인식 개선 노력 지속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강화 – 재정착난민 대상으로 기초법 질서·금융경제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

226	Ⅵ-5-(4)-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개선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정비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관련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취약계층 탈북민 지원 등 관련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임시보호조치 구체화 및 임시보호시설 근거 마련 △보호결정 제외 요건 완화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주거 지원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 완화 △거주지 신변보호제도 내용 명확화('19.1 시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기간을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일정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탈북민에게도 주거지원 규정(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경우 등) △국가정보원장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운영규정을 법에 마련 △신변보호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이 가능('19.7 시행)

○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등 관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 거주지 정착 이후 하나재단에 정착금 신청 근거 마련('18.12 시행)
-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에 탈북민 밀집 지역인 서울·인천·경기 포함('18.2 시행)
-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의 조사 내용, 방법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신변보호 방법 관련 등('19.7 시행)

'20년 이행실적 (1.1.~12.31.)

○ **(탈북민 보호범위 확대)** 10년 이상 해외거주 탈북민을 비보호 할 수 있는 법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탈북민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제1항제4호(탈북민이 10년 이상 체류국에 생활근거지를 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

- 해외 장기체류를 비보호 사유에서 삭제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어 탈북민 보호 확대에 기여

* 장기체류자가 보호결정 된 경우 예외적 보호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착기본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중이며, 현재 정착금 감액 대상자 대부분이 장기체류자

* 입국자 중 장기체류자 비율 : △'18년 29%, △'19년 35%, △'20년 29%

* △'20년 정착금 감액 대상자 중 장기체류자가 99%(118명/119명), △1인 세대 기준 10% 감액 시 80만원 감액

⇒ 이상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1.19), 국무회의 의결(12.1), 공포(12.8)

	○ **(지자체 책무 규정 법 신설)**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다수의 탈북민 정착과 적응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현실 및 역할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의 규정을 법에 신설 – 향후 지자체의 권한, 역할 확대를 통해 거주지에서의 탈북민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탈북민 기본교육 과정 법률로 상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과정을 법률로 상향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 – 우리 사회 이해 증진 뿐 아니라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 교육 실시를 법으로 규정하여 안정적 교육 운영, 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 – 교육 과정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 ○ **(신변보호를 위한 주거 지원)**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탈북민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교육, 현장 실습, 창업 상담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탈북민 창업 지원 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의 창업 희망 실현을 지원 ⇒ **이상 4건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2.9), 국무회의 의결(12.29), 공포('21.1.5)** ○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통일부 지침 개정 – 최초 약정기간(2년)이 지난 이후에는 연장을 통한 연 단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기 불입된 정부 지원금 지급으로 변경

결과분석		
	추진성과	○ 5건의 법률 개정, 1건의 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 관련 미비점 지속 개선 노력

향후추진계획	
	○ △탈북민 보호범위 확대 △지자체 책무 규정 △탈북민 기본교육 과정 법률로 상향 △신변보호를 위한 주거 지원 △탈북민 창업 지원 법률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227 Ⅵ-5-(4)-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일자리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사항인 만큼, 일자리 창출로 탈북민의 자립 · 자활 지원을 통해 탈북민 삶의 질을 개선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관련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직업역량 강화 및 탈북민 적합 일자리 지속 발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취업지원센터' 운영, 기업 및 탈북민 선호 취업업종에 대한 직업심화 교육과정 확대(요양보호사, 미용기능사,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등 교육) 등
- △탈북민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대한치과협회, 중견기업 협업), △단기연수 등 일자리창출사업 수행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내실화 및 대상별 맞춤형 자립 · 자활 정착경로 지원
- 탈북민을 위한 직업교육관 착공('19.1), 취업보호담당관 확대 지정, 취업 교육·상담·사후관리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영농교육을 통한 영농정착, 탈북민 생산품 국회전시회 개최 등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확대로 탈북민 자산형성을 지원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증가(*월별 평균가입자수 : '17년 32명→ '18년 38명→ '19년 43명)
- 미래행복 통장 가입대상자 대상 채무, 자산 및 신용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교육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창업지원)** 경영개선자금 · 창업교육 · 판로지원 등 기창업자 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자 사업화 지원, 1:1 컨설팅 전문가 지원단 운영 등

구분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자원	홍보관 운영 및 판로지원	신규창업지원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
			매칭 적금	생활 밀착형	아산 상회	창업 사업화		
창업지원 실적(명)	251	21	4	4	3	9	156회	272

* 탈북청년 창업육성 : (아산)글로벌창업교육-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지원, (재단)탈북민 창업시 재정지원(최대 1,500만원) ('20년 : 9명 수료, 6명 진행)

* 탈북민 생산품 판로지원 : 남북통합문화센터 내 탈북민 생산품 홍보관 '이음상회' 운영(21개 업체 73개 제품 전시중)

○ **(취업지원)** 진로설계, 구인 · 구직 등록, 동행면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	알선	동행면접	대면상담	전화상담
취업지원 실적(건)	1,960	2,348	1,402	2,134	528	6,779	16,969

○ **(교육 · 훈련)** 탈북민 직업교육관 개관(6월) 등을 통해 생애설계 프로그램 운영, 하나원 기초 직업적응 훈련(329명) 실시 등 직업역량 강화 · 지원

* 생애설계 프로그램 : 주요 4大 분야(취업 · 재무 · 가족 · 진학)를 「교육→설계→컨설팅→종합」방식으로 진행, '17년부터 총 48회 2,511명의 하나원 교육생 대상 생애설계 지원

*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연수사업(109개 기업, 150명)

제조업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기술업	단순노무	합계
52명	27명	26명	19명	18명	6명	2명	150명

* 기초직업교육 : △바우처 290명 △온라인 224명 △정보화 112명
* 심화직업교육 : 회계실무 · 소형건설기계면허 · 배송전문가 과정 등 180명 교육
* 전문직양성과정 : △의료 24명 △기술 12명 △전문 10명 △교원 7명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 △영농기초교육(22명) △영농심화교육(21명) △운영비 지원(65명) 영농종사자 생산품 홍보 지원(15명) △영농조합설립 지원(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지속 노력
- 직업교육관 건립, 취업보호담당관 확대 등으로 탈북민 자립 · 자활능력 제고 및 영농정착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증가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박적으로 일자리 감소

향후추진계획

○ 탈북민 자립자활 사업의 효과 제고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및 교육 강화 노력 지속

228	Ⅵ-5-(4)-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주요내용	○ 거주지 초기 정착지원 강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6,635	6,825	190	2.9

추진상황 :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경기서북부와 경기중부 지역적응센터를 추가 개소,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 노력 지속,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포함 등 교육내용 내실화

○ 탈북민 인식개선 영상 콘텐츠 제작, 정착성공사례 소개 등 동포사랑 책자 발간, 남북한주민 어울림 한마당행사 개최, 남북청소년 체험캠프 운영 등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추진

○ 유관부처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공동대책' 수립 및 추진(9.2), 탈북민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확대하고, 복지부 · 여가부 상담체계와 연계 등 탈북민 취약계층 정착지원 강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기초생활수급내역 등의 32종 복지 정보를 정착지원시스템(하나넷)과 연계, 탈북민 보호 · 지원 활용(12월)

○ 남북통합문화센터 '20년 5월 개관, 센터 내 상담실, 심리치유실 등 마련, 문화 · 소통 프로그램 운영

○ 경기서부하나센터 운영기관 재지정('20.7월)

○ 하나재단 탈북민 상담전화와 복지부 · 여가부 상담전화 등 연계, 24시간 상담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도 하나센터 근무경력만으로 사회복지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개정

○ 탈북모자 사망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20.4~6월), 위기의심자 총 829명을 발굴 및 지원

○ 10년 이상 해외거주 탈북민 비보호 법 근거 규정 삭제, 탈북민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12월)

○ 하나센터 위촉변호사 제도 운영, 25개 하나센터에 66명 활동, 상담 및 법률교육 서비스 제공

○ 탈북민 지원변호인 심화제도 시범운영, 수도권 11개센터에서 1:1법률상담 개시('20.7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등 예산 확대(2.9%), 사회복지사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 ○ (사각지대 최소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보건복지「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 및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전수조사 실시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탈북민의 지역적응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의 책임·역할 강화 추진 ○ 탈북민 취약계층, 위기대상자 발굴 강화 및 통합지원 등 추진

229	Ⅵ-5-(4)-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가정보원	과·팀명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보호관 면담 확대 등 법률적 조력 강화 ○ 조사실 환경 및 외부가족 면회 공간 등 개선 ○ 탈북민 심신 함양 및 취미 활용 공간 신설			
관련예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공개 불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년 이행실적 (1.1.~12.31.)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보호관 면담 확대 등 법률적 조력 강화
– 인권보호관의 입소 북한이탈주민 전원 대상 면담을 시행하며 면담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담 내용을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확인·서명 하는 '상담확인서'를 도입
○ 북한이탈주민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실 및 면회실 환경 개선
– 북한이탈주민 성향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밝은 톤의 사무용품으로 교체 및 조사실 벽면도 천연목재형으로 개선하고 국내 입국 친인척의 면회공간도 기존 접견형 폐쇄공간에서 개방형 면회공간으로 확대하며 리모델링 완료
○ 탈북민 심신 함양 및 취미·재능 활용 공간 신설
– 북한이탈주민의 단체생활에서 오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사회배출 후 취미·재능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실 및 음악실을 신설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보호관 전수면담제 시행으로 기존 건의함 등 신청에 의한 상담시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관 법률적, 개인적 상담 사례가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 ○ 북한이탈주민의 조사에 앞서 심리적 위축·긴장 및 외부가족 면회 공간 협소 등에 대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조사실 및 외부가족 면회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심리적 안정 등에 기여 ○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등을 고려,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컴퓨터교육실 및 음악실을 신설하여 개인적 취미생활 활성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보호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및 강화는 지속 개선되는 점을 고려시 인권보호관과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간 소통기회는 다소 부족

향후추진계획

○ 직원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보호관과 보호센터 직원간 토론식 간담회 등 소통 기회 확대 추진

230-1	Ⅵ-5-(4)-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제고			
주요내용	○ 탈북청소년 부적응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비학교 및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 일반학교 중도탈락률 높은 점 고려,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방점(통일전담교육사 등) -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 겪는 탈북청소년 지속증가에 대응, 특성화 · 대안학교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4,459	4,370	△89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정규학교 진학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지원 강화, 탈북청소년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남북하나재단 통해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방과 후 공부방 및 화상영어교육 지원

○ 탈북대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지속, 예비대학 과정 확대('18년 6개, '19년 8개)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이중 언어 강사 배치 확대,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 2019년 탈북청소년 박람회 및 상담주간 운영, 대입전형 상담 및 안내

'20년 이행실적 (1.1.~12.31.)

○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대안학교 운영지원 강화
-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2,110백만원, 인가 3개 학교(여명, 하늘꿈, 드림) 2,349백만원 지원

○ 일반학교 재학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초 · 중 27개교, 22명 배치), 방문학습지(월평균 1,089명)·화상영어교육(월평균 115명) 지원

○ 탈북대학생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지속, 디딤돌대학 과정 확대('18년 6개→'20년 8개)

○ 탈북청소년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호주 어학연수, 영국연수(HUG), 한미취업연수(WEST), 풀브라이트 대학원 프로그램 등

○ 제3국 출생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강사 배치, 맞춤형 교육교재 등 교육지원 강화 및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18년 10명/25백만원 → '20년 39명/76백만원)

○ 탈북대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지속, 디딤돌대학 과정 운영('8개 대학)

○ 탈북청소년 보호·교육시설 지속 지원 △방과후공부방(14개), △대안교육시설(7개), △그룹홈(13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부, 남북하나재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조를 통해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자녀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함 ○ 탈북청소년 대다수는 일반 학교에 재학, 대안학교 ·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등을 통해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탈북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학 정원내 특례입학, 교육비지원에 차이가 있음 ○ 제3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대학입학은 정원외 특례입학이 가능하나, '20년 현재 4개 대학이 허용하고 있음. 홍보 협력을 통해 특례입학 허용대학 확대가 필요함. 또한 국내정착 지원 및 교육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범위 확대 노력 필요

향후추진계획	○ 탈북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디딤돌대학 과정 확대 운영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지원 관련, 특례입학 대학 확대 추진 및 교육 지원책 강화 ○ 무연고청소년 등 탈북청소년 국내적응 및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30-2 Ⅵ-5-(4)-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육기회보장과
과제목표	○ 탈북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육성			
주요내용	○ 학습, 언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학교·교원 교육력 제고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관련예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탈북학생 교육지원	3,118	3,118	-	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입국 초기 학교적응 교육
- 하나원 탈북학생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교육(매월 2회, 연 24회)
- 탈북학생 초기정착 매뉴얼 개발·보급('18.2)
- 탈북학생 예비학교(하나둘학교) 유·초·중등 교사 파견(13명) 및 유·초등 위탁교육(삼죽초 특별학급 3학급) 운영(연중)
-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학습 자료 개발보급('19.12.)

○ 탈북학생의 실질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 인문·과학·수학, 예술·체육, 직업 분야 학생-전문가 결연 프로그램(HOPE) 운영('18년 22팀, '19년 25팀)
- 탈북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운영을 통해 개별화된 진로진학 상담 지원

※ ('19년 신규사업) 8개 시도교육청, 32개교, 46명 대상 맞춤형 상담 지원

○ 맞춤형 교육지원
- '18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18.3.~'19.2., 10교) 및 보고회 개최('18.10.15, 11.29~30))
- 학교 및 교육청의 탈북학생 이해 제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19.4) / 교사 직무연수('19.7.)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19.8.) / 탈북학생 교육지원 전략과정 연수('19.11.)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연중, 1,500명) 및 성장 멘토링(VASI) 운영(연중, 25팀)
- 2018년 제9회, 2019년 제10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 탈북학생 담당(담임)교사의 교육활동 상시 지원을 위한 지도교사용 매뉴얼 등 보급

멘토링 매뉴얼

지도교사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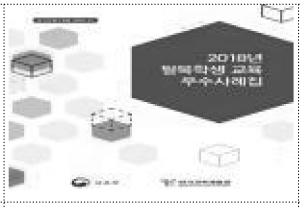

교육 우수사례집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센터 홈페이지

'20년 이행실적 (1.1.~12.31.)

○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교과학습, 생활지도, 체험활동, 진로·진학, 재능계발 등 탈북학생의 조속한 적응과 성장을 위한 학생 밀착형 멘토링 운영
※ 1:1멘토링(1,500여명),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37팀)
– 심리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사 배치(2명) 및 정착지 심리상담(학생·가족 55명, 650회) 실시
※ 전국 단위 심리상담 지역 협력기관(청소년상담센터, 여가부), 지역 하나센터 등과 연계한 학생 및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 입국초기·전환기·정착기별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입국초기) 하나둘학교 학생·학부모 진로교육 / (전환기) 한겨레중·고 직업교육 프로그램(10개) / (정착기) 진로교육 프로그램(10개 교육청), 찾아가는 진로상담단(31교)
○ 교원 및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지원
– 멘토링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보급, 교원·관리자 원격연수, 웹사이트 운영, 한국어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탈북학생 담당(담임)교사의 교육활동 상시 지원

멘토링, 지도교사 매뉴얼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원격연수 (관리자 대상)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원격연수 (교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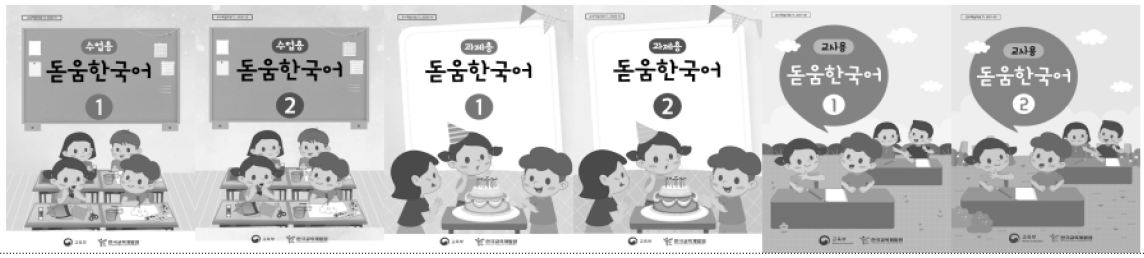

탈북학생 입국초기 한국어교육 자료 6종(수업용 2종, 과제용 2종, 지도서 2종)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하나원(하나둘학교) 정규 교사 파견(13명, 시도교육청 협업) 및 남북하나재단 통일전담 교육사(22명, 통일부 협업) 학교 배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학생 개개인의 학습 및 심리·진로상담 지원을 통한 학업 중단률 감소 ※ ('08년) 10.8% → ('19년) 3.0% → ('20년) 2.9%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 지속 증가*로 개별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필요 * ('17년) 56.6% → ('18년) 60.3% → ('19년) 61.2% → ('20년) 62.8% ○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체험활동 등 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비대면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필요 ※ 맞춤형 멘토링 학생 만족도(%) 다소 하락 : ('19년) 88.8 → ('20년) 88.1%

향후추진계획

○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학업 및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 하나원 재원기간(3개월)에 맞춘 한국어 교육 자료(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돋움한국어 활용 매뉴얼), 수업 활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보급
○ 멘토링 담당교원 전체 대상, 시·도별 '찾아가는 멘토링 연수'를 통해 탈북학생 이해 및 지도역량 제고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없는 맞춤형 멘토링이 제공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우수사례, 방법 등을 담은 연수 영상콘텐츠 신규 제공

Ⅶ.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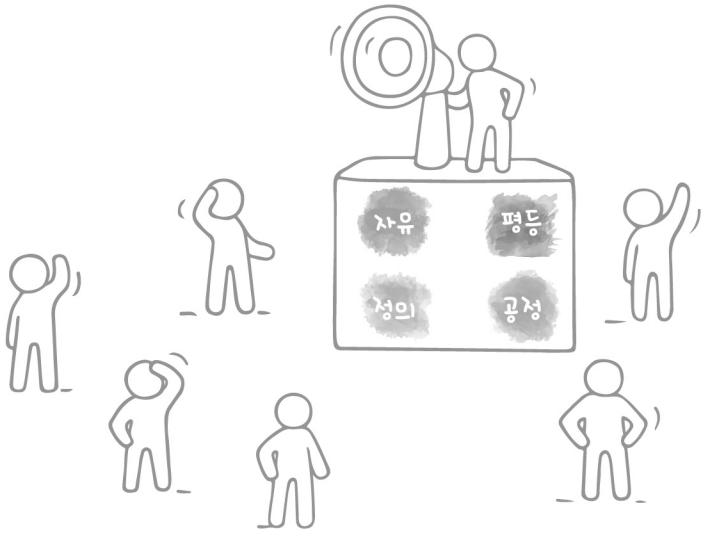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32	1	30	–	1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14	–	13	–	1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18	1	17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231	Ⅶ-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 비준	정상추진
232	Ⅶ-1-(1)-②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정상추진
233	Ⅶ-1-(1)-③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정상추진
234	Ⅶ-1-(1)-④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정상추진
235	Ⅶ-1-(1)-⑤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기타
236	Ⅶ-1-(1)-⑥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정상추진
237	Ⅶ-1-(2)-①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정상추진
238	Ⅶ-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정상추진
239	Ⅶ-1-(2)-③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정상추진
240	Ⅶ-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상추진
241	Ⅶ-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정상추진
242	Ⅶ-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정상추진
243	Ⅶ-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정상추진
244	Ⅶ-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245	Ⅶ-2-(1)-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정상추진
246	Ⅶ-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정상추진
247	Ⅶ-2-(2)-①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정상추진
248	Ⅶ-2-(2)-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정상추진
249	Ⅶ-2-(2)-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정상추진
250	Ⅶ-2-(2)-④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과제완료('20)**
251	Ⅶ-2-(2)-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상추진
252	Ⅶ-2-(3)-①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정상추진
253	Ⅶ-2-(3)-②	국가 · 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정상추진
254	Ⅶ-2-(3)-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정상추진
255	Ⅶ-2-(3)-④	군 장병 인권교육	정상추진
256	Ⅶ-2-(3)-⑤	변호사 인권교육	정상추진
257	Ⅶ-2-(3)-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정상추진
258	Ⅶ-2-(3)-⑦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정상추진
259	Ⅶ-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정상추진
260	Ⅶ-2-(5)-①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정상추진
261	Ⅶ-2-(5)-②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정상추진
262	Ⅶ-2-(5)-③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정상추진

* 해당과제 소관부처에서 '19년 이행상황 제출시 "과제완료"로 제출하였지만, '20년도 제출시 "정상추진"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여 정상추진 과제로 판단

과제별 이행상황

231 | Ⅶ-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비준			
주요내용	○ 「강제실종방지협약」 등에 대한 비준 가능성 연구 및 검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제인권 역량강화	133	156	23	17.3
(국제인권 유관기관 공청회 · 간담회)	6	3	3	△5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해당없음

'19년 이행실적

○ 강제실종방지협약과 국내법 사이의 상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 이행입법 및 비준 절차에 대한 민간 전문가 자문
- '19. 8. 백태웅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 면담
- '19. 12. 강제실종협약 전문가 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주최)

○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역본 감수

'20년 이행실적

○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국 33개국을 대상으로 국내 이행입법 및 위원회 권고 분석 ('20. 9. 완료)

○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발족 ('20. 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형사법적 성격을 띤 조약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준수를 위해 국내법의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구체적 내용 검토 ○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발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개시되지 않음

향후추진계획

○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통해 국내법 정비방안 마련 (21년 연중)

○ 국내법 정비 문제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회 비준이 늦춰지더라도, 강제실종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할 수 있도록 협약 "서명" 추진 검토 (21년 연중)

232	Ⅶ-1-(1)-②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
	과제목표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협력			
	주요내용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협약) 비준 추진 – (결사의 자유 협약) 사회적 대화,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행 법제와 국제노동기준 간 비교·검토, 국내법 개정 및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추진 – (강제노동 협약)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국내 법·제도와 협약 간 상충 부분 검토, 국내법 개정 및 강제노동 협약 비준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사회적 대화 진행) 경사노委 내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방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진행('18.7.~'19.5.) – 노사 이견 差로 노사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노사정이 추천한 공익위원간 합의로 2차례 공익위원안 도출('18.11, '19.4.) ○ (관계부처 협의)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쟁점별 국내법·제도 개선 내용, 수준 등 협의 진행('19.6~8월 중 총 5차례)* * 고용부, 외교부, 국방부, 병무청 등 ○ (정부입법 추진)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 토대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안(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19.10.4.) – 관계부처(국방부, 병무청 등) 협의하 강제노동 협약 관련 법 개정안(병역법)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19.12.6.)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국회 안건 再제출) '19년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5.29.) – 이에 대비, 비준동의안 및 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안건으로 신속하게 재제출(노동3법 개정안 6.30, 병역법 개정안 7.2, 비준동의안 7.14) ○ (국회 논의 지원)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對국회 설명 진행 * 환노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실 대상 약 20여차례 설명 ○ (노동3법 개정 완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3법 개정안(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12.9.) ○ (대국민 공감대 형성)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 및 노동3법, 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 리플렛 등 배포,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법 개정안 제21대 국회 신속 재제출 및 국회 논의 활성화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병역법 개정 지속 추진 필요

향후추진계획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병역법 개정 지속 추진(對국회 설명 등 지속) ○ ILO 핵심협약 비준 성과에 대한 국내외 적극 홍보

233	Ⅶ-1-(1)-③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를 통한 인권 보호 · 증진			
	주요내용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가족의 성에 대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에 대한 유보철회 추진			
	관련예산	○ 비예산 사업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민법 제781조 개정 후 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철회 검토 * 민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사항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 철회를 위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17.12월~'18.2월) 의견조회 결과 법무부에서 '해석선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타부처는 이견 없었음 *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제16조 제1항 (g)호가 부모 어느 일방의 성을 자녀가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 이후, 제8차 심의 최종견해 47번에서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부계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협약 제16조 제1항 (g)호를 유보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민법 개정 상황에 따라 유보철회 검토
'20년 이행실적 (1.1.~12.31.)	○ 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철회 여부 및 관련 절차 등 검토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민법 제781조 개정(법무부 소관) 후 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철회 검토

234-1 | Ⅶ-1-(1)-④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노력 소개 및 국제협력 강화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케커니즘에 따른 이행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준비 – 이행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조사 대응 –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 협의 및 관계부처 면담 실시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쉽 증진	1,327	2,197	870	65.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2018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18.2월)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국가보고서 심의('18.12월)
○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방한('18.5.14-23)

[2019년]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19.3월)
○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19.9월)
○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19.7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20.9월)
○ 유엔 특별절차(특별보고관) 질의 서한 답변
– △라오스 댐 사고(7월) △성전환 군인(9월) 등 관련 우리 정부 입장 송부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노력과 활동을 소개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 ○ 다양한 관계부처의 참여로 협약위원회의 광범위한 이슈 관련 질의에 우리 정부 입장 적극 개진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정책 현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심의시 협약위원회의 권고 중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한 이행을 통해 차기 심의 준비 필요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엔 특별절차(특별보고관)의 방한 지연

향후추진계획	○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21.5월)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22.1월)

234-3 | Ⅶ-1-(1)-④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이행보고서 작성			
주요내용	○ 2019년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마련 및 제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UNCRPD등 국제협력)	66	6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병합 국가보고서」 마련 및 UN 제출('19.3.8.)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사대비 연구」 수행('19.9.30.~11.29)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방안 및 향후 과제 연구」 수행('19.10.14.~11.29)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준비('22.예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마련 및 UN제출('19.3.8.)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준비('22.예정)

236	Ⅶ-1-(1)-⑥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와 국내 인권정책 간의 연계 향상			
	주요내용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 절차 정례화 ○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 이행 관련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협의 강화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게재 ○ 개인진정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개인진정 절차에 따른 조약위원회 결정 번역·관보 게재
- 2018. 12. 4. 관보제19392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게재

○ 국가보고서 제출 전 공개 토론회를 통한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 2018. 12. 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3차 병합) 공개토론회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 추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강화를 위해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제정 추진

○ 국가인권 메커니즘 권고 이행 관련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협의 강화
- 2019년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시 대법원 관계자 동행 추진
- 2019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5차) 초안 작성에 법원행정처 참여

○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 국정과제인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
- 해외 국가 사례 연구·검토 및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의 실시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 추진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강화를 위해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제정 추진

○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 국제인권규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대응방안 마련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하여 '혐오표현 확산 및 제도적 대안' 관련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 2019.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 6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절차 등 내용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인권정책기본법」 법무부 제정안 입안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 추진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강화를 위해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제정 추진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시민사회와 협의 절차 정례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강화 – 2020. 5.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5차) 온라인 공청회 개최 – 2020. 5.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 요청 – 2019. 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5차) 문안을 심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자유권위원회의 지난 심의 권고사항 반영 상황 검토 ○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 다수 협약기구 및 특별절차 권고사항인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의 국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식 확산 사업으로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 국제인도법 국내이행 논의 참여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하여 국제인도법 국내이행 관련 논의 ○ 주한유럽연합회원국 대사 면담 통한 국제인권 현안 논의 – 장관님 초청 주한유럽연합회원국 대사 회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방안 논의 ○ 주한스위스대사관 면담 – 주한스위스대사관 일행 법무부 방문 면담하여 국제인권 현안 관련 정부 이행방안 의견 교환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상향 추진 ○ 다수 협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인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지연으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에 대한 근거 법률이 미비한 상태가 지속되어, 이행 점검 및 부처 간 협조의 정례화·체계화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절차 등 내용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하여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인권정책 반영 강화 ○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 시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 의사소통 정례화 ○ 정부 및 정부 외 기관 간 국제인권 관련 논의 장에 적극 참여 지속

237	Ⅶ-1-(2)-①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상정되는 주제별·국별 결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타 회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권고 제시
-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슈 적극 추진

주요내용

○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적극 참여
- 유엔 총회 3위원회 논의에 지속 적극 참여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실무그룹 회의, 여타 부대행사 등에 참여
- 유엔 인권협약 당사국 회의에 성실히 참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쉽 증진	1,327	2,197	870	65.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2018년]

○ 2016-18년 임기 이사국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상정된 국별·주제별 인권 결의에 적극 참여
- 우리 주도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채택('18.9월)

○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 부대행사(패널토의) 개최('18.9월)

○ 제73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 상정된 국별·주제별 인권 결의 및 논의에 적극 참여

[2019년]

○ 제40-42차 인권이사회 국별·주제별 인권논의 및 결의 채택 적극 참여
- 우리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19.7월)

○ 제74차 유엔 총회 국별·주제별 인권논의 및 결의 채택 적극 참여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일환으로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9.7월)

○ 2019년중 제32-34차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수검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 34회 시행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제43-45차 국별·주제별 인권논의 및 결의 채택 적극 참여
- 우리 주도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채택('20.10월)

○ 제75차 유엔 총회 국별·주제별 인권논의 및 결의 채택 적극 참여
- 유엔 총회 3위원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 입장을 기존의 기권에서 찬성으로 변경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일환으로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20.11월)
- 분쟁하 성폭력 문제 관련 '생존자 중심 접근법' 논의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 담론 형성에 기여

○ 2020년중 제35-37차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수검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 23회 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이사회, 총회의 각종 결의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인권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 강화 ○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이슈의 국제사회내 담론 형성 주도 ○ 분쟁하 성폭력 관련 우리 정부 주도의 '여성 · 평화 · 안보' 관련 국제 정례 논의의 장 마련 ○ UPR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관계부처의 협조하에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에서의 국제 인권 증진 논의에 지속 참여

238 Ⅶ-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지속 확대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확대
- 특히 여성, 장애인, 난민, 아동 등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106,337	133,455	27,118	25.5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262	2,499	237	10.5
(유엔난민기구)	3,732	4,122	390	10.5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	-	2,740	신규	신규
■ 인도적 지원 ODA	100,343	124,094	23,751	23.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2018년]

○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

○ OHCHR, UNHCR 등과의 고위급 교류 및 국내 인사의 인권기구 진출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20-22년 임기) 선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19-22년 임기) 선거에서 우리 인사 당선

○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 및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지속

[2019년]

○ 글로벌 난민위기 대응을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강화
- △유엔난민기구 부대표 방한(1월) 접수, △제2차 한-UNHCR 정책협의회 개최(5월, 제네바) 계기 한-UNHCR 협력 강화 방안 모색 △UNHCR에 대한 기여금 증액

○ 국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협력 강화
- △장관-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2월, 제네바) △OHCHR 국장 방한(10월) 접수 △2차관-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12월, 제네바) 계기 한-OHCHR 협력 강화 방안 모색 △OHCHR에 대한 기여금 증액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 지원
- 2020-2022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집행이사국 연임(5월), 2020-2024년 사회개발위원회(CSocD) 위원국 연임(5월), 2019-2021년 민주주의공동체(CoD) 집행위원국 연임(6월), 2020-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당선(10월)

○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 및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지속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 신규 지원(30만불)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여성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 △제64차 유엔 여성지위원회(CSW) 참석(3월)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연례 집행이사회 참석(6월) 등 ○ OHCHR, UNHCR과의 교류 · 협력 강화 – 장관–인권최고대표 면담(20.2월), 장관–난민최고대표 통화(20.4월), 한–UNHCR 정책협의회 개최(20.12월) ○ 민주주의 관련 국제 협력체와의 교류 · 협력 강화 –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지속 / 민주주의 공동체 재정 기여 지속 –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20.12월 장관, 화상회의) – 스웨덴 주관 '코로나시대의 민주주의' 웨비나 참석(20.6월, 장관, 화상회의) ○ 국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 적극 지원 – 2021–24년 임기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우리 인사 최초 진출(9월) – 2021–23년 임기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위원국 당선(4월), 2020–23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우리 인사 진출(10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회 ·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협력 기반 강화 ○ 국제 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예산 소요 및 재정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재정 기여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어려움 존재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방식의 협력 · 협의에 제한

향후추진계획	○ 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방안 지속 모색

239	Ⅶ-1-(2)-③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과·팀명	개발정책과 기획조정실
	과제목표	○ 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 환경 조성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인권 위험 관리체계 수립			
	주요내용	○ 인권 기반 국제개발협력 이행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략 수립, 사업 심사, 성과평가 등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을 주요 요소로 검토 ○ 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체계 마련 ○ 개발협력 차원의 인권 가치 논의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관련예산	○ 해당사항 미기재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 이행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국제협력단 설립목적에 인권적 요소 포함 변경(설립 28년만 최초변경)

○ 국제개발협력의 인권가치(여성, 평화 등) 내재화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 성평등 제고 및 여성과 소녀 역량강화를 위한 중기계획('19–'21) 수립 및 사업 지속 확대
– SDG16(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활동 전개

○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신규 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준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권고 이행)
– 신규 사업 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 이행 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및 이행**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3)」 수립
– (개 요)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을 위하여 유엔의 실천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인권기반접근(HRBA)을 기관차원에서 공인하고, 접근법을 사업에 내재화하기 위한 5대 실천과제 채택
* 5대 실천전략 : ▲협력국 인권상황 분석 기초한 사업 기획, ▲사업 인권위험 관리체계 구축, ▲인권기반(HRBA) 사업 실행/평가, ▲사업에서의 인권위험에 대한 구제책임 강화,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청년) 대상 인권적 접근 강화
– (2020년도 주요 실행 과제) ▲시민사회 대상 〈KOICA 인권정책 정례대화〉 프로그램 도입,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파트너 지원 컨설팅,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2건 진행

○ 〈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시행
– (수행주체) 총괄부서 ↔ 사업부서 ↔ 사업수행 파트너 공동 평가 수행
– (점검항목) UN, OECD 기준 적용 및 개발협력 특성을 고려한 항목 자체 개발 (78개 항목)
* 입지 특성, 환경, 사회 인권, 성비위/고충처리, 취약계층 권리, 안전 · 시설건축물 등
– (수행단계) 평가계획 수립 → 데이터 수집 기초선 조사 → 위험영향 분석 → 영향 관리 → 보고 및 평가
* 사업표준계약서 전면 개정으로 수행기관의 인권 존중 책임 실행력 담보 및 이해제고 컨설팅 수행

□ **파트너 대상 인권기반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해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사업파트너, 국민 교육 (1,982명 보급 및 4.25점)
– (사업수행 파트너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인권영향평가 지원 컨설팅, 개발협력과 인권 교육, 현지 사업장에서의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 (인권 K-MOOC) 국민 대상 인권, 젠더 등 개발협력에서의 범분야 이슈 이해 제고 교육 수행

	▫ **국제개발협력의 인권가치(여성, 평화 등) 내재화 및 위험관리 체계 강화 및 이행 지속** ○ 성평등 제고 및 여성과 소녀 역량강화를 위한 중기계획(19-21) 수립 및 사업 지속 확대 - 성평등 직접 목적 신규 사업 건수 전년대비 4.25배 증가(19년 4건 → 20년 17건)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성평등 사업비 비율 평균(5%)의 2.4배(12%) 수준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성주류화 반영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수립 ○ 여성인권 향상 및 젠더와 개발 확산을 위한 노력 가속화 - SDG5 'Fill the GAP 이니셔티브' 수립에 따른 사업발굴(총 12건의 직접목적사업 발굴) - SDG5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UN기구, MDB, INGO, 공여기관(8개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SDG16 평화·인권 직접목적 사업 확대 - SDG16 사업 중'평화'사업비 비중 확대(19년 22% → 20년 25%) - SDG16 사업 중'인권·정의'사업비 비중 확대(19년 0% → 20년 16%) ○ SDG16(평화, 인권, 민주주의) 관련 활동 전개 - 2020년 KOICA SDG16 인권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20.7.9) - KOICA-글로벌인권기금(Fund for Global Human Rights) Grassroots Justice Fund 조성 참여(20.7) ○ 개발협력 차원에서의 인권가치 확산 행사/봉사단 운영 지원/연구 진행 - 평창평화포럼(20.2.9-11),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20.10.7-10), 부산민주주의포럼(20.12.3-4) 등 -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47회 개발협력포럼 행사 주제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추진과 과제" 선정 및 추진(20.12.3) - KOICA-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10가지 원칙'홍보 활동 진행 - 인천전략기금(13-22) 운영(연간 약 7억 원 규모) 및 장애인 인식개선 해외봉사단(VODA) 프로그램 지원 -『장애포괄적 사업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 및 보고서 발간(20.12) ○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통한 환경·사회영향 위험관리 지속 *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에 따라, 사업 전 단계에서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사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 심사 시 반영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영향평가 실시 및 환경·사회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 - PCP 접수 사업 대상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스크리닝 실시(총 235건) - 홈페이지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메뉴 신설 통해 세이프가드 제도 관련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기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이행 ○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여성인권의 향상 가속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개별 사업 프로그램에 인권기반접근(HRBA)이 내재화 되도록 성과 프레임워크 고도화 요청

향후추진계획	
	○ 인권 분야 ODA 중기전략(21-25) 수립 및 인권분야 3대 프로그램 발굴전략 수립 ○ 사업수행자 및 직원들을 대상 개발협력에서의 성인지 관점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 실시 ○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 개정을 통해 GCF 등 국제기구 수준의 사회영향 위험관리 제도 구축 도모

240	Ⅶ-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민간협력과

과제목표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 추진
○ 기부 활성화 및 기부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
–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 구축 운영 법적 근거 신설 및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 지원 강화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규제중심에서 허용 위주로 제도 개선*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 기부금품 모집사업 확대 등 기부 활성화, 모집·사용현황 상시 공개(1365기부포털)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238	11,808	570	5.0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 확산)	270	270	0	–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2,301	2,542	241	–
(자원봉사 국제협력 활성화)	45	0	△45	-100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88	83	△5	-5.6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364	1,364	0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7,170	7,549	379	5.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
– '19. 4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유민봉의원이 새로운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 추후 재개하기로 하고 논의 생략('19.4.1.)
– '19. 8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정개특위 등 국회 사정으로 법안소위 미개최('19. 8.29., 10. 2., 11.21.)
○ 기부투명성 제고·활성화 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18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20대 국회),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기부 투명성 지원기관 시범운영('19년)
–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 명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 강화, 기부금품 모집·사용관련 사무 편의성 제고 등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365기부포털 기능개선 추진계획(안) 마련('18년), 기부시스템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ISP사업) 및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위·수탁 협의('19년)

'20년 이행실적 (1.1.~12.31.)

○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
– 2020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안 연구용역 완료(6.11.~10.9.)
–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국회 제출(12.30.)
○ 시민·모금단체 의견수렴(~'20.6, 10회)을 통해, 기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의무 강화(분기별, 30일 이상), 기부자 알권리 및 모집자의 책임성 명시,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 제공
* 각종 사전심사·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20.2) → 법제처 심사(~'20.6) → 차관·국무회의 상정('20.6) → 개정·공포('20.7)
○ 기부정보 통합공개, 모집절차 전산화 등 기부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12월) ※'21.2월 개통
–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단체(250여개) 외에도, 결산 공시대상 공익법인(10,000여개)까지 적극적으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기반 강화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18 ~’22)’수립을 통해 지역·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제도·정책기반 개선 추진 ○ 기부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20.7월) –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 강화(분기별, 30일 이상),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신설하고 모집자의 책임성 명시, 각종 서식 개선·추가로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성 제고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부금품 모금액에 대한 집행내역 정보를 연계·제공하여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기반 마련 – 현행 1365기부포털을 확대 개편,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모집등록·사용·결산까지 단계별 기부정보 통합공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법률 개정안 통과 추진 및 시행령 마련 필요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처리 지연

향후추진계획	○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여·야의원 방문 설명 등 국회 통과 추진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입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부자 알권리 강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부통합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 확대 등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241 | Ⅶ-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민간협력과
과제목표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 지원			
주요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8,030	7,790	△240	3.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7,208	6,848	△360	5.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운영 및 관리)	90	90	0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평가 및 교육)	250	250	0	-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402	402	0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생산)	80	200	120	1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214개 사업 6,902백만원 지원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교육 및 평가
- 워크숍 및 우수사례 공유 2회, 단체 역량강화 교육 4회, 사업완료 후 종합평가 1회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223개 사업 6,983백만원 지원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교육 및 평가
- 워크숍 및 우수사례 공유 2회, 중간평가 실시
- 단체 역량강화 교육 4회, 사업완료 후 종합평가 실시
- 외부회계법인 통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223개 사업 7,208백만원 지원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교육 및 평가
- 워크숍 및 우수사례 공유 2회, 중간평가 실시
- 단체 역량강화 교육 4회, 사업완료 후 종합평가 실시
- 외부회계법인 통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 회계·실무교육 마케팅 및 홍보, 성과관리 교육 등을 통한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발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 발생

향후추진계획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집행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보조금 지원 단체별 집행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교육 등 실시

242-1 Ⅶ-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법무부	과·팀명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주요내용	○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대내·외 협력 추진 ○ 북한인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 북한인권기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이를 위한 국내외 참고자료 수집, 실무 매뉴얼 마련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간 협력 및 UN 등과의 국제협력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354	337	△17	△4.8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19	766	△53	△6.5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462	462	–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03	195	△8	△3.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북한인권증진정책 수립 및 국회 보고
– 「2018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18.10) 및 「2019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19.11) 수립,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국회 보고('18.8, '19.8)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및 민·관 협력 지속
–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서울사무소 활동 지원, 국제세미나 개최('18.3, '19.12),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워크숍('18.12, 19.12) 등 추진

○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18년 899명, '19년 1,009명), 조사기록(법정 문답서) 원본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관('18년 510건, '19년 717건)
– 법무부는 통일부 이관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 기록보존소 시설 보안 개선 등 보존·관리 강화

○ 북한인권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18) 및 기능 개선('19), 북한인권실태 조사·기록 품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기반 강화

'20년 이행실적 (1.1.~12.31.)

○ 평화와 인권이 선순환하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증진정책 수립 및 국회 보고
– 「제2차(2020~2022)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4) 및 「2020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20.5),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국회 보고('20.8)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지속
– 유엔 인권이사회('20.6)·총회('20.12) 북한인권결의 채택 참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화상면담('20.7), 유엔인권서울사무소 관계자 면담('20.2, '20.9) 등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노력 – △북한인권 전문가 · 단체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20.11) △북한인권 단체 역량강화 연수회('20.11)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단체 의견수렴 및 소통 · 협력 강화 – △「2020 북한인권 알아가기」 책자 발간 · 배포('20.1) △북한인권정책 설명자료 작성 · 배포(하반기) △「북한인권증진 참고자료 및 Q&A자료」 개발('20.11) 등 ○ 내실있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심층연구 추진 –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인권 실태조사('20년 380명) 실시, 공신력 있는 조사 기록 생산, 원본은 매분기 법무부로 이관('20년 306건) – 북한주민의 △아동권 △사회권 △건강권 관련 심층 조사 · 연구 실시 ○ 법무부는 통일부 이관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보존 · 관리 – 주1회 조사 · 분석 평가회의를 통해 분석자료의 적정성 · 완결성 제고 후 보존('20년 총 411건) – 북한인권자료 보존기간 관리절차에 관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20. 10.) 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체계적인 북한인권 증진정책 수립·추진으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 ○ 유엔 등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 관련 공감대 형성 ○ 북한인권 실태 조사, 축적, 분석, 보존 · 관리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협력 제약 ○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

향후추진계획	○ 평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지속 ○ 유엔 ·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감대 형성 노력 경주 ○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추진 ○ 통일부 이관 자료(문답서)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보존 · 관리 지속 실시

242-2 Ⅶ-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대북정책협력과
과제목표	○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기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쉽 증진	1,327	2,197	870	65.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
- 제37차 · 제40차 인권이사회 및 제73차 · 제74차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컨센서스) 동참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등 북한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 입장 개진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18.7월, 19.1월, 19.6월)시 지원

○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 제7, 8차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 참석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
-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20.3월) 및 제75차 유엔 총회(3위원회 20.11월, 본회의 20.12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 컨센서스 채택 동참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등 북한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 입장 개진

○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 제9차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10.9) 참여
- 한-미 전문가회의(1.5트랙)시 우리 정부 정책 공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북한과 관련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활동에 협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북한은 UPR 및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고 있으나, 북한인권 결의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 견지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방식의 협력 · 협의에 제한

향후추진계획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
-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에 지속 참여 등

243-1 | Ⅶ-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인도협력기획과 개발협력과 이산가족과

과제목표

○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생사확인, 상봉정례화, 교류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국군포로 · 납북자 · 억류자 문제의 남북관계 차원의 해결 노력 및 국제사회 공조 강화

주요내용

○ 민간 · 국제사회와 협력, 국민적 공감대 하에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으로 상봉행사 개최 및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납북자 ·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노력 및 납북피해자 · 관련단체 지원을 통한 납북자 문제 해결 도모

관련예산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대비 증△감	전대비 %
합 계	575,054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44	422	△22	△5.0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지원	840	460	△380	△45.2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427	429	2	0.5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42	1,386	△56	△3.9
■ 구호지원	141,759	118,897	△22,862	△16.1%
■ 민생협력지원	451,092	513,092	62,000	13.7%
■ 이산가족교류지원	28,070	21,030	△7,040	△25.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민간 · 지자체 · 국제사회와 협력, 국민적 공감대 하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경주
-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18.11),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등 보건의료협력 강화
-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18.7, '18.10), 북측지역 현장방문('18.8, '18.12) 등 산림협력 추진
-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인도적 협력 실시 및 고위급 협의 실시
- 대북지원 관련 반출 · 방북승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19.10) 및 「인도협력 민 · 관 정책협의회」 개최('19.6, '19.12)
- 국제학술회의 지원 및 남북 공동참가를 통해 남북한 · 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인도협력 정책 개선 및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단체 간담회 등 민관협력 강화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으로 상봉행사 개최 및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꾸준히 제기해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18.8, 금강산)
-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합의('18.9)
- 매년 영상편지 제작(1천여편), 유전자검사(1만여건), 초청 · 위로행사(11건)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
- 명절 계기 이산가족 위로방문 및 단체 간담회, 각종 이산가족 행사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 강화
- 화상상봉 · 영상편지 교환 제재 면제 및 교추협 의결('19.3), 국내 13개 화상상봉장 개보수('19.4)

○ 국군포로 · 납북자 ·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 계기시 납북 · 억류자가족 위로 방문, 납북자가족 초청 · 위로 행사(2회) 등 문제해결 노력 지속
-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에 납북자가족 진정서(20건) 제출 및 억류자가족 진술('18.4) 지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면담('18.6) 등을 통해 국제사회 관심과 협조 요청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누적 관광객 10만명 돌파('19.10)
- 개정된 「전후납북자법」 시행('19.3), 피해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납북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20년 이행실적 (1.1.~12.31.)	○ 민간 · 국제사회 등과 협력,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중단 없는 인도협력 지속 – 국제기구 공여 규모 확대 및 국제기구와의 다년도 MOU 연장 · 체결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업 체계화 * △WFP 영유아 · 여성 지원사업 1,000만불 공여(8.12) △통일부–WFP 5개년 MOU 연장·체결(6.3), 통일부–UNICEF 5개년 MOU 연장·체결(12.16) – 유관국과의 정책공조 및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재면제 가이드라인 개편(12.1),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안정적인 인도협력 추진 기반 마련 –「남북보건의료협력협의체」 개최(7.1, 11.20), 유관부처 협의 및 학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형성을 위한 추진방안 검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규모 확대 * △지원횟수 年 1회 → 3회 △자체 재원 부담비율 1/2 → 1/3 축소 –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소통 확대 및 정례화를 통해 민 · 관정책협의채널 제도화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통일부 비영리법인 등록(8.13) △장관–「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단 대화(5.1, 7.31, 12.4) △「인도협력 민 · 관정책협의회」 2회 개최(5.7, 12.21) – 대북인도협력사업에서 민간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확대('19 17건→'20 24건) △민간단체 기금 지원 증가('19 4.1억원→'20 13.3억원 지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내 인도협력 전담부서 신설,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기능 확대 ○ 「평양공동선언」 인도분야 이행 준비, 이산가족 비대면 위로사업 확대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화상상봉 · 영상편지 교환 준비 완료 △상설면회소 복구 관련 대미협의 추진 – 고령 · 독거 · 불우 등 이산가족 취약계층 중심 방역물품 집중 지원(3,000명) – △가상현실(VR) 기술 활용 이산가족 고향체험 영상 시범제작 △대면상봉 20주년 계기 「KBS 열린음악회」 이산가족 특집 방영(10.4, 이산 1~3세대 온라인 참여) ○ 국군포로 및 납북자 ·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경주 –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추가 발굴 · 지급(7건) △단체 국고보조 △무주택 납북피해자 주거지원 및 귀환납북자 사례관리 △명절 계기 위로방문 등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접속자 5.7만명, 2배 증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민간 · 지자체 · 국제사회와 '분권과 협치의 인도적 협력 및 개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교류협력 증대에 기여 –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 △국제기구 다년도 MOU 개정 · 연장 △국제기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체계화 – 제재면제 절차 개선을 통한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안정적인 인도협력 추진 기반 마련 – 다양한 민 · 관 정책협의채널을 제도화하여 국내 협의체계 마련 및 민관협력 강화 –「인도지원사업 처리 규정」 개정 등 법 · 제도 개선, 민간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남북관계 소강국면에도 불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 – 남북 간 다각적인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내부준비 완료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 – 이산가족 · 실향민 대상 개별관광 추진방안 구체화 등 대안모색 병행 –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 및 공감대 확대 ○ 납북자 · 억류자 · 국군포로 관련 피해자 명예회복 및 권익향상 도모 –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구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의 안전하고 내실있는 운영 등 전시 · 전후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 강화 – 유관기관, 국제기구, 가족 대상 소통 · 협력을 통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 지속 표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도협력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측의 호응 여부 등에 따른 성과 도출 한계 존재 ○ 이산가족 사망자 증가 및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대면상봉과 함께 이산가족 교류 방식 다각화 할 필요 ○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산가족 비대면 교류방식 등 발굴 필요
향후추진계획		○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중단 없는 인도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 ○ 남북공동선언 본격 이행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및 코로나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 교류기반 강화 ○ 남북대화 및 국제기구를 통한 협의, 납북자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한 국군포로 · 납북자 · 억류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243-2 Ⅶ-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대북정책협력과
과제목표	○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주요내용	○ 정상외교,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 대상 대북 인도적 지원 외교적 노력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136	13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 G20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계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설명 및 국제사회 관심 제고
-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대상 우리정부의 한반도정책 설명 및 대북 지원사업 논의 과정 참여
-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정부 입장 지지 확보

○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20년 이행실적 (1.1.~12.31.)

○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 및 여성 지원 사업 1,000만불 공여 과정 참여 및 국제기구 대상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 설명
-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정부 입장 지지 확보

○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의 영유아 ·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우리 정부의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제의에 대해 북측의 적극적 호응 필요

향후추진계획

○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 예정

243-3	Ⅶ-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
	과제목표	○ 남북 간 보건복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달성			
	주요내용	○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 상호 정보교환, 감염병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술 협력 등 ○ 결핵·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진단·예방치료 협력 강화 ○ 모자보건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 적극 협의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18.11.7, 차관급), 실무회의('18.12.12, 국장급)를 통해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 (합의사항) △ 전염병 정보교환·대응체계·기술협력 추진 △ 결핵·말라리아 등 전염병 협력 강화 △ 포괄적·중장기적 방역·보건의료 협력사업 적극 협의

*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감염병 정보 교환 및 인플루엔자 치료 물자 대북 지원 등을 추진했으나, 인플루엔자 치료 물자는 북측 연기 등으로 지연되다 중단('19.2월), 감염병 정보(우리측 정보 총5회 제공)는 북측의 미수령 및 미제공으로 중단

○ 민간단체, 지자체 등과 보건복지 분야 남북 상호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남북 보건복지 민관 협력 포럼」 발족 및 의견수렴('18.12.27.)

○ 「남북 보건복지 민관 협력 포럼」 발족에 따른 후속조치로 말라리아('19.1.30), 결핵('19.2.1) 분과협의체, 모자보건 분과 세미나('19.9.18) 개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Kick-off 회의 개최('20.12.29.)

* **(참여국)** 한·중·일·몽 + 미국·러시아 6개국, 북한은 불참

**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북한을 포함한 한국, 중국, 몽골, 일본이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보건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9.22.) 계기 추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남북협력기금사업(15억원)으로 '19년말부터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북측의 봉쇄조치로 사업 중단 및 사업비 반납('20.12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국내외 NGO를 통해 '모자보건 분야 사업' 및 '북한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사업' 추진 중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지연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출범('20.12.29.)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북미 회담('19.2.28) 결렬 및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20.6.16.) 이후, 남북 당국 간 협력 답보 상태 ○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북측의 국경 봉쇄로 인해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던 보건의료지원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

향후추진계획	※ 향후 남북간 협력 여건 조성 전제 ○ 남북 당국간 감염병 대응협력 등 보건의료 분과회담('18.11.7, 차관급) 및 실무회의('18.12.12, 국장급)를 통해 북측과 합의한 사항 이행 및 발전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방역협력 – 말라리아, 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 협력, –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 및 기술협력 등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추진 준비

243-4	Ⅶ-1-(3)-②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업정책과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 추진			
주요내용	○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녹화 추진 ○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협력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남북산림협력	5,353	8,983	3,630	67.8
■ 고위도지역 작물생산성 향상기술개발	2,000	3,823	1,823	91.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남북간 합의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분야 협력부터 우선 추진('18.8~12)
-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금강산 지역 현장조사를 실시('18.8.8)한 후,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추진
- 양묘장 현대화 협력을 위해 122호 양묘장, 중앙양묘장, 산림기자재공장 현장방문(12.11~13)

○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19.9.4) 및 공사 완료('19.12.27), 국내 대표 민간단체와 업무협약(11개)

○ 북한과 농업협력 추진에 대비하여 국내 개발 품종으로 북한 접경지역 인근에서 북한에서 재배 가능한 식량작물 적응성 연구사업 실시
- 북한기후대 적응 주요작물(벼, 콩, 옥수수, 맥류) 품종 선정 및 기술보급서 발간('19.12월)

○ 2019년 북한과 우리나라에 ASF가 각각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협력 추진
- 2차례에 걸쳐 북한에 협력의사를 전달('19.5.31, '19.9.18)

'20년 이행실적 (1.1.~12.31.)

○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20.6.3),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설계, 양묘·산림병해충 남북공통 기술서 개발('20.10.31), 북한 산림관련 정보수집 및 반기별 자료집 발간('20.1월, 7월)

○ 기후변화 대응 북한지역 식량작물 재배적지 선정(강계 등), 북방지역 식량작물의 생산-가공 적합 품종 선발 및 가공기술 개발, 잡곡의 안정생산기술개발 및 북한 접경지역 주요 해충, 병, 잡초 발생 모니터링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전진기지로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고성·파주 완료, 철원 추진 중) - ('19.7월)양묘장현대화 10개소 UN안보리 제재면제(북 수용 시 즉각 사업추진 가능) ○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기술개발 등 추진으로 북한지역 재배 적응 품종 선발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19년 ASF가 발생한 직후 북한에 2차례 협력의사를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반응이 없음 -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따라 협력 장애

향후추진계획

○ 남북교류 재개 시 기합의('18년)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대북제재 해제 등 여건 조성 시 농업분야 협력 추진

○ 북방지역 토양 양분 신속진단법 설정, 적응 품종 선발 및 품질 특성 평가 등 추진

244 Ⅶ-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북한인권과
과제목표	○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주요내용	○ 통일 이후 인권정책을 고려한 통일 대비 연구 추진 – 통일 이후 인권정책 관련 독일, 체제전환국 등 국내외 사례조사 · 연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354	337	△17	△4.8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19	766	△53	△6.5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462	46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기타
비고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내용 수정 필요 – 독일, 체제전환국 등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는 '18년 기완료. 인권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연구로 수정될 필요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통일 대비 인권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18년 「문재인 정부의 2018 대북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방향과 전략 모색
– '19년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대응추세와 우리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유엔의 3차례 보편적정례검토(UPR)에 나타난 북한의 대응 추세를 활용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제시

○ 독일, 체제전환국 등 국내외 사례조사 · 연구
– 구 동독 · 루마니아 공산정권의 인권침해 조사 및 책임 규명, 자료발간 사례 조사('18.5)
– 북아일랜드의 인권조사 · 기록 현황 조사('19.6)
– 국내 · 외 발간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 수집('19년)

○ 통일 대비 인권정책 수립 · 연구를 위한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18.3, '19.3)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보편적정례검토 참여('18.5)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여('18.6) △북한인권유사입장국회의 참석('18.10, '19.10)
– △美 국무부 종교의 자유 관계자 면담('18.4) △국무부 민주주의 · 인권 · 노동국장 면담('18.5)
– △국제세미나 개최('18.12, '19.3, '19.12), △북한인권 민간단체 워크숍 개최('19.12)

'20년 이행실적 (1.1.~12.31.)

○ 통일 대비 인권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20 북한인권 알아가기」 책자 발간 · 배포('20.1) △북한인권정책 설명자료 작성 · 배포(하반기) △「북한인권증진 참고자료 및 Q&A자료」 개발('20.11) 등

○ 전문가 자문 및 기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통일 대비 북한인권증진정책 수립 및 추진
–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목표로 「제2차(2020~2022)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20.4)
– 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20.5)

	○ 통일 대비 인권정책 수립 · 연구를 위한 국내외 협력 지속 – 유엔 인권이사회('20.6) · 총회('20.12)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화상면담('20.7), 유엔인권서울사무소 관계자 면담('20.2, '20.9) 등 – △북한인권 전문가 · 단체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20.11) △북한인권 단체 역량강화 연수회('20.11)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단체 의견수렴 및 소통 · 협력 강화 ○ 북한인권 실태조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 · 사례수집 – 국내 · 외 발간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 수집(연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통일 대비 인권정책을 위한 연구 추진 및 국내외 사례연구 축적 ○ 통일 이후 인권정책 수립 · 연구를 위한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 북한인권 실태파악과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생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통일 대비 인권정책에 대한 본격적 연구 추진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지연 ○ 평화 · 인권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고려한 북한인권실태 자료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향후추진계획	○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조화롭게 향유할 수 있는 인권정책 수립 연구 – △정책 연구용역 진행 △전문가 · 민간단체 자문 △체제전환국 인권정책 사례연구 ○ 통일 이후 한반도 인권정책 관련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지속 – △유엔 등과 인권증진정책 협력 △실질적 북한인권증진 방안 협력 등 추진 ○ 북한인권실태 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체계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기여

245	Ⅶ-2-(1)-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고,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하고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			
	주요내용	○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점검 기능 강화 지속 추진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에 국제인권기준 반영 노력 ○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인권교육의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기본법」 제정 노력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기본법」 제정 관련 업무협의 실시 – '12년 법무부에서 추진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계속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인권교육의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인권교육 실시 내용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법무부 제정안 입안 완료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20.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교육 실시 내용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법무부 제정안 입안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인권교육 실시 내용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관계부처 협의 후 필요시 법안 내용 보완,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 진행

246-1	Ⅶ-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관련예산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해당없음			

'19년 이행실적	
	○ 국제인권뉴스레터 발간 – '19. 3. 유엔총회 인권관련 결의안 채택 소식 및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 '19. 5. 유엔 인권이사회 제40차 회의 소식 및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권 관련 논평 등, – '19. 9.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조사 및 ILO 신규 협약 채택 소식 – '19. 11. 유엔 아동권리협약 심의 소식 및 아동권리협약 내용 소개

'20년 이행실적	
	○ 국제인권뉴스레터 발간 – '20.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보편적 출생등록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 – '20. 5. COVID-19 관련 인종차별 등 인권 이슈, '세계 여성의 날' 유엔 사무총장 축사 등 – '20. 9.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 뉴질랜드 사례,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유엔 비판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발간 정례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실제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 효과, 접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수단 등 검토 필요

향후추진계획	
	○ 법무부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 발간을 시도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효과 제고

246-2 | Ⅶ-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통일교육원)	과·팀명	교육연수과, 연구개발과

과제목표

○ 원내 통일교육 과정 내 북한 인권 관련 과목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인권에 관한 이해도 제고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주요내용

○ 원내 교육과정에 북한 인권 관련 교육 커리큘럼 포함
- 교육대상자에 맞는 북한 인권 관련 강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체험적 실상 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해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 전달

○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 「인간의 권리,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와 향후 과제」 과목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교육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91	947	△44	△4.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원내 장·단기 교육 과정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교육 포함
- (북한이해) '북한사회와 주민생활 이해',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등
- (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현황과 과제' 등
- (참여활동)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현장견학)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 현장견학

* 원내 통일교육 : '18년 6,203명, '19년 6,976명(해외전문가 초빙교육 1,250명 포함) 교육

○ 북한 실상을 전달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 대상 보수 교육(4회) 실시
-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2년마다 재교육 의무 부과(훈령 개정, '19.7월)
- '18년~'19년 통일교육 전문강사 32명 신규 양성(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 13명)
- 원내 교육과정에서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강사로 활용
- 놀이와 문화를 접목한 표준강의안('19년 전면 개편)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참여

* 눈높이 강사와 연계하여 1,124개 학교, 82,677명 대상 실시

○ 북한인권 관련 '사이버 통일교육' 과목 운영 ('18~'19)
- 운영과목 : 「인간의 권리,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4차시)
- 운영기간 : 2018. 2월~12월(총 11기 운영) / 2019. 2월~12월(총 11기 운영)
-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인, 학생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원내 장·단기 교육 과정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교육 포함(계속) – (북한이해) '북한사회와 주민생활 이해',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등 – (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현황과 과제' 등 – (참여활동)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원격으로 추진) – (현장견학)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 현장견학('20년은 코로나로 최소화) * 원내 통일교육 : 20년 2,678명 교육(코로나로 인한 교육수요 감소) ○ 북한 실상을 전달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및 활용(계속) –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재교육(4회) 실시 – 원내 교육과정에서 북한 실상을 전달하는 강사로 활용 ○ 사이버 통일교육 북한인권 관련 과목 운영 – 교육목표 : 국제인권규범과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이해하고, 북한 인권침해실태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이해 – 운영과목 : 「인간의 권리,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4차시) * 세부 교육내용 : (1)인간의 권리와 북한인권문제 알기 (2)북한의 인권실태 (3)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우리의 노력 및 향후 전망 – 운영기간 : 2020. 2월~8월(총 7기 운영) * 북한 인권 관련 신규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당해 과목 운영 종료 –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인, 학생 등 ○ 사이버 통일교육 북한인권 관련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과목 운영 – 교육목표 : 현재 북한 인권의 실태와 관련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노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해 – 운영과목 : 「북한 인권문제와 향후 과제」(3차시) * 세부 교육내용 : (1)북한의 인권실태와 정책 (2)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 (3)한국의 북한인권 개선 방안 – 운영기간 : 2020. 9월~12월(총 4기 운영) –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인, 학생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북한관'이라는 통일교육의 목표 달성에 기여 – 북한이탈주민과 교육생의 실시간 토론을 통한 참여형 수업으로 관심 제고 – 특히, 북한 실상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균형 있는 북한관'이라는 통일교육의 목표 달성에 기여 ○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을 '20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 △북한 내 인권 실태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및 평가 △향후 전망 등 내용 보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에 한계 ○ 코로나로 인한 교육 수요의 감소로 교육 확대 곤란 ○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특성상, 주요 교육생이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며, 일반인 사이버교육 이수자 수는 적은 실정

향후추진계획	○ 원내 교육 시 북한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기본교과 교육 지장이 없는 범위내 운영) – 신규 교육과정 등에 북한인권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반영 – 일부 과정을 사이버로 운영하여 집합교육 한계를 극복, 적극적인 수요 창출 ○ 북한 인권상황 관련 주요 신규 정보 수집시,「북한 인권문제와 향후 과제」과목 수정·보완 ○ 공공분야 종사자 외 일반인도 사이버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247 Ⅶ-2-(2)-②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과서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친화적 교과용도서 개발 및 교과서 질 관리 강화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수정요청 의견('17.~'18.)*에 관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추진 * 인권 관점으로 본 표현·사진 삽화의 인권 친화성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대조표 등 승인 사항 안내* 등 대국민 시스템 체제 정비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www.textbook.or.kr에 탑재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 안내			

관련예산

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특교) (교과서모니터링단)	190	240	50	2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인권친화적인 교과용도서 개발 완료, 교과용도서 품질 관리를 위한 인권위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수정·보완 체제 구축 완료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인권 친화적 관점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접근 기제 마련**

– (**편찬준거 운영**) 교과서 개발 시에 인권 친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 심사기준' 적용*

* 국정·검정·인정도서 개발 시 인권 관련 준거 사항 적용 의무화

– (**인권 강화 지침 마련**) 교과서 개발 시에 인권적 요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양성평등 인권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과 '인권요소 분석표**' 추가 마련

※ 편찬기관이 최종 결재본과 인권요소 분석 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교과서 인쇄·보급 전 최종 확인

*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검토기준 설정 및 3개 항목의 13개 세부기준 마련

[참고 : 양성평등·인권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

항목	기준(상세 기준 내용 생략)	기준수
1. 본문(제재와 내용) 검토 기준	1.1. 편견과 왜곡 / 1.2. 고정관념과 획일화된 정체성 / 1.3. 다양성과 균형성 1.4. 표준과 정상성 / 1.5. 외모 평가	5
2. 사진 또는 삽화 검토 기준	2.1. 성별 이미지 / 2.2. 다문화 이미지 / 2.3. 장애 이미지 2.4. 노인 이미지 / 2.5. 가족 이미지 / 2.6. 지역 이미지	6
3. 교과 수록 제재 검토 기준	3.1. 집단 편중성 / 3.2. 제재 내용 및 삽화	2

** 사진·삽화의 성비, 직업, 다문화, 장애, 가족형태, 사회적 약자 등 분석표

[참고 : 초등 1학년 1학기 봄(통합교과)의 인권 요소 분석표 일부]

등장인물		남	녀	알 수 없음	합계	
아동 (주도성 횟수)	비장애	*226(19)*	*224(22)*	*2(0)*	*452(41)*	*467(41)*
	장애	*6(0)*	*2(0)*		*8(0)*	
	다문화	*2(0)*	*5(0)*		*7(0)*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성 역할, 인종, 가족형태에 대해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 완료 및 수정·보완 추진**

- (**개발완료**) [초] 3~6학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중] 국어(2-1,2-1),사회2,수학2,과학2,영어2
  [고]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영어, 영어Ⅱ, 통합사회, 세계지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지리부도, 수학, 통합과학, 물리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 (**모니터링 대상**) 2015개정 교과용도서 총 181권, [초등 국정] 48권, [중등 검정] 133권
- (**모니터링 내용**) 인권친화적인 교과용도서로의 품질 관리를 위한 '양성평등·인권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에 따른 교과서 내용, 사진 및 삽화 모니터링('18년 6,122건, '19년 2,588건) 및 수정권고

'20년 이행 실적 (1.1.~12.31.)

○ **성 역할, 인종, 가족형태에 대해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 완료 및 수정·보완 추진(계속)**

- (**개발완료**) [초] 3~4학년군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중] 국어2, 사회②, 수학2, 과학2, 영어2
  [고]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문학, 영어Ⅱ,세계지리, 정치와법, 윤리와사상, 경제, 수학Ⅰ,Ⅱ,과학탐구실험
- (**모니터링 대상**) 2015개정 교과용도서 총 181권, [초등 국정] 48권, [중등 검정] 133권
- (**모니터링 내용**) 인권친화적인 교과용도서로의 품질 관리를 위한 '양성평등·인권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에 따른 교과서 내용, 사진 및 삽화 모니터링('20년 1,222건) 및 수정권고

[참고 :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위한 개발·수정 절차]

[개발] 집필·심의	[학교 보급] 모니터링	[질 관리 지속] 수정·보완
• (현행) 인권 항목이 포함된 편찬준거에 따라 집필·심의 • (추가) 편찬기관과 심의회가 참고할 수 있는 **인권 요소 검토 기준** 등 추가 ※ (대상) 초등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 교과서 사용 • **인권 요소 모니터링** ※ (대상) 초중등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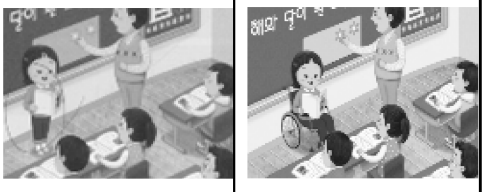 ※ 장애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로 수정

결과 분석

추진성과	○ 인권친화적인 교과용도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인권위-여가부-교육부 협력 체계 구축 ○ 교과용도서 개발-사용 단계에서의 인권친화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재 마련 및 운영 * 개발단계에서 인권 관련 편찬준거 마련, 개발 수정보완 단계에서 인권 검토 요소 마련 및 현장교원 중심의 교과서모니터링, 수정 보완 온라인시스템(www.textbook.or.kr) 구축 등 ☞ 인권친화적 교과용도서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양성평등·인권 대국민 인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위-여가부-교육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 친화적 교과용도서로서의 질 관리 강화

○ 인권 친화적 관점의 내용 감수 강화를 통한 교과용도서 질 관리

○ 현장 교원 중심의 교과서 모니터링 및 대국민 안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지속 운영

248	Ⅶ-2-(2)-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원양성연수과
	과제목표	○ 교(원)장 자격연수 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주요내용	○ 교(원)장 자격연수 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시·도교육청에 자격연수 교육과정 및 직무연수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요청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 – 해당 내용을 담아 '20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18.10.2) – 해당 내용을 담아 '2020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19.9.17)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권고 사항 안내('18.3.22.) – 인권(양성평등 포함) 교육 및 생명 존중(자살예방 포함)교육 관련 내용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점검 및 컨설팅('19.7.~12.) 결과 전체 교원양성기관(294개교 3,089개 학과)의 98.9%(291개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교원 자격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 관련 내용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 – 해당 내용을 담아 '2021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0.9.28)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양성평등,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전체 교원양성기관에 권고('20.4.9.), 전체 교원양성기관의 94.98%(246개교)가 관련 교육 실시 또는 실시 계획 수립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및 컨설팅('20.6.~12.)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내 인권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전체 교원양성기관(259개교)에 우수사례 안내('20.12.30.)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 포함하여 운영(3개 연수원) – 이수인원 총 2,494명(교원대 2,155명, 서울대 164명, 서울교대 175명) ○ 전체 교원양성기관의 76.45%(198개교)가 양성평등,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8.5%(48개교)가 해당 교육 실시 계획 수립, 총 94.98%(246개교)가 관련 교육 실시 또는 계획 수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 관련 교원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시·도교육청에 안내('21.하)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해 교원자격취득 시,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원양성기관에 관련 세부기준을 안내, 교육안 및 콘텐츠 개발·보급(~'21.7.)

249	Ⅶ-2-(2)-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장애이해(인권)교육 추진 강화를 통한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

주요내용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인권) 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체험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확대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국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특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467	364	△103	△22.1
■ (국고)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200	248	48	24.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방송(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드라마) 방영
- 초등학생 대상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3라디오)
  ※ 대한민국 1교시 제목: ('18) 우리별을 구하라 → ('19) Happy Together 공감교실
-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드라마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TV)
  ※ 장애이해드라마 제목: ('18) 반짝반짝 들리는 → ('19) 오늘도 안녕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실적(교): ('18) 1,905 → ('19) 1,880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자료 및 학교교육활동 연계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현황: ('18) 초등학교 → ('19) 중학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 활용 장애이해교육 실시('20.4월~)
- 유치: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두리의 고민' 제작·보급
- 초등학생: 대한민국1교시 '함께 그리는 그림' 송출(KBS 1·3라디오)
- 중·고등학생: 장애이해 드라마 '거북이 채널' 방영(KBS 1TV)

(유치) 두리의 고민

(초등) 함께 그리는 그림

(중등) 거북이 채널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1,972교)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연중)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개최 및 자료집 배포('20.3월~12월)

※ 백일장 응모 편수 : 7,272편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20.3월~12월)

※ 공모전 응모 편수: 130편(성인 69편, 장애학생 40편, 비장애학생 21편)

○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자료(각 40차시) 개발 및 보급

– 학교교육활동 연계 장애이해교육 콘텐츠(20편) 개발·보급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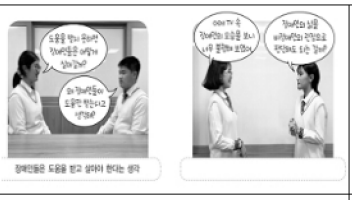

〈교육자료 예시〉

〈자료 연계 콘텐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이행률 증가 ※ ('19년) 90.4% → ('20년) 91.7%)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18) 초등학교 → ('19) 중학교 → ('20) 고등학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1년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 특별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21.4월~)

– 초등학생 대상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3라디오)

–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드라마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실시(KBS 1TV)

○ 시도교육청별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운영 연중 추진(1,970교 예정)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21.3월~)

○ 누리과정, 유아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21.1월~)

250	Ⅶ-2-(2)-④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대학학사제도과
	과제목표	○ 인권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주요내용	○ 인권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여 대학 내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유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대학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안내 및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권장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18.3.14.) – 각 대학이 우리 부 권장 공문에 근거하여 자체 상황 및 인권 교양과목 개설·운영 등을 고려한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운영
'20년 이행실적 (1.1.~12.31.)	○ 각 대학이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 관련 교양과목을 자율적으로 개설·운영 중이며, 소속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매년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생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및 학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권장 공문 시행을 통한 대학의 인권 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 ○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제19조의3, '21.6.23. 시행 예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각 대학이 학칙으로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므로, 대학이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 안내

251	Ⅶ-2-(2)-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민주시민교육과
과제목표	○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활성화			
주요내용	○ 인권 관련 교육과정 강화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기반 조성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0	174	174	10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총 6종)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인권교육 관련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1종 운영
-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현장지원단 양성 연수('19., 4회)

○ 2020년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집 개발·보급('18. 12월)
- 전국 학생자치 컨퍼런스('19. 8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20년 학생 권리 보장 방안 수립·추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 개정('20. 2월)
- 용모,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등 예시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교육 관련 학습 자료를 보급하고 교원 연수를 운영하여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21. 2월~)
-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현장성 제고

○ 시·도교육청별 학생 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

252	Ⅶ-2-(3)-①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인권보호담당관실
과제목표	○ 경찰 활동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차별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의 인권 침해가 발행되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사전 예방			
주요내용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권교육	8,200	5,200	▽3,000	▽36.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시행 및 고도화 작업
- 접근성 높은 사이버 강좌의 추가 제작 및 지속적 개선과 보완작업 시행

※ 사회적 소수자 특성에 따른 온라인 교육 콘텐츠 마련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20년 이행실적 (1.1.~12.31.)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확대
- 경찰관 의무 교육 시간(온라인) 중 사회적 소수자 인식개선 교육 포함

○ '20년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우리 사회의 약자 · 소수자 보호 내용 반영
- 온라인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이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이버 강좌의 제작 및 이수(개설~2020년 누적)
- '감염인의 이해' (약 12만명 이수)
-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基 소수자의 이해)(약 15만명 이수)

※ '19-'20년 경찰청 인권교육 이수 인정 강좌 지정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약 8만명 이수)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강좌 이수 (약 12만명 이수)

○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주제 대상으로 경찰관서 직장교육 (100회 이상)

○ 사회의 약자 · 소수자 보호의 행동지침인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콘텐츠 제작
- 온 · 오프라인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추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전문가 의견 반영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집필 –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基 소수자의 이해) 강릉원주대 김지혜교수 수정 집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과제 추진 후 다양한 여론 및 사회적 기관 등 의견에 대한 대응 어려움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인된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표준교재 부재

향후추진계획	○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 강좌 마련 및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 ’20년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우리 사회의 약자 · 소수자 보호 내용을 반영하여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내재화 도모 – 경찰관 의무교육 지정(사이버 인권강좌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해설‘) – 인권교육용 기본교재, 인권교육용 포켓북 등 현장 활용 다양한 콘텐츠로 배포

253-1	Ⅶ-2-(3)-②	국가 · 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인재개발과
	과제목표	○ 국가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내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주요내용	○ 국가 공무원 인권교육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 작성 · 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평가			
	관련예산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년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 및 '19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구 인재개발지침) 작성 · 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18년 및 '19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 · 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장애인 인식개선, 성평등 · 성인지 감수성,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 '20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 인권 · 장애인 · 성평등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과정 개설 및 교과목 반영 여부를 평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인권교육 실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기본교육 · 이러닝), 경찰수사연구원(여성폭력현장전문가 양성), 법무연수원(인권감독관 인권감수성 향상), 해양경찰교육원(인권과 수사과정)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차년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253-2 | Ⅶ-2-(3)-② 국가 · 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지방인사제도과
	과제목표	○ 지방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및 인권 의식 제고			
	주요내용	○「2021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수립 시, 인권 교육 실시 권고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교육 강화 ○「2021년('20년 실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시, 인권 관련 교육 실시 실적 평가 –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 교육 일환으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및 교과목 반영 여부 평가			
	관련예산	○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교육 등을 공직가치 주요시책 교육으로 명시하여 직장교육이나 교육훈련기관 교육 등 교육 실시 권고('18. 11월) ○「2019년('18년 실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실시('19. 6월~9월) – 사회복지분야,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장애인 인식개선, 다문화의 이해 등 관련 독립교육과정 개설 및 교과목 편성 · 운영 실적 여부 평가
'20년 이행실적 (1.1.~12.31.)	○ **주요 국정과제 교육에 인권관련 교육 포함**하여「2021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지자체 통보('20. 12월) – 각 교육훈련기관은 독립교육과정을 개설,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연중 실시 * 공직가치 교육 비중 : 10~30% – 각 자치단체는 강의, 워크숍,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교육 실시 ○ **「2020년('19년 실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 실시**('20. 3월~6월)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장애인 인식개선, 다문화의 이해 등 관련 독립교육과정 개설 및 교과목 편성 · 운영 실적 여부 평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최일선 민원 응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 결혼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 사회 인권 이해 향상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 관련 자체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 ※ 관계부서의 교육 가이드 및 표준자료 제공 필요

향후추진계획	○ 지방공무원 인권 관련 교육훈련 실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권의식 제고, 다문화사회의 이해 등 사이버 과정 운영 – 시 · 도 공무원교육의 기본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을 편성 운영

254-1	Ⅶ-2-(3)-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인권보호담당관실

과제목표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확립과 실시로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상 정립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 향상

주요내용

○ 체계적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 확대

○ 경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인권 교육의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권교육	8,200	5,200	▽3,000	▽36.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개정, 경찰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을 신설

○ 제1차 중기 '인권교육 기본 계획(2018-2020)' 및 연간 운영계획(2019년) 수립 및 시행

○ 인권교육 의무 이수 시간 확대

○ 경찰 인권교육 정책연구과제 시행

○ 인권교육 평가시스템 시범 운영

○ 지역별 참여형 인권교육 (전문)과정 교육의 품질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양성평등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

○ 상시적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사이버 인권교육의 개편

○ 인권교육 전문화를 위한 내·외부 인권 강사풀 구축 추진

'20년 이행실적 (1.1.~12.31.)

○ 표준화, 전문화된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현장 경찰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활용유의한 「인권보호 유의사항 시리즈」 제작 배포

– 경찰 인권교육 기본교재 제작 및 발간

– 책임수사체제에 걸맞는 현장 맞춤형 인권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생활화·체질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

– 현장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용 포켓북', '인권행동강령 해설집' 등

○ 적정한 경찰권 행사를 위한 「동료 간 개입·제지 프로그램」 연구

– 불법·부당한 경찰권 행사에 대해 동료가 적극 개입·제지하여 침해행위를 억제, 일선 현장에서 유용하고 경찰 조직에 실행 가능한 동료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권교육 체계 구축 –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 관련 내용 신설('18) – 인권교육 중기계획('18–'20) 수립 – 인권교육 운영계획('19,'20) 수립 ○ 연간 의무 인권교육 이수 시간(4시간→6시간) ○ 인권교육 정책연구용역('19–'20) – 인권교육 방향성 연구: 서울대 인권센터(책임: 이상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권교육 기본교재 연구: 언론인권센터(책임: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트라우마 연구교육원(책임: 주혜선 원장)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생활화 ·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 – 현장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용 포켓북', '인권행동강령 해설집' 등 ○ 인권교육 평가시스템 시범운영('19) – 경찰관서 내 인권교육 온라인 평가(구글 설문) 시행 ○ OFF-JT 교육 – 지방청 교육학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18) 43회/1,055명, '19)47회/1,064명) – 경찰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18–'19) 14회/약 350명) '인권역량 강화과정' ('18–'19) 6회/약 120명) ※ 국가인권위원회, 양성평등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 ○ 사이버 인권강좌 고도화 – 필수이수 강좌 지정(20년 경찰관 인권교육(6시간) ○ 인권교육 강사 워크숍 및 강사 인력풀 구축('19) 40명 이수, 12명 우수강사 선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의 한계 ○ 한정된 교육 시간으로 비하여 인권교육 외 추가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갑질근절, 양성평등 교육 등)으로 교육 시간 확보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 경찰 인권교육을 중장기(5개년, '18~'22년) 계획으로 고도화 추진 ※ 경찰 '인권역량 증진'을 비전으로 인권교육의 내용 · 운영 · 확산이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본계획(NAP, 5개년)과 상호연동하여 발전 방안 구축 ○ 수사권 조정 이후 사회 기대 수준과 내부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경찰 인권교육의 내실화 – 인권교육의 현황 및 인권강사 인력 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의 품질 관리 – 경찰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보완 – 경찰 내 인권교육 협의체 구성 및 교육 운영 중앙조직 역할 강화 – 내 · 외부 인권교육 역량의 지속적 결합체계 마련 ○ '동료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계획' 수립 및 이행

254-2	Ⅶ-2-(3)-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제고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거주지 · 취업 · 신변보호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 교육 실시			
	관련예산	○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전국 경찰 900여명)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18.10) –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교육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인식개선 등에 대해서 교육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전국 경찰 천여명)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19.10) –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교육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인식개선 등에 대해서 교육
'20년 이행실적 (1.1.~12.31.)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전국 경찰 약 900여명)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 코로나19 상황 감안 경찰청 주관하는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별도 집합교육은 미실시하고, 경찰관서 자체적으로 교육 진행 –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교육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인식개선 등에 대해서 교육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인권의식 함양, 인식개선 제고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20년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 거주지보호담당관 대상 워크숍 시 인권교육 실시 : '20년 하반기 예정 ○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255	Ⅶ-2-(3)-④	군 장병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인권과

과제목표

○ 지휘관 및 간부의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을 통한 장병 인권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 인권교관 교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병 인권교육 내실화
○ 군 인권업무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
○ 군간부 및 국방부 공무원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을 통한 군 인권 공감대 확산
○ 다양한 맞춤형 교육용 교보재 제작을 통한 군 인권에 대한 관심 유발

주요내용

○ 장군단 및 장군진급 선발자 등 지휘관 인권교육과정 운영
○ 부대 인권교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수사, 의료, 상담, 교정, 인권모니터단, 법무 등 군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 국방부 공무원 및 군 간부 대상 온라인플랫폼 운영
○ 밀레니얼 세대 장병 취향을 고려한 인권 교육용 동영상, 책자 등 제작 · 배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334	288	△46	△13.7
■ 인권관계관 인권교육	32	30	△2	△6.2
■ 인권교관 심화교육	160	116	△44	△27.5
■ 찾아가는 인권교육	37	38	1	2.7
■ 군 인권 교육 콘텐츠 제작(만화)	105	104	△1	△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지휘관급 간부 인권의식 향상으로 부대 내 인권교육 분위기 조성
– '18년 수료자 1,340명(연15회), '19년 수료자 760명(연15회)
○ 인권교관 역량강화 교육 중점 추진
– '18년 수료자 698명(연11회), '19년 수료자 687명(연14회)
○ 인권업무 종사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실시
– '18년 수료자 220명(연6회), '19년 수료자 242명(연8회)
○ 군 간부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 '18년 수료자 6,268명(연20회), '19년 수료자 6,878명(연40회)

'20년 이행실적 (1.1.~12.31.)

○ 지휘관 및 간부 대상 인권교육 운영
– 국방대 지휘관 인권과정 운영(1회/26명), 각 군 대학 지휘관리과정 실시(16회/908명)
–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대상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14회/1,387명)
○ 부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 운영
– 국방대 인권교관과정(1회/19명), 국방부 역량강화과정(1회/61명), 기본교안 적용 인권교육 시범운영(1회/18명)
○ 군 교도업무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1회/22명)
○ 사이버교육 인권교육과정 운영
– 인터넷 나라배움터 인권의 이해과정(16회/15,079명), M-MOOC 인권교육 과정(3회/5,666명)
○ 신세대 장병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배포
– 군 인권 핵심을 담은 "핵심인권강의 특강 및 특별편" 제작(6편)
– 국방TV '리얼병영톡! 행복한 군대 이야기(행군기) 제작 · 방영(52편)
– 국방 인권상담사례 웹툰 "국방인권툰" 제작(14편)
– 장병 인권교육에 활용 가능한 "국방부 인권교육 기본교안" 개발('20.2~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군(진급자) 및 연·대대장 등 지휘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 ○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부대 인권교관,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보호 의식 강화 ○ 코로나19 상황 고려 소집교육 제한에 따른 비대면 사이버교육 활성화 – 인트라넷 교육플랫폼(M-MOOC)에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신설 – 인터넷 교육플랫폼(나라배움터) 수강인원 확대(기수별 '19년 500명→'20년 2,000명) * '20년 사이버 인권교육 총 20,745명 수료('19년 교육수료자 대비 206% 증가) ○ 밀레니얼 세대 장병 취향 고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 국방TV '행군기' 특별판 제작 및 '핵심 인권강의' 제작 – 부대 인권교육용 '인권교육 기본교안' 제작 배포 – 밀레니얼 세대 장병을 위한 숏폼(short-form) 형태의 영상 제작 * IPTV, M-MOOC,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 제공으로 예하부대 활용 ○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장병 목소리 청취를 통한 현장성 반영 – (인권위) 관계관 실무회의 4회, 인권교육협의회 2회 – (각군) 발전방안 토의 2회, 인권교육협의회 2회, 현장 의견수렴 6회, 교육 개설협의 5회 – (홍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작 실무회의 15회 – (인쇄창) "국방인권툰" 제작 협의 42회 – (국방대) 인권교관 및 지휘관 인권교육과정 협의 4회 – (기타) 기본교안 제작을 위한 연구진 회의 15회, 교육대상자 면담 5회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권교관 및 인권업무 종사자 등 소집교육 운영 횟수·인원 축소 – '21년은 소집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 악화 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대체 시행

향후추진계획

○ 부대 지휘관의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 인문학 워크숍(장군단), 고위정책결정자과정(장군진급선발자) 인권특강 실시
– 국방대 지휘관 인권교육과정(연대장·대대장) 정규 운영(연 4회)
– 각 군 대학 지휘관리과정(대령·중령) 인권특강 실시
– 사·여단급 지휘관(영관 이상) 간부 대상 외부강사 초빙 인권교육 실시
○ 부대 인권교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국방대 주관 인권교관과정 운영(연 7회)
– 국방부-인권위 공동주관 인권교관과정 운영(연 8회)
○ 교육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추진
– 병 복무주기별 인권교육 지속 추진
* 전입신병 및 분대장 교육 강화, 분기 1회 전 병사 대상 교육 실시
– 수사, 의료, 상담, 교정, 인권모니터단, 법무 등 군 인권업무 종사자과정 운영(연6회)
– 각 군 사관학교 훈육업무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시범 운영(연 2회)
* '22년 전 군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정규과정) 예정
○ 군 간부 및 국방부 공무원 대상 사이버 인권감수성 교육 실시
– 인터넷 플랫폼(나라배움터) 2개 과정, 인트라넷 플랫폼(M-MOOC) 2개과정
○ 인권교육 자료 내실화 및 콘텐츠 다양화 추진
– 국방부·인권위 공동 "국군 인권교육 교재" 개정
– 국방부-인권위 공동 학교기관 훈육업무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안" 개발
– 숏폼(short-form) 형태의 인권교육 영상 제작·활용 추진
* 국방홍보원과 협업하여 인권교육 동영상(리얼병영톡! 행군기) 제작

256	Ⅶ-2-(3)-⑤	변호사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법무과
과제목표	○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 제고			
주요내용	○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 변호사 의무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지원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방안 검토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272	144	△128	△47.1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지원)	144	144	–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지원)	128	–	순감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9년 이행실적 (1.1.~12.31.)

○ 대한변협 차원의 연수과정에서 변호사 윤리교육 실시
– '19. 5.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과정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 1학점 부여
– '19. 변호사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연수과정에서 윤리연수 2시간 실시
○ '19. 10.·11.·12.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 교육 실시
○ '19. 10. 3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대한변협 차원의 연수과정에서 변호사 윤리교육 실시
– '20. 5.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과정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 1학점 부여
– '20. 변호사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연수과정에서 윤리연수 2시간 실시
○ '20. 7.·12.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 교육 실시
○ '20. 8.· 10.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20. 9.· 11. 대한변협 공직퇴임변호사 윤리교육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호사시험합격자 및 기존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윤리교육 지속적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현재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서 법조윤리과목을 법조윤리시험과의 중복 및 연수변호사들로부터의 낮은 선호도를 이유로 축소 의견임

향후추진계획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서 법무부 차원의 강사 파견 및 윤리교육 지원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과 지속적 협의하여 변호사 윤리교육 강화 방안 검토

257	Ⅶ-2-(3)-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지역복지과
	과제목표	○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방지			
	주요내용	○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권교육 실시			
	관련예산	해당사항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18년〉 ○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교육 등 28개 과정 63회 * (사이버교육) 노인관련시설에서의노인과인권, 아동학대(범죄)예방바로알기 등 31개 과정 〈'19년〉 ○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장 인권교육, 노인인권 방문교육 등 11개 과정 44회 * (사이버교육) 노인 관련 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장애와 인권 등 45개 과정
'20년 이행실적 (1.1.~12.31.)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찾아가는노인인권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교육 등 14과정 82회 * (사이버교육)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등 48과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교육 현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집합교육 : 7,358명 교육수료 * 사이버교육 : 754,460명 교육수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집합교육 횟수 감소

향후추진계획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계획('21년) – (집합교육)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 등 14개 과정 80회 – (사이버교육) 노인인권의 첫걸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등 48개 과정

258-1	Ⅶ-2-(3)-⑦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권익보호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 및 전문성 확보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86,199	92,526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4,994	5,053	59	1.2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6,200	6,410	210	3.3
(시설종사자 교육)	35	35	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교육(56명, '18년)
-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보수교육 실시(96명, 1박2일 교육, '19년)
- 이주여성 성산업 유입과 성매매 피해 이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여성폭력방지법 등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상담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지원, 인권보호 방안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보수교육 실시(148명, 1일 교육)
- (종사자) 상담원의 윤리와 자세, 아동심리 및 문제행동 이해하기 등 아동 인권 관련 교육
- (시설장) 시설장의 윤리와 자세, 이주민의 사각지대 및 이주민 인권 보호 교육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상담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지원, 인권보호 방안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적 약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의식 및 전문성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폭력피해 보호시설 종사자 교육추진(지속)

258-2 Ⅶ-2-(3)-⑦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노인정책과 아동권리과

과제목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 대상별 맞춤형 노인인권교육 강화
○ 시군구 드림스타트 실무자 교육

주요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인식개선 및 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노인복지법」 개정('18.4.25.시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8.9.14.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진행
- 연1회, 4시간(인터넷 교육은 6시간)이수
-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맞춤형 노인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 아동 권리 교육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인권 옹호역량 강화,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 아동인권 이해 및 인권감수성 훈련
- 아동인권 개념 이해, 인권 민감성 훈련(활동, 토론)
○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9,963	12,847	2,884	28.9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136	2,752	△384	-13.9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교육)	601	651	50	7.6
■ 노인보호전문기관	9,444	10,366	921	9.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시설장과 사무국장 대상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 이수(필수)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대상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노인복지법」 개정('18.4.25.시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8.9.14.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이후 교육 지속 추진
*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표. 2019년 노인인권교육 실적〉

집합교육		방문교육*	
횟수(회)	인원 수(명)	횟수(회)	인원 수(명)
405	81,112	48	5,590

○ 인권교육기관 협업을 통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탑재('19.11)

○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 기초교육 실시(1차: '19.3. 총 33명 수료 / 2차: '19.4. 총 30명 수료 / 3차: '19.9. 총 32명 수료)
– 보수교육 실시('19.12. 총 70명 수료)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관리 플랫폼 신규 오픈('19)을 통한 교육 실적관리 및 평가 모니터링, 수강생들의 편의성, 접근성 확보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권리)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실무자* 신규 교육 : 총 12차 460명 교육 실시('18.2~12월)
–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화 교육 : 총 36차 1,222명 교육 실시('18.2~12월)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권리)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경력 팀장 및 경력 전담공무원 교육 : 총 7차 226명 교육 실시('19.4~10월)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문화 교육 : 총 10차 411명 교육 실시('19.3~12월)

○ ('18~'19년)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20년 이행실적 (1.1.~12.31.)

○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20.7.)
– 매년 전년도 장애인 학대 통계 현황 공개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29 공포)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결과 제출 의무화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및 적극적 예방활동 강화로 상·하반기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8시간)

○「노인복지법」 개정('18.4.25.시행)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8.9.14.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이후 교육 지속 추진

*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표. 2020년 노인인권교육 실적〉

대상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 (치매안심센터 등)	총계
집합교육	3,478명	1,873명	12명	5,320명
방문교육	423명	132명	0명	555명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커리큘럼(방문요양서비스편, 주야간보호서비스편 표준교안 ppt) 개발

○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 기초교육 실시(1차: '20.10. 총 39명 수료 / 2차: '20.11. 총 40명 수료)
– 보수교육 실시('20.12. 총 98명 수료)

○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운영을 통한 교육 실적관리 및 평가 모니터링, 수강생들의 편의성, 접근성 확보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권리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교육 : 총 5차 221명 교육 실시('20.9~11월)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 이해 및 인권 민감성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문화 교육 : 총 5차 279명 교육 실시('20.7~11월)

○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20.7.) ○ 학대사례 발생 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통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 ○ 장애인 학대 예방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개발 및 배포를 통한 대국민 홍보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종사자 인권의식 향상 * 수료인원: 집합교육 5,320명, 방문교육 555명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수료자 수 전년대비 감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및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인프라 확대, 전문성 향상 도모 * 신규양성 79명 (누적 196명) ○ 아동 권리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병행 실시에 따른 아동 인권보호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상·하반기 지자체 점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이행여부,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 점검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집합 및 방문교육 실시가 어려운 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혹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지속 실시 예정 ○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권강사 추가양성(기초과정 2회 운영) * 수료예상 인원: 신규 40명('21년 12월 누적예상인원 236명) - 노인인권강사 보수교육 운영('21.12.)을 통한 기존 강사진 역량강화 ○ 노인인권교육 콘텐츠 내용 보완(국가인권위원회 연계)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권리 및 인권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 및 전문화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대응단계에 따라 2021년 교육 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음

259-1 Ⅶ-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아동권리 교육 등을 통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극적 이행			
주요내용	○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보급 및 아동 대상 권리 교육 실시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헌장('16.5.제정)을 담은 아동맞춤형 권리 교재 개발 – 아동관련 NGO 등을 통한 아동권리교육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5,014	4,316	△698	△13.9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19,009	19,824	817	4.3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교육)	192	19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심의 진행
– 정부대표단 및 자문단*을 구성,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의 이행 성과를 담은 국가·추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국가심의 이행
* (정부대표단, 21명) 복지부(수석대표 : 차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여가부, 대법원(법원행정처) / (자문단, 6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통·번역가

○ 유엔 제5·6차 최종견해('19.10)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아동권리포럼 개최('19.11)
– 유엔협약 이행 경과보고, 차기 심의 대비를 위한 이슈 발굴* 등 정부-민간-학계 논의의 장 마련
* 교육 패러다임 변화(교육부), 학교·가정 밖 청소년 지원(여가부), 장애아동 지원(교육부·복지부),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여가부), 이주배경 아동 권리(법무부·복지부)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아동권리교육·포럼개최, 아동 관련 NGO 협력 등을 통한 아동권리 홍보 추진
– (권리교육)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보완 등을 통하여 아동권리 교육기회 확대
– (권리포럼) 아동관련 전문가·실무자 토론을 통해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동인권 증진 사업 수행을 통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적극 이행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친화버전 제작을 통하여 아동의 참여 확대 및 이해 제고 – 어린이날,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등 아동인권 증진 사업 적극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아동의 관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양·질적 확대 및 개선 필요 – 아동, 양육자(부모 등)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향후추진계획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제고 추진

259-2 | Ⅶ-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기반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학교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권과 성 평등관점의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근로권익 침해사례 예방 및 근로청소년 보호의식 제고

주요내용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 ·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감수성과 폭력예방을 위하여 성 인권 교재 개발
–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 인권 교육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대상별 · 내용별 추천 콘텐츠 발굴 및 보급
○ 중 · 고등학교 및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청소년 근로보호 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 ·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9	209	–	–
(성 인권 교육 중앙관리기관 운영)	108	108	–	–
(학교 성 인권 교육 운영)	108	108	–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340	340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5,955	6,094	173	2.9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1,250	1,2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 인권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시 : 166개교 736학급 15,365명(8개시도)
–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371그룹 2,859명(17개시도)
○ 생애주기별, 직급별, 직종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8년) 초 · 중 · 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 ('19년) 사회초년생, 중간관리자 대상 맞춤형 콘텐츠 등
○ 학교,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4,457회 151,694명)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및 아르바이트 길잡이 안내서 배포

'20년 이행실적 (1.1.~12.31.)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 인권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시 : 148개교 538학급 14,466명(8개시도)
–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363그룹 2,853명(17개시도)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젠더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20. 12월), 폭력예방교육 표준콘텐츠 및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12월)
○ 학교,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4,457회 151,694명)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및 아르바이트 길잡이 안내서 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장기 초중고 학생 및 인지능력이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건강한 성인식 함양을 위한 지원 ○ 대상별, 생애주기별, 직급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으로 청소년 스스로의 의식 제고 및 사업주의 인식 개선 등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8개시도→ 17개시도) 확대 및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연예인 등 대상 노동인권교육 운영 및 노동인권교과서 개발 및 보급 추진

259-3	Ⅶ-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교육기획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인권의식 함양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인권분야 강사사례비	36	3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18년도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에 '알기 쉬운 인권 이해(2시간)', '여성인권과 양성평등(2시간)' 과목 유지를 통해 인권교육 내실화

○ 지역적응프로그램 필수분야에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19년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에 반영('18.12월)

○ 「탈북민용 인권교육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19.6.1~10.31)」 완료

–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처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가정·직장 내 인권, 여성인권 등 탈북민에게 정형화된 인권교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실시

○ 지역적응센터('18~'19년 전국 25개)에서 인권 교육('18년 311회, '19년 267회) 개최, ('18년 1,670명, 19년 1,074명 탈북민 수강

'20년 이행실적 (1.1.~12.31.)

○ 탈북민의 인권교육 실시

– △여성인권과 양성평등(3시간)을 포함하여 △법률피해 구제사례 및 생활법률(2시간)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2시간) △가족분야 생애설계(4시간) △알기쉬운 인권이해(2시간) △준법교육(2시간) 등

– 전문가 특강을 운영(토요일 2시간)하여 여성인권·범죄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심층 상담

– 교육생이 남북한의 성범죄 관련 기준과 문화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안내서를 발간하여 교육에 활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 제고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입소 북한이탈주민(교육생) 2,520명 인권교육 실시 * '18명 1,034명, '19년 1,049명, '20년 437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지속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남북법률 교재 발간

– 인권 분야와 관련이 많은 △가사·민사·형사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의 법률적 행위 및 대처방법 안내 △탈북민 법률지원 체계 및 관계기관의 안내 등 수록

○ 인권 관련 교육 지속 추진

259-4 | Ⅶ-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외국인 및 청소년 근로자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

주요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지속 추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	전년대비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8,724	7,045	△1,679	△19.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	전년대비 %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134	240	106	7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에서 국내취업생활 중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생활법률·산업안전) 교육 수시 실시

* '18년 입국후 취업교육 78,886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노동법령교육) 14,146건 실시
'19년 입국후 취업교육 85,145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노동법령교육) 18,630건 실시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 실시
*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534회, 36,798명 대상 교육 실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입국후 취업교육)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방식 개선
  * (E-9) 집체교육 → 비대면 교육(ZOOM 활용), (H-2) 집체교육 → 비대면 교육(STEP 활용)

구분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2(외국국적동포)	16,888명
취업교육기관	E-9(일반외국인)	3,866명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거점센터(9개소)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관계법령 등 교육 수시 실시

구분	교육(합계)	한국어	정보화	생활법률	산업안전	기타
건수	87,162	64,177	5,704	6,857	3,942	6,482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 실시

*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624회,47,187명 대상 교육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근로조건 권리구제 강화

– 입국 후 취업교육(20,754명),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수시교육(10,799명)을 통해 3.2만명 대상으로 교육실시

○ 충분한 제도안내,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전히 근로조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 인식 제고도 필요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홍보 지속 추진

– 대규모 강의식보다는 소규모 실습형·참여형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입국 후 취업교육,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교육 지속적 운영

260 261-1	Ⅶ-2-(5)-① Ⅶ-2-(5)-②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여성정책과,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 문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자연스러운 성인지 감수성 제고			
주요내용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확산 – 폭력예방 및 성평등 관련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청년 참여 플랫폼)	450	4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미술 전시회 연계 토크 퍼포먼스 개최, 영화제 연계 토크콘서트 개최, 성평등 음원 제작 및 배포('18)
– 성평등 영화 제작 지원('19)
–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웹드라마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관련 연구, 초·중·고·대학생 집담회,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언어 개선 관련 홍보 영상 제작·확산('18)

○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 문화개선을 추진하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운영('19)

'20년 이행실적 (1.1.~12.31.)

○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운영 통해 청년 주도 성평등 문화 확산 콘텐츠 제작 지원
– 9개분야 23개팀 참여, 영상·팟캐스트·서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 2030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 미래 비전을 만드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의 다양한 문화혁신·인식개선 사업 지원(6월~12월)
* 청년여성 인디뮤지션 연대 공연, 한국 거주 외국인 여성 인터뷰 및 전시, 성평등 주제 다양한 연사 초청 토크 콘서트, IT업계 종사 청년여성 네트워킹 행사 등 소통 프로그램 개최 지원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젠더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 인포그래픽, 서적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총 23개팀)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일·주거·건강 등 9개영역 23개 팀프로젝트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년 주도 성평등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확산(4~12월)

○ 민관거버넌스 통한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청년이 직접 미래 비전을 만드는 소통 창구인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을 통해 청년 주도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추진

○ 대중매체 연계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261-2	Ⅶ-2-(5)-②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과제목표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주요내용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표현 점검 ○ 성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04	104	-	-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75	75		
(공공언어 감수)	29	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성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18년~'19년)
-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소통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연 4회 평가)
-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공공언어 감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실태 연구 및 개선) ('19년)
- 현대사회에 맞는 배려와 소통의 호칭·지칭 방안 연구 및 안내서 발간

* '도련님, 아가씨' 등의 호칭을 '○○ 씨, ○○ 삼촌/고모' 등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차별적 호칭·지칭어 개선안 제시

'20년 이행실적 (1.1.~12.31.)

○ (성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소통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평가 진행(5회)

	소통성 평가 기준
1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2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3	보도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되었다.
4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5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6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 공공언어 감수 시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 점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도자료 평가 5회 실시('20년 7, 8, 9, 10, 11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언어에서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권고

262	Ⅶ-2-(5)-③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정책과
과제목표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가족 관련 캠페인 추진)			
주요내용	○ 작은결혼 문화확산 및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가족서비스 기반구축	5,719	4,247	△1,472	△34.7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가족 인식 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2,100	2,1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작은결혼 문화 확산
- 공공시설 예식장 신규 개방 및 자문
-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작은결혼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작은결혼 사례 인터뷰, 작은결혼식 서명운동 등 홍보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페인('세상모든가족함께') 추진
-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장 마련
  * 세상모든가족함께 숲속 나들이(서울, 5.26), 세상모든가족함께 바다 나들이(부산, 10.6)
-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발표(5월, 9월)
-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EBS, 5.9.)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TV 공익광고를 통해 대중성 확보 및 메시지의 진정성 전달(12월)
- 라디오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메시지 전달
  * MBC 라디오 홍보(5월, 9월, 10월), TBS 라디오홍보(10월)
- 온라인 국민 소통 공간 「세상모든가족함께 플랫폼('www.세상모든가족함께.kr')」 구축 · 운영(8월~)
- 웹툰 등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형 SNS 콘텐츠 제작(9월)

'20년 이행실적 (1.1.~12.31.)

○ 가족의 일·쉼·삶 균형 실천 확산 홍보,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관련 홍보 추진('20년)
  * 작은결혼 문화 확산 사업의 경우 '19년 사업종료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페인('세상모든가족함께') 추진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5월)
- 가족다양성 시범교육(5~12월)
- 다양한 가족 차별 · 편견 매체 모니터링(5~12월)
-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 캠페인 및 언어생활 공모전 실시(6월~7월)
  * 캠페인 총 1,768명 참여, 공모전 총 659건 참여
- 온택트 추석 풍경 챌린지 및 가족다양성 공익광고 송출(9월~10월)
  * 챌린지 총 412명 참여, 광고 TV 93회 송출, 네이버 웹툰 4회연재 등
- 가족다양성 다큐멘터리 제작 · 방영(12월)
  * MBC 나누면 행복〈세상모든가족함께〉 제작 · 방영(12.2, 시청률 1%)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혼·만혼 문제 해결에 기여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 포용 등 수용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관련 홍보 추진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페인('세상모든가족함께') 추진

Ⅷ.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 기업과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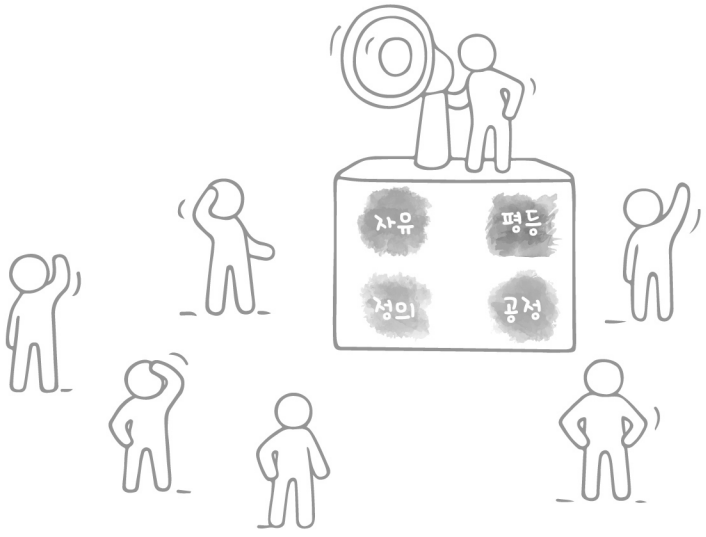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10	-	9	-	1
1. 기업과 인권	10	-	9	-	1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기업과 인권】			
263	Ⅷ-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정상추진
264	Ⅷ-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정상추진
265	Ⅷ-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상추진
266	Ⅷ-1-(1)-④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정상추진
267	Ⅷ-1-(1)-⑤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기타
268	Ⅷ-1-(1)-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정상추진
269	Ⅷ-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정상추진
270	Ⅷ-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정상추진
271	Ⅷ-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정상추진
272	Ⅷ-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정상추진

과제별 이행상황

263	Ⅷ-1-(1)-①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과·팀명	개발정책과 사회적가치경영실
	과제목표	○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하여,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강화 – 사회적 책임 조달 시스템 구축 – 조달계약 체결 시 인권경영 실천 서약 의무화 – 입찰 참여 기업의 계약서 정비, 교육 지원 등			
	관련예산	○ 해당사항 미기재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2018년도〉

○ KOICA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사람중심의 경영철학 확립 및 인권경영 이행계획(18-20) 수립 (△인권경영헌장·규정 제정 등)

– 직원 대상 직무역량강화 의무 인권교육 수행 및 인권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강화

– 조달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기관의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의무화 및 서약서 이행 현황 점검

– 사업수행기관의 안전서비스(SOS) 가입 의무화

〈2019년도〉

○ 인권경영 이행계획(18-20) 세부과제 이행

– 조달 사업 표준계약서, 약정서, 서약서(성비위 근절, 인권경영 실천) 정비

– 자회사, 파트너 대상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이행지침〉 수립 및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 봉사단, 파트너, 국민대상 인권교육 콘텐츠, 인권문화 증진 캠페인 수행

○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신규 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준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권고 이행)

○ 신규 사업 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 시민참여 평가단 현장 시범조사(몽골) 실시 및 시민사회 참여 인권현안 정책대화 (8회)

○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제 5 · 6차 심의 시, KOICA 인권 정책 보고

– 아동권리협약 제 24조 등 당사국의 국제협력 의무 사항 실천 보고

'20년 이행실적 (1.1.~12.31.)

○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3) 수립**

– (주요내용) 사업에서의 인권주류화 및 인권책무성 강화 조치를 위한 5대 전략 틀 및 15대 정책과제 개발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3)> 5대 전략 틀

① 상황 분석	② 위험 예방	③ 사업 실행/평가	④ 책임 구제
협력국 인권상황 분석 기초한 사업 기획	사업 인권위험 관리체계 구축	인권기반접근(HRBA) 사업 실행/평가	사업에서의 인권위험에 대한 구제책임 강화
⑤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청년) 대상 인권적 접근 강화			

– (20년도 실행과제) ▲인권기반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수립,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파트너 지원, ▲인권경영 위원회, 사업 전문위원회 간 협력 강화, ▲장애포괄적 사업개선방안 연구 2건 수행

○ **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 (적용 대상) 2020년 신규 국별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대상

– (수행 주체) 총괄부서 ↔ 사업부서 ↔ 사업수행 파트너 공동 평가 수행

– (대상 사업) 신규 선발 국별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사업심사 시 평가결과 의무제출)

– (점검 항목) UN, OECD 표준 적용 및 개발협력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7개 부문 78개 항목 자체 개발
: 입지 특성, 환경, 사회 인권, 성비위/고충처리, 취약계층 권리, 안전 · 시설건축물 등

– (수행 단계) 평가계획 수립 → 데이터수집 기초선 조사 → 위험영향 분석 → 영향 관리 → 보고 및 평가

○ **파트너기관 인권경영,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 (대상) 신규 민관협력사업 선발 민간기업 및 단체

– (추진내용) KOICA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파트너 인식 제고 및 인권영향평가 수행 컨설팅 지원

○ **자회사 인권경영 체계 구축 지원**

– (자회사 인권경영 체계구축, 교육 지원) 자회사 창립가치로서의 '인권경영': 모회사 인권경영체계 구축 지원 및 자회사 대상 인권교육 지원 (만족도: 4.15/5점)
→ 인권경영 관점 위탁 계약서 내 부당, 불공정 조항 전면 개선

○ **파트너, 국민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 플랫폼 운영**

– SDGs와 인권, 개발과 인권,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으로 민간 부문의 인권존중책임 의식 고취 (만족도: 4.35/5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경영 이행계획(18-20)〉 상 28개 정책과제 수행 완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광범위한 공급망 내 인권 위험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필요 ○ 재외공관 및 KOICA 현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인권 정책과제 환류 ○ 현지 인권분야 사업 확대를 위한 현지 정부, 국제기구 등 협력 파트너십 및 제도 자원 확충 필요

향후추진계획

○ **(사업 인권전략(21-25) 신규 수립)** 인권분야 3대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2기 인권경영 이행계획(21-23) 수립)** ▲인권경영 고도화(조직문화, 파트너), ▲HRBA 실행(인권 기반 개발협력 15대과제 및 인권분야 3대 프로그램 발굴) ▲파트너와 함께하는 인권경영 수행을 위한 과제 수립

264	Ⅷ-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산업정책과

과제목표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이행

주요내용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및 포상평가 기준에 '협력업체 상생경영 지원', '협력업체 윤리경영 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

○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방안 포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	730	652	△78	△10.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평가 기준 및 포상평가 기준 반영

- 실태조사 평가 기준 : 협력업체 상생경영 및 윤리경영 정책을 포함한 2개 지표 반영
- 포상평가 기준 :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정책, 가족친화경영 정책 등 2개 항목 반영

'20년 이행실적 (1.1.~12.31.)

○ K-ESG 평가지표 개발 추진

- 시장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마련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20.12월말)

* 대책 주요내용 : ①K-ESG 지표 개발, ②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③인센티브 확산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K-ESG 평가지표 산업계 등 의견수렴 후 확정 공고('21.12월)

○ 종합시책 상 주요 계획 등 착실히 이행 추진

265	Ⅷ-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 조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조달청	과·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제목표	○ 공공조달부분에 참여하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조문 신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조달청 지침 등 제도정비 – 조달청 지침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계약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여 공공조달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			
	관련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용역·시설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개정하여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 부여 –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18.4.1/'19.4.1 시행)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18.4.1/'19.4.1 시행)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18.7.16/'19.3.5 시행) –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18.8.1/'19.1.1 시행)
'20년 이행실적 (1.1.~12.31.)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용역·시설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18~'19년도에 정비한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에 대해 계속 유지하거나 개정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 일생활균형 참여기업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20.10.15시행) –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부여('20.10.15시행) –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참여 시공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가산평가('20.5.27시행)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장애인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부여('20.10.1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기업 지원실적

년도	2017	2018	2019	2020
금액(억원)	34,959	35,783	43,966	48,967

○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년도	2017	2018	2019	2020
금액(억원)	7,266	7,517	9,583	10,213

○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년도	2017	2018	2019	2020
금액(억원)	1,612	2,161	3,474	4,558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조달청은 공공조달부문의 인권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한 기준 개정 등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266	Ⅷ-1-(1)-④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팀명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제목표	○ 소비생활 밀접 분야 제품안전 확보			
주요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 및 (수입)유통 시장 안전관리 다각화 ○ 제품안전시스템 확보와 선진 제품관리 체계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 제품안전 법정의무 점검 강화 및 인증 신뢰성 제고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험형 교육 추진 ○ 어린이제품안전 정보의 통합적인 제공 및 통계기반 확충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990	1,070	80	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18년 14개 품목, 2,529건 → '19년 30개 2,668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18년 3,783명 → '19년 4,965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18년 진천, 부천, '19년 대구)
○ 어린이제품 관련 사업자 역량강화 추진(49개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방문교육(법률, 안전기준 등), 맞춤형 컨설팅 및 시험비 일부 지원, 현장자문 등)

'20년 이행실적 (1.1.~12.31.)

○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지속 확대('19년 30개 품목 2,668건 → '20년 32개 품목 2,779건)
○ 완구, 어린이놀이기구 등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14건
○ 학용품, 어린이용 안경테 등 10개 품목의 유해원소 함유량 확인방법 개발 등 안전기준 검증·분석 실시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확대('19년 4,965명 → '20년 6,069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울산 안전체험관 내 제품안전체험시설 구축) (현재 총 6개소 구축·운영 중)
○ 115개 어린이제품 제조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및 제품관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신제품·융복합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발·정비, 개별 안전기준이 없어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확대·강화 ○ 지속적인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선도(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및 확대,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시설' 구축 확대, 기업지원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인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 제품시장의 다양성, 소비방식의 변화 등으로 신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지속 증가로 법제도의 명확성, 관리의 전문성 등 안전관리체계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어린이제품 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어린이제품 생산업계 대상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제조·수입 위해제품 유통 사전차단, 불법·불량제품 감시 등 제품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 어린이제품 기업지원 확대 : 영세 제조·수입기업 시험인증 컨설팅, 비용지원, 용복합제품 신속인증 활성화
○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 활동 강화
○ 제3차('22~'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268-1	Ⅷ-1-(1)-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주요내용

○ UN 등 국제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 개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쉽 증진	1,327	2,197	870	65.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2018.6월 제38차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기업과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 참여(컨센서스 채택)
- 제7차 기업과 인권 포럼(18.11월, 제네바)에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참석
- 제41차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합동대회(19.6월)에 참석하여 우리 입장 발언(UNGP 준수 필요성 등)
- 제8차 기업과 인권 포럼(19.11월, 제네바)에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 등 참석

'20년 이행실적 (1.1.~12.31.)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제9차 기업과 인권 포럼(20.11월, 화상회의) 참석
  · 기업 관련 인권 침해의 예방을 주제로 한 세부 논의 진행
  · 정부 대표단 외 우리측 학계(고려대) 및 시민사회(국제민주연대)에서 패널로 참석, 한국 사례 발표

※ 기업과 인권 조약 성안 논의 동향 주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UNGP) 이행 증진 등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UNGP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지속 독려 필요 ○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회의 · 논의에 제약

향후추진계획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

268-2	Ⅷ-1-(1)-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UN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 관련 인권문제 고려			
	주요내용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결의안 적극 참여, 정부 발언에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관련예산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해당없음			

'19년 주요 이행 실적	○ 제41차 인권이사회 정부대표단 참석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수리야 데바 위원 면담 – 인권국장 정부대표발언(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협력 약속, 국내 정책 소개) 실시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정부대표단 참석 ○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채택 주도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업과 인권'의 중요 이슈인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신규 결의안 채택 주도 ○ ILO총회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관련 신규 협약 채택 검토
'20년 이행 실적	○ '기업과 인권'이슈에 관한 유엔기구 질의 적극 협조 –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라오스댐 사건) 답변서 작성을 통해, 제3차 NAP에서 별도의 기업과 인권 장 마련 등 우리 정부의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점진적 노력 소개 – ILO 차별(고용및직업) 협약(제111호) 및 MNE선언(다국적기업및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질의 관련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원 등 답변 제공 ○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정책추진 토대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업무협약 체결('20. 5.) –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20.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내 인식 확산 ○ 국제사회에 '기업과 인권' 증진 노력 협조 의사 분명히 표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필요

향후추진계획	○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결의안 적극 참여 계속

268-3	Ⅷ-1-(1)-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 개발협력지원팀
	과제목표	○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주요내용	○ UN,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관련 인권문제 고려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시 적극 참여 – 우리 정부 발언 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관련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제108차 ILO 총회('19.6월) 시 국내 및 해외 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보장, 다자체계 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의 미래를 위한 100주년 선언문" 채택 지지 ○ 제9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시('18.9.6.~9.7., 아르헨티나 멘도사),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차별 철폐 관련 정책 공조 노력을 포괄하는 선언문 채택 지지 ○ 제10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시('19.9.1.~9.2., 일본 마츠야마), 인간중심의 일의미래를 위한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한 정책 공조 노력 등을 포괄하는 선언문 채택 지지 ○ 제57차 UN ECOSOC 사회개발위원회('19.2.11.~2.21.)에 참석하여 재정, 임금, 사회 보호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및 사회 통합과 관련된 의제에 대하여 한국의 일자리 불평등 해소 정책 소개 및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

'20년 이행실적 (1.1.~12.31.)	
	○ 제11차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시('20.9.10., 화상회의), 코로나19 위기 및 경제회복기의 일자리 중심의 정책 강조,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괄하는 선언문 채택 지지 ○ 제58차 UN ECOSOC 사회개발위원회('20.2.10.~2.19.) 회의 시 장애인, 청년, 노인, 가족문제 의제에 대하여 우리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 소개 ○ 제340차 ILO 이사회('20.11.2.~11.14., 화상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간중심적 회복 이니셔티브' 논의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나라도 인간중심적 접근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 ○ 2020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발표를 계기로 개최한 고용노동장관회의('20.7.7.,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정책 대응 소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별도의 사업예산 없이 과제목표 수행 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된 회의가 연기 및 영상으로 변경

향후추진계획	
	○ 국제기구 회의 의제 발굴 시, 적극적 대응 ○ 수석대표 등 정부발언 시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269	Ⅷ-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개발협력지원팀

과제목표

○ 해외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및 진출국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등 해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주요내용

○ 국내외 관계기관과 주요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현지 설명회 및 진출 예정기업 국내 설명회 개최
○ 진출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및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해외투자기업 노사안정지원사업	329	329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현장지원반 파견) 진출기업의 노사안정 및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지 노무관리 세미나,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등 지원 활동 실시(인도네시아('19.3.25~3.28), 필리핀('19.7.8~11))

○ (노사정 대표단 초청교류 및 HRM 세미나) 해외 노사정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리 노사관계 발전경험을 전수하고 해당국 진출기업의 인사노무 전략 수립을 위한 HRM 세미나를 개최(인도네시아('19.11.3~7) 캄보디아('19.11.18-22))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포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지원을 위한 포럼 개최(대한상공회의소 협력, '19년 2회)

○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현지 대사관과 협력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 현지 노동법령, 노무관리 주요 이슈 및 사례 등 지원자료 개정 및 배포

'20년 이행실적 (1.1.~12.31.)

○ (현지 노무관리 지원) 현지 정부 정책, 문화 이해도 제고 및 노무관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인도네시아 현장지원반 출장(1회) 및 현지 인사노무관리 웨비나 개최(4회), 애로사항 해소 간담회(5회)

국가명	일시	참가자수(명)	만족도(5점)	협력기관
하노이	'20.08.21	135	4.4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베트남한국대사관
캄보디아	'20.09.03	40	4.1	산업안전보건공단 프놈펜무역관
호치민	'20.09.11	157	4.3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베트남한국대사관
미얀마	'20.11.17	138	4.6	양곤무역관 DIAC

-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현장지원반(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파견('20.1.15~1.17)
- 베트남 고용노동관을 통해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간담회' 개최('20.8.18~9.10, 5회)

○ (HRM 온라인 세미나) 국가별 코로나19 지원정책 및 개정 노동법 제도 관련 웨비나 개최

국가	일시	참가자수(명)	만족도(5점)	협력기관
베트남	'20.06.11	85	4.2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07.16	30	4.5	산업안전보건공단
중국	'20.08.27	75	4.0	법무부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온라인 포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지원

포럼명	일시	참가자수(명)	협력기관
인권경영 - 국가와 기업의 역할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전략 및 사례	'20.06.25	49	국가인권위원회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코로나19와 기업의 CSR 대응 사례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CSR 우수사례	'20.09.23	21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 현지 노동법령, 노무관리 주요 이슈 및 사례 등 지원자료 개정 및 배포 * 노무관리 지원자료 *현지 대사관과 협력

발간명	발행 시기	발행 부수(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20.08	500
베트남 개정 노동법	'20.05	1320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	'20.08	350
중국 코로나19 관련 인사노무관리 Q&A Ⅰ, Ⅱ	'20.2, '20.9	온라인 발송

○ (신남방국가 노동시장 온라인 기초교육) 진출 예정기업이 현지 조직문화와 노동시장 파악을 위해 현지 노동법, 노동분쟁 이슈 및 분쟁 해결 사례 등의 국가별 기초 교육(4국)
- (해당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 (방법) 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게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변화 노력으로 해외 진출 중소 영세기업들이 인권 경영 활동 도모

○ 현지 노동법·제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지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국가별 자료발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우리 진출 중소 중견기업이 국별 노동법, 재도 준수하도록 지원을 통해 NAP 이행 노력

270	Ⅷ-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및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등 지원 추진 –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폭넓게 지원 –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까지 건강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확인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25,687	19,986	△5,701	△22.2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피해신청자 5,828명을 판정하여 2,888명 피해 인정, 의료·장의비, 생활수당 등 지원(2,097명, 489억원)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추가·확대

* **(기존)**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추가)** 독성간염('19.7), 아동간질성폐질환('19.11)

** **(기존)** 폐질환(상당지원), 기관지확장증, **(추가)** 아동간질성폐질환('18.5), 성인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8.11), 폐렴·천식(상당지원)('18.12), 천식 지원범위 확대('19.10, 천식 J45, J46→호흡기질환 전체), 긴급의료지원 대상질환 추가('19.11)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피해자 범위에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피해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20년→30년)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18.8) 및 하위법령('19.2) 개정

'20년 이행실적 (1.1.~12.3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피해신청자 7,116명을 판정하여 4,114명을 피해자로 인정, 의료·장의비, 생활수당 등 지원(2,416명, 789억원)

* 법 개정·시행('20.9.25) 이후 1,191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 등 피해구제 대폭 확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포괄적 건강피해 인정,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 구분 폐지 및 피해구제자금으로 재원 통합, 소송에서의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장해급여 신설 등 지원 확대, 사업자분담금 추가징수 규정 등 특별법 개정('20.3)

–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액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연장(5년→10년) 등 하위법령 개정('20.9)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대폭 확대 – 피해 인정질환 : ('17.8, 법제정) 2개 → ('20.9, 2차개정 전) 10개 질환 → ('20.9, 2차 개정 후)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피해 인정 – 피해 인정자수/금액 : ('17.8) 280명, 42억원 → ('19) 2,888명, 498억원 → ('20) 4114명, 780억원 ○ 피해자 의료지원 및 서비스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권역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11개, '20.4) 및 건강모니터링 지원 확대('20년 2,718명) – 의무기록 발급대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452건), 페이식 등 고액 치료비 지급보증 참여 의료기관 확대('19년 2개→'20년 10개 병원),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마스크 지원('20.4, 4,600명)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신속·공정한 조사판정 이행 – 특별법 개정으로 건강피해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 불인정자 및 미판정자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필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지속 요구 – 정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피해자와의 정기적 소통, 심리적·신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만족도 제고

향후추진계획	○ 신속·공정한 조사·판정으로 피해자 구제 확대 – 미판정자, 불인정자 및 등급판정 대상자에 대한 개별심사를 실시하고, 조사판정기관 워크숍을 통해 판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조사판정기관(병원)에서의 대면상담 및 재심사위원회 현장참석, 화상면담, 유선통화, 서면제출 등을 통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소통 강화 – 법률상담 지원,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해기업 대상 소송을 적극 지원 – 분기별 전체 피해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1:1 대면상담 등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 – 전문 콜센터 운영, 전문집단(변호사협회·직업건강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271-1 Ⅷ-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팀명	제품시장관리과
과제목표	○ 리콜제도를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제품안전 향상 도모			
주요내용	○ 리콜 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리콜정보 홍보 강화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매장 확대 및 시스템 개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20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소 계)	1,610	2,003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제품이행점검)	1,110	1,283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380	380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및 확산)	120	340	220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 실적

○ 리콜 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리콜정보 홍보 강화 및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 전달체계 확립
○ 리콜공표문 개선을 통한 소비자 리콜인지도 제고

'20년 이행실적 (1.1.~12.31.)

○ 리콜 이행률 제고
- (리콜이행점검) 리콜이행점검 횟수를 ('19) 595회 → ('20) 975회로 확대하여 회수율 54.3% 달성
- (전담책임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리콜사업별 전담책임자를 배정하여 업체별 실적 정기 점검(3~5회) 외에도, 수시 유선점검, 사업자의 리콜이행과정 전주기 관리하여 리콜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리콜 사업자 교육/홍보 강화
- (리콜이행 Help Desk 운영) 리콜 이행이 처음이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리콜 사업자들을 지원·안내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신설하여 신속한 리콜제품 회수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 (리콜이행 매뉴얼 제작) 사업자의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해 리콜계획서 작성, 리콜 절차, 소비자 대응방법 등 교육용 '리콜이행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과 동시에 매뉴얼 내용을 교육용 영상으로 제작하여 행정처분시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여 리콜이행에 참고토록 조치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제품안전모니터링) 6개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안전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on·off-line 시장에서 불법여부(KC인증여부)를 조사 후 조치 (총 147,628개 조사)
- (**불법제품 시장 퇴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신고(9,016건, 전년대비 **38%↑**))에 대해 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을 전년 대비 5,090**건(적발율 56.5%) 적발, 행정조치 완료**

	○ (**리콜정보 홍보 강화**) 소비자들의 리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제품안전정보센터나 행복드림 포털에 리콜제품 정보를 업로드 하였으며, 각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각 시도지자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에 제공하여 최종 소비자로의 리콜 정보 전달력 제고 – 학부모, 교사 등 어린이제품 관련 소비자들이 리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이용자들이 많은 알림장 앱, 온라인 학부모카페 등을 통한 맞춤형 리콜정보 제공 추진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및 확성화 – (시스템 도입확대) 시스템 운영매장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병행하여 운영매장수는 ('19) 173,708개 → ('20)180,891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년 중저가제품 전문몰인 다이소와 대형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대형 온라인몰인 쿠팡과 GS프레시몰 등이 시스템을 신규도입하여 위해상품 차단 중 – (시스템 우수 운영매장 선정)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운영매장을 선정, 도입사들의 시스템 적극적인 운영을 장려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포상과 함께 표식을 제작 하여 수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리콜제품 신속 시장퇴출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감시활동 수행 – 리콜이행점검 횟수 증대 및 전담책임제 운영으로 회수율 제고, 제품안전모니터링 강화, 불법제품 시장 퇴출 등을 통해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으로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리콜 이행력 제고 – 리콜이행 Help Desk 운영을 통한 사업자들의 리콜이행시 장애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교육용 매뉴얼,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리콜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력 제고를 통한 회수율 제고 ○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 전달체계 구축 –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포털 공개는 물론, 타부처 협력을 통해 최종 제품 사용자에게 리콜정보 전달력 제고 – 소비자의 리콜 참여 유도를 위해 학부모 이용도가 높은 인기 알림장앱, 맘카페 등을 활용, 리콜제품정보를 배너로 제공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및 활성화로 리콜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 –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과 공조하여 위해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유통사에 즉시 전달하여 위해제품을 차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확대를 통해 on·off-line상 제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한 현장조사 강화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 지속 확대 추진

271-3 Ⅷ-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자동차정책과
과제목표	○ 자동차 리콜제도 및 운영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 소비자 친화적 자동차리콜제도 운영으로 리콜활성화 및 시정률 제고			
주요내용	○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 ○ 자동차 리콜관리 및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 결함시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동차안전도강화 (자동차제작결함조사)	7,800	7,526	▽274	▽3.5

※ '21년에 자동차 노후장비 교체예산이 자동차 및 부품안전점검시설장비 구축 내역 예산으로 재편성(7억원)되어, 실제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예산은 증가함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시 리콜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18.4~12)
○ 자동차리콜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과 연계하여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18.1~12)
○ 자동차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제공 표준양식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가독성 높은 정보 제공('18.1~12)
○ 선제적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제작사 제출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리콜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18.1~12)
○ 결함 은폐, 축소 및 늑장리콜 시 처벌강화, 리콜 적정성 조사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 공포)
○ 소비자가 충분히 리콜대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리콜안내를 강화하고 리콜전산망 개편('19.12)
–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할 경우 리콜대상 및 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20년 이행실적 (1.1.~12.31.)

○ 소비자가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리콜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리콜 조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정보 제공('20.1)
○ 민간기업(네이버)과의 협업을 통해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를 추진하여 자동차 리콜 정보 확인 서비스 추진('20.9)
○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 시행 '21.2.5)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20.3~12) 및 시행('21.2.5)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동차리콜센터 개선을 통한 리콜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자동차 리콜센터 및 결함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차량 정보 입력 시 리콜 시정 여부 확인 및 기존의 리콜현황 통계 개선으로 소비자의 리콜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후에 위임사항을 신속하게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필요

향후추진계획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후에 위임사항을 신속하게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21.3~12)

272 Ⅷ-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해외투자과
과제목표	○ OECD 동료평가를 통해 NCP 운영개선,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 실시			
주요내용	○ OECD 동료평가를 통한 한국NCP 운영 개선 ○ NCP위원 구성다양화, 이의제기사건 우수사례 공유 등 NCP운영 개선 ○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투자유치기반조성 - 투자유치활동비 (한국NCP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314	330	16	5.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18~'19년 주요 이행실적

○ 한국 NCP, OECD 동료평가 ('19.12.)
○ NCP위원 구성 다양화, 해외 이의제기사건 사례 공유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 NCP운영 개선
-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대상 간담회 개최('19.2.), 해외 NCP 이의제기사건 분쟁사례집 발간(연1회)

○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베트남, 인니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포함)
- 외국인투자주간 가이드라인 홍보('18.11), 기업의 사회적책임 트렌드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19.2.), 베트남 하노이 현지설명회 개최('19.4.)

'20년 이행실적 (1.1.~12.31.)

○ 한국 NCP, OECD 동료평가 보고서 협의('21.3. OECD 상정 예정)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홍보수단 마련 및 홍보활동 강화
- 지면광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 지면광고 게재 (3회), 인터넷 배너광고 및 동영상 광고 (3회)
- 국내 세미나 개최(11.13.,온라인), 기업과 인권 포럼 연사참가(12.4.,온라인), 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베트남 해외 세미나 공동개최(8.21.하노이, 9.11.호치민), NCP 포럼 개최(2회)

○ 자료 발간 및 연구조사
- 2020년도 최신 분쟁사례집 및 OECD 발간 자료 번역 발간(기관투자자를 위한 기업책임경영 발간, 의류&신발 분야 실사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NCP 활용 가이드북 제작
- 해외진출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실천방안 연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OECD 동료평가를 통해 한국NCP는 개선점을 확인하고 해외진출기업에 의한 인권 등의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 NCP 운영개선의 기회로 활용 ○ 이의제기사건 분쟁사례집, OECD 발간물의 번역·발간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 전파에 기여 ○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 ○ 세미나, 포럼,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기능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행동과 일반대중의 국제적 기준 인식 제고 ○ 해외진출기업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권 인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
○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 유행중 비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
○ 피어리뷰 보고서에 따라 한국NCP 운영 및 이의신청사건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0년도 이행상황

• 인　쇄 _ 2021년

• 발　행 _ 2021년

• 발행처 _ 법무부 인권정책과
Tel : 02-2110-3213~4

• 디자인 _ 동광문화사
Tel : 02-503-5165